제12권 제1호

1990 暑

韓國開發研究

長期的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1955~85)

經濟力集中:基本視角과 政策方向

關稅率 調整의 經濟的 効果分析:

一般均衡的 接近

遠洋漁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

우리나라의 適正바스켓換率: 市場平均換率制度의 運用基準 摸索

寡占產業에서의 進入制限價格

ENGLISH SUMMARY(英文要約)

洪 性 德

光

金

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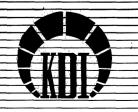
李 奎 億

李元暎

金 鍾 奭

嚴 峰 成

南逸聰



韓國開發研究院

季刊韓國開發研究

제 12 권 제 1 호

1990 봄

長期的 産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1955~85)··································	金 洪	光 性	錫 德	3
經濟力集中:基本視角斗 政策方向 …	·李	奎	億⋯	31
關稅率 調整의 經濟的 効果分析: 一般均衡的 接近	·李	元	暎⋯	69
遠洋漁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	·金	鍾	奭…	93
우리나라의 適正바스켓換率: 市場平均換率制度의 運用基準 摸索··	·嚴	峰	成…	111
寡占產業에서의 進入制限價格	·南	逸	聰…	127
ENGLISH SUMMARY(英文要約) ··	••••]	153

-----編 輯 陣=

委員長 兪 正 鎬

幹事左承喜

委員權純源 朴埈卿

宋大熙 沈相達

編輯申東祚

編輯問議:編輯委員會(960-0084) 購讀問議:發刊資料相談室(960-3283)

本 季刊誌는 本誌에 發表된 論文과 本院에서 發刊되는 研究叢書 및 其他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 혹은 書評을 揭載하고 있읍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혹은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向後의 研究課題와 政策方向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것이 그 趣旨입니다. 이를 諒知하시어 아래와 같은 要領에 의하여 虛 心坦懷한 所感과 批評을 寄稿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길이는 200字 原稿紙 基準 30枚 內外로 限定하되 原稿紙에 淨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論評은 該當論文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內容으로 하여 가급적 論文이 發刊된 후 3個月 以內로, 書評은 該當報告書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向後 研究課題 提示를 內容으로 하되 原則的으로 報告書가 發刊된 후 6個月 以內로 作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原稿는 郵便 혹은 人便으로 『韓國開發研究』編輯委員長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寄稿된 論評과 書評은 本院 所定의 審查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論評은 該當 論文 執筆者의 應答과 함께 揭載하겠읍니다. 채택된 原稿는 稿料를 支給합니다.

長期的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 (1955~85)

 金
 光
 錫

 洪
 性
 德

60년대 전반 이후의 輸出主導型 工業化을 통한 高度成長은 國內產業 또는 業種間 成長率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產業構造變化를 수반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產業聯關表體系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長期的인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의 要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過去의 長期的인 成長過程에서 國內需要, 輸出, 輸入代替와 技術變化는 산업별 生產成長에 각각 얼마만큼 寄與했나 하는 것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정은 總量的 經濟水準뿐만 아니라 細部產業別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韓國經濟 全般 및 工業部門의 細部的 變化過程에 관한 풍부한 分析資料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 序 論

우리나라 經濟政策은 休戰 이후 근 40년간 그때그때의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와 필요에 따라 많은 變革을 거쳐 왔다. 그런데 실제 執 行된 經濟政策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때 戰 後 우리나라의 經濟政策變革은 대체로 4個期 間으로 구분・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筆者: 金光錫-慶熙大學校 教授 洪性德-本院 專門研究員 첫째 時期는 1953~60년간으로 戰後復舊期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이 기간의 產業政策은 對內指向的이었으며 輸入代替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그 다음 5년간(1961~65)은 그전의 戰後復舊와 輸入代替中心의 工業化에서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해서 여러가지 政策的 改革을 단행한 政策的 轉換期에 해당된다. 어떻든 이 轉換期에 이룩한政策的 改革의 결과로 1966년 이후 기간에는우리나라의 輸出主導型 工業化政策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지속적인 高度經濟成長을 가능케 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1966~79년간에는 輸出主導型工業化를 통해서 高度成長

을 추진했으나 超過需要狀態下에서 高度成長을 추구하는 政策基調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서 1980~88년간은 物價安定下에서 高度成長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기간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1960년대 前半期이후를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輸出主導型 成長期로 보나 1979년까지는 高인플레下의 成長期로 그리고 1980~88년을 安定化期로 區分해서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長期的 政策變革은 工業化를 통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가능케 했으며 특히 60 년대 전반 이후에는 輸出主導型 工業化를 통 해서 高度成長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成長은 國內產業部門間 또는 業種間 成長率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產業 構造變化를 수반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長期的인 產業成長 및 構 造變化의 要因을 產業聯關表體系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過去의 長期的인 成 長過程에서 國內需要,輸出,輸入代替와 技術 變化는 산업별 生產成長에 각각 얼마만큼 寄 與했나 하는 것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 한 측정은 總量的 經濟水準뿐만 아니라 細部 產業別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韓國經 濟 全般 및 工業部門의 細部的 變化過程에 관 한 풍부한 分析資料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다.

그런데 사실 본 논문을 위해서 새로이 작업한 내용은 1975~85년간에 대한 產業成長 및構造變化要因의 분석에 限定되고 있으나 이러한 分析結果의 長期的 관점에서의 綜合的評價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1975년 이전 期間 (1955~75)에 대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과거의 分析結果와 連結・比較하고자 한다. 그것

은 과거 10년간(1975~85)에 대한 어떤 集中的 分析보다는 훨씬 長期的 次元에서의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분석과 그에 입각한 長期的 工業化패턴의 평가가 우리나라 工業化戰略 및 政策의 有效性을 검증하는 데 훨씬더 有用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分析과 評價를 위해서 본 서론에 뒤이은 第II章에서는 產業聯關表體系를 사용한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方法을 다루고 있으며 第III章에서는 分析에 사용한 產業聯關表資料의 정리와 不變價格으로의 換價過程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第IV章에서는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분석을 總量的 및部門別 水準에서 이룩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끝으로 第V章에서는 앞에서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II. 分析方法

生產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不變總量比率方法(constant composition method)과 不變部門別 比率方法(constant share method)의 두가지로 구분될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로 輸入代替를 측정하는 방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인데 不變總量比率方法은 總量的인 國內供給에 대한 輸入構成比의 不變을 가정하고 同 構成比의 감소를 輸入代替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의 경우에는 部門別 輸入比率의 감소 또는 國內生產比重의 증대를 輸入代替로 計測하고 있다.

1. 不變總量比率方法

不變總量比率方法은 Chenery(1960)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동 논문에서는 아직 產業聯關分析을 예상하고 있지 못하므로 成長要因의 분해를 위한 直接的 方法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解方法은 다음과 같은 需要・供給恒等式에서 출발하고 있다.

$$X_i = D_i + W_i + E_i - M_i \cdot \cdots \cdot (1)$$

 X_i : i財貨(또는 部門)의 國內生產

D.: i財貨의 國內最終需要

W,: i財貨의 國內中間需要

E_i: i財貨의 輸出

 M_i : i財貨의 輸入

여기서 m_i 를 i財貨의 總需要에 대한 輸入 比重을 나타낸다고 하면 $m_i = M_i/(D_i + W_i +$ E_i)로 정의되므로 方程式(1)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X_i = (1-m_i) (D_i + W_i + E_i) = (1-m_i) Z_i \cdots (2)$$

 $\exists i, Z_i = D_i + W_i + E_i$

다음에는 모든 產業의 均衡的 成長을 가정하고 이러한 均衡的 成長經路로부터 각 財貨生產部門의 실제적인 成長偏差(deviation)를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均衡成長經路를나타내는 比例因子로 " λ "를 사용하고 그것을第1期에서 第2期까지(數式에서는 밑첨자로 표시)의 기간중의 國民所得의 增加率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면 각 部門의 均衡成長經路로부터 實際生產 및 需要의 偏差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delta X_i = X_{i2} - \lambda X_{i1},$$

$$\delta D_i = D_{i2} - \lambda D_{i1},$$

$$\delta W_i = W_{i2} - \lambda W_{i1},$$

$$\delta E_i = E_{i2} - \lambda E_{i1}.$$

均衡成長으로부터의 偏差基準으로 표시하면 方程式(2)는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

$$\delta X_{i} = (1 - m_{i1}) (\delta D_{i} + \delta E_{i} + \delta W_{i}) + (m_{i1} - m_{i2}) Z_{i2} \dots (3)$$

위의 方程式에서 오른편 첫째 項은 不比例的 (non-proportional)인 生產成長에 대한 國內 最終需要,輸出 및 中間需要의 不比例的 증가의 종합적인 효과를 측정하며 두번째 項은 不比例的 成長에 대한 輸入代替寄與率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方程式(3)에서 中間需要의 不比例的 增加 (δW)는 最終需要項目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生產成長要因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그 것은 中間投入係數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最終需要 및 輸入代替效果의 모든 간접적 영 향을 포함한다. 이러한 各要因의 완전한 分離 는 Chenery-Shishido-Watanabe (1962, 이하 CSW로 표시)에 의해서 產業聯關分析體系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CSW는 각 부문의 不比例的 生產成長의 要因을 네가지 독립적(autonomous)인 요인, 즉 (1) 國內需 要의 변화 (2) 輸出의 변화 (3) 輸入의 변화 (4) 技術變化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投入係數의 변화 등으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中間需要(W)를 독립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式(1)의 W를 AX로 代置해야 한다. 단, A는 投入・產出 行列을 나타낸다. 그 다음 X를 구하기 위해 서 式(1)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式을 얻게 된다.

$$X = (I-A)^{-1}(D+E-M)$$
(4)

이것은 X를 구하기 위한 일반화된 형태의 方程式이다. 第2期 逆行列 $(I-A_2)^{-1}$ 의 각 因子(each element)를 $r_{i,12}$ 로 나타내면 특정기 간중 각 부문(i)의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生產偏差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elta X_i = r_{i,j2} \left(\delta D_j + \delta E_j - \delta M_j + \lambda T_j \right)$$
(5)
단, $T_j = \sum_i \left(a_{jk2} - a_{jk1} \right) X_{k1}$
 $\delta M_j = M_{j2} - \lambda M_{j1}$

위의 式에서 숫자로 표시된 첨자는 時期를 나타내며 a_{jk} 는 投入係數行列의 各項을 나타 낸다. CSW에 의하면 상기 式에서 (1) Σ $r_{i,2}\delta D_{j}$ 는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國內需要 偏差의 全體的 效果를 나타내고, (2) Σr_{ij2} δE_j 는 輸出偏差의 效果, (3) $-\Sigma r_{i,j2}\delta M_j$ 는 輸 入偏差의 效果, $\lambda \sum r_{i,n} T_i$ 는 技術變化의 效果 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輸入偏差 의 效果를 輸入代替效果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輸入代替效果를 측 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것은 CSW가 창안한 不比例的 成長要因의 分 解方法概要이나 그들은 아마 자료상의 제약으 로 인해서 國產과 輸入에 의한 中間投入係數를 구분치 않고 또한 國內最終需要도 輸入과 國 産에 대한 것을 구분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中間投入과 最終需要로 분할된 완전한 輸入行 列資料가 있다면 CSW방법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만일 완전한 輸入行列資料가 있다면 產業 聯關表體系의 需給均衡方程式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 = A^{d}X + A^{m}X + D + E - M^{w} - M^{f} \cdots (6)$$

A^d:國產投入・產出係數

A^m:輸入投入・產出係數

Mw:中間需要用 輸入

M1: 最終需要用 輸入

X, D, E: 앞에서의 정의와 같음.

위의 식에서 중복표시되고 있는 輸入中間投入 을 공제하면,

$$X = A^d X + D + E - M^f \cdots (6')$$

가 된다. 그리고 國產中間投入만에 의한 逆行 列係數 $[I-A^d]^{-1}$ 을 간단히 R^d 로 표시하면,

$$X = R^d(D + E - M^f) \quad \dots \qquad (7)$$

로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分析體系를 이용하여 生產의 偏差 (δX) 를 분해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런데 式(8)에서는 第2期의 投入逆行列係數와 第1期의 生產構造를 결합하여 δX 에 대한 各獨立的 因子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이와 같은 편법은 不連續的인 두 시점간의 生產偏差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나 우리는 式(8)의 경우와는 반대의 數式도 생각할수 있다. 우리는 편의상 式(8)의 경우를 第2期의 投入逆行列係數에 입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파쉬」(Paasche)式이라고 부르고 第1期의 逆行列과 第2期의 生產構造를 결합시킨 경

우는 「라스페이어스」(Laspeyers)式이라고 할 수 있다¹⁾. 우리는 앞으로 모든 分解方程式을 「파쉬」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의 分解方式은 δX 에 대한 獨立的 因子 變化의 直接・間接的인 效果를 分析하기 위한 것이나 輸入行列資料가 완전히 可用한 경우 에 直接的 效果만의 분해방법은 다음과 같이 된다.

 $\delta X = \delta D$ (國內最終需要擴大效果)

+ δW (國內中間需要擴大效果)

+δE (輸出擴大效果)

 $-\delta M^f$ (最終財輸入代替效果)

-δM^w (中間財輸入代替效果)

.....(9)

이 直接的 分解方法에서는 「파쉬」式과 「라 스페이어스」式의 相違性에 관한 문제는 제기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成長要因의 分解方法은 均衡的 또는 比例的 成長經路로부터의 偏差를 분해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우리는 CSW方法을 絕對的 成長 또는 1次差異(first difference)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Balassa(1976)의 방법이 CSW방법과는 이론적 출발점과 그 내용이약간 相違하나 輸入代替效果의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CSW방법을 絕對的 成長(△)기준으로 옮긴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본 논문에서는 CSW의 偏差分解方法을 사용키로 하므로 CSW의 絕對的 成長基準에 의한분해방법과 Balassa방법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피하기로 한다.

2. 不變部門別 比率方法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은 Syrquin(1976)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不變總量比率方法에서의 輸入代替效果 측정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입수할 수 있는 輸入資料 사정의 차이에 따라成長要因의 分解를 위한 세가지 代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國産投入行列과 분리된 완전한 輸入行列資料가 可用할 경우의 分解方法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中間需要와 最終需要에 대한 완전한 輸入行 列이 있다면 產業聯關表體系上의 需給均衡方 程式은 앞에서의 式(6)의 경우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同式에서 國內的인 항목만을 갖고 國內生產 需給均衡方程式을 도출하면 다 음과 같다.

$$X = A^d X + \hat{u}_f D + E \cdots (10)$$

여기서 \hat{u}_f 는 國內最終需要 중 國產에 의해서 供給된 比率을 나타내며 따라서 $\hat{u}_f = (D - M^f)/D$ 의 對角線行列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變數는 앞에서의 정의와 같다. 여기서 X를 구하는 식을 도출하면,

$$X = [1-A^d]^{-1}(\hat{u}_f D + E)$$
(11)

가 되며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에서 比例的 成 長으로부터의 生產偏差나 또는 絕對的 生產成 長(1次差異)基準으로 분해하는 식을 도출한 것이 Syrquin의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인 것이 다.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은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生産偏差基準과 絶對的 生産成長 또는 1

이러한「라스페이어스」式 表現에 대해서는 金光錫 (1980), pp. 63~64 참조. 두가지 상이한 分解方法 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함.

次差異基準으로 도출될 수 있지만 먼저 1次差 異基準으로 분해하는 식부터 제시하기로 한 다. 그것은 위에서 CSW방법을 모두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偏差基準으로 제시했기 때문 에 여기서는 좀 다른 絕對的 生產成長基準의 分解式을 설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 본 논문에서는 1次差異基準에 의한 分解方 式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먼저 第1期와 第2期의 구분을 앞에서와 같이 표시하면 변수 α 의 1次差異는 $\Delta \alpha = \alpha_2 - \alpha_1$ 으로 정의된다. 앞에서와 같이 國產中間投入만에 의한 逆行列係數를 R^a 로 표시하면 ΔX 에 대한 각 獨立的 要因의 效果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triangle X = R_2^d \hat{u}_{f_2} \triangle D$$
 (國內最終需要擴大效果)
$$+ R_2^d \triangle E$$
 (輸出擴大效果)
$$+ R_2^d \triangle \hat{u}_f D_1$$
 (最終財輸入代替效果)
$$- R_2^d (\tilde{A}_2^m - A_1^m) X_1 (中間財輸入代替效果) \\ + R_2^d [\triangle A - (A_2^m - \tilde{A}_2^m)] X_1$$
 (技術變化效果)(12)

여기서 $\widetilde{A_2}$ 은 다음과 같은 投入係數項(element)으로 구성되는 行列을 나타낸다.

따라서 위 式에서의 $(\tilde{A}_2^m-A_1^m)X$ 의 各項은 $\sum_j (\frac{a_{ij_2}^m}{a_{ij_2}}-\frac{a_{ij_1}^m}{a_{ij_1}})a_{ij_1}\cdot X_{j_1}=\sum_j (\frac{a_{ij_2}^m}{a_{ij_2}}-\frac{a_{ij_1}^m}{a_{ij_1}})Z_{ij_1}$ 로 표시된다.

단, Z_{ij1} 은 第1期의 j財 生產에 사용한 i財의 中間投入量을 나타낸다. 이것은 中間財의 輸 入代替效果를 第1期의 中間投入量에 加重値를 두어 中間投入 중 輸入比重의 변화를 곱함으로써 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는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에 의한 成長 要因의 全體的(직접 및 간접)인 分解式을 보 여 주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直接的 分解式 도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Syrquin의 直接的 分解式을 다음에 소개한다.

$$\Delta X = \hat{a}_{f^2} \Delta D$$
 (國內最終需要擴大效果) $+ \hat{a}_{w^2} \Delta W$ (國內中間需要擴大效果) $+ \Delta E$ (輸出擴大效果) $+ \Delta \hat{a}_f D_1$ (最終財輸入代替效果) $+ \Delta \hat{a}_w W_1$ (中間財輸入代替效果)(13)

여기서 \hat{u}_w 는 中間需要 중 國產에 의해서 공급된 比率을 나타내며 對角線行列을 이룬 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次差異基準으로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에 의한 生產成長 및 構造變化 要因의 分解方式을 제시했으나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은 均衡成長 經路로부터의 偏差基準으로도 분해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런 분해식을 다음에 제시한다. 이미 全體的 및 直接的인 成長要因 分解方程式의 개별항에 대한 의미는 명백히 되었다고 믿고 개별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方程式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全體的 方法〉

$$\delta X = R_2^d \hat{u}_{f_2} \delta D + R_2^d \delta E + R_2^d \triangle \hat{u}_{f\lambda} D_1$$

$$- R_2^d (\tilde{A}_2^m - A_1^m) \lambda X_1$$

$$+ R_2^d [\triangle A - (A_2^m - \tilde{A}_2^m)] \lambda X_1 \cdots \cdots (14)$$

〈直接的 方法〉

²⁾ 자세한 수학적 도출과정에 대해서는 Syrquin (1976) 참조.

3. 諸分析方法의 特徵과 問題點

가. 偏差와 |次差異基準分解의 相違點

앞에서 生產의 分解方法은 均衡成長으로부터 偏差(deviations from balanced growth) 基準과 1次差異基準 등 두가지 기준으로 제시 되어 있다.

첫째로 偏差基準에 의한 分解는 經濟構造의 變化要因을 분석하는 데 보다 적합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生產分解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偏差基準分解는 生產의 變化에 대한 各要因의 寄與率을 측정코자 하기보다는 均衡 的 또는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偏差에 대하 寄與率을 측정코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經濟構造에 변화가 없다면 모든 부문별 생산 은 같은 비례적인 因子(λ), 즉 基準年(t-1) 에서 特定年(t)까지의 期間의 國民所得(不變 價格)의 增加率과 같은 率로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偏差를 $\delta X_{i,t} = X_{i,t} - \lambda X_{i,t-1}$ 로 정의하면 全體經濟 成長率보다 급속히 성장한 部門(i)의 偏差 (δX) 는 正의 수치를 나타내고 또한 全體生產 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증가를 보여준다. 반대 로 전체경제의 평균적 成長率보다 낮게 증가 한 部門의 경우는 편차가 負의 수치를 나타낸 다. 그리고 그 偏差 $(\delta X_{i,t})$ 의 합계는 總中間 需要의 成長이 國民所得(또는 附加價值)의 成 長率과 똑같은 경우에는 零이 되며 또한 前者 의 成長率이 後者를 앞지를 경우에는 正의 수 치를,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負의 수치 를 나타낸다.

이와 對照되는 1次差異基準은 $\Delta X_{i,t} = X_{i,t} - X_{i,t-1}$ 로 정의되며 주로 生產成長에 대한

各要因의 寄與率을 분석하는 데 그 重點이 놓 이게 된다.

い. 不變總量比率方法과 不變部門別比率方法間의 輸入代替測定上의 差異

相違한 두가지 輸入代替 측정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소위 不變總量比率方法이다. 이 방법은 經濟成長이 貿易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偏倚(pro-and anti-trade biases)를 가진다는 貿易理論에 토대를 두고있으며 貿易偏倚의 中立的「노르마」(norm)를 國內總供給에서 차지하는 輸入構成比의 불변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국내총공급에서 차지하는 輸入構成比는 불변이라 하더라도부문별 輸入比率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이 貿易偏倚의 中立的 成長은 모든 부문의比例的 成長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방법은 자연히 構造變化에 대한 寄與率分析에 重點이 놓이게 된다.

앞에서 生產의 分解式에서 이미 輸入代替의 測定方法을 제시했지만 여기서 다시 偏差基準 에 의한 직접적인 분해방법을

 $\delta X_{i,t} = \delta Z_{i,t} + \delta E_{i,t} + (-\delta M_{i,t})$

로 단순화해서 표현하여 보자. 위의 式에서 $Z_{i,t}$ 는 t년의 i부문 國內供給 $(Z_{i,t}=X_{i,t}-E_{i,t}+M_{i,t})$ 을 나타내며, 따라서 오른편 끝 項이 生產構造變化에 대한 輸入代替效果를 나타내다. 다른 변수의 寄與率도 마찬가지지만 輸入代替寄與率은 단순히 比例的 成長으로부터의 偏差로 測定되고 있기 때문에 部門別 分類水準에 따라서 左右되지 않는다. 여기서 輸入代替의 總寄與度는 만일 總量的인 輸入比率이 期間中 증가(감소)했으면 負 (\mathbb{E}) 의 數值를 나타내게 된다. 그것은 不變總量比率方法이

總量的인 輸入比率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은 輸入代替를 各部門別 國內供給에 대한 輸入比率의 변화와 관련시켜 定義하고 있다. 즉, t年 i部 門의 輸入比率($m_{i,t}$)을,

$$m_{i,t} = M_{i,t}/Z_{i,t}$$

로 定義하면 特定期間中 이 $m_{i,t}$ 係數의 하락은 輸入代替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同 係數의 상승은 負의 輸入代替를 의미한다. 이러한 輸入代替의 정의를 사용하여 生產의 1次差異를 直接的으로 分解하는 式을 구하면

$$\Delta X_{i,t} = (1 - m_{i,t-1}) \Delta Z_{i,t} + \Delta E_{i,t} + (-\Delta m_{i,t} Z_{i,t})$$

가 된다. 위 式에서 輸入代替는 마지막 項에서 輸入比重을 나타내는 $m_{i,t}$ 의 감소에 의해서 測定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 比重의 변화 (-)를 第2期의 國內需要에 곱하여 구하게 된다. 이러한 輸入代替는 實際輸入과 제1기의輸入比率이 제2기에도 불변이었을 경우에 실현되었을 輸入間의 차이로서도 표현될 수 있다(즉, $m_{i,t-1}Z_{i,t}-M_{i,t}$). 1次差異基準의 이러한 例示는 偏差基準에 의한 構造變化의 분해식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키로 한다.

이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은 근본적으로 各部 門別 國內供給에 대한 輸入比重의 不變을 가 정하여 輸入代替를 측정하며 따라서 部門別로 측정하여 集計된 總輸入代替寄與度는 부문분 류수준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 어 이 방법에 의하면 總量的 國內供給에 대한 輸入比率은 상대적으로 輸入性向이 높은 部門 에 대한 國內需要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증가했다 하더라도 모든 部門에서의 輸入比率만 감소됐다면 正의 輸入代替效果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분된 수준에서의 輸入代替의 測定은 需要效果보다는 주로生產效果와 관련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 直接的 方法과 全體的 方法의 差異

우리는 앞에서 偏差基準이나 1次差異基準에의한 生產의 分解式을 제시함에 있어서 直接的 方法과 全體的 方法을 구분했다. 그중 直接的 方法에 의한 分解는 成長 및 構造變化에대한 各要因의 직접적인 寄與度를 측정하게되며 全體的 方法은 직접 및 간접적인 寄與度를 측정하게된다.

그런데 사실은 直接的 方法은 다만 中間需要의 成長自體를 별개의 기여요인으로 보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消費, 投資 및 輸出과 같은 最終需要成長과 輸入代替 등으로 추적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中間需要는 最終需要의 成長과 輸入代替에 의해서 증가되고 그외에도 產出額에 대한 中間投入使用比率의 변화에 의해서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係數의 변화에 따른 中間需要成長은 소위 技術變化效果로 부르고 있으며 그것은 中間投入에 대한部門內構造變化의 효과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全體的 方法은 國產에 의한 投入 · 產出의 逆行列資料를 사용하여 生產成長 또는 構造變化를 國內最終需要의 확대, 輸出 伸張, 輸入代替와 技術變化 등에 의해서 설명 하고자 한다. 그런데 投入 · 產出係數의 변화 는 두가지 要因에 기인되는데, 그 첫째는 投 入物이 國產이거나 輸入品임을 불문하고 投入 物 使用比率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技 術變化要因으로 설명되며, 다른 하나는 同 投入物 供給에 있어서의 輸入比率의 변화로서 이것은 中間投入物에 대한 輸入代替로 설명된다.

그런데 全體的 方法에 의한 各要因의 全體 的 寄與는 그 명칭과는 달리 전체적인 寄與의 완전한 측정은 되지 못함을 주의해야 한다. 輸出과 輸入代替의 全體的 寄與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全體的 寄興에 포함된 間接的 寄興 라는 것은 다만 中間投入의 後方關聯效果 (backward linkage)에 기인되는 것에 한정되 고 있다. 이외에도 輸出과 輸入代替의 間接的 效果는 무수히 생각할 수 있으며 그중 중요한 것을 들면 첫째로 輸出과 輸入代替에 의해 발 생한 所得의 支出로 인한 乘數效果를 들 수 있으며 또 하나는 外貨獲得 또는 節約이 부족 한 輸入財源을 確保해 준다는 의미에서 生產 에 미치는 효과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두 가지 間接的 效果는 만일 그런 효과가 없어서 生產要素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條件에 있을 경우에는 아주 클 것으로 판단된다.

라. 指數問題와 그 解決策

우리는 生產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분석키위한 諸數式에서 제2기의 投入・產出係數와제1기의 生產構造를 結合시키고 있다. 이것을 「파쉬」方式으로 呼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方式에 따라 諸分解方程式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2기의 投入係數와 제1기의 生產構造를 결합시켜 分解하는 것은 하나의 임의적 선택에 불과하며 우리는 반대로 제1기의

投入・産出係數의 제2기의 生産構造를 결합하 여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분해할 수도 있 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라스페이어스」式이 라 부르고 있다.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 解를 위한 중요「파라메타」의 基準年度 選定에 관한 임의성의 문제는 偏差基準과 1次差異基 準에 의한 分解의 경우에 모두 똑같이 대두된 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價格 및 數量指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基準年度 選定과 관련 되는 指數問題(index number problem)와 비 슷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원인 은 시간상 連續的으로 일어난 변화를 분석키 위해서 不連續的인 시점의 資料를 사용하는 데 있다. 이것은 基準年度間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각종 分解結果가 더 정확할 것을 의 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몇개 기간에 대한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解를 함에 있 어서 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별로 分 解하여 그 결과를 連鎖指數(chained index)의 작성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취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하겠다3?

물론 기간이 비록 상대적으로 짧다 하더라도 基準年度의 選定과 관련되는 指數問題가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問題의解決策으로서「파쉬」方式과「라스페이어스」方式에 따라서 각각 분해된 결과를 算術平均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1975~85년간에 대한 分析은 1975년과 1985년 兩年뿐만 아니라 1980년 I-O表 資料도 사용함으로써 1975~80년간과 1980~85년간에 대한 要因分解를 하고 결과를 連鎖指數作成方式에 따라 연결시키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1980년은 國內外의 偶發的 要因으로 인

³⁾ 이와 같이 期間別로 분해된 결과를 連鎖(chained)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George Fane(1971)과 Frank, Kim and Westphal(1975) 참조.

해서 -5%라는 負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한 예외적인 연도였기 때문에 그 해를 기준연도로 사용하여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분석한 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수반한다고 판단된 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득이 1975~85년간에 대한 것을 좀더 짧은 기간별로 분해하여 연결 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직접 10년간을 대상으로 分解할 수밖에 없었다.

III. 產業聯關表資料

I. 資料의 再分類와 不變價格으로의 換價

우리는 본 연구에서 1975~85년간에 대한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새로이 分析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分析結果를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거의 分析結果와도 比較評價해 보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1975년과 1985년의 우리나라 產業聯關表(I-O)상의 部門分類를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것

과 一貫性을 갖도록 再分類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1985년의 I-O 部門分類를 金光錫(1980)에서 1955~75년간에 대한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을 위해서 사용한 1955, 1963, 1970년과 1975년의 I-O部門分類와 一貫性을 갖도록 資料調整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85년 I-O表는 한국은행에서 細分된 調整作業部門에 대한 資料와함께 발표한 바 있으므로 同年의 部門分類는쉽게 과거의 分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은 217個部門으로 再分類, 통합하고 이를 다시 43個部門과 29個部門으로 통합할 수 있다4).

產業成長에 대한 輸入代替의 寄與度를 정확 하게 分析키 위해서는 I-O表上의 輸入資料가 時系列上 一貫性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1975 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I-O表에서 輸入을 競爭輸入과 非競爭輸入으로 區分分類하고 또 한 競爭輸入과 非競爭輸入에 포함되는 品目分 類가 각 I-O表 作成 때마다 바뀌어온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에서는 가까운 장 래에 輸入代替의 가능성이 희박한 극소수의 自然資源集約的인 非競爭輸入品目(殘餘非競爭 輸入)을 제외한 나머지 品目을 모두 통합하여 새로운 輸入行列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 러나 다행히도 1980년 表부터는 輸入을 競爭 輸入과 非競爭輸入으로 구분치 않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輸入의 再分類는 필요치 않았 다⁵⁾.

一貫性있게 再分類된 1975년과 1985년의 I - O表는「假說的인 1975년 不變國內價格」으로 換價했다. 이러한 假說的 不變價格으로의 換價는 첫째로 과거의 우리나라 物價上昇率이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I-O資料에서 이러한 價格變動要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⁴⁾ 部門分類上 특별한 調整을 요했던 것은 1985년 表上에서 米麥類 및 搗精業과 서비스部門에 포함된 政府서비스 分類를 1975년 이전 表에서와 一貫性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음. 217個部門, 43個部門과 29個部門分類의 자세한 내용은 金光錫(1980), pp.218~231 참조.

⁵⁾ 그밖에도 1975년 이전 기간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서는 I-O表上 殘廢物處理方法을 一貫性있게 하고 또한 年度에 따라서 附加價值의 1 部門으로 분류되어 온 企業消費(business consumption)를 中間投入으로 再分類하는 추가적 調整作業도 필요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75년과 1985년 I-O表上에서는 그 두가지 項目이 一貫性있게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 조정은 불필요했다.

주로 財貨의 源泉 및 用途別 價格差別로 인한 價格歪曲現象을 수정한 후에 産業成長 및 構 造變化要因을 분석키 위해서 필요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財貨의 원천과 용도에 따른 價格差別이 일반화되어 있어 I-O表에서의 실 제적인 國內價格基準에 의한 部門別 投入・産 出의 가치는 크게 歪曲되어 있다. 例를 들면 輸出은 f.o.b 價格으로 계산되고, 반면에 輸 入은 c.i.f 價格에 關稅의 輸入商品稅를 더한 값으로 評價된다. 國內販賣를 위한 國內生產 은 保護된 國內市場 價格으로 評價되는데 많 은 경우 이 價格은 輸出이나 輸入價格과 다르 게 된다. 더구나 輸出生產을 위한 國產中間財 도 內國信用狀制度를 통해서 國際市場價格으 로 거래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部門別 投入・産出價値 의 歪曲程度는 과거 약 30년간 우리나라 產業 誘因體制의 變遷과 輸入自由化의 진전 등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실제 國內價格基準에 의한 I-O資料를 이용한 比較・分析을 곤란케 하는 이러한 要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經常國內價格基準 I-O資料를 不變國際價格基準으로 換價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代案으로서 모든 부문의 投入・產出이 純間接稅를 제외한 保護된 國內價格으로 거래된다는假定下에서 I-O資料를 소위 假說的인 1975년 不變國內價格 기준으로 換價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1975년과 1985년 I-O 資料를 假說的인 1975년 不變國內價格으로 換 價한 것은 金光錫(1980)에서 1955~75년간에 대한 I-O資料를 假說的인 1968년 不變國內價格基準으로 換價한 결과와는 직접 연결시켜 比較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의 1975~85년간에 대한 産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結果도 그전 기간에 대한 과거의 분석결과와 직접 比較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를 提起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분석에서 사용된 1975년 이전 I-O資料를 모두 再換價하는 大作業을 하지 않는 한 그간의 資料事情의 改善을 감안할 때 1975년과 1985년 I-O資料를 그전기간에 대한 過去의 換價結果와 一貫性있게 1968년 不變國內價格으로 換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不可能하고 또 타당치도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I-O資料를 假說的 不變國內價格 基準으로 換價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名目保護率推定値6)가 필요한데 金光錫・洪性德 (1982)에서는 과거 I-O資料를 1968년 不變國 內價格으로 換價할 때 사용한 1963~75년간에 대한 名目保護率時系列을 새로운 價格比較資 料에 입각해서 크게 修正시켜 놓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보다 信賴性이 높은 修正된 名目保護率時系列과 그 延長値를 사용 하는 한 우리가 1985년 I-O資料를 1968년 不 變國內價格으로 換價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거의 換價結果와 一貫性을 갖 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1968년 不變價格基準 資料와 一貫性있 는 不變價格資料를 얻을 수 없을 바에는 차라 리 수정된 名目保護率과 기타 價格時系列資料 를 사용하여 1975년과 1985년의 I-O資料만을 1975년 不變國內價格(假說的)으로 換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975년과 1985년 I-O表資料의 1975년기준

⁶⁾ 名目保護率=<mark>國內生產者價格</mark>-1

不變國內價格으로의 換價는 대체로 金光錫 (1979)에서 제시한 換價節次에 따라서 이루어 졌다. 우선 각 부문의 名目保護率은 國內生產 者價格이 國際市場價格을 초과하는 比率을 나타내므로 換價節次의 첫단계는 部門別 名目保護率에 1을 더한 값으로 經常國內價格 I-O資料를 나누어 經常國際市場價格으로 換價하는 것이었다. 두번째 단계는 經常國際市場價格資料를 國際物價指數와 우리나라 外換率指數로

換價하여 1975년기준 不變國際價格資料를 구하는 절차였다. 끝으로 1975년기준 不變國際價格資料를 1975년의 部門別 名目保護率에 1을 더한 값으로 곱하여 假說的인 1975년기준 不變國內價格으로 換價했다. 단 이 마지막 단계에서 原油와 천연고무를 포한한 5개의 自然資源集約的인 殘餘非競爭輸入品目의 경우에는 國內生產이 없으므로 名目保護率 대신에 潜在關稅率에 1을 더한 數值를 換價指數로 이용했

〈表 1〉 産業聯關表의 換價指數와 關聯指標와의 比較

	1975	1985	年平均增加率(%) (1975~85)
1. 產業聯關表(I-O) 交易財部門 換價指數			
(1) 名目保護率(%)	16.0	30.8	6.8
農林水產業	29.2	104.3	13.6
鑛業	1.6	61.9	44.1
製造業	12.3	21.8	5.9
(2) 國內生產者價格指數	100.0	264.5	10.2
農林水產業	100.0	311.0	12.0
鑛業	100.0	579.2	19.2
製造業	100.0	241.1	9.2
(3) 國際生產者價格指數	100.0	123.7	2.2
農林水產業	100.0	106.7	0.7
鑛業	100.0	198.7	7.1
製造業	100.0	123.8	2.2
(4) 換率指數	100.0	179.8	6.0
2. 全國都賣物價指數	100.0	289.0	11.2
3.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	100.0	311.9	12.0
4. 國民計定 總產出 디플레이터	100.0	322.6	12.4
農林水產業	100.0	333.3	12.8
鑛 業	100.0	509.7	17.7
製造業	100.0	291.2	11.3
5. 國民計定 GDP 디플레이터	100.0	353.3	13.5
農林水產業	100.0	326.8	12.6
鑛業	100.0	489.6	17.2
製 造 業	100.0	279.0	10.8

註:指數는 1975년 基準임.

資料: KDI, Data Bank.

韓國銀行,『國民計定』, 1987.

,『經濟統計年報』,1986.

다. 이러한 換價過程은 최종수요에 대해서만 이 아니고 輸入벡터,總生產벡터 그리고 中間 投入額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換價作業이 118個部門이나 43個部門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細分된 調整作業部門水準 에서 이룩되었다는 점이다.

I-O資料를 換價하는 데는 細分된 商品群別 또는 調整作業部門別로 名目保護率,潜在關稅率,內國間接稅率,國內生產者價格指數,國際生產者價格指數와 그리고 外換率指數 등의 時系列資料가 요청된다. 이러한 각 時系列資料의 실제 推定方法은 金光錫(1979)에 제시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時系列統計는 모두 KDI Data Bank에 수록되어 있다.

〈表 1〉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主要資料의 총 괄적인 信賴性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I-O資 料의 換價過程에서 사용한 名目保護率, 國內 生產者價格指數, 國際生產者價格指數의 換率 指數를 주요산업별 또는 전체경제수준으로 통 합한 결과를 다른 관련지표와 比較해 주고 있 다. 同表에 의하면 우선 첫째로 1975~85년간 의 우리나라 全產業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6%에서 31%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 승은 農林水產業과 鑛業部門에서의 상승이 보 다 급격하기는 했지만 製造業을 포함한 전산 업에서의 名目保護率上昇을 반영한다는 것이 다. 둘째로는 이러한 전산업에 대한 名目保護 率上昇은 同 期間中 주로 國內生產者價格의 年平均上昇率이 國際生產者價格의 上昇率과 換率指數上昇率을 合算한 것보다도 높았기 때 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I-O資料 換價作業에 사용한 細部産業別 國內生產者價 格指數를 전산업수준으로 통합한 指數는 1975~85년간 年平均 10.2%의 上昇率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上昇率은 동 기간중의 全國都賣物價의 年平均上昇率보다 1.0%포인트정도 낮았으며,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와 國民所得計定上의 交易財部門 總生產 디플레이터나 交易財部門 國內總生產(GDP) 디플레이터의 上昇率보다는 더욱 낮았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될 수 없으나 우리의 國內生產者價格指數作成에 포함된 細部品目의 구성과 加重値가都賣物價指數와 기타 다른 物價指數의 경우와는 다른 데 基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個別 品目別 國內生產者價格 基礎資料는 주로 한국은행의 都賣物價資料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換價結果의 評價

〈表 2〉에서는 假說的인 1975년 不變國內價 格基準으로 換價된 1975년과 1985년의 I-O資 料를 不變國內價格基準 國民計定(NA)資料의 비교하고 있다. 換價結果의 評價에 앞서 먼저 換價하기 이전의 經常價格基準 I-O資料와 NA資料를 비교해 보면 兩者間에는 總產出, GDP, 輸出 및 輸入數值面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두드러진 차 이 중의 하나는 經常價格 I-O資料에 입각한 1975년 總產出과 GDP가 NA資料에 의한 경 우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둘째는 I-O資料에 의한 1985년의 GDP도 NA資料의 경우보다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드러진 차이 중 I-O 資料에 의한 1975년의 總產出과 GDP가 NA 資料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80년대에 들 어와서 수정된 UN의 新國民計定體系에 따라 國民所得을 推計하면서 1975년의 數值는 소급

〈表 2〉 經常價格과 不變國內價格基準 產業聯關表(I-O) 資料와 國民計定(NA)資料와의 比較

(단위:10億원)

	19	75	19	985		年平均 率(%)
	NA	I-O	NA	I-O	NA	I-O
1. 經常價格基準						
總 產 出	23,433.4	20,299.8	175,732.0	176,001.3	22.3	24.1
國內總生產	10,223.9	9,031.4	75,510.7	71,337.6	22.1	23.0
輸 出	2,854.8	2,824.5	27,326.9	27,717.1	25.3	25.7
輸出比率(%)	27.9	31.3	36.2	38.9		
輸 入	3,727.6	3,699.6	26,922.8	26,883.7	21.9	21.9
輸入比率(%)	36.5	41.0	35.7	37.7		
2. 1975년 不變價格基準(I-O는	÷					
假説的不變國內價格基準引)						
總產 出	23,433.4	19,226.5	54,476.6	73,652.3	8.8	14.4
國內總生產	10,223.9	8,293.9	21,377.9	29,663.8	7.7	13.6
輸 出	2,854.8	3,290.0	9,693.6	17,229.4	13.0	18.0
輸出比率(%)	27.9	39.7	45.3	58.1		
輸 入	3727.6	4,444.5	9,571.5	15,645.6	9.9	13.4
輸入比率(%)	36.5	53.6	44.8	52.7		
3. 潜在的 換價指數						
(1975=100)						
總 產 出	100.0	100.0	322.6	226.3	12.4	8.5
		(105.6)		(249.2)		
國內總生產	100.0	100.0	353.2	220.8	13.4	8.2
		(108.9)		(265.8)		
輸 出	100.0	100.0	281.9	187.3	10.9	6.5
		(85.9)		(160.9)		
輸 入	100.0	100.0	281.3	206.5	10.9	7.5
		(83.2)		(171.8)		

註:1) NA자료에 의한 總產出과 國內總生產에는 補助金을 공제한 純間接稅가 포함되고 있으나 I-O자료의 경우 에는 純間接稅가 제외되고 있음.

資料:韓國銀行,『國民計定』, 1987.

해서 上向調整된데 대해서 I-O資料는 당초 게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兩年에 있어서 작성한 대로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어떻든 1975년과 1985년에 I-O資料 에 의한 GDP가 NA資料의 경우보다 현저하

의 GDP에 대한 輸出比率과 輸入比率은 I-O 資料에 의한 것이 NA資料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²⁾ 不變價格基準의 I-O자료는 假說的 不變國內價格基準이므로 國民計定上의 不變價格資料와는 차이가 있

³⁾ I-O欄下의 潜在的 換價指數는 필호내에 표시된 1975년의 실재 潜在的 換價指數(=經常價格基準資料/不 變價格基準資料)가 100이 되도록 조정한 것임.

⁴⁾ 輸出比率과 輸入比率은 모두 國內總生產에 대한 비율로 표시함.

^{, 『}產業聯關表』, 1975, 1985. 그외는 본문 참조.

이러한 經常價格資料上의 차이도 있고 하여 假說的 不變國內價格으로 換價된 I-O資料는 1975년 不變國內價格基準의 NA資料와는 상 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定義에 따라 假 說的 不變國內價格에 의한 I-O資料上의 GDP 는 실제적인 關稅徵收額만이 아니고 關稅가 면제된 부분까지도 포함하나 補助金을 공제한 純內國間接稅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 不變國內價格에 의한 NA資料는 國內間接 稅를 포함하고 關稅의 경우에는 실제징수액만 을 포함하고 면제된 部分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假說的 不變國內價格 I-O資料에서는 輸 出이 保護된 國內價格基準으로 평가되고 있으 나 NA資料에서는 그것이 f.o.b.輸出價格(원 貨基準)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經常價格 基準의 原資料面에서 오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 도 假說的 不變國內價格과 실제적 不變國內價 格間의 概念上의 차이로 인해서 不變價格에 의한 I-O資料와 NA資料間에는 차이가 발생 할 것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經常價格 基準 原資料面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不變價 格基準에 의한 兩資料上의 차이는 거의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떻든 假說的 不變國內價格基準으로 換價된 I-O資料上의 輸出과 輸入은 모두 不變價格 NA資料의 경우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미 言及한 評價方法上의 차이에 기인되지만 이러한 차이는 不變價格 I-O資料에 의한 對GDP輸出比率과 輸入比率을 NA資料의 경우보다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不變價格 I-O資料에 의한 輸出入比率이 NA資料보다 크게 높아진 이유 중에는 물론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經常價格基準 I-O資料上의 同 比率이 이미 NA資料의 경우

보다 높았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假說的 不變國內價格 I-O資料에서의 輸出과 輸入評價方法의 변경은 1975년에는 同資料上 經常收支(財貨 및 用役)赤字를 不變價格 NA資料에서보다 크게 함으로써 同年의不變價格 I-O資料上의 GDP를 NA資料의 경우보다 감소시키고 있다. 반대로 1985년에는 不變價格 I-O資料上 經常收支黑字를 NA資料의 경우보다 더 크게 함으로써 同年의 不變價格 I-O資料上의 GDP數值를 NA資料의 경우보다 훨씬 크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不變價格 I-O資料上의 GDP成長率을 NA資料의 경우보다 높게 만드는 일부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75~85년간에 不變國內價格 I-O資料上의 總產出, GDP, 輸出과 輸入의 年平均增加率은 NA資料의 경우에 비해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年增加率의 차이는 經常價格基準 原資料面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또한이미 言及한 假說的 不變國內價格과 실제적不變價格間의 概念上差異와 실제 사용된 換價指數上의 차이 등에 기인된다고 보겠다.

참고로 〈表 2〉의 下段에 總產出, GDP, 輸出과 輸入에 대한 潜在價格指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經常價格資料를 두가지 다른 不變國內價格資料로 나눔으로써 구해진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I-O資料上 모든 變數의 潜在的 換價指數의 年平均增加率이 NA資料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마디로 설명할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要因에 기인된다고 보겠다.

IV.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析

本章에서는 假說的인 1975年不變國內價格基準으로 換價된 1975년과 1985년 I-O資料를 사용하여 1975~85년간 우리나라의 生產(粗)의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第II章에서 제시된 및가지 相違한 方法에 따라 分析코자 한다. 그런데 사실상 본 연구에서 새로이 分析한 期間은 1975~85년간에 한정되고 있지만우리의 分析結果는 1955~75년간에 대한 過去의 연구결과와 連結・比較될 수 있게끔 같이제시하도록 했다. 단, 과거의 研究結果는 동일한 方法論을 따르고 있으나 1968年不變國內價格 I-O資料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總量的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

生產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먼저 經濟全體에 대한 總量基準으로 分析해보기로 한다. 이런 目的을 위해서 〈表 3〉에서는 總量的인 生產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세가지 相違한 方法에 따라 分解한 결과를 要約・提示하고 있다. 이 세가지 方法에 따르는 分解結果의 비교를 위해서 몇가지 사전설명을 요한다고 보겠다.

첫째.「均衡成長으로부터의 偏差」概念을 사 용한 不變部門別 比率方法과 不變總量比率方 法은 그 計算過程上 各期間別 GDP 成長率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不變國內價格基準 國內 總生產(GDP)의 年平均成長率은 前章에서 설 명된 二重換價 (double-deflated)된 I-O資料 에서도 구할 수 있으나 그 方法 대신에 GDP 의 標準成長率을 單一換價된 附加價值(single deflated value added) 基準으로 계산하여 사 용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二重換價된 [-O表에서 附加價值는 殘餘額(residual)으로 계산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 떻든 單一換價된 附加價值基準으로 계산된 1975~85년간에 대한 標準成長率은 年平均基 準으로 12.9%였으며 이것은 二重換價된 I-O 資料에 의한 경우보다 약간 낮았다는 것을 밝 혀 둔다.

둘째, 偏差測定基準에 의한 各要因의 相對的 寄與度는 偏差의 正 또는 負의 부호를 무시하고 절대적 합계기준으로 推定된 반면에 1 次差異基準에 의한 寄與度는 변화의 산술적 합계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偏差測定基準에 의한 결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構造變化에 대한 각 요인의 相對的 寄與度를 나타내고 1次差異基準에 의한 결과는 生產成長에 대한 相對的 寄與度만을 나타낸다고보겠다.

셋째, 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解는 각 독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르는 直接的 效果의 直接 및 間接的 效果를 합한 全體的 效果를 별도로 推定도록 하고 前者를 「直接的 測定 値」 그리고 後者를 「全體的 測定値」로 부르고 있다. 이 兩者의 차이는 각 獨立的 要因이 直 接的 變化에 따르는 後方聯關效果를 반영한다.

⁷⁾ 單一換價된 附加價值는 部門別(*j*)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A_{j}^{*}=(VA_{j}/X_{j})\cdot X_{j}^{*}$ 记, $VA_{j}^{*}=$ 單一換價된 附加價值; $X_{j}^{*}=$ 不變國內價格基準 生產額; VA_{j}/X_{j} =經常價格基準 附加價值率

〈表 3〉 生產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解結果要約, 1955~85: 相違한 分解方法間의 比較

(단위 : %)

	國內	内需要擴大	效果	輸出擴大	輯	k入代替效	:果	I-O係數
	計	中間財	最終財	效 果	計	中間財	最終財	變化效果
不變部門別 比率方法一								
1 次差異基準								
1) 直接的 測定值	i							į
1955~63	90.3	40.6	49.7	5.5	4.2	5.6	-1.4	-
1963~75	78.1	38.6	39.5	19.2	2.7	2.0	0.7	-
1975~85	71.7	42.3	29.4	25.6	2.7	1.2	1.5	-
2) 全體的 測定值								
1955~63	78.0	-	78.0	9.2	15.9	15.8	0.1	-3.1
1963~75	64.4	-	64.4	32.4	6.3	4.9	1.4	-3.1
1975~85	49.7	-	49.7	45.0	5.7	3.3	2.4	-0.4
不變部門別 比率方法-							ļ	
均衡成長으로부터의 偏差								
基準								
1) 直接的 測定值								
1955~63	60.0	34.2	25.8	6.9	33.1	21.3	11.9	-
1963~70	70.7	22.8	47.9	14.4	14.9	9.7	5.2	-
1970~75	59.6	32.4	27.2	27.6	12.8	8.8	4.0	_
1975~85	58.8	28.2	30.6	26.3	14.9	8.7	6.2	-
2) 全體的 測定值								
1955~63	28.4	-	28.7	7.9	34.1	22.6	11.5	29.5
1963~70	48.7	-	48.7	22.0	15.6	10.4	5.2	13.7
1970~75	27.4	-	27.4	37.8	15.8	11.1	4.7	19.0
1975~85	31.9	-	31.9	32.4	15.4	8.8	6.6	20.3
不變總量比率方法一								
均衡成長으로부터의 偏差								
基準								
1) 直接的 測定值								
1955~63	63.7	37.9	25.8	5.8	30.5	20.8	9.7	-
1963~70	73.7	26.4	47.3	12.7	13.6	9.2	4.4	-
1970~75	63.4	37.3	26.1	22.6	14.0	12.4	1.6	-
1975~85	62.6	33.7	28.9	21.9	15.5	9.5	6.0	-
2) 全體的 測定値								
1955~63	26.2	-	26.2	6.2	36.4	27.6	8.8	. 31.2
1963~70	49.1	_	49.1	19.8	14.0	9.3	4.7	17.1
1970~75	27.2	-	27.2	32.1	17.9	15.9	2.0	22.8
1975~85	32.2	-	32.2	29.0	15.9	9.8	6.1	22.9

註:1955~63, 1963~70, 1970~75년간은 1968年不變國內價格基準으로 換價된 產業聯關表資料에 의한 測定値이며, 1975~85년은 1975年不變國內價格基準으로 換價된 產業聯關表資料에 의한 測定値임. 모든 測定値는 43部門分類表를 사용하여 계산된 것이며「라스페이어스」式과「과쉬」式의 分解結果를 算術平均한 것임.

資料:1955~75년간에 대한 분해결과는 金光錫(1980, pp. 92~105)에 제시된 것을 일부 統合하거나 그대로 引用한 것이며 1975~85년간에 대한 결과는 본 연구에 의한 것임.

〈表 3〉에서 均衡成長으로부터의 偏差基準 不變部門別 比率方法과 不變總量比率方法에 의한 不比例的 生產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의 分解結果를 보면 각 獨立的 要因(autonomous factors)의 直接的 및 全體的 寄與度의 相對的 規模는 거의 비슷한 數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새로이 추가한 1975~85년 간에 대한 分解結果는 測定方法上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슷한 數值를 나타내고 있다. 全體的 測定値만을 예로 들어 보면 1975~85 년간 不比例的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內需 擴大의 相對的 寄與度는 두 方法에 의한 경우 모두 32% 수준이었으며 輸出擴大와 輸入代替 의 寄與度도 각각 29~32%와 15~16% 수준 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I-O係數變化效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975~85년간에 대한 우리의 分解結果를 그 全期間에 대한 過去의 硏究結果와 비교해 보 면 1975~85년간에 대한 각 獨立的 要因의 不 比例的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相對的 寄興 度는 대체로 1963~75년간에 대한 것과 비슷 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두 方法의 경우 모두 輸出擴大效果가 1963~70년간에서 1970~75년간까지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 1975년 이후 약간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輸出擴大效果의 변화는 期間別 內需擴大效果 의 변동에 따라 상쇄되는 경향을 보일 뿐이 다. 따라서 輸入代替效果面에서는 1963~70년 간 이후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 나 1963년 이후 기간에 대한 결과는 그 이전 기간(1955~63)에 대한 것에 비해서 상당한 構造的 變化를 나타낸다. 즉 1955~63년간에 는 不比例的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輸入代 替의 相對的 寄與度가 어느 方法에 의하건 30%를 상회함으로써 6~8% 범위 내에 머문 輸出擴大效果보다 월등히 높았던데 비해서 그 후는 그 相對的 寄與度가 反轉되는 패턴을 보 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開發戰略이 60년 대 초반에 종래에 輸入代替에 치중하던 對內 指向的 工業化戰略에서 輸出을 강조하는 對外 指向的 戰略으로 轉換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 이었음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또 하나의 중요 한 사실은 70년대에 들어와서 政府의 의욕적인 重化學工業建設計劃에 따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入代替가 강조되는 政策이 시행되었지만 그 러한 政策은 不比例的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輸出擴大의 相對的 寄與度를 약간 낮추었을 뿐 全般的인 對外指向的 工業化戰略面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하 겠다.

그런데 1975~85년간에 대한 輸入代替의 全 體的 寄與度는 그 전기간의 경우와 비슷하게 輸入代替의 直接的 寄與度와 큰 차이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輸出擴大寄與度 의 경우에는 1963년 이후 전기간을 통해서 全 體的 寄與度가 直接的 寄與度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60년대초 이후의 급속 한 輸出增大가 輸入代替보다 상당히 큰 後方 聯關效果를 창출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不比例的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輸入 代替의 相對的 寄與度의 내용을 기간별로 비 교해 보면 1975년 이전 기간까지는 中間財輸 入代替의 直接 또는 全體的 寄與度가 總輸入 代替寄與度의 대부분을 설명해 주었지만 1975~85년간에는 中間財輸入代替의 寄與度는 크게 감소한 반면에 最終財輸入代替 寄興度가 전체의 3分의 1 이상으로 增加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70년 대 중반 이후에 機械工業部門에 대한 輸入代 替가 많이 이루어졌음 반영한다 하겠다.

그 다음 生產의 絕對的成長(1次差異) 基準不變部門別 比率方法에 의한 分解結果는 지금까지 설명한 다른 두가지 方法의 결과와는 좀다른 각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次差異基準으로 추정된 1975~85년간에 대한 輸出擴大의 直接的 및全體的 寄與度는 그전 기간의 경우와 비슷하게 偏差基準으로 測定한 다른 두 方法의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 이외에는 1次差異基準 分解結果가 다른 方法에 의한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輸出擴大와 內需擴大 寄與度를 나타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輸入代替와 技術變化(I-O係數變化)의 寄與度를 나타냈을 뿐이다.

2. 部門別 成長要因

여기서는 1次差異基準 不變部門別 比率方法의 결과에 따라서 主要部門別 및 主要業種別生產成長要因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1次差異基準 不變部門別 比率方法만을 사용하는 것은 이 방법에 의한 결과가 比例的成長으로부터의 正 또는 負의 편차가 복잡하게 혼합되게 되는 다른 방법에 의한 결과보다그 해석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본 연구에서는 1975~85년간에 대한 결과만을새로이 추가했지만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거의 分解結果를 1955~63년간과 1963~75년간등 두 기간으로 통합하여 비교함으로써 長期的인 관점에서 우리의 分解結果를 논의하기로한다.

〈表 4〉에서는 1次差異基準 不變部門別 比率 方法에 의한 生產成長要因의 分解結果를 먼저 主要産業部門別로 要約・提示되고 있다. 이 表에서 우선 1次產業의 경우를 보면 이 部門 은 GDP成長率에 미치지 못하는 生產成長을 기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 部門 生產成 長에 지배적인 기여를 한 요인은 1955~63. 1963~75, 1975~85년간 등 3個期間에 걸쳐서 모두 內需擴大였다. 이 部門 生產成長에 대한 輸出擴大의 全體的 寄興度는 3個期間에 모두 正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다른 部門의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1次產業部門 成 長에 대한 輸入代替의 全體的 寄與度는 初期 (1955~63)와 中期(1963~75)에는 계속적인 農產物의 輸入增大를 반영하여 負의 수치를 면치 못했고 後期(1975~85)에 와서는 주로 鑛山物의 輸入增大로 불과 0.7%라는 적은 수 치를 나타냈다. 끝으로 技術變化 또는 I-O係 數變化의 全體的 寄與度는 初期에는 15% 水 準을 시현했으나 그후는 계속 負의 수치를 면 치 못했다. 이것은 1970년대초 이후 原油를 포함한 1次產品價格의 급등으로 모든 產業에 서의 1次產品의 中間投入을 줄이려는 노력이 심각했음을 반영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工業化의 先導部門인 製造業生產成長에 대한 內需擴大의 寄與度는 全期間을통해서 모두 중요했으나 時間의 경과에 따라고 寄與度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만큼 輸出寄與度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 部門成長에 대한 貿易效果는 우리나라 開發戰略의 전환을 반영하여 初期와 中期 以後間에 크게 바뀌고 있다. 즉 輸入代替의 全體的 寄與度는 初期에는 製造業生產增加의 약35%를 설명할 수 있었으나 中期 이후에는

〈表 4〉 主要產業別 生產成長要因의 分解結果, 1955~85: 不變部門別 比率方法一1次差異基準

(단위 : %)

								(단위:%)
	國內需	要擴大	輸出	擴大	輸入	代替 	I-O係數變化	總生產增加
	直接效果	全體效果	直接效果	全體效果	直接效果	全體效果	全體效果	(10億원)
<1955~63>								
1. 農林水產業	131.0	102.4	2,9	6.1	-33.9	-27.7	19, 2	111.4
2. 鑛 業	97.2	59.6	10.9	16.2	-8.1	41.3	-17.1	13.5
1次產業計	127.4	97.8	3, 8	7.2	-31.2	-20.2	15.2	124.9
3. 食品加工	77.3	64.6	4.9	6.5	17.8	16.1	12.9	62.5
4. 輕 工 業	66.1	78.9	10.3	16.1	23.6	52.3	-47.3	96.8
5. 重 工 業	66.6	45.4	6,6	8.9	26.8	28.6	17.1	82.9
6. 機 械 類	72.3	43.9	3, 5	6.6	24.2	32.7	16.8	29.5
製造業計	69.5	61.6	7, 2	10.6	23, 3	34.6	-6.8	271.7
7. 社會間接資本	93.6	136.1	9.1	14.9	-2.7	23, 9	-74.9	30.5
8. 서비스業	103, 3	81.1	0.4	4.8	-3.8	3, 8	10.3	69.6
全 産 業	90.3	78.0	5.5	9.2	4.2	15.9	-3, 1	496.7
<1963∼75>								
1.農林水產業	97.6	121.8	11.0	25.4	-8.7	-5, 0	-42.3	401.1
2. 鑛 業	101.3	101.0	5.0	34.1	-6.2	12.6	-47.7	44.2
1次產業計	98.0	119.9	10.4	26, 2	-8.4	-3, 3	-42.9	445.3
3. 食品加工	91.5	88.2	7.0	12.1	1,5	2.8	-2.9	571.5
4. 輕 工 業	65.1	47.2	34.4	52.9	0.4	1.8	-1.5	1,537.4
5. 重 工 業	72.7	42.9	14.5	33.8	12.9	19.9	3, 5	1, 228, 3
6. 機 械 類	56, 9	42.0	37.0	43.9	6.1	10.5	3, 6	801.8
製造業計	69.4	50.4	25, 2	39.9	5.4	8.9	0.8	4,139.0
7. 社會間接資本	91.6	88.1	9.3	15.9	-1.0	1.7	-5.8	747.6
8. 서비스業	93, 5	78.9	6.6	17.9	-0.1	3, 1	0.2	1,082.6
全 産 業	78.1	64.4	19.2	32.4	2.7	6.3	-3, 1	6, 414. 5
<1975~85>								
1. 農林水產業	95.8	85.8	2.1	11.7	2.1	7.5	-5.0	1,615.7
2. 鑛 業	507.9	381.5	-34.8	211.6	-373, 1	-243, 5	-249.6	45.5
1次產業計	107.1	93.9	1.1	17.1	-8.2	0.7	-11.7	1,661.2
3. 食品加工	94.7	80.6	0.2	5, 7	5, 1	5, 0	8.7	3, 113, 3
4. 輕 工 業	62.1	30.1	36.8	64.4	1.1	2, 9	2.6	8,877.2
5. 重 工 業	69.0	35.6	26.9	64.4	4.1	11.1	-11.1	12,550.3
6. 機 槭 類	47.5	30.9	44.6	55, 3	7.9	9.7	4.1	11,987.8
製造業計	62.5	36.6	32.8	56.4	4.7	8.1	-1.1	36, 528, 6
7. 社會間接資本	86.3	75.4	14.9	23, 6	-1, 2	0.6	0.4	7,361.3
8. 서비스業	91.4	74.3	9.4	20.9	-0.8	1.1	3.7	8,874.7
全 産 業	71.7	49.7	25, 6	45.0	2.7	5.7	-0.4	54, 425, 8

註: 〈表 3〉의 脚註와 資料出處 참조.

8~9%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輸出擴大의 全體的 寄與度는 初期의 11%에서 中期와 後期에는 각각 40%와 56%로 계속 크게 증대했다. 技術變化 또는 I-O 係數變化가 製造業生產增加에 기여한 상대적 규모는 全期間을 통해서 負의 수치를 나타내거나 무시할 정도의 적은 수치였다.

製造業部門內의 각 主要工業群 및 主要業種의 成長要因은 지금까지 설명한 製造業 全般에 대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內需擴大의 全體的 寄與度는 全期間을 통해서 모두 主要工業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食品加工業의 경우를 예외로한다면 모든 工業群에서 同 寄與度가 時間이호름에 따라 점감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輸入代替의 全體的 寄與度는 초기에는 모든 製造工業群에서 상당히 높았으나 中期와 後期 에 와서는 重工業과 機械工業의 경우를 제외 하면 그 寄與度는 5% 이하의 적은 수치로 減 少했다. 결국 中期와 後期에는 重工業과 機械 工業部門의 輸入代替寄與度만이 현저하게 높 았던 것이다. 〈表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中期에는 重工業部門內의 化學 및 化學製品, 石油 및石炭製品과 1次金屬 그리고 機械工業部 門內에서는 輸送機器 이외의 機械類 業種에서 輸入代替寄與度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 고 後期(1975~85)에는 重工業部門內의 1次金 屬과 化學 및 輸送機器業種의 輸入代替寄與 度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대해서 輸出擴大의 全體的 寄與度는 거의 모든 主要工業群의 경우 初期에는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中期에서부터는 크게 증가되 는 추세를 보였다. 즉 中期 이후에는 食品加 工業部門의 輸出擴大寄與度가 12% 이하의 상

대적으로 낮은 水準을 유지했을 뿐 다른 主要 工業群 輸出寄與度는 상당히 높았고 또 증가 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中期에는 輕工業 部門의 輸出擴大寄與度가 53%로서 가장 높았 으나 後期에 와서는 輕工業과 重工業의 輸出 擴大寄與度가 똑같이 64% 수준으로 신장되고 있으며 또한 機械工業部門의 輸出擴大寄與度 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輕工業, 重工 業 또는 機械工業 등 部門別 구분없이 輸出擴 大寄與度가 높았던 業種을 그 순위대로 열거 해 보면 中期에는 고무 및 고무제품(66%), 섬유류(58%), 木材 및 木製品(57%), 雜製品 (57%), 衣類 및 皮革製品(53%), 1次金屬 (49%), 機械類(48%) 등이 全製造業平均보다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으며 後期에는 衣類 및 皮革製品(88%), 石油 및 石炭製品(86%), 고 무 및 고무제품(83%), 섬유류(82%), 1次金 屬(72%), 輸送機器(60%) 등이 製造業平均 보다 높은 輸出擴大寄與度를 나타냈다(表 5 참조).

3. 成長要因과 相對價格變化間의 關係

우리는 지금까지 1975년 不變國內價值基準으로 換價된 1975년과 1985년 I-O資料를 사용하여 需要側面에서 1975~85년간의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分析해 보고 또한 이러한 分解結果를 1955~75년간에 대한 과거의 研究結果와 연결시킴으로써 長期的 次元에서 우리나라의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검토했다.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관찰한 產業成長要因이 어떠한 變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

主要業種別 製造業生產의 成長要因, 1955~85:不變部門別 比率方法에 의한 全體的 測定値-1次差異基準 〈表 2〉

**	十丈米4年77 发达米十年一 龙大大大学,1999,1997,大大大大学,1997	H H H	* * *	<u> </u>	3	<u> </u>	+ - -	- 104/17		主题的 测定值 一分压头多年	<u> </u>	H 中 十			(윤위 : %)
	國內	國內需要擴大	{大效果	松	輸出擴大效果	∺	肇	輸入代替效果	₩	I-O(1-0係數變化效果	2条	総件	總生產增加(10億程)	鹿包)
	1955 ~63	1963 ~75	1975 ~85	1955 ~63	1963 ~75	1975 ~85	1955 ~63	1963 ~ 75	1975 ~85	1955 ~63	1963 ~75	1975 ~85	1955 ~63	1963 ~75	1975 ~85
I. 食品加工															
食品加工	64.5	88.2	9.08	6.5	12.0	5.7	16.1	2.7	5.0	12.9	-16.7	8.7	62.5	571.5	3,113.3
II. 輕 工 業	40.00														
載 維 類	9.69	32.4	7.1	18.4	57.5	81.8	87.5	2.7	5.0	-75.5	43.5	6.1	32.3	590.5	3,137.8
衣類・皮革製品	84.8	50.7	8.3	5.8	52.8	87.5	4.2	-1.8	2.8	5.2	-7.1	1.4	30.1	415.0	1,711.0
木材・木製品	1 56.1	65.7	125.2	20.3	57.4	11.5	9.89	2.3	-4.5	-45.0	-23.4	-32.2	8.3	91.4	378.4
紙類・紙類製品	79.0	0.89	43.9	1.6	29.5	28.6	77.5	14.3	9.9	-58.1	-8.2	20.9	11.3	66.5	881.9
印刷・出版業	76.2	104.8	9.88	1.9	28.6	16.9	5.4	3.2	6.0-	16.5	-9.1	-4.6	10.1	24.8	217.5
雅 製 品	1 -42.0	39.1	37.4	15.5	9.99	53.0	120.8	1.1	-1.7	5.7	6.5	11.3	5.6	201.5	1,910.8
分類不明	951.6	72.7	84.7	503.8	41.2	47.7	-63.4	3.1	6.5	1,492.0	-25.1	-38.9	-1.0	147.7	639.7
II. 重 工 業	,						-					-			
ユ平・ユ牛製品			20.1	7.1	66.1	83.1	2.6	4.5	0.0	18.4	-0.4	-3.2	7.5	65.0	8.987
化學・化學製品	41.7	42.5	39.8	2.1	22.2	49.5	41.2	30.0	8.8	15.0	27.9	1.9	56.9	525.0	3,395.1
石油・石炭製品	52.6	56.2	80.5	6.0	56.9	86.0	61.3	24.3	1.2	-14.8	-9.1	-67.7	14.9	123.7	1,036.0
非金屬製品	45.0		9.87	1.8	22.3	21.6	11.9	8.9	2.6	41.3	-5.9	-2.8	11.3	107.9	872.1
1次金屬	36.5	32.4	22.3	26.4	48.9	72.3	8.7	11.2	16.3	28.4	30.4	-10.9	22.3	406.5	6,460.3
IV. 機 械 類							•							-	
機械類	i 36.2	35.2	32.4	5.5	48.1	53.9	42.2	11.0	8.9	16.1	35.8	4.8	21.1	625.6	8,999.4
输 浴 機 器	63.3		26.6	9.4	28.6	59.5	8.7	0.6	11.8	18.6	-7.0	2.1	8.4	176.2	2,988.4
製造業	61.6	50.4	36.6	10.6	39.9	56.4	34.6	8.9	8.1	-6.8	8.0	-1.1	271.7	4,139.0	36,528.6
						+			-						

註:(表 3)의 脚註의 資料出處 社圣.

러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새로 이 추가된 1975~85년간에 대한 細部業種別 名目保護率,實效保護率,國內生產者價格,國 際生產者價格,輸出比率과 輸入比率 등의 變 化率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기로 한다.

國內生產者價格과 國際生產者價格의 變化 그리고 이 兩者와 換率指數에 따라 결정되거 나 영향을 받는 名目保護率이나 實效保護率의 變化가 우리나라 產業成長要因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 이러한 國內外 價格構造의 變化와 그에 따른 產業保護構造의 變化가 成 長要因에 미치는 效果는 사전적으로는 그리 명백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일련의相關關係分析을 시도했으며 그 主要結果는 〈表 6〉에 요약되고 있다. 즉 同表에서는 217個 交易財部門分類水準의 자료를 이용하며 1975~85년간에 있어서의 成長要因을 나타내는 몇가지 指標와 國內外生產者價格의 變化 및 그에 따른 產業保護構造의 變化를 나타내는 指標간의 「스피아맨」의 順位相關係數 (Spearman's coefficient of rank correlation)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相關分析에는 참고로 輸出比率과 輸入比率의 變化도 포함시키고 있다.

〈表 6〉 生產成長要因斗 諸關聯變數間의 順位相關係數行列。1975~85

		DDE	EE	IS	NP	EPR	DPI	WPI	RE	RM
1.	國內需要擴大效果	1.00	-0.55	-0.64	0.01	0.11	0.09	0.10	-0.22	0.43
	(DDE)									
2.	輸出擴大效果		1.00	-0.08	-0.02	-0.10	-0.16	-0.17	0.39	-0.19
	(EE)									
3.	輸入代替效果			1.00	-0.09	-0.07	-0.10	0.01	-0.12	-0.60
	(IS)									
4.	名目保護率增加率				1.00	0.71	0.64	-0.22	0.14	0.19
	(NP)									
5.	實效保護率增加率					1.00	0.43	-0.14	0.03	0.12
	(Balassa 基準,									
	EPR)									
6.	國內生產者價格指						1.00	0.37	0.02	0.28
	數增加率(DPI)									
7.	國際生產者價格指			:				1.00	-0.16	0.06
	數增加率									
	(원貨基準, WPI)									
8.	輸出比率增加								1.00	0.04
	(RE)									
9.	輸入比率增加									1.00
	(RM)									

註:順位相關係數가 0.2 이상인 것만이 90%의 信賴水準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資料: 217개 交易財部門分類 수준의 業種別資料를 이용하여 계산함(모든 기초자료는 KDI Data Bank 소장). 단, 實效保護率 增加率과 다른 변수간의 相關係數는 實效保護率이 극단적인 수치를 나타낸 예외적 業種을 제외한 200개 交易財 業種別 資料를 사용하여 계산함.

우선 成長要因間의 關係를 검토해 보면 成長에 대한 內需擴大效果(寄與度)는 輸出擴大效果뿐만 아니라 輸入代替效果와도 통계적으로 有意한 負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內需擴大效果와 輸出擴大效果間의 負의관계는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內需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間의 負의 관계는 좀 의외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內需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간에 負의 關係가 나타나는 원인은內需擴大效果가 輸入比率의 증가를 수반하게되나 輸入代替效果는 그런 輸入比率의 減少를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기대했던 바와 같이 輸出擴大效果와 輸入代替效果間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產業成長에 대한 輸出擴大效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生產에 대한 輸出比率增加와 正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한 輸入代替效果는 國內需 要에 대한 輸入比率增加와 負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輸出擴大效果와 輸入 代替效果는 國內外生產者價格의 증가율이나 名目保護率과 實效保護率의 變化率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相關關係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론상 輸出擴大效果는 名目保 護率이나 實效保護率과는 負의 상관관계가 있 고 반면에 輸入代替效果는 名目保護率이나 實 效保護率과 正의 關係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名目保護率은 그 개념상 기 대되는 바와 같이 國內生產者價格 增加率과는 높은 正의 相關關係가 있고 國際生產者價格 增加率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負의 相關關係 가 있다. 그리고 이 名目保護率 增加率과 實 效保護率 增加率간에는 71%라는 높은 順位相 關係數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名目保 護率이나 實效保護率의 변화와 國內外相對價格 變化率間의 관계는 理論上 기대되는 바와일치하나 그러한 產業保護構造의 變化와 成長에 대한 貿易效果間에 통계적으로 有意性 있는 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豫想外이며특별한 설명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成長에 대한 輸出擴大寄與度와 名目保護率 또는 實效保護率의 變化間에 有意한 正의 관 계를 관찰할 수 없는 이유는 대개 우리나라 輸出產業의 海外輸出價格은 國內販賣價格과 다르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輸出產 業은 필요한 輸入中間財에 대해서는 關稅와 國內間接稅를 면제받을 수 있고 또한 國產中 間財의 경우에도 內國信用狀制度(local L/Cs) 등을 통해서 諸稅가 공제된 國際價格과 같은 水準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國內販賣用 生產의 경우에는 中間財에 대한 그런 關稅 및 內國間接稅의 면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輸出用生産의 단위당 原價는 國內販賣用 生産 原價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고 輸出產業은 이 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原價構造를 배경으로 競爭的인 國際價格에 의한 輸出을 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가 統計的으로 추정 한 名目保護率은 國內販賣用 生產者價格이 國 際價格을 초과하는 比率을 나타내며 또한 이 런 名目保護率 資料를 사용하여 추계된 實效 保護率도 결국 國內販賣用生產에 대한 保護水 準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 한 名目保護率斗 實效保護率이 業種別 國內販 賣用 生產의 국제경쟁력순위나 보호 정도를 나타낼 뿐 輸出產業의 價格競爭力을 제대로 반영치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輸 出擴大寄與度斗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의 변화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相關關係를 관찰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보겠다8).

다음에 輸入代替의 成長寄與度와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間에 통계적으로 有意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輸入代替政策이 貿易保護障壁의 일방적인 提高를 수반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사실 70년대에 들어와서 重化學工業建設을 통한 輸入代替가 추진되어 왔으나 그 建設段階에서부터保護程度를 높이는 조치는 거의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投資는 그런產業에 대한 名目保護率이나 實效保護率의 높이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70년대초 이후 輸入代替型 重化學工業의 建設을 위한 政府支援은 低利의 優待金融과 租稅減免의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의 長期的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分析키 위해서 우리는 먼저 1975년과 1985년의 I-O表를 假說的인 1975년 不變國內價格基準으로 換價하고, 이런 換價된 I-O資料를 기초로 해서 1975~85년간의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要因을 分析하였다. 그리고 1975~85년간에 대한 分析結果는 그 이전 기

간(1955~75)에 대한 동일한 方法에 의한 過去의 分析結果와 連結・比較함으로써 과거 30 년간에 걸친 長期的인 次元에서 우리나라 工業化要因을 종합적으로 分析・評價하도록 했다. 우선 不變國內價格으로 換價된 I-O資料에 입각한 GDP成長率은 國民計定(NA)에 의한 높은 成長率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I-O資料를 기초로 해서 볼 때 1955~85년간의 지속적인 成長은 國內生產,附加價值,輸出入 및 國內需要 등에 있어서 급속하고 상당한 構造的 變化를 수반했다. 본 논문에서는이러한 長期的인 產業成長 및 構造變化의 需要側 要因을 및가지 상위한 방법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結果만을 요약한다.

1) 全體經濟에 대한 分析結果에 의하면 그 分析方法上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成長 및 構 造變化에 대한 각 獨立的 要因의 相對的 寄與 度面에서 거의 비슷한 數值를 나타냈다. 均衡 成長으로부터의 偏差基準 分解結果에 의하면 1975~85년간 不比例的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內需擴大의 相對的 寄與度(直接 및 間接 寄與度의 合計)는 32% 수준이었으며 輸出擴 大와 輸入代替의 寄與度는 각각 29~32%와 15~16% 수준에 있었다. 그런데 1975~85년 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輸出擴大效果만이 더 커졌을 뿐 1963~75년간에 대한 것과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955~63년간에 대한 것과 비교하면 중요한 構造的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즉 1955~63년 잔에는 輸入代替의 寄與度가 輸出擴大寄與度 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그후는 그 相對的 寄與 度가 反轉되는 패턴을 보였다.

2) 1963년 이후에는 輸出擴大寄與度가 높아

⁸⁾ 金光錫・L.E.웨스트팔(1976)도 1968년의 部門別實效保護率과 同年의 輸出比重 및 輸出의 成長寄興度間에는 통계적으로 有意한 관계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은 輸出業의 附加價值를 직접 補助해 주는 金利補助와 直接稅 강면을 강안해서 계산된 輸出에 대한 實效補助率과 輸出比重 및 輸出寄與度間에는 통계적으로 有意한 正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p.227 참조).

졌을 뿐만 아니라 輸出擴大는 輸入代替에 비해서 상당히 큰 後方聯關效果를 창출했다. 또한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輸入代替寄與度의 내용면에서도 70년대 중반까지는 中間財輸入代替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그후는 最終財輸入代替寄與度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70년대 중반 이후 自動車를 포함한 廣義의 機械工業部門에 있어서의輸入代替가 크게 진척되었음을 반영한다.

3) 工業化의 先導部門 製造業의 生産成長 要因 分解結果를 보면 內需擴大의 相對的 寄 與度는 時間의 경과에 따라 점감되고 그 대신 輸出擴大寄與度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成長에 대한 貿易效果는 全體經濟에 대한 경 우와 같이 1955~63년간과 1963~75년간에 크 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1963~75년간과 1975~85년간에 있어서 輸入代替寄與度는 重 工業과 機械工業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미 미하게 된 대신 輸出擴大의 相對的 寄與度는 1963~75년간에 크게 증가되어 그후(1975 ~85) 食品加工業部門을 제외한 거의 모든 主 要業種에서 계속 신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 히 주목되는 것은 1963~75년간에는 輕工業部 門의 輸出擴大寄與度가 가장 높았으나 1975~85년간에 와서는 輕工業과 重工業의 輸 出擴大寄與度가 똑같이 64%로 높아지고 있으 며 또한 廣義의 機械工業의 輸出擴大寄與度도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4) 1975~85년간에 대한 細部業種別 成長要因別 寄與度와 同 期間中의 國內外生產者 價格 및 產業保護構造의 變化를 나타내는 지표간에 相關關係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첫째로 輸出擴大寄與度와 名目保護率 또는 實效保護率의 變化간에는 예상했던 바와 같은 有意한

負의 關係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輸出產業의 海外輸出價格이 輸出에 대한 각종 稅制上의 優待措置로 인해서 國內販賣用生產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輸出擴大寄與度는 거의 自由貿易體制下에서의 各產業의 國際比較優位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해서 名目保護率이나 實效保護率은 國內販賣用生產에 대한 保護程度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輸入代替寄與度와 名目保護率 및 實效保護率間에도 통계적으로 有意한 正의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이것은 우리나라의 輸入代替政策이 대부분의경우 貿易保護障壁의 일방적 提高를 수반치않았음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分析結果는 우리 나라의 工業化戰略이 60년대 초반에 종래의 輸入代替 중심의 對內指向的 戰略에서 輸出主 導的 戰略으로 轉換되었는데 그것이 적어도 生產成長을 유도하는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 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70년대에 들어와서 政府의 의욕적인 重化學工業建設計劃에 따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入代替가 강조되는 政策이 시행됐지만 그러 한 政策은 成長 및 構造變化에 대한 輸出擴大 의 相對的 寄與度를 약간 낮추었을 뿐 全般的 인 輸出主導的 成長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 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輸 入代替의 경우에 비해서 輸出擴大의 後方聯關 效果가 훨씬 크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 다. 따라서 앞으로도 輸入代替를 어느 정도 강조하는 政策을 지속하더라도 對外指向的 T. 業化라는 政策基調를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의 輸出主導的 成長패턴에는 좀처럼 變化가 발생 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推論은 우

리나라에서 持續的인 高度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輸出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方案밖에는 다른 效果的인 代案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內需擴大를 통한 成長을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우리의 分析이 시사하는 것은 現段階에서 內需擴大를 통

한 成長에는 限界가 있고 또한 輸出擴大 없이는 長期間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輸出을 지속적으로 增 大시킬 수 있는 產業誘因體制의 維持야말로 가장 중요한 成長政策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다.

▷參考文獻△

- 金光錫,「產業聯關表의 1968年 不變價格으로 의 換價」,『韓國開發研究』, 1979 봄호.
- -----, 『韓國 工業化패턴과 ユ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80.
- ----· L.E. 웨스트팔,『韓國의 外換・貿 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6.
- ———·洪性德,『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韓國開發研究院, 1982.
- 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 1986.
- ----,『國民計定』, 1987.
- ----, 『產業聯關表』, 1975 및 1985.
- Balassa, Bela, "Accounting for Economic Growth: The Case of Norway",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Center Discussion Paper No. 17, 1976.
- Chenery, Hollis B.,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 September 1960.
- Chenery, H.B., S. Shishido and T. Watanabe, "Patterns of Japanese Growth, 1914-1954", Econometrica, Vol.30, No.1, January 1962.
- Fane, George,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Expansion: Their Measurement and an Example of Their Application", *Economic Development Report*, No.19, Harvard University Development Research Group, Cambridge, 1971.
- Frank, Charles R.Jr., Kwang-suk Kim and Larry E. Westphal,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outh Korea, NBER, New York, 1975.
- Syrquin, Moshe, "Source of Industrial Growth and Change: An Alternative Measure", World Bank, 1976.

經濟力集中:基本視角과 政策方向

李 奎 億

經濟力集中은 經濟的 資源과 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經濟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經濟力集中은 본질상 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歐美와 日本 등에 있어서 資本主義體制의 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다수의 獨・寡占的 大企業들이 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企業集團 즉 소위 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의 성장은 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高度經濟成長期의 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企業集團에 의한 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政治・經濟・社會가 거쳐온 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理念과 秩序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效率과 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I. 序言:經濟力集中의 意義

經濟力(economic power)은 한 주체가 다른 주체의 自由意思에 따른 經濟的 選擇에 영

筆者:本院 先任研究委員

- * 筆者는 本稿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 · 정리해준 本院의 李在亨 主任研究員, 原稿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해준 本院의 成素美 博士와 南逸聰博士 그리고 統計資料의 작성에 협조해준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및 調査統計局의 職員 諸位께 십십한 謝意를 표한다.
 - 1) 힘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예컨대 Russell(1938) 과 Galbraith(1984) 참조.
 - 2) 企業集中은 흔히 單一商品市場(또는 產業)에서

항을 줄 수 있는 힘이다". 資本主義經濟에서가장 중요한 經濟組織은 企業으로서 일반적으로 經濟力은 일정한 영역에서의 經濟的 資源 및 手段의 상당부분을 所有·支配하는 소수의 企業에 집중하게 된다. 이것의 단순한 형태는 市場構造面에서 보면 獨占 내지 高位寡占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企業集中 (business concentration)을 초월하는 企業集團(business group)이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어 있다". 企業集團이 資本關係를 통한 기업간의 連結・支配組織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보아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20세기 전

반 美國의 트러스트(trust)·獨逸의 콘체른 (Konzern)·日本의 財閥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을 논함에 있어 特定個人 또는 그 직접적 통제하 에 있는 少數人들이 실질적으로 所有・支配하 는 다수의 大規模 獨・寡占的 系列企業들이 여러 市場에 걸쳐 多邊化되어 있으면서 다른 獨立企業에 비하여 우월한 總體的 市場力을 갖는 複合的 企業集團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은 獨・寡占과 所有集 中의 문제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3).

經濟力集中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組織形態가 무엇이든간에 그것의 일차적 효과가 自由競爭에 대한 제약인 한 이는 歐美資本主義發展史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自由資本主義자체의 所產이라는 점에 二律背反的인 특성을 갖고 있다. 自由市場競爭과 自由企業制는 西歐의 近代市民社會의 經濟的 基調를 이루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法原則은 人格의 平等・所有權의 絕對性・契約의 自由였다. 그러나大量生產技術의 開發・採擇에 따라 企業規模가 확대되는 일면 企業能力의 隔差가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適者生存의 競爭原理가 작용하

역 소수의 企業이 稀少資源과 市場機會를 先 占함으로써 獨占資本의 형성과 이에 따른 經 濟力集中이 진행되었다.

經濟力集中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企業集中 으로 인하여 經濟的 效率性이 저하될 뿐만 아 니라 所有의 集中에 따라 分配的 衡平이 저해 되고 소수 自然人의 의사가 市場機構의 自動 調節作用을 대체하므로 分權主義에 입각한 經 濟的 民主主義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經濟力이 집중되 어 이것이 政治・行政力과 결부되면 소위 政 經癒着을 유발하게 되며 거꾸로 政府가 經濟 力集中의 폐해에 대처하려면 강력한 權力을 필요로 하므로 民主主義體制에 내재적인 위험 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經濟力集中의 심화 를 방치한다면 이에 따라 형성되는 利益關係 는 所得階層間의 社會的 葛藤과 政治的 分極 化를 초래하여 資本主義體制를 내부로부터 해 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近代西歐의 市民法秩序가 지향한 自由 經濟體制는 經濟力集中을 초래하였으며 이것 은 原子的인 自由競爭의 유지와는 대치되는 결과인 것이다. 經濟力集中은 自由經濟體制의 산물이면서 그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를 어떻게 인식하여 대처하는가에 따라 經濟 體制의 전개방향이 다르게 될 것이다. 더욱이 經濟體制에 대한 평가가 각 개인의 價值觀에 크게 의존하는 한 經濟力集中은 理念的 次元 의 문제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經濟力集中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時代나 國家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西歐資本主義는 市民法的 權利의 쟁취 와 함께 個人의 合理的 選擇과 個人間의 自由・ 公正한 競爭을 기저로 政治的 民主主義와 一體

의 競爭度를 나타내는 市場(產業) 集中(market concentration; industrial concentration)과 경제전체에서 일정수의 上位企業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一般集中(overall concentration)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³⁾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은 흔히 財閥이라고 불리는 組織形態로서「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獨占規制法」으로 함)의 제2조에서 이에 대한 法的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 1945년 이전의 財閥과 그후의 企業集團은 다른 組織形態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企業集團과도 다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IV章 참조.

關係 속에서 성립・발전되어 온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생된 經濟力集中은 國家의 公權力을 적절히 행사하여 政治・經濟・社會體制의 조화 속에서 해결함으로써 資本主義의 基本的인生動力과 價值觀을 유지시켜 왔다. 歐美諸國과 日本 등의 資本主義體制는 기본적으로 自由市場經濟의 들 속에서 政府가 矯正的 介入을 통하여 資本主義體制를 유지・발전시키려 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표적 수단이 財閥解體와 獨占禁止를 핵으로 하는 經濟秩序政策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歴史的 進化過程을 초월하여 獨立과 더불어 歐美의 資本主義體制 와 民主政治制가 이식되었지만 6・25動亂 등 의 斷絕期를 거쳐 政府의 行政國家的 行動과 함께 經濟開發을 國家目標로 하여 이를 추구 하는 과정에서 資本主義와 民主主義의 相互作 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經濟行爲 가 個別主體의 自由意思보다는 政治的 目的 에 순응하여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私經濟部門에 대한 政府干涉이 보편화되 어 私有財產權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제하고는 市場經濟體制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 하였고 企業도 본래적 의미에서의 資本主義的 屬性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企業成果가 자 신의 危險負擔과 創意力의 결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 행되어 온 經濟力集中은 반드시 市場競爭의 自生的 産物만은 아니고 政商的 資本主義 내 지 賤民資本主義의 색채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의 문제는 크게

經濟的 機會・利得의 不均等分布・大企業의市場行態 및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 있는 政府政策 및 企業倫理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소수 財閥의 방대한 규모에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資本主義體制의 구조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力集中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對策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家體制理念을 재정비함에 있어 핵심적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 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經濟力集中의 현황을 製造業部門의 30大企業集團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어 III章에서는 그러한 經濟力集中의원인과 성과를 經濟成長過程 속에서 분석한다. IV章에서는 經濟力集中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로서 日本의 舊財閥 및 현재의 企業集團을 조감한다. 끝으로 V章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입각하여 經濟力集中對策의 기본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II. 經濟力集中의 現況

1. 企業集團의 規模

1987년 製造業部門의 出荷額基準 30大企業 集團은 製造業部門의 雇傭의 17.6%와 出荷額 의 37.2%를 점유하였다". 여기서 雇傭占有 率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出荷額占有 率은 1977~82년간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1982~87년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表 1). 그

⁴⁾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30大企業集團은 製造業出荷額基準으로 선정된 것을 지칭한다.

〈表 I〉 經濟力集中의 現況

(단위:%)

企業集團	雇	傭占有	率	出花	お額占する かいかい かいかい かいかい かいかい かいかい かいかい かいかい かい	有率
正未来图	1977	1982	1987	1977	1982	1987
5大集團	9.1	8.4	9.9	15.7	22.6	22.0
10大集團	12.5	12.2	11.9	21.2	30.2	28.2
20大集團	17.4	16.0	15.1	29.3	36.6	33.9
30大集團	20.5	18.6	17.6	34.1	40.7	37.3

이유는 1977년 후반 이래 大規模企業集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成長產業인 化學・機械 등의 업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이들 산업 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企業集團의 규모가 크 게 팽창하였다가 그 이후 石油化學製品價格의 하락과 造船受注의 부진 등으로 企業集團의 주력업종이 다소 위축된 반면 독립기업의 출 현과 성장이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들의 雇傭占有率이 出荷額占有率 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企業集團의 系列 企業이 일반적으로 資本集約的 生產方式을 채 택하는 일면 價格操作面에서 市場力을 보유하 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1977~82 년간 上位 5大集團(럭키金星, 現代, 三星, 鮮京, 大宇)의 비중이 급격히 중대하였고, 1982~87년간에는 30大集團 전체의 비중이 저 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上位 5大集團의 비중 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上位集團과 下位集團間에 兩極化 現象이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2〉에서 30大企業集團의 產業別 出荷額 比重을 보면 上位企業集團의 상대적 비중증대 와 上下位企業集團間의 規模隔差의 원인과 현 상이 좀더 명백히 나타난다. 30大企業集團은 化學物・石油・石炭・고무 및 프라스틱製品製 造業과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에 서 50%에 가까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이들 산업은 우리나라의 製造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 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產業이기도 하다. 30大企業集團 중에서도 上位 5大集團은 이러한 成長產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속에서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經濟力集中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組立金屬製品・

〈表 2〉 中分類產業別 企業集團의 比重(出荷額基準)

(단위:%, 개)

	31	32	33	34	35	36	37	38	39
5大集團	4.9	6.3	2.8	5.6	27.4	6.3	9.9	40.9	1.4
10大集團	6.0	10.2	6.0	13.3	37.0	19.5	. 22.0	46.4	1.4
20大集團	22.6	13.5	6.0	17.1	46.2	21.9	31.4	47.8	1.4
30大集團	26.2	20.4	6.2	17.2	49.0	28.9	39.2	49.2	1.5
参與集團數	11	12	4	8	· 20	10	9	23	2
30大集團總出荷額比重	7.3	8.9	0.2	1.2	26.5	2.9	9.1	43.7	0.0

註:產業分類番號別 產業名은 다음과 같다.

31 飲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32 繊維・衣服 및 가죽產業, 33 나무 및 나무製品製造業, 34 종이 및 종이製品・印刷 및 出版産業, 35 化學物・石油・石炭・고무 및 프라스틱製品製造業, 36 非金屬鑛物製品製造業,

37 第1次金屬製品製造業、38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装備製造業、39 其他製造業

〈表 3〉 綜合商社의 輸出比重

(단위:%)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綜合商社輸出額/總輸出額	20.3	31.9	42.5	50.5	50.1	37.9
重化學製品/總輸出額	_	40.3	45.3	54.8	58.2	53.8
重化學製品/綜合商社輸出額	_	45.9	60.4	73.5	78.1	78.0

資料:商工部、

機械 및 裝備製造業에서는 30大企業集團이 49.2%의 占有率을 갖고 있으나 上位 5大企業 集團의 占有率이 40.9%로서 이들의 특성과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밖의 產業 에서는 上下位集團의 구별없이 유사한 수준의 占有率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측면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20개 및 23개 企業集團이 각각 化學物・石油・石炭 및 프라스틱製品製造業과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에 참여하고 있으며 30大企業集團의 總出荷額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6.5%와 43.7%에 이르고 있어 經濟力集中에 있어서 이들 產業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主力產業이었던 纖維・衣服 및 가죽產業이 30大企業集團出荷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30大集團의 輸出占有率은 1977년에 38.5%, 1985년에 41.3%로 出荷額占有率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5년에 製造業總出荷額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이지만 上位 5大集團의 輸出率은 33.6%로 輸出寄與度가 製造業平均보다 높다. 그러나 餘

他集團의 輸出率은 製造業平均에 미달하는 23.6%로 30大集團으로서의 平均은 29.5%에 불과하였으므로 企業集團이 輸出을 주도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개의 綜合貿易商社가 있는데 貿易協會가 中小企業의 輸出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高麗貿易을 제외한 7개는 각각 大規模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이다⁵⁾. 高麗貿易은 綜合貿易商社의 總輸出額에서 불과 2%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綜合商社의 輸出占有率은 1976년의 15.4%로부터 계속 증가하여 1983년에는 50.5%에 달하였으나그 이후 감소하여 1987년에는 37.9%로 되었다(表 3). 이것은 최근에 下位企業集團 및 獨立企業의 독자적인 輸出이 증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企業集團의 成長과 企業結合

企業集團의 팽창은 기존 系列企業의 규모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製造業部門의 주도로 高度成長이지속된 경제에서는 企業의 內部成長만으로는한계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企業集團의 규모확장을 위해 企業新設을 포함하는 광의의 企業結合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즉 系列企業의

^{5) 7}개의 綜合商社는 三星物産, 雙龍, 大字, 曉星 物産, 릭引金星, 鮮京, 現代綜合商社이다.

⁶⁾ 獨占禁止法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企業結

〈表 4〉 企業結合 內譯

	81	82	83	84	85	86	87	88	89.8	合計
企業結合件數	148	288	210	231	173	204	216	183	115	1,768
系 列	113	200	138	87	92	98	82	45	27	882
非系列	35	88	72	144	81	106	134	138	88	886
大規模集團	70	153	129	81	75	103	94	96	54	855
系 列	57	108	86	47	43	60	47	25	5	478
非系列	13	45	43	34	32	43	47	71	49	377

註:大規模集團은 1987년 4월 1일 이전에는 資產基準 30大企業集團이며 이후는 獨占規制法에 의해 각 연도별로 大規模企業集團으로 지정된 集團을 대상으로 함.

內部成長을 통한 企業集團의 확장과 아울러 企業結合을 통한 系列企業數의 증대에 따른 外延的 擴張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1970년 30大企業集團의 平均系列企業數는 4.2개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高度經濟成長期에 확장을 계속하여 1979년에는 14.3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으로서 이 기간중 企業結合의 내역을 보면 既存企業의 取得이 135건임에 비하여 企業新設이 202건으로 더 많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經營資源을 갖는 企業集團이 새로운 事業分野에 진출하기위하여는 열악한 既存企業을 引受・合併하기보다도 새로운 企業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경우가 많고 또한 經濟發展에 따라 새로운 商品市場이 계속하여 등장하므로 이에 진입하기위하여도 企業의 新設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8)

따라서 1970년대를 통한 企業集團의 팽창은 高度經濟成長과 軌를 같이하면서 既存系列企 業의 단순한 量的 擴大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市場으로의 進入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같은 기간중 製造業體數는 1.3배 증가하였으나 30 大企業集團의 系列企業數는 3.4배나 증가하였 다는 사실은 企業集團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와 같은 企業 間 不均衡成長에서 財閥問題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 이후 1970년대말의 不景氣와 이 에 따른 企業合理化 등에 따라 1980~82년간 에는 새로운 企業結合보다도 既存企業의 매각 이 많아 1982년에는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평균 13.4개로 감소하였다. 즉 1970년대는 企 業集團의 膨脹期이고 1980년대초는 그 整備期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不 實企業 및 公企業을 인수함과 아울러 產業構 造改編의 움직임 속에서 企業을 신설함으로써 企業集團의 系列企業數는 1989년에는 평균 17.1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1980년대의 企業結合의 추이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獨占規制法에 의해 經濟企劃院에 신고된 企業結合의 내역을 정리하면 〈表 4〉와

合(business combination)을 株式取得(acquisition)・任員兼任(interlocking directorate)・合併(merger)・營業讓受(takeover)의 네가지 類型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獨占規制法의 제7조에서는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를 추가하고 있다.

⁷⁾ 全產業을 대상으로 한 總資產基準 30大企業集團을 지칭한다.

⁸⁾ 이에 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李奎億 외(1985) 참조.

〈表 5〉 企業集團과 產業集中(製造業細細分類產業 基準)

	製造業全體의 加重平均H指數	参與産業에서의 集團占有率의 單純平均	參與產業에서의 集團占有率의 加重平均	參與產業에서의 單純平均 <i>H</i> 指數	参與産業에서의 加重平均H指數
1983	0.248	0.375	0.526	0.258	0.235
1987	0.211	0.370	0.492	0.241	0.210

같다. 1981년 이래 1989년 8월 현재까지 신고·처리된 企業結合은 총 1,768건이었으며 그중 所有權의 변동이 이루어진 실질적인 의미의 企業結合은 전체의 50.1%인 8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1980년대의 전반기에 비해 후반에 와서는 전체적인 企業結合件數는 다소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이동이 이루어진 非系列企業間 結合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전체 企業結合중 大規模企業集團에 의한 것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855건인데 이들에 의한 企業結合에는 系列企業間의 結合이 78.9%로서 상대적으로 높다.

3. 企業集團과 產業集中

1987년에 30大企業集團은 製造業部門 509개 細細分類產業(產業出荷額이 0인 산업은 제외) 의 28.7%에 해당하는 146개의 產業(출하액비 중으로는 75.6%)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산

 $H = \sum_{i=1}^{n} Si^{2}$

업에 있어서 30大企業集團의 비중은 49.2%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表 5〉에서 細細分類產業基準의 허핀달(H)指數를 보면 製造業 전체의 加重平均 H指數는 1983~85년간 0.248에서 0.037포인트 하락하여 0.211로 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중 同等規模企業數(numbers equivalent)가 4개에서 5개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30大企業集團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H指數의 하락폭이 製造業全體平均에 미치지못하고 있어 企業集團이 참여하는 產業의 競爭度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企業集團의 多邊化度

30大企業集團의 製造業部門 系列企業의 분 포를 보면〈表 6〉에서와 같이 重化學工業・纖維・飲食料品產業에 많으며 여타산업에도 系 列企業의 수는 많지 않지만 製造業全體에 걸 쳐 참여하고 있다. 上位 5大集團은「組立金屬 製品・機械 및 裝備產業」에 집중적으로 참여 하며 여타산업에 있어서는 30大企業集團의 系 列企業이 上下位階層別로 큰 특징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系列企業數 이외의 관점에서 多邊化(diversification)의 정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出荷品

 ⁹⁾ 허핀달(Herfindahl)指數는 n개의 企業이 존재하는 한 市場 내의 각 企業의 占有率을 Si(i=1, 2, ..., n)로 할 때

로 정의된다. 同等規模企業數는 H指數의 逆數 로서 한 市場 내의 각 企業의 현재의 市場占有 率의 分布로 보아 가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같은 규모의 企業數를 나타낸다. 集中指數에 관 한 詳論은 李奎億 외(1984) 참조.

〈表 6〉 製造業中分類產業別 企業集團 系列企業의 分布

企業集團	31	32	33	34	35	36	37	38	39
5大集團	2	10	2	4	12	4	5	57	1
10大集團	3	18	3	6	21	6	15	74	1
20大集團	27	22	3	13	42	10	20	90	1
30大集團	32	39	4	14	55	14	23	99	2

註: 〈表 2〉와 같음.

目數 및 細分類產業을 기준으로 한 主產業特化度(ISR) 및 베리指數(H*)를 이용하기로 한다" 30大企業集團은 집단당 평균 61개의 品目을 출하하고 있어 多邊化度가 비교적 높은편이다(表 7). 上位集團일수록 出荷品目數가많으며 특히 上位 5大集團은 평균 130개의 품목을 출하하고 있어 여타집단에 비해 매우 많다. H*의 수치로 보아도 上位 5大集團은 상대적으로 多邊化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ISR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企業集團의 規模階層과 多邊化는 일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多邊化의 정도는 개별 企業集團의 성

〈表 7〉 30大企業集團의 平均多邊化指數

企業集團	集團當平均 出荷品目數	H*	ISR
1~ 5位集團	130	0.756	0.416
6~10位集團	48	0.613	0.510
11~20位集團	79	0.674	0.469
21~30位集團	49	0.561	0.572
30大集團 平均	61	0.640	0.502

¹⁰⁾ *ISR* = 主產業出荷額/企業集團總出荷額, *H**=1-*H*.

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商品市場에서의 企業集團의 位置

1987년에 30大企業集團이 출하하는 延1,499개(純計로는 837개)의 商品 중에서 市場占有率이 80% 이상인 獨占的 位置를 갖는 것이 103개,40~60%로서 당해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갖는 품목이 232개,20%~40%로서 상당한 市場地位를 갖는 品目이 291개에이르고 있다(表 8). 上位集團일수록 높은 市場位置를 갖는 품목수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上位集團의 경우 出荷 品目數가 많기 때문에 市場位置가 높은 品目도 역시 많다.

각각의 企業集團이 商品市場에서 갖는 위치 를 市場占有率順位의 기준으로 보면 〈表 9〉와 같다. 이 表는 企業集團의 規模順位別로 각 계층에 속한 企業集團의 出荷品目이 각각의 市場에서 市場占有率基準으로 몇 위에 해당하 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30大企業集團 전체로 서는 총 1,499개의 出荷品目 중 제1위의 市場 占有率을 가진 것이 總品目數의 31.7%인 475 개이며. 전체의 2/3에 가까운 941개 品目이 당해시장에서 3위 이내의 市場占有率을 보유 하고 있다. 3위 이내에 들지 못하는 品目도 558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品目이 30大企業 集團의 總出荷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 에 불과하다 그 대신 市場占有率이 1위인 品 目의 出荷額比重은 品目數比重을 훨씬 상회하 는 55.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企業集團이 여러 市場에 참여를 하고 있으나 出荷額을 기 준으로 할 때 市場地位가 비교적 높은 市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表 8〉 企業集團 出荷品目의 市場占有率

(단위:개)

企業集團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合 計
1~5位集團	345	141	82	38	42	648
6~10位集團	149	45	16	9	22	241
11~20位集團	244	64	38	22	30	367
21~30位集團	166	41	15	12	9	243
合 計	873	291	151	81	103	1,499

〈表 9〉 企業集團 出荷品目의 市場位置

(단위:개,%)

	1	位	2	位	3	位	其	他	合	計
企業集團	品目 數	出荷 比重								
1~ 5位集團	224	59.2	133	26.2	68	6.5	223	8.1	648	100
6~10位集團	71	46.9	44	20.8	36	16.5	90	15.7	241	100
11~20位集團	115	60.8	79	20.1	37	8.2	136	10.8	367	100
21~30位集團	65	37.0	40	33.1	29	11.3	109	18.6	243	100
合 計	475	55.5	296	25.1	170	8.9	558	10.8	1,499	100

6. 企業集團間 競爭

企業集團의 多邊化에 따라 企業集團이 참여하는 市場의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企業集團은 市場規模와 成長可能性이 큰 產業에 중점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商品市場에서의企業集團間 競爭도 격화되고 있다. 편의상 20大企業集團에 국한하여 보면 〈表 10〉에서와같이 商品數에서는 企業集團의 전반적인 多邊化의 진전으로 이들이 참여하는 시장은 1974년의 292개에서 1982년에는 587개, 그리고 1987년에는 739개로 늘어나 1개의 집단만이참여하고 있는 市場數가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3개 이상의 企業集團이 참여하고 있는 시

장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수적 비중면에서 보면 1개의 集團만이 참여하고 있는 市場이 1974년에는 76.7%였으나 1982년에는 62.4%, 1987년에는 59.3%로 감소한 반면 4개 또는 그 이상의 企業集團이 참여하는 市場은 0.6%에서 5.1% 그리고 7.6%로 크게 중가하였다.

1987년의 30大企業集團間의 商品市場에서의 競爭을 中分類產業別로 보면〈表 11〉과 같다. 역시 1개의 집단만이 참여하고 있는 市場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히 나무 및 나무製品製 造業, 종이 및 종이製品・印刷 및 出版產業에 속한 商品市場에는 대개가 1개의 企業集團만 이 참여하고 있으며 飲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第1次金屬製品製造業 및 組立金屬製品・機械

〈表 10〉 20大企業集團間의 市場競爭

同一市場에서	1974		19	982	1987		
競爭하는 集團數	商品數	%	商品數	%	商品數	%	
1	224	76.7	366	62.4	438	59.3	
2	51	17.5	124	21.1	182	24.6	
3	15	5.1	67	11.4	63	8.5	
4	2	0.6	30	5.1	56	7.6	

〈表 II〉 企業集團間 競爭(中分類產業別 分布)

競爭集團數	31	32	33	34	35	36	37	38	39	合計
1개	46	46	17	16	120	28	41	153	11	478
2개	29	15	3	3	48	6	17	69	2	192
3개	16	12	1		11	4	9	45	ĺ	98
471	4	3			14	1	1	13		36
5개이상	4	3		1	3	1	5	16		33
合 計	99	79	21	20	196	40	73	296		837

註: 〈表 2〉와 같음.

및 裝備製造業에는 다수의 企業集團이 참여하고 있는 市場이 상대적으로 많다.

7. 企業集團과 金融

우리나라의 企業集團은 製造業을 기반으로 하면서 保險・證券・銀行 등 金融產業으로도 진출을 확대하여 왔다. 1981년 4월에 市中銀行(朝興・商業・第一・韓一・서울信託)이 民營化되면서 企業集團이 寡占株主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西歐나 日本에서와 같이 銀行을 중심으로 財閥이 형성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평균적으로 각 市中銀行에 3~7개의 企業集團이 株主로 되어 있으며 銀行法上 同一人의 정의가 줄기는 하나 그 株式所有上限이 8%로 되어 있어 系列融資의 가능성이

작다. 한편 地方銀行에는 所有制限이 없어 企業集團의 持分이 市中銀行의 경우보다 많으며 같은 地方銀行에 참여하는 企業集團의 數도

이와 같이 第1金融圈에 대한 企業集團의 참여는 제도적인 규제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지만 企業集團은 또한 상당수의 證券會社・保險會社・短資會社・綜合金融會社를 系列企業으로 보유하고 있어 企業集團의 자금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30大企業集團이 보유하고 있는 金融關聯系列會社는 모두47개에 이르고 있다.

企業集團은 金融產業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與信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大企業集團의 銀行與信占有 率은 與信管理制度의 강화에 따라 점차 감소

〈表 12〉 企業集團의 金融機關 與信占有率

(단위:%)

	銀	行	第2金	图蛹分	
	'88.12.	'89.6.	'87.12.	'88.12.	
5大企業集團	11.13	9.68	17.62	17.28	
30大企業集團	23.25	20.96	37.88	36.50	

資料:財務部.

하고 있지만 大企業의 直接金融活用 및 系列企業間의 資金融通(支給保證)이 용이한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높다고 할수 있다¹¹¹⁾. 이들이 第2金融圈의 與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銀行의 경우보다 높으며 保險會社・短資會社 등은 關聯企業集團의 系列會社에 대한 資金支援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表 12).

8. 企業集團의 所有集中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의 또 다른 특징인 所有集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¹²⁾. 우선 個人의 명의로 各系列企業의 出資額이나 議決權株式總數에서 사실상 지배가가능한 持分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거대한 企業集團을 형성할 수 없다. 좀더 효과적인 방법은 企業을 통한 出資로서가장 고전적인 형태는 持株會社(holding company)를 통한 피리미드的 連鎖出資이나 1986년에 개정된 獨占規制法에서 금지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민간이 소유하는 純粹持

株會社는 없었다.

企業集團이 所有集中의 수단으로서 실제로 이용하여 온 것은 企業間株式相互保有(intercompany shareholding)라는 복잡한 형태이다. 相互出資의 유형은 [圖 1]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同一企業集團의 系列會社 중 金融會社나 保險會社 이외의 두 會社間의 直接相互出資는 1984년에 개정된 商法이나獨占規制法에서 금지하기 전에도 별로 볼 수없었다. 실제로는 1개의 會社가 중심이 되어여러 會社와 株式을 相互保有하는 放射線型,다수의 會社가 연쇄적으로 他會社의 株式을보유하는 環狀型,다수의 會社가 무작위적으로 각사의 株式을보유하는 行列型 등이 혼재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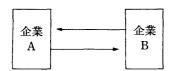
실제로 企業集團은 그 資本規模가 거대하기 때문에 系列企業間 相互出資 대신 一方的 出 資로서도 相互出資와 동일한 所有集中을 도모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獨占規制 法에서는 直接相互出資의 금지와 함께 大規模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에 대해 當該會社 純資產 額의 40%를 초과하여 국내의 다른 회사의 株 式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0大 企業集團의 金融・保險會社를 제외한 系列會 社間 相互持株率(=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出資 合計額/系列會社資本金合計)의 평균은 1984년 에 46.5%였지만 1~10位集團은 50.9%, 11~20位集團은 41.8%, 21~30位集團은 26.3%로 上位集團일수록 평균적으로 相互持 株率이 높았다. 그러나 直接相互出資가 금지 되고 會社의 出資總額이 제한됨에 따라 出資 限度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企業公開・有償 增資・剩餘金內部留保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自己資本이 확충되고 株式分散이 촉진된 한편

¹¹⁾ 與信管理對象 30大企業集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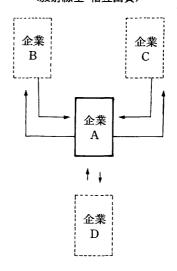
¹²⁾ 所有權(ownership)의 개념에 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 묵시적으로 채택한 개념은 占有(possession)·支配(control)·權利參與(title)의 결합체이다. Jones(1982)는 이에 관하여 흥미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圖 1] 企業間 株式相互保有의 基本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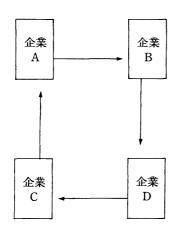
〈直接 相互出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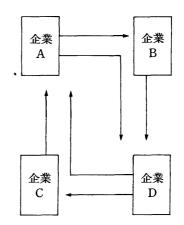
〈放射線型 相互出資〉



〈環狀型 相互出資〉



〈行列型 相互出資〉



과다하고 불합리한 他會社出資가 억제되어 相 互持株率이 31.5%로 크게 저하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특정한 個人大株主 및 特殊關係人 그리고 그가 지배하는 다른 系列企業에 의하 여 소유되고 있다. 獨占規制法에 의해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지정된 企業集團 중 상위 10大 集團의 株主構成을 보면 1989년 4월 현재로

資本金의 46.4%에 해당하는 持分을 特定大株 主 및 系列會社가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5大 集團의 경우는 49.4%로 그 비율이 더욱 높아 지고 있어 특히 上位集團일수록 株式分散度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系列會社 중 企業公開가 된 것은 企業數로는 30% 미만이며 資本金基準으로는 60% 미만으로서 企業公開度가 낮다(表 13). 즉 우리

〈表 13〉 企業集團의 株式分散度와 企業公開度(1989.4 현재)

人	株	式保有比率(%))	企 業 數	資 本 金
企業集團	特定人	系列會社	計	公開企業/系列企業	公開企業/系列企業
5大集團	13.7	35.7	49.4	56/187=29.9%	56.6%
10大集團	14.7	31.7	46.4	139/514=27.0%	56.3%

註:特定人 = 同一人 + 特殊關係人

나라의 上位企業集團은 系列會社 중 公開法人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公開法人의 경우에도 株式公募比率이 낮아 전반적인 企業公開 水準은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9. 企業集團의 內部去來

企業集團은 다수의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계열기업간에 資本的 關係뿐만 아니라 製品販賣 및 資金調達의 면에서 상당한 依存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은 계열기업간의 垂直結合 혹은 金融 등을 통하여 企業集團의 內部效率性(internal efficiency)를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산업전체로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그만큼 축소시키거나여타 獨立企業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988년 현재의 與信管理對象 30大企業集團의 賣出額은 전산업에 걸쳐 약 8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23.3%인 21조원 정도가 內部 去來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內部去來 比率은 上位集團일수록 높아져 上位 5大集團의 경우 27.7%, 上位 10大集團의 경우 25.5%나 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上位集團일수록 많은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어 系列企業間 去來關係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요인 외에도 上位 集團은 각각 集團의 차원에서 重點產業을 중 심으로 關聯系列企業을 확장해 온 것도 큰 이 유가 될 것이다.

30大企業集團은 金融業에 있어서도 保險・ 短資・相互信用金庫・地方銀行・創業金融會社 등 여러 업종에 진출해 있지만 자료의 제약상 生命保險會社의 同一系列企業에 대한 貸出現 況만을 보고자 한다. 국내에는 현재 6개의 生 命保險會社가 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興國生命을 제외한 5개회사를 대상으로 할때 1988년 3월 현재 總運用資金의 13.0%에 해당하는 7.955억원을 同一系列企業에 대출하 고 있다(大韓敎育保險은 30大企業集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비율만으로는 同一系列貸出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生命保險會社의 자금 이 모두 貸出金으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證券 등 여러 有價證券 및 不動產 등으로 다 양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生命保險會 社의 總運用資金對比 同一系列貸出比率을 보 면 大韓 17.5%, 第一 8.2%, 三星 11.4%, 敎保 12.6%, 東亞 7.2%이다.

III. 經濟力集中의 原因과 成果

1. 經濟力集中의 原因

가. 低開發經濟와 企業人能力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經濟發展過程 속에서 特定個人이 지배하는 소수의 企業集團 이 형성・확장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經濟力集中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經濟發展과 企業人能力(entrepreneurship)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開發途上經濟에는 企業活動에 필요한 여러가지 財貨나 서비스에 대한 市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예로 銀行貸出을얻는 데 政治的 影響力이 도움이 된다면 이를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企業人은 통상적인 經營 者機能에 더하여 그러한 결함을 스스로 메울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缺陷補充(gap-filling) 및 投入物完了(input-completing)의 能力은 특히 市場經濟體制가 미숙한 開發途上經濟에 서는 稀少性이 매우 높으므로 企業人能力은 稀少資源인 것이다¹³⁾. 또한 企業人能力은 價 格彈力性이 거의 없고 市場에서 거래되지 않 는 기본적인 投入物이면서 여러 번 사용하여 물론 한 經濟에서 요구되는 企業人能力을 구성하는 여러 要素의 종류와 그 상대적 비중은 經濟社會全般의 函數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能力의 발휘가 社會的 道德性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¹⁴⁾. 企業人能力은 그 자체로는 沒價値的이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양태는 經濟社會의 作動樣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濟에 非公式的 部門이 큰 위치를 갖고 있다면 企業人能力은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의원인이면서 그 귀결을 함축하는 본원적인 요인이다.

나. 技術的 依存性과 多邊化의 展開

經濟力集中의 또 다른 원인은 企業集團의 多邊化過程에서 찾을 수 있다. 開發途上經濟 에는 成長에 필요한 資本財를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經濟發展은 주로 先進技術의 단순한 도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技術的 依存性 (technological dependence) 은 開發途上經濟 의 商品市場構造를 원초적으로 獨寡占化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5). 즉 消費需要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先進技術은 원래 大規 模市場을 대상으로 발달된 것이므로 이를 쳠 소한 開發途上國의 市場에 이식한다면 그 規 模性 때문에 獨占 내지 高位集中型 寡占이 자 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經濟發展에 의 한 所得의 증대에 따라 消費의 범위가 확대되 더라도 展示效果의 작용으로 先進經濟의 消費

도 마모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經濟 發展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는 이들에게 經濟 力이 집중되기 마련인 것이다.

¹³⁾ Leibenstein (1968).

¹⁴⁾ Casson(1982)은 企業人能力의 構成要因을 선천 적 및 후천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¹⁵⁾ Merhav (1969).

樣態를 모방하게 되므로 個別財貨의 市場規模 는 비례적으로 작게 되어 이 과정을 가속화하 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經濟開發初期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人的・物的 資源이 獨・寡占的 大企業에 集中 되고 輸入制限과 國內企業의 競爭的 進入에 대한 制限 등 각종의 構造的・制度的 進入障 壁으로 인하여 원초적으로 확보된 獨占的 孤 立地帶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多邊化를 통한 企業集團形成의 한 원 인이 된다. 즉 기존의 市場에서 競爭의 압력 이 배제된 가운데 企業內에 축적된 人的・物 的・財務的 剩餘能力(excess capacity)을 활 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市場에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16). 多邊化는 既存市場에서의 需要의 彈力性과 生產要素의 特化度가 낮을수록 그리 고 企業의 剩餘能力이 클수록 가속될 것인데 開發途上經濟에는 이러한 세가지 要因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低所得 需要構造에서는 各財 貸가 代替的이기보다는 補完的인 성격이 강하 므로 需要의 彈力性이 낮고 협소한 市場構造 와 技術條件의 不可分性 및 進入障壁으로 剩 餘能力이 존재하며 生產技法과 勞動熟練의 수 준이 낮기 때문에 特化度는 낮게 된다.

開發途上經濟에서 企業이 일차적으로 진출 하려고 하는 분야는 規模의 經濟를 향유할 수 있는 大衆消費財 및 大量消費되는 中間財이며 이러한 1次的 擴張機會가 소진되면 企業은 점차 消費의 絕對規模가 작은 財貨로 多邊化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企業集團이 형성되며 원초적으로 相互競爭關係가 약한 企業들도 多邊化가 계속되면서 조만간에 같은 市場에서 경쟁하게 된다". 企業集團들은 그 形成初期에는 각자의 獨占的 事業領域을 기반으로 서로影響圈을 인정하나 企業集團의 事業領域이 自己完結型으로 확장하면서 상호간의 競爭이 격화되어 經濟全體에서의 競爭의 양상이 다수의 創意的 小企業에 의한 原子的 競爭보다는 소수 企業集團間의 寡占的 競爭으로 전개된다.

다. 政府主導의 高度成長政策

우리나라에서의 經濟力集中은 政府의 經濟政策으로 가속되어 왔다. 經濟發展을 위하여 선정된 戰略的 產業은 대부분 技術・資金・人力・組織 등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企業能力을 필요로 하므로 企業集團이 單獨企業보다 유리하게 되어 그러한 產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租稅・金融・貿易面에서의 保護 내지 支援施策의 혜택은 企業集團에 귀속되게 마련이었다. 다시 말하여 원초적인 企業能力의 축적에 따른 自然發生的인 多邊化를 통하여 企業集團이 형성되고 그 성장이 다시 政府主導下의 高度成長政策으로 촉진된 것이다.

한편 不實企業 내지 倒產企業의 처리에 관한 政府의 政策도 企業集團의 規模膨脹에 기여하였다. 經營不實・景氣變動・產業構造變化 등으로 倒產의 위기에 처하거나 銀行管理下에 있는 大企業이 실제로 破產・消滅한다면 債務 不履行과 失業 등 經濟的・社會的・政治的 波

¹⁶⁾ Leff(1978)는 開發途上國의 企業集團을 Leibenstein의 이론을 응용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企業集團은 E.A.G. Robinson의 適正企業(optimum firm)論부터 시작되는 多生產物企業(multiproduct firm)論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개관과 참고문헌은 李奎億 외(1988)에 소개되어 있다.

¹⁷⁾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후반에 다수의 企業集 團이 海外建設・金融・重化學工業分野 등에 동 시다발적으로 참여한 사실로서 예시될 수 있다.

及效果가 크다는 판단 아래 政府는 흔히 企業 集團으로 하여금 이러한 企業을 인수토록 권 유하며 그 反對給付로 金融이나 다른 認許可 事業에서의 優先權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 러한 조치는 인수하는 企業集團의 財務構造에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겠지 만 인수된 不實企業의 經營이 장기적으로 호 전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企業集團의 실질적 인 팽창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 資本調達方法의 特性

經濟力集中의 또 다른 측면인 所有集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金融制度 및 資本市場의 여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企業集團의 급속 한 成長을 위하여는 막대한 資本이 필요하다. 一般的으로 企業의 資本調達方法은 利益의 內 部留保・株式發行・借入으로 대별할 수 있지 만 資本形成의 기반이 약한 단계에서의 高度 成長은 자연히 借入을 통한 企業의 外部金融 依存度를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은 資本調達方 法에 의하여 企業集團이 형성・확장되는 과정 에서 所有의 分散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個人이나 家族의 資本으로 시작한 企業이 타 인의 광범위한 株式參與 없이 기본적으로 자 신의 留保利益 및 外部 金融에 의존하여 기업 을 확장・신설한다면 經濟力은 결국 企業集團 을 實質的으로 所有・支配하는 소수의 개인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多邊化過程에서 企業結合 및 資本調達方法으로 株式의 企業間相互保有 및 系列企業間 出資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企業의 資金調達能力의 제약을 企業集團內에서 系列企業間의 出資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소하려고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

지만 그 원인과 효과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볼수 있다. 우선 該當企業은 실질적인 出資 없이 외형상 自己資本을 증대하고 議決權을 집중시킴으로써 최소의 資本으로 최대의 企業支配力을 행사하게 되며 또한 特殊關係人에 의한 持分限度規定을 회피하여 企業公開를 위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종래에 金融機關은 만성적인 超過金融需要에 직면하여 일종의 配給制인 與信管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個別企業의 自己資本比率을 基準으로 하였으므로 企業集團內의 系列企業들은 좀더 많은 金融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株式의 相互保有를 확산시킬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架空的規模擴大를 통하여 동일한 實體的 規模의 單獨企業보다 좀더 유리한 交涉力을 갖게 되며이것은 企業集團의 相對的 高成長을 설명할수 있는 추가적 요인이 될 것이다.

2. 經濟力集中의 成果

經濟力集中의 成果를 논의함에 있어서 經濟力集中의 肯定的 側面은 기본적으로 개별 企業集團의 利點으로 귀착되는 반면 그 否定的側面은 企業集團의 폐해뿐만 아니라 所有集中 및 企業集團의 形成過程 등 소위 財閥問題의 전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히 經濟力集中에 대한 政策方向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企業集團의 성과를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또 다른 점은 企業集團의 문제는 獨占 내지 寡占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企業集團에는 獨・寡占的 系列企業이 다수 존재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이들이 독립

된 單獨企業이라고 하더라도 獨·寡占的 市場 構造에 기인하는 성과는 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 대책도 통상적인 獨占政策으로 충분할 것 이다. 그러므로 企業集團만의 성과는 원칙적 으로 다수의 企業이 공동의 所有·支配關係로 연결되어 있는 組織이라는 관점에서 따로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독과점문제 와 企業集團의 문제를 분리하여 고찰한다는 것은 정책적 시각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다.

가. 肯定的 側面

企業集團의 실질적 이점은 系列企業間의 資 源共有와 여러 市場活動間의 共通要素에 기인 하는 多生產物 및 多工場 體制의 企業組織規 模의 經濟性(單一工場規模의 經濟性과는 다 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共同效果(synergy) 를 얻을 수 있으므로 資源을 절약함과 동시에 稀少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에 있다18)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所有集 中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지만 經濟構造의 轉 換과 같은 動態的 狀況 특히 經濟發展의 初期 段階에서는 企業人能力이 커다란 制約條件이 되므로 所有와 經營이 一體化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더욱 왕성하게 발휘되어 企業 活動에 수반되는 이익을 可視化하여 經濟發展 을 선도하고 일반의 經濟的 成就慾求를 진작 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市場活動에 대한 企業集團의 참여는 情報의 흐름을 증대시켜 投資와 生產決定을 둘러싼 不確實性을 축소하는 한편 多邊

化로 인하여 危險을 분산시킨다. 이것은 企業 集團의 安定的 成長과 이에 수반되는 投資能 力의 培養 나아가 經濟全體의 資本收益率을 높임으로써 經濟成長을 가속시키게 된다. 企 業集團은 資源의 集積效果와 擴散效果도 갖는 다. 예컨대 企業集團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人 力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들간의 상호작용과 여러 활동에 걸친 經驗蓄積에 의해 개개인의 潛在能力이 크게 발현될 수 있다. 또한 優秀 人力이 집적되면 單線型의 企業組織의 확대에 따른 規模의 不經濟 내지 組織非效率性을 제 거하기 위하여 事業部型 企業組織이나 새로운 企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게 된다. 마찬가지 로 企業集團에서 습숙된 인력이 외부로 확산 되어 독립할 경우 대부분 中小規模인 새로운 企業이 자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된다.

企業集團은 革新과 經濟機會에 대한 敏感性을 실제의 投資와 生產決定으로 변환시키기위하여 필요한 資本・技術 및 經營資源을 좀더 용이하게 조달하고 희소한 企業人能力을經濟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企業集團은 새로운 市場機會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集團內에 축적된 각종의 剩餘能力을 신축적으로 전용함으로써 추가적인 資源利用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資本形成을 증대시켜 經濟의 效率的 成長에 기여한다.

나. 否定的 側面

企業集團의 이점은 다른 企業들과의 對立的 關係에서는 否定的 效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예로서 企業集團에 의한 垂直結合 등 市場의 內部化는 企業集團으로서는 內部效率性을 중 진할 수 있겠지만 企業集團을 需要者로 하는

¹⁸⁾ 共同效果는 경제학적 개념인 範圍의 經濟(economies of scope)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李奎億 외(1988) 참조.

企業들에 대하여는 市場이 縮小 내지 封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 市場內에서 最小效率規模를 달성할 수 있는 企業의 數는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어떠한 전제하에서든 社會厚生函數를 설정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것의 厚生效果를 계산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市場에서 배제되는 企業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분배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私的 效率性의 증진이 企業의 利潤增大에만 기여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企業集團은 製品市場뿐만 아니라 要素市場 에서 대부분의 獨立企業에 비하여 우월한 交 涉力 내지 市場位置를 보유할 수 있는데 그것 이 반드시 실질적 요인에 입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컨대 自己資本基準의 與信管 理體制에서 相互出資 및 系列企業間 出資로 연결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은 實質的 規模가 같은 여타 獨立企業보다 受信面에서 유리하 다. 비록 相互出資가 없다고 하더라도 企業集 團이 총체적으로 金融機關과 유지하는 오랜 去來關係 때문에 그 系列企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信用度를 얻게 된다. 또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들이 집단으로서 新規人力을 채용하 여 내부적으로 분배한다면 각각의 系列企業은 獨立企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우수인력을 흡 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勞 動市場 및 中小企業의 脆弱性 때문에 賃金이 라는 價格의 自動調節作用을 통하여 해소되지 않는다. 企業集團의 廣告 및 其他 販賣促進活 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規模의 經濟性 이외에 消費者에게 주는 이미지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이 獨立企業에 비하여 消費者 購買를 유인하기가 쉽다.

企業集團의 經營特性은 일반적으로 擴張追 求나 危險分散의 동기에 따른 多邊化에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기도 하나 때때로 실체적인 效率性의 이점이 없이 中小企業型 市場에 참여하여 競 爭을 저하시키거나 다른 競爭的 中小企業을 우세한 資本力을 통하여 도태시킬 수도 있다. 물론 企業集團이 效率性面에서 약간의 우위라 도 갖는다고 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市場封鎖(market foreclosure)·價格壓搾(price squeeze)·交互去來 (reciprocal dealing)·塹濠效果(entrenchment effect) · 横的補助(cross subsidization) · 相互 自制(mutual forbearance)·潜在的競爭(potential competition)의 排除 등 企業集團의 특유 한 시장행동으로 競爭을 저해하고 공정한 去 來秩序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19).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多邊化過程에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間에 資本的 結合關係가 발생한 위에 外部金融에 의한 무리한 企業擴張으로 財務構造가 脆弱하게 되어 소수 系列企業의 倒產이 企業集團 전체의 連鎖的 倒產을 유발함으로써 이로 인한經濟的・社會的 副作用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救濟金融을 제공하게 되는 등 退去障壁(exit barrier)을 구성할수 있다²⁰⁾.

최근에 특히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로서 企 業集團에서의 賃金交涉의 경우에 獨立企業과 달리 系列企業 중에서 가장 높은 賃金水準을

¹⁹⁾ 이와 같이 企業集團에 특유한 제반 競爭制限 및 不公正去來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李奎億 외 (1988) 참조.

²⁰⁾ 李奎億 외(1988).

標準으로 하거나 企業集團全體를 대상으로 賃金水準을 결정하려는 雨傘效果(umbrella effect)의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企業의 獨立的 採算性과 관계없이 賃金이 결정되는 체제하에서는 系列企業의 개별적인 合理化는 물론 企業集團 전체로서의 內部構造調整을 어렵게 할 것이다.

企業集團이 갖고 있는 좀더 구조적인 문제는 所有集中에 의한 것이다. 企業集團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企業公開의 부진과 企業間 株式相互保有로 所有의 分散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企業集團에 있어서 富의偏在와 世襲이 초래된다. 아울러 集團全體의經營方針 및 系列企業의 市場戰略이 기본적으로 1인의 統制下에 있으면 企業集團에 관료적성격을 부여하게 되어 企業集團의 規模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組織管理上 規模의 不經濟가 나타나 오히려 共同效果에 따른 이점을 능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企業集團이 갖는 否定的 效果는 근본적으로 위에서 검토한 바 있듯이 經濟主體間의 經濟的 機會의 不均等과 아울러 所有集中과 企業集團의 成長過程에 대한 평가에기인한다. 즉 대부분의 企業集團은 政府의 庇護 내지 誘引 아래 國民經濟의 발전에 좀더크게 기여하지 않고 勤勞者·一般消費者 및中小企業에 不利益을 초래하면서 外債・銀行融資 등 他人資本을 이용하여 손쉽게 獨占利潤을 획득하는 일면 이를 不動產 등 非生產的部門에 투자함과 아울러 政府의 政策을 私益에 부합하도록 유도하여 왔다는 인식이 國民一般에 팽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러한 否定的 認識은 그것의 타당성여부에 관계없이 社會的 緊張感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經濟體制나 政治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야기하고 經濟倫理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파생시킬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企業集團이 갖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영역을 벗어난 政治・社會的 次元의 문제로 되어 있으며 그만큼 個人的 價值判斷과客觀的 事實이 혼재하여 있고 이것이 經濟力集中對策의 方向設定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볼수 있다.

IV. 日本의 財閥과 企業集團

1. 戰前 日本의 財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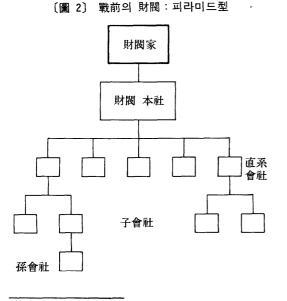
1945년까지 日本에서 支配的 資本으로 군림하였던 財閥의 역사는 상당히 길어 三井・住友 등은 300년까지 소급된다. 이들은 明治維新이후 새롭게 등장한 三菱・安田・古河 등과함께 당초「政商」으로서 明治政府와 결탁하여 官業拂下 등을 통하여 확대되었는데 財閥로서의 형태를 갖춘 것은 第1次大戰頃이었다.이 단계에서 三井・三菱은 生產部門과 流通部門으로부터 多邊化를 전개하고 산하의 直系事業을 株式會社로 개조・독립시켜 이들을 통할하는 持株會社를 설립하였다²¹⁾.

財閥은 政商的 存在로 커지게 됨에 따라 정 치에 간섭하게 된다. 특히 소위「滿州事變」 이후 정치의 실권이 政黨에서 軍部로 이전되 면서 巨大財閥과 軍部는 일체화되고 日本經濟 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들의 특

²¹⁾ 日本의 財閥과 企業集團에 관한 문헌은 방대하 나 최근의 저술로서 奧村(1987)을 들 수 있다.

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巨大財閥은 소수의 同族의 獨占的 支配 下에서 근대적인 資本主義的 經營에는 적합하 지 않는 봉건적인 기풍과 방침하에서 운영되 었다.
- ② 財閥은 財閥本社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 미드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그 事業支配의 형태는 持株支配에 의한 통제였다. 이것은 우선財閥同族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財閥本社를 만들고 本社는 直系會社, 直系會社는 子會社, 子會社는 傍系會社(孫會社)를 支配하는 형태를 취하였다(圖 2).
- ③ 財閥은 대부분의 사업분야에 진출하였는데 財閥企業이 지배적인 사업분야에서는 다른 企業은 그 지배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限界企 業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한 自由 競爭의 길이 봉쇄되었다.
- ④ 巨大財閥은 產業部門만이 아니라 金融部 門도 지배하였다. 이들은 모두 銀行・信託會



22) 日本公正取引委員會(1977).

社・保險會社 등의 金融機關을 소유하고 이를 통하여 資金을 흡수하고 産業에 대한 投融資 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企業支配의 주요한 수단으로 하였다.

2. 終戰直後 日本의 財閥解體

終戦後 財閥解體時에 美國의「財閥調査委員 會」는 戰前財閥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 였다. "財閥의 弊害를 넓은 시야에서 볼 때 產 業支配權의 集中은 勞資間의 半封建的 關係를 존속시켜 勞賃을 인하하고 勞動組合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또한 獨立的 企業家의 創業을 방 해하고 中產層의 발흥을 저지하였으며 中產層 이 없기 때문에 個人이 독립할 수 있는 經濟 的 基盤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軍部에 대항하는 세력도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軍事的 意圖에 반대하는 民主主義的・人道主義的인 國民感情의 발전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이 러한 特權的 財閥支配下에서 低賃金과 利潤集 積은 國內市場을 험소하게 하여 商品輸出의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日本을 帝國主義的 戰爭으로 치닫게 하였다"22) 日本을 점령한 美國政府는 "財閥이 존속하고 있는 한 日本은 財閥의 日本"일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財閥解 體를 단행하였다.

1945년 9월 美國政府는 日本經濟의 管理方針을 經濟의 非軍事化・經濟의 民主化・平和經濟의 유지로 대별하고 이어 11월에 經濟民主化를 農地改革,勞動組合育成法의 제정,產業民主化政策의 세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이중에서 產業民主化政策은 財閥解體,經濟力集中排除,私的統制團體의 除去에 의하여 중래의 競爭制限的 制度를 배제하기 위한 一時的

措置와「獨占禁止法」(1947)의 제정에 의한 장 래의 競爭政策을 정립하기 위한 恒久的 措置 로 구분하였다.

財閥解體에 대하여만 본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① 持株會社의 解體 ② 財閥家族의 企業支配力排除 ③ 株式所有의 分散化 ④經濟力集中排除의 네가지로 대별된다.

財閥解體를 위하여는 우선 財閥資產을 동결 하고 3차에 걸쳐 財閥本社 내지 事業持株會社 로 인정된 事業會社 83사와 財閥家族 56인의 株式을 持株會社整理委員會가 公開處分하였 다. 처분에 있어서는 特殊處分(從業員, 緣故 者)과 一般處分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우선하 여 매각하였다. 또한 財閥再編을 막기 위하여 前所有者인 財閥一族 및 發行畢株式의 1% 이 상의 所有者에게는 매각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株式所有를 유대로 하는 財閥 企業의 結合은 절단되었다. 또한 財閥의 중추 부를 이루고 있던 持株會社 42사 중 附帶事業 을 갖지 않은 純粹持株會社 16사는 單獨解散 되고 事業部門을 갖고 있던 26개의 持株會社 는 第二會社를 설립하여 해산함으로써 三井本 社・三菱本社・住友本社・安田保善社 위시 한 財閥統合의 중심부가 해체되었다. 財閥家 族의 企業支配力排除에 있어서는 10大 財閥의 家族 56명이 財閥家族으로서 지정되어 그들이 소유하는 有價證券은 持株會社整理委員會가 양수하고 아울러 財閥關係會社의 任員으로부 터 추방되어 當該企業에 재취직하는 것이 금 지되었다. 또한 財閥指定時 10大財閥家族과 同一戶籍에 있던 자(財閥同籍者)와 主要 財閥

株式所有의 分散化를 위하여 持株會社整理 委員會가 양수한 株式은 財閥家族과 持株會社 가 소유하는 주식을 위시하여 獨占禁止法에 의한 要處分株式 등 1946년말 日本의 株式會 社의 拂入資本金總額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低所得과 食糧難 등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방출된 株式을 소화할 기반이 약하여 從業員名義로 된 것도 실제로는 會社의 自社株保有나 原所有者로 환류된 것도 상당히 있어 "株式所有의 分散이라기보다도 株式所有의 混亂"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²³⁾.

또한 會社間 結合關係를 단절하기 위하여 制限會社(指定會社), 그 子會社(從屬會社) 및 孫會社(關係會社), 이들의 承繼會社(指定會社 등의 第2會社, 營業의 주요부분을 讓受・賃借 하고 있는 會社) 등 2,843사에 대하여 當該會社 및 그 任職員의 他會社의 株式 또는 社債의 취득과 當該會社 任職員의 他會社任員兼任을 금지하였으며 특히 三井・三菱・住友의 각持株會社의 商號・商標를 각각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制限會社・從屬會社・關繼會社(三井系 346사, 三菱系 205사, 住友系 160사)에 대하여 그 商號・商標의 사용을 금지하였다²4).

財閥解體는 財閥本社를 해체하고 財閥企業 集團의 資本的・人的 結合을 절단한 것에 불 과하므로 財閥解體後 개개의 單獨企業이 市場

會社의 任員으로 그 任免이 當該財閥의 支配下에 있으며 또한 當該財閥의 利益을 대표하여 當該會社의 중요한 업무에 참가하고 있던자(財閥關係任員) 3,668명이 1,600여개의 財閥關係企業으로부터 추방되고 再就職이 금지되었다.

²³⁾ 御園生(1987).

²⁴⁾ 이 조치는 1957년 7월에 해당기업들의 國際的 信認度를 높인다는 명목하에 취소되었다.

支配力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巨大企業의 분할을 시도하여 당초 持株會社整 理委員會는 分割對象으로 325사(1차 鑛工業 257사, 2차 流通・서비스部門 68사)를 2차에 걸쳐 지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美・蘇간의 대 립이 첨예화된 國際情勢變化를 배경으로 美國 의 對日占領方針이 日本經濟民主化政策의 철 저한 수행으로부터 日本을 금후 東아시아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全體主義戰爭의 위협에 대한 방벽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集中排除의 원칙은 한 會 社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서 競爭을 제한하 거나 또는 다른 會社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集中排除指定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단지 관련성이 없는 事業部門을 소 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會社에 과도하 게 經濟力이 집중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되었다. 이 原則은 複 合結合에 대한 放任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指定取消가 계 속되어 실질적으로 分割再編成의 대상으로 된 것은 11사, 일부의 工場處分 및 子會社의 株 式處分만을 수행한 것이 7사 등 최종대상은 18사에 불과하였다.

3. 財閥解體의 成果

財閥解體·集中排除 등의 過渡的 獨占禁止 政策은 중도에 占領政策의 전환에 의해 다소 미진한 상태로 끝났지만 戰後 日本經濟의 復 興과 成長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다. 우선 持株會社를 중심으로 하는 巨 大財閥의 解體는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戰前의 財閥에서 볼 수 있던 극단적 인 閉鎖性 특히 本社에 의한 系列企業株式의 過半數所有와 財閥家族의 支配는 經濟發展과 함께 점차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戰前에 所得分布가 貧富의 兩極에 편재되었으므로 대 부분의 일반대중은 株式投資의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하였으며 財閥系企業에서 볼 수 있는 所有와 支配의 閉鎖性은 이러한 경제적인 여 건하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昭和時代에 들어서 財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강화되어「財閥轉向」이라고 불리운 財閥系企業의 株式의 一部公開와 經營者支配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또한 戰時經濟下에서는 財閥도 軍需生產部門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興業銀行 등의 特殊銀行이나 財閥系以外의 銀行으로부터의 借入도 많게 되어 資金調達面에서의 自己金融性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財閥의 閉鎖性은 점차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戰後의 財閥解體는 말하자면 이 과정을 촉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財閥解體의 특기할 효과는 財閥家族과 같은 世襲的인 所有·經營者와 낡은 經營者의 추방 에 의해 經營者層이 일시에 젊게 되었다는 점 이다. 株式所有와 유리된 專門經營者層의 진 출은 戰後의 企業經營에 競爭的 體質과 積極 性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종래의 財閥本社에 의한 支配統制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意思 決定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후의 高度成長 을 주도한 民間設備投資의 增加는 財閥解體에 의한 經營者層의 年齡低下와 競爭的 環境의 정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財閥의 解體는 本社에 集中된 株式 所有와 中央執權的인 支配體制를 타파하고 財 閥家族支配로부터 經營者支配로의 탈피를 일 거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財閥解體의 의의는 財閥本社를 해산하고 財 閥家族의 企業支配力을 배제함으로써 위로부 터의 피라미드型의 支配를 단절한 것에 있지 만 財閥家族의 지배에서 해방된 財閥傘下의 企業은 피라미드의 頂點은 없어졌으나 橫的으 로 결합하게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큰 요 인으로서 銀行에는 어떠한 解體措置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銀行은 持株會 社로도 지정되지 않았고 集中排除의 대상으로 도 되지 않았다. 聯合軍은 西獨에서와 달리 日本에서는 銀行에 대하여 集中排除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銀行主導下에서 財閥이 企業 集團으로서 再編成될 필연성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財閥企業은 그후 株式相互保有나 融 資를 통한 企業系列로서 재편성되어 금일의 企業集團이라는 형태로서 부활하였다. 즉 財 閥解體의 효과는 戰前의 財閥에서 볼 수 있던 낡은 형태와 기능을 좀더 近代化하고 合理化 하여 戰前의 閉鎖型 財閥에서 戰後의 開放型 企業集團으로 재편성하는 계기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의 公正取引委員會는 獨占禁止政策의성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戰後初期 도입된 일련의 獨占禁止政策은 企業의 행동만이 아니라 產業構造·市場構造 자체를 競爭的인 것으로 변혁하여 그 결과 日本의 經濟體質을 본질적으로 競爭的인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그 효과는 1950년대 후반부터 광범하게 나타나게 되고 다른 經濟政策의 운영과 어울려 日本經濟의 발전의 기본이 되었다.

또한 이 競爭的 體質은 그후의 競爭制限的인 產業政策運營에 의해서도 그다지 변질되지 않 았다. 競爭體制의 도입이 구체적으로는 「소 니」나 本田技研 등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企 業의 탄생과 성장, 鐵鋼·石油化學·電子·自 動車 등의 부문에서 볼 수 있는 활발한 設備 投資·技術革新 내지 技術導入으로 결실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戰前부터의 零細企業 과 大企業間의 소위 二重構造의 완화, 農地改 革이나 勞動立法 등의 성과와도 관련되는데 국민의 所得水準의 平準化와 이에 수반하는 풍요한 國內市場의 형성, 企業經營者의 自主 性과 責任感의 증가 등의 면에서 그후의 日本 經濟에 대하여 광범하고 동적인 영향을 미쳤 다"25).

4. 戰後 日本의 企業集團

企業集團은 戰前의 財閥이 戰後의 財閥解體에 의해 변용・재편된 형태로서 발생한 三菱・三井・住友의 舊三大財閥系와 戰前의 二・三流財閥이나 新興콘체론의 산하에 있던 企業 혹은 財閥色이 희박하였던 企業이 戰後에 大銀行을 중심으로 집합하여 형성한 芙蓉・第一勸銀・三和의 三大新興企業集團 등 소위 金融系 6大企業集團이 전형이며 新日鐵・토요타・日產・日立 등 產業系와 東急・西武 등 流通서비스系의 獨立系 企業集團이 이들보다 늦게형성되었다. 그러므로 企業集團은 共同效果를 거두려는 단순한 機能集團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戰前의 財閥의 歷史的 延長線上에서 이해되어야 할 측면도 갖고 있다.

財閥解體에 의해 일단 자립한 大企業群은 그 사업활동이 궤도에 올라감에 따라 두가지

²⁵⁾ 日本公正取引委員會(1977).

국면에서의 企業結合을 도모하였다. 첫째는 系列化로 大企業이 中小企業과 縱的 支配關係 를 맺는 것이며, 둘째는 大企業間의 橫的 結 合으로 財閥本社나 財閥家族으로부터 방출된 株式이 초기의 혼란상태를 거친 뒤 곧 大企業 間에 相互保有되게 되었다. 이 橫的 結合은 財閥傘下에 있었던 大企業의 經營者에 의한 社長會의 결성으로 진전하였다²⁶⁾. 한편 戰後 의 大企業의 재건 중에서 가장 큰 애로는 資 金不足으로 이 때문에 銀行의 역할이 매우 크 게 되었다. 戰後의 企業集團의 재건은 銀行主 導의 형태를 갖고 大銀行에 의한 系列融資가 진행되었다. 戰前에는 財閥本社하에 銀行이 있고 財閥本社의 지시하에 자금을 공급하였으 나 戰後에는 銀行과 企業이 직접 연결되어 그 만큼 銀行의 역할이 크게 되었다.

1950년대초에 戰前型의 鑛業・輕工業中心의產業構造가 새로운 技術의 도입으로 크게 변화하려는 초기단계에서 企業集團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 體制가 1950년대에는 아직 과도적인 것으로 새로운 產業構造下에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1960년전후에 日本의 產業構造에 급격한 변화를 초대한 것은 技術革新으로 合成纖維・石油化學・家電製品・乘用車 등의 新產業이 발흥하여 여러 분야에서 新技術이 外國으로부터 도입되고 이것에 의해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급속도로 民間設備投資가 증대되었다. 이러한產業構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舊型의產業構造에 기반을 두었던 企業集團의 내부구성이 재편되었다. 우선 종전의 體制 속에서

中心的 產業이었던 石炭·非鐵金屬 등의 鑛業이나 輕工業分野의 企業의 지위가 저하하고 그 대신 石油化學·電氣機械 등의 新興產業의 企業의 지위가 높아졌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企業集團보다도 獨立巨大企業의 힘이 강화되었다.

1965년 不況 이후의 日本經濟는 다시 高度 成長을 하지만 産業構造가 重化學工業中心이 라는 점에서 第1次 高度成長의 연속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産業構造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고 기존의 구조하에서의 大型化・시스템化가 이 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企業集團은 第 1次 高度成長期에 流動化된 内部編成을 정비하 고 獨立巨大企業群에 대하여도 다시 주도권을 잡아 갔다. 또한 그때까지 企業集團化를 지향 하면서 단순한 銀行融資系列로서의 색채밖에 없었던 芙蓉·第一勸銀·三和의 세 集團이 企 業集團으로서의 모습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즉 企業集團은 1960년 전후의 流動化와 弛緩 을 거친 후 좀더 높은 차원에서 한층 큰 존재 로 되었다. 당시에는 大型合併이 속출하였는 데 이것들은 모두 企業集團體制의 강화와 그 것에 촉발되어 일어난 것이었다. 이와 함꼐 중요한 것은 企業引受 등 企業集團의 外延的 擴張으로 이것은 企業集團會員社의 大企業에 의한 縱的 系列化로서도 진전되었다.

資本自由化는 이러한 產業再編成을 더욱 촉진하였다. 1967년 이래 수차에 걸쳐 취해진 資本自由化措置는 日本의 大企業經營者에 있어서는 外國資本이 단지 日本에 자유로이 진출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日本의 企業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政府는 資本自由化를 「世界의 大勢」로서 진전시키는 한편 資本自由化에 대항하는 政策을 전개하는

²⁶⁾ 社長會의 내역은 아래의 本章 5節에 소개되어 있다.

모순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모순된 政策은 大企業으로 하여금 產業再編成을 더욱 진전시키도록 하여 企業集團化를 촉진하게 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外國資本에 의한 引受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大企業의 株式相互 保有를 확대시켜 이에 따라 企業集團內의 株 式相互保有率이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1960년 대말에 진행된 企業集團體制의 정비에 의해 그후 資本輸出이나 국내의 대형프로젝트 등 個別企業만으로는 할 수 없는 과제가 발생함 에 따라 企業集團으로서 이에 대응하게 되었 다. 따라서 產業의 시스템化는 단순한 企業의 機能的 시스템化가 아니라 資本別로 企業集團 單位에서 시스템化하고 大型프로젝트를 수행 한다는 형태로 되어 企業集團體制를 일층 진 전시키게 되었다.

企業集團이 產業構造의 변화과정에 유연하 게 적응할 수 없다면 효율적인 企業結合의 체 제로서 잔존할 수 없다. 企業集團의 형성을 고찰하는 경우에 그 형태와 기능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產業構造的 視角이 중요하다. 戰前 의 財閥이 商業資本的 機能을 가졌던 것은 纖 維工業을 중심으로 輕工業에 편중된 產業構造 속에서 유효한 獨占的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流通過程에서의 商業資本的 機能과 操作 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戰後 企業集團이 형성된 經濟的 原因은 重化學工業 을 중심으로 하는 產業構造高度化의 과정에 91 付付 銀行・商社・重化學工業・加工型産業 등을 잇는 自己完結的이며 多邊的인 조직을 보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거액의 資本을 조달 하고 市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 이었다.

이상에서 역사적으로 본 企業集團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企業集團內의 大企業이 각각 有機的・多 角的으로 株式을 相互保有하여 集團全體로서 보면 圓環狀의 株式相互保有를 하고 있다(圖 3).
- ② 企業集團의 中核會員社社長들에 의한 社長會가 결성되어 있다. 社長會는 株式의 相互保有에 입각한 것으로 각 社長은 自社가 소유하는 集團內 他會員社의 株式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社長會는 사실상 大株主會의 역할을수행한다. 社長會는 情報・連絡機能外에 相互支配機構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 ③ 企業集團單位로 여러 분야에 걸쳐 會員 社에 의한 共同投資會社가 설립되므로 이것에 의해 運命共同體로서의 利害關係가 생긴다.
- ④ 大都市銀行이 企業集團의 大株主로서 相互保有體系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한 集團內의 金融機關으로서는 信託銀行・生命保險會社・損害保險會社 등이 있는데 大都市銀行은

[圖 3] 戰後의 企業集團:圓環狀

〈表 I4〉 社長會의 結成時期 및 會員社數(1988.9.30)

	三 井	三菱	住 友	芙 蓉	三 和	第一勸銀
名 稱	二木會	三菱金曜會	白水會	芙蓉會	三水會	三金會
結成時	1961.10	1955년경	51~52년경	1966. 1	1967. 2	1978. 1
會員社	24 (20)	29 (25)	20 (16)	20 (25)	44 (41)	47 (41)

註:() 안의 企業數는 金融業을 제외한 경우의 企業數.

集團內 他社에 대한 자신과 이들 金融機關의 系列融資의 幹事役을 하고 있다.

⑤ 企業集團은 또 하나의 중심으로서 總合 商社를 갖고 있다. 集團內에서 돈의 去來를 맡고 있는 것이 都市銀行이라면 물건의 去來 를 맡고 있는 것이 總合商社이다.

⑥ 企業集團은 銀行・總合商社를 중핵으로 하면서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많은 產業分野 에 그 會員社를 배치하고 있어 단순한 複合企 業體가 아니라 포괄적인 產業體系를 갖고 있 다.

財閥과 企業集團과의 차이점으로서는 첫째 양자의 組織最上部에 있어서의 支配形態가 다르다. 財閥은 持株會社에 의한 垂直的인 一方的 所有構造를 갖지만 企業集團에 있어서는 企業集團會員社에 의한 相互保有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所有形態의 변화에 수반하여 支配形態도 財閥의 위로부터의 一方的인 支配에 대하여 企業集團은 社長會會員社에 의한 相互支配體系로 변화하였다. 둘째로 企業集團에 있어서는 財閥에서와 같은 家族所有에 의한 家族支配는 소멸하고 그 대신에 經營者가 法人所有를 배경으로 하여 社長會를 결성하고

있다. 셋째로 財閥과 企業集團의 內部編成에 차이가 있어 특히 企業集團에 있어서는 銀行의 힘이 강하게 되었다. 이것은 戰後 企業의 過剩貸出에 대응한 것이나 戰前의 財閥本社가 갖고 있던 金融力을 企業集團內의 銀行이 대신하는 것으로 되었다. 결론적으로 財閥과 企業集團間의 기본적인 차이는 所有構造에 있으며 이것이 經濟力集中이 갖는 의미가 戰前과 戰後의 日本에 있어 다르게 되는 근본원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對策을 강구함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5. 日本의 6大企業集團의 現況27)

6大企業集團은 여러 업종에 속하는 각 會員 社가 獨立性을 가지면서 社長會를 통하여 연 한 結合關係를 형성하고 있다(表 14). 結合의 요소에는 株式所有에 의한 資本的 關係,任員 의 兼任・派遣에 의한 人的 關係와 계속적인 去來・融資・技術提携 등에 의한 契約的 關係 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제관계를 1987년 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가. 資本 및 人的 關係

먼저 資本的 關係에 있어서 會員社間의 株

²⁷⁾ 이하의 통계자료는 日本公正取引委員會(1989)에 서 발췌한 것이다.

式所有를 통한 結合度를 나타내는 平均持株率의 6大企業集團平均은 점감하여 1987년에 1.52%에 불과하다²⁸⁾. 會員社間의 株式所有關係의 넓이를 나타내는 株式所有關係頻度는 舊財閥系集團의 平均이 73.45%로 銀行系集團의 平均 34.16% 보다 높다²⁹⁾. 6大企業集團의 平均은 1981년의 50.6%에서 53.81%로 상승하였다. 會員社와 企業集團과의 結合의 정도를 나타내는 株式相互保有率은 1987년에 舊財閥系集團平均이 28.93%로서 銀行系集團平均 16.36%보다 상당히 높아 株式所有關係頻度에서와 같이 舊財閥系集團의 結合이 강하다³⁰⁾. 6大企業集團의 株式相互保有率은 최근 저하경항을 보여 1987년에는 22.65%로 되었다.

平均持株率이나 株式相互保有率의 저하는

1977년의 獨占禁止法改正으로 保險會社를 제외한 金融機關의 株式所有上限이 10%에서 5%로 인하됨에 따른 金融機關所有株式의 처분과 株式所有總額制限의 도입,企業集團과의結合이 약한 회사의 탄퇴,轉換社債의 발행에 의한 활발한 增資에 대응하지 못한 企業集團會員社에 의한 株式取得의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企業集團의 結合은약간 약화되었다고 보이나 株式所有關係頻度가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보면 企業集團內에서의 株式所有를 통한 관계는 다소 넓어지는 경향에 있다고 생각된다.

企業集團의 人的 結合關係를 보면 派遣會社 比率은 1987년에 67.69%인데 總合商社로부터 의 派遣會社比率은 9.99%로 銀行의 57.79% 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그나마 계속하여 저 하하는 경향에 있다³¹⁾. 派遣任員比率도 저하 추세에 있어 1987년에는 平均 7.13%(2.0인) 로 되었다³²⁾. 그러나 銀行으로부터의 派遣任 員比率은 1987년에 3.92%로 대체로 거의 일 정한 比率을 유지하면서 다소 증가한 반면 總 合商社로부터의 派遣任員比率은 銀行보다 상 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계속 저하하여 1987년 에는 0.44%로 되었다.

나. 契約的 關係

企業集團의 契約的 結合要素로서 會員社間 과의 金融去來狀況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의 資金調達方法으로서는 借入金 이외에 도 社債 및 株式發行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直接金融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借入金依存率은 1981년의 17.52%에서 1987년에 17.32%로 저하하였

²⁸⁾ 平均持株率=(會員各社의 同一企業集團에 의한 持株率의 合計/同一企業集團내에 실제로 성립되 어 있는 株式所有關係의 數) × 100. 企業集團平均=各企業集團의 平均持株率의 증

企業集團平均=各企業集團의 平均持株率의 合計/企業集團數.

²⁹⁾ 株式所有關係頻度=(同一企業集團內에 실제로 성립되어 있는 株式所有關係의 數/同一企業集團 內에 성립가능한 株式所有關係의 數) × 100. 企業集團平均=各企業集團의 株式所有關係頻度 의 合計.

³⁰⁾ 株式相互保有率=(各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各社 의 發行株式總數中 他會員社 所有株式數의 占有 率의 合計/各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社數)× 100.

企業集團平均=各企業集團內 株式相互保有率의 合計/企業集團의 數.

³¹⁾ 派遣會社比率=(同一企業集團의 會員社인 銀行・ 商社로부터 任員을 派遣받고 있는 企業의 數/企 業集團會員社의 數)×100。 企業集團平均=各企業集團의 派遣會社比率의 合

企業集團平均=各企業集團의 派遣會社比率의 合計/企業集團의 數.

³²⁾ 派遣任員比率=(同一企業集團의 會員社인 銀行・ 商社로부터 派遣되어 있는 任員數/企業集團會員 社의 任員總數)×100。

企業集團平均=各企業集團의 派遣任員比率의 合計/企業集團의 數.

고 내용면에서도 長期·短期借入金 모두 저하경향을 보이고 있어 借入金의 면에서의 企業集團의 結合은 약화되었다³³⁾. 그리고 金融機關에 대한 借入金依存率은 대체로 銀行系企業集團보다 舊財閥系企業集團이 높아 1987년의 平均이 각각 21.84%와 14.88%로 되었다. 그리고 貸出金依存率을 보면 6大企業集團의 平均이 1981년의 7.26%로부터 1987년의 3.52%로 현저하게 저하여였다³⁴⁾. 이것은 產業構造의 전환에 따라 資金需要가 非製造業分野 내지 中小企業分野로 이행하고 있어 金融機關의貸出先으로서 企業集團會員社 이외의 會社가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銀行에 의한 企業集團의 結合 度는 平均持株率・借入金依存度・貸出金依存 度의 관점에서는 약화되었으나 派遣任員比率 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또한 銀行은 社債의 수탁이나 外債의 발행, 각종의 情報提供이나 相談業務를 하고 있어 계속하여 會員企業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많은 企業集團에 있어 서 銀行이 事務局으로 되어 企業集團의 각종 회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銀行이 企業 集團 속에서 발휘하고 있는 기능은 변하고 있 지만 여전히 企業集團의 中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總合商社의 경우는 企業集團會員企業에 대한 株式所有나 任員派 遣의 比率이 銀行보다 상당히 작고 그것도 약 간 저하하는 경향에 있다. 이는 總合商社의 金融機能 저하, 原燃料 등의 賣出額 감소, 製 品輸入의 중대 등에 의해 내외의 去來에서 차지하는 總合商社의 비중이 저하한 것에 기인한다.

다. 6大企業集團의 經濟的 比重

1987년에 6大企業集團의 社長會會員社數는 銀行・保險會社 등 金融業部門의 企業을 제하 면 163사로서 金融業을 제한 全法人企業 (1,929,754사)에서 점하는 比率은 0.0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163사가 金融業을 제 한 全法人企業에 있어서 總資產의 13.28%, 賣出額의 14.68, 資本金의 15.19%를 점유하 고 있는데 1981년에 비해 企業集團會員社의 總資產과 賣出額의 占有率은 약간 저하하였다 (表 15). 이것은 주로 企業集團會員社에 소위 重厚長大型 產業을 위시하여 製造業을 영위하 는 것이 많고 日本經濟의 產業構造의 전환에 따라 成長率이 높은 非製造業部門의 企業이 적은 것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賣出額 에서 6大企業集團이 차지하는 比率이 저하한 **것은 6大企業集團 중에 비중이 높은 總合商社** 의 賣出額이 円高・低油價 등에 의해 그다지 신장하지 않었던 것이 큰 요인으로 되어 있 다.

6大企業集團의 金融業을 제한 163사에 이들 企業이 出資하고 있는 子會社(50%를 초과하 여 出資하고 있는 會社) 및 關係會社(10%이 상 50%이하를 出資하고 있는 會社)를 더하면 합계는 11,998사로 金融業을 제한 全法人企業 數의 0.622%이다. 그러나 이들 企業이 갖는 占有率은 總資產의 26.95%, 資本金의 32.3%, 賣出額의 25.20%로서 1981년에 비하 여 總資產과 資本金의 占有率은 증가하고 賣 出額의 占有率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6大企

³³⁾ 借入金依存率=(同一企業集團內 金融機關으로부 터의 借入金/企業集團會員社의 借入金의 合 計)×100.

³⁴⁾ 貸出金依存率=(企業集團内 金融機關의 同一企 業集團會員社에의 貸出金/企業集團內 金融機關 의 貸出金 總額)×100.

〈表 I5〉 6 大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점하는 地位 (社長會會員社中 非金融業企業의 경우)

(단위:%)

		資 本 金	總 資 產	賣 出 額
6大企業集團	1981	14.57	15.10	15.78
合 計	1987	15.19	13.28	14.68
舊財閥系	1981	6.37	6.67	7.38
企業集團 小 計	1987	6.68	5.63	6.46
銀行系	1981	8.20	8.43	8.40
企業集團 小 計	1987	8.51	7.65	8.22
非金融法人	.企業	100.0	100.0	100.0

註:複數의 企業集團에 속한 企業에 대하여는 小計欄에서 調整했음.

〈表 16〉 6 大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점하는 地位 (子會社・關係會社를 포함한 경우)

	企業數(개, %)	資本金(%)	總資產(%)	賣出額(%)
6 大企業集團	163(0.006)	15.19	13.28	14.68
社長會會員社	(157(0.009))	(14.57)	(15.10)	(15.78)
子會社	4,960(0.257)	3.86	4.21	3.82
	(4,271(0.249))	(3.48)	(2.05)	(3.55)
關係會社	6,875(0.356)	12.98	9.46	6.70
	(7,529(0.439))	(12.70)	(6.01)	(8.30)
計	11,998(0.622)	32.03	26.95	25.20
	(11,957(0.697))	(30.75)	(23.16)	(27.63)

註:1) 金融業을 포함하는 會社를 제외하였고 占有率의 算定對象은 非金融 全法人企業으로 하였음.

業集團은 企業集團會員企業으로 보면 약간 지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子會社 및 關係會社를 더하여 본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表 16).

6大企業集團의 각각의 會員社가 個別商品市 場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生產集中 度調査의 對象品目 450개 중 34.2%에 해당하는 154개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1~3위를 차지하는 品目數는 연 456개에 달한다. 제1위를 점하는 品目數의 業種別 分布狀況을 보면 非鐵金屬이 80%로 가장 높고 펄프·紙·紙加工品이 53.3%, 化學工業이 49.4%, 電氣機械

^{2) ()} 안은 1981년의 數值.

³⁾ 子會社・關係會社는 外國會社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重複調整을 하지 않았음.

器具 및 輸送用 機械器具가 각각 45%, 窯 業·土石製品이 36.8%, 一般機械器具가 34.9%의 순서이다.

여하간 6大企業集團이 日本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며 각각의 업종에 있어서 모두 유력한 企業이 企業集團會員社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 영향력은 계속하여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金融業을 제한 總資產上位 100社 중 6大企業集團의 會員社는 54社(舊財閥系 23社, 銀行系 31社)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資本金上位 100社(上場法人에국한) 중에서 6大企業集團의 會員社數는 舊財閥系 27社, 銀行系 33社로 計 60社에 달한다.

6. 企業集團의 變貌

이상과 같이 企業集團의 結合關係・株式相 互保有關係・融資關係와 관련시켜보면 各企業 集團의 株式相互保有比率은 대체로 1981년 이후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融資比率도 各集團 모두 현저하게 저하하여 최근의 金融 事情 및 企業의 自己金融型으로의 이행을 반 영하고 있다. 이미 都市銀行의 融資를 통한 系列化는 企業에 있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株式・融資를 통한 結 合關係의 이완이 금후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企業集團 특히 都市銀行과 總 合商社를 중심으로 한 金融系企業集團에 있어 서 產業構造의 변화와 金融市場의 構造變化의 과정에서 적어도 系列融資・株式相互保有比率 등의 結合關係는 별로 진척되지 않고 社長會 의 기능도 강화된 징후는 볼 수 없다. 오히려 獨立系 企業集團 중 產業構造의 知識集約化・ ME革命이라는 自動化의 진전, 新素材의 출현, 生命工學의 발전 등의 產業構造와 技術變革의 과정에서 日本電氣·富士通·소니 등을 중심으로 하는 新興企業集團이나 서비스產業 化라는 과정중에서의 私鐵그룹·流通그룹의 발전이 괄목하게 되었다. 금후 상당한 변화가생기지 않는 한 金融系企業集團의 이완과 獨立系企業集團의 신장이라는 경향이 변화하리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獨立系로 불리는 특정한 巨大企業을 중심으 로 하는 系列子會社・關係會社群에 의한 企業 集團에 있어서도 日立・新日鐵・토요타・日產 등 巨大產業資本이 조직하는 企業集團과 流 通・서비스系에 속하는 西武・東急・다이에 등의 企業集團에서는 그 構成會員企業의 業 態, 中心企業과의 業務上・技術上 關係 등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產業構造의 변화 특히 知識集約化라는 產業技術의 혁신과정에서 新 技術에 대응하기 위한 2次製品과 관련분야의 _ 企業組織 및 流通・서비스關聯企業의 組織化 를 통하여 독자의 企業集團을 만들었다는 점 과 특정한 巨大企業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型 또는 圓環型의 企業集團이라는 성격과 형 태는 獨立系企業集團에 공통되는 특색이다. 이들이 新技術・新分野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重化學工業化에 대응한 重厚長大型 인 金融系企業集團에 비해 좀더 현대적이고 기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產業構造의 知識集約化·ME革命이라는 產業構造의 변화를 고려하면 金融系企業集團 특히 舊財閥系의 경우와 같이 系列企業을 한정한 閉鎖型의 企業集團을 유지하는 것은 점차로 곤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 新技術의 개발이나 企業化에 관하여 同系企業集團

이외의 企業과 系列을 넘은 提携關係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企業集團은 앞으로 集團의 중축인 銀行・信託銀行・生命保險會社・損害保險會社는 남으면서 系列企業의 외곽에 있어서는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연한 開放型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日本의 企業集團은 그 始源的 生成過程에 따라 舊財閥系이건 銀行系이건 또 는 최근의 獨立系이건간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모두 產業構造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 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리면서 기능적으로 변 모하고 있다. 즉 日本의 企業集團은 경쟁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內部構成과 外延戰略을 변화 시키고 中小企業과의 관계를 신축적으로 적절 히 조정하면서 日本經濟에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日本의 財閥解體는 競爭促進을 통하여 日本 經濟의 飛躍的 成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결정 적인 產業組織政策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 다면 財閥解體로 생성된 企業集團이 經濟成長 過程에서 기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企業集團은 持株會社設立을 금지하고 企業結 合을 규제하는 「獨占禁止法」의 범주 안에서 戦前 財閥系企業間의「仲間」意識에 따라 集團 의 내부에서는 협조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集 團으로서 경쟁한다는 「內」와「外」를 구별하는 日本의 社會組織 傳統이 적응한 측면도 있지만 좀더 중요한 經濟的 動機로서는 利潤極大型 互惠去來・販路確保・價格安定・外部效果의 內 部化・去來費用 및 情報費用의 절沿・不確實 性의 저하・資金利用費用의 감소・雇傭安定 등 機能的 集團의 성격이 지적되고 있다35).

日本의 企業集團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共同效果를 누리면서 集團相互間에 치열히 競 爭함으로써 動態的인 效率性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結果를 가능하게 하였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獨占禁止法에 의해 戰前의 財閥에서와 같은 所有集中 및 이에 수반되는 經濟의 共同獨占化와 退嬰的 經營體制의 제거 이다. 企業集團間의 競爭은 각 企業의 競爭力 을 높여 國際市場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면 서 동시에 多數의 革新的 獨立企業의 출현도 초래하였다. 企業集團은 競爭力提高를 위하여 下請企業을 포함한 다수의 關聯會社와의 協力 關係를 발전시켜 최근에는 이것이 情報連結組 織型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결국 일본에 있어 서 역사적으로 財閥과 企業集團의 근본적인 차이는 所有의 個人集中 여부로 귀착되는 것 이다.

V. 結言:經濟力集中對策의 基調

1. 종래의 經濟力集中 抑制對策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緩和의 효과를 기대한 대책은 獨占規制法의 시행 이전에도 간 헐적으로 강구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의하나가 1974년의 5・29措置로서 적극적인 企業公開와 企業財務構造改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이 종료되었다. 다음으로 1980년의 9・27措置에서는 企業體質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에 會社整理制度의 악용방지,企業의 不動產所有의 제한,

³⁵⁾ 靑木 외(1986).

救濟金融의 최대한 억제, 與信管理機能의 강화등을 기하려 하였으나 역시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중단되었다. 그 밖에 大企業與信管理制度,企業集團에 의한 金融產業支配의 규제,企業公開의 촉진, 徵稅行政의 효율화, 中小企業의 보호・육성, 국내외로부터의 競爭의 도입 등 諸般施策이 각각 강도와 시점을 달리하여 시행되어 왔지만 각각의 성과가 다르며 더욱이 종합적 시각에서 각종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產業合理化措置를 통하여는 일부 企業集團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財閥問題를 법적 장치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시도는 獨占規制法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法律이 1980년에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第1條에 이 法律의 한가지 목적으로서 經濟力集中의 방지를 제시하였을 뿐 실체 규정에서는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獨占禁止手段만을 규정한 것에 그쳤으므로 複合結合을 핵으로 하는 企業集團의 규제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獨占規制法하에서의 企業集團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규제는 1986년의 1차개정과 이를 강화한 1989년의 2차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동법의 第8條에서는 持株會社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第9條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企業

集團의 系列會社間 相互出資를 금지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두가지 형태는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좀더 중요한 것은 間接相互出資를 통한 企業結습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第10조에서는 企業集團의 系列會社의 他會社出資總額을 會社純資產額의40%이내로 제한하였다³⁷⁾. 또한 第7條의5에서는 企業集團의 系列會社인 金融・保險會社에 대하여 취득・소유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87년 이래 이상과 같은 企業集團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면서 실제로 企業集團에 대한 出資制限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우선 猶豫期間이 경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經濟力集中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租稅・金融을 포함한・다른 政策과 制度도 동시에 동원되어야 한다. 특히 出資總額은 絕對額으로 규제되지 않고 出資率로 규제되므로 企業集團의 絕對的規模와 系列企業數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규정은 企業集團에속한 系列會社의 財務構造를 개선하고 株式分散을 다소 촉진하는 효과는 갖지만 企業間資本關係 등을 통한 所有集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2. 經濟力集中을 보는 視角

우리나라에서 經濟力集中이 갖는 構造的 特 徵을 獨・寡占的인 大規模 系列企業으로 구성 되는 企業集團이라는 조직과 그것의 多部門活動 및 所有集中이라고 하면 그 對策도 자연히

³⁶⁾ 실제로 民間所有의 純粹持株會社는 없으며 非金融會社間의 直接相互出資도 1984년의 商法改正으로 최초로 금지되기 전에도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獨占規制法의 1차개정시에는 이 규정에서 金融業 및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제외하였으나 2차개정시에 이를 삭제하였다.

³⁷⁾ 본조항의 대상도 獨占規制法의 2차개정시에 상기한 7조 3의 대상과 같도록 되었다.

이 세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經濟力集中對策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力集中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經濟力集中의 過程, 經濟力이 실제로 행사되는 樣態와程度, 전반적인 國家社會의 構造와 社會通念的인 價值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資本主義體制의 붕괴를 주장하는 社會主義 나 자유방임적인 自然組織論과 같은 국단적인 路線과 달리 資本主義의 본질을 살리면서 폐 해를 제거하려는 改良主義의 시각에서는 經濟 力集中을 체제문제로서 인식하되 그 構造的 原因을 분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 써 체제를 일층 견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 을 갖는다. 이것의 기본적 명제는 資本集中의 求心力과 所有分散의 遠心力을 적합하게 결합 함으로써 資本主義의 自己淨化機能과 生動力 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經濟力集中對策의 基調는 效率性과 衡平性이 相乘作用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企業集團이 부분적으로는 市 場與件에 最適反應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 면 원칙적으로 競爭의 동기와 이에 따른 效率 的 成果는 인정하면서 集中化에 수반되는 否 定的 效果만을 제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衡平의 문제는 우선 균등한 經濟的 機會와 經 濟行動의 公正性을 확보하여 접근하되 이것으 로써 불충분한 측면을 다른 政策手段으로 보 왕하여야 할 것이다. 衡平性을 높이면 각 經 濟主體에 대한 動機賦與・經濟主體間의 대등 하고 협조적인 관계의 함양 등을 통하여 다시 經濟全般에 걸친 效率性을 증진시킨다는 점에 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衡平性은 단 순한 物量的 再分配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政府를 포함한 모든 주체가 최소한의 經濟的 倫理性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企業集團의 系列企業間에 個人大株主나 企 業出資를 통한 資本的 連結이 소멸되고 각 기 업의 株式이 大衆分散된다면 企業集團은 해체 된다. 市場이 완전할수록 그리고 稅法이나 獨 占規制法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수록 기업간 의 連結關係를 통한 共同效果는 줄어들 것이 다. 여하간 특정한 경제활동을 市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組織內部에서 할 것인지 그리 고 독립한 기업들간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連 結關係를 맺을 것인지는 經濟與件에 대한 企 業의 合理的 選澤 또는 所有者들의 個人的 選 好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企業集團의 所有者 들이 世代交替될 때 相續者들간에 系列企業을 각각 전담할 수 있도록 所有權을 교환할 수도 있고 종래의 結合形態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企業集團은 항구적 조직은 아니다. 반면 經濟與件의 변화에 대응하여 範 圍와 强度는 다르지만 어떤 형태이든 企業集 團은 항상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經 濟的 合理性을 추구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企業集團은 그 규모와 능력으로 보아 앞으로 상당기간 自生的 成長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企業集團의 폐해는 市場機構內에서 충분히 제거될 수 없으며 아울러經濟力集中에는 市場外的 要因도 많으므로 政府介入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政府介入은 자칫 政策의 방향이나 수단의 不合理性으로 政府失敗를 유발하여 오히려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經濟秩序政策 내지 產業組織政策은 이에 반대하는 확연한 利益集團이 있

는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궁극적인 이 득은 보편적인 성격의 것이므로 강력한 支持 集團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그러한 政策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다른 관련정책으로 보 완되어야 한다.

3. 經濟力集中對策의 基本方向

가. 所有集中의 緩和

企業集團의 所有集中이 완화되지 않는 한 經濟力集中問題의 核은 제거되지 않는다. 富의 分散을 위하여 企業集團 및 그 大株主들의 保有・相續財產 특히 不動產에 대한 효과적인 徵稅行政이 중요하지만 所有集中의 緩和는 企業所有의 직접적인 分散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하는데 이것은 일반국민의 資本參與를 통한 企業公開의 실질적 확산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國民所得水準의 향상과 所得分配의 개선, 企業體質의 강화, 專門經營人의 責任意識 高揚, 投機性投資機會의 축소, 株式市場與件의 개선 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일회성의 株式所有分散은 중전 직후 日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株式所有의 混亂을 초래하며 企業集團의 大株主를 포함한 있는 자들간의 再分配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주식의 大衆分散을 위한 중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企業集團의 系列企業의 株式公開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政府로서도 관련법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政府는 현실적

범위 내에서 企業公開施策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企業公開與件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與 信規制・會社債發行制限 및 기타의 制裁手段 을 도입・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集團의 金融產業支配를 방지·배제하기 위하여는 우선 所有構造面에서 銀行法上 同一人의 범위를 축소하고 同一人의 市中銀行株式 所有上限을 인하하며 현재는 제한이 없는 地方銀行의 소유에 대하여도 일정한 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所有分散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銀行負債를 直接金融을 통하여 상환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企業集團에 대한 현행 與信規制를 第2金融圈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企業集團 系列企業간의 相互支給保證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集團에서 기대될 수 있는 共同效果는 반드시 資本的 結合을 통한 기업간의 강한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면 企業間 株式相互保有는 여러가지 폐해를 수반하므로 현재의相互出資額과 出資總額 限度超過額의 처분을 촉진함과 아울러 出資總額에 대한 上限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다만 日本의 경험과 같이 資本自由化에 대비하여 國內資本을보호하는 수단으로 相互出資를 활용하려면 적정한 許容上限을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 競爭促進政策의 强化

企業人能力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經濟力集 中은 항상 발생할 것이며 企業集團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多邊化(소위 문어발式 經營)는 危險分散과 利潤追求라는 私企業 본래 의 동기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企業人能力의 발현은 존중하되 企業集團의 規模非效率性과 非能率的이며 競爭制限的인 多邊化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競爭의 압력을 부과시키는 것이다. 競爭에 직면한 企業은 技術・經營・組織・動機面의 非效率性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며 既存市場에서의 競爭은 企業의 剩餘能力을 소진시키므로 무리한 多邊化를 시도하지 않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國內企業의 競爭的 進入에 대한 制度的 障壁과 海外競爭에 대한 輸入障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企業集團의 非效率的 多邊化를 억제하기 위 하여 企業集團別로 重點業種의 專門化를 유도 하려는 것은 企業에게 업종을 선정할 수 있도 록 하더라도 企業과 市場의 생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여건하에서 필 요한 것은 단순히 동일업종의 고수가 아니라 活動領域의 부단한 流動化로서 이것은 여러 업종에 걸친 多邊化뿐만 아니라 동일업종 내 에서의 適所(niche)의 焦點化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企業의 특성은 製品의 市場性格 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의 經營資源 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經營資源의 特殊 性의 정도에 따라 같은 업종의 企業들이 같은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양태는 같을 수 없기 때 문에 企業集團의 內部構成이 다르게 되는 것 이다. 企業의 業種・製品・業態는 市場環境에 대한 企業의 最適反應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 企業集團의 經濟力에 대한 부분적인 拮抗力 (countervailing power)은 여타의 單獨企業특히 中小企業과 消費者 및 勞動者들에서 찾을 수 있다. 消費者와 勞動者의 권익보호를 차치할 때 종래의 中小企業施策은 주로 社會政策 내지 產業構造政策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왔으며 특히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垂直的協力關係보다는 水平的 競爭關係에서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³의. 獨占規制法은 企業結合을 통한 獨占化와 大企業의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을 방지하고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하는 등 競爭을 촉진함으로써 반사적으로 中小企業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 데 그치고 직접적인 보호・지원은 다른 中小企業關聯法制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經濟力集中對策의 하나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中小企業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법제가 갖는 목적하에서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獨占規制法의 시행을 위한 政府의 內部指針인 현행의 企業結合審查要領에는 混合結合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나 經濟力集中對策으로서만 소위中小企業部門에 대한 大企業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이 法律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企業集團특유의 不公正去來 및 競爭制限行為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람직하므로 政府로서는 이를 위한 與件造成과 誘引提供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최 근 情報化에 따라 產業間 境界가 점차 소멸되 고 融業化(fusion)가 진전되므로 專門化의 의 미도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³⁸⁾.

³⁸⁾ 情報化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拙稿(1989) 참조.

³⁹⁾ 拙稿(1986)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產業組織 的 關係를 다루고 있다.

企業集團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複合結合의 형태를 갖는데 水平結合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垂直結合과 달리 複合結合이 갖는 競爭制限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곤난하다.

다. 尖端技術과 經濟力集中

經濟力集中抑制를 논의할 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으로서 尖端技術의 발전을 위하여는 企業集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論旨는 尖端技術 내지 尖端產業이 대규모의 投資를 소요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타당한 것은 아니다. 資本市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면 소요자본은 企業集團외에서 조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논리는 充分條件은 되겠지만 必要條件은 되지 못한다. 더욱이 기술자체의 면에서는 항상 여러 기업간의 共同開發의 대안이 있으며 企業集團만이 유리하다고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尖端技術의 관점에서 企業集團을 어떻게 이해하여야하는가라는 것이다.

企業集團의 경제적 유리성은 優越的 地位의 濫用 등의 不公正去來行為에 기인하는 경우를 별도로 한다면 獨占化가 아니라 規模의 經濟性 내지 複合的 企業力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獨占規制法의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企業集團의 系列企業들이 공동으로 技術開發을 할 수 있는 유리성은 부정할 수 없는데 總合的 技術開發力 자체를 위법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좀더 중요한 문제는 근년 가속되고 있는 尖端產業技術의 혁신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이를 商品化하여 該當市場에서 獨占的 位置를 갖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장기간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鐵鋼·非鐵金屬·化學藥品 등의 素材型製品市場에 있어서는 集中度가 높을수록 市場支配力은 그만큼 크게 된다고 할수 있지만 尖端產業技術製品의 市場에 있어서는 한 企業의 占有率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않는다. 혁신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新技術이즉시 陳腐化하는 高度產業技術의 競爭市場에 있어서는 Schumpeter가 말하는 創造的 破壞 (creative destruction)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企業의 생존을 위한 최대의 競爭手段이다.

이와 같이 격심한 技術開發競爭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단순한 企業의 巨大性은 점차 의미를 잃고 있다. 企業集團이 금후 尖端技術產業을 중축으로 하는 經濟에 있어서 集團으로서의 共同效果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企業集團의 재편성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尖端技術開發을 위하여는 企業規模가 커야 하므로 企業集團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企業規模가 커야 한다는 것을 要素市場의 자完全性에 비추어 인정하더라도 生產規模의 大型化와 所有集中을 통한 企業集團의 형성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라. 餘他政策의 同時的 推進

經濟力集中은 본래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그 대책도 협의의 公正去來政策만으로는 불충분 하다. 특히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經濟力 集中은 與信管理・進入制限・產業支援・輸入 制限 등 여러가지 政策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經濟力集中對策은 각종의 部 分的 政策手段을 일관성있게 동원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종래에도 經濟力集中을 완화하 려는 단편적인 정책이 취해져 왔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종합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短期經濟政策의 시급성을 이유로 정책이 변질된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1986년의 獨占規制法 1차개정 이래 企業集團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면서 시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經濟秩序確立의 긴요성이 國民的 合意를얻고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資本主義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형성하고 이에 입각하여 效率과 衡平을 조화하는 經濟體制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政府는 새로운 역할을수행하여야 하며 公正去來政策은 그 핵심적인기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經濟力集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一般的인富의 不均等分配와 이에 병행하는 富의 非生產的・投機的 利用 및 富의 蓄積過程上의 不公平性과 不公正性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企業集團의 大株主에 의한 所有集中을 초월하는 문제로서 전반적인經濟倫理 및 經濟秩序의 정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선 각종의 準租稅를 없애는 대신 租稅行政을 엄정히 해야 하며 認許可制度・產業政策・金融慣行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政府와 大企業間의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經濟全般의 淸廉性과 透明性을 높이기 위하여 金融實名制와土地公概念制度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마. 經濟倫理의 確立

이제까지는 주로 對策設定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을 논의하였지만 그 대상이 되는 企業集團이 經濟的 倫理를 추구하지 않는 한 對策의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근본적으로 私的 經濟主體의 利己的 動機를 인정하는 資本主義體制에서 企業의 利潤追求는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한 成果는 결국 企業의 營利行爲에 대한 法的・社會的 制約條件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상으로는 企業에 대하여 倫理性을 요구하기보다는 制約條件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기업이 이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도 또다른 난제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어느 정도의 愛他心에 입각 한 商業的 道德心(commercial morality)이 의미를 갖게 되며 특히 經濟力集中에 있어서 는 그 生成過程과 潜在力에 비추어 이것이 특 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商業的 道德心이 없다면 市場機構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도 한계가 있듯이 企業集團의 社 會的 責任感이 결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항상 政策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經 濟倫理는 市場機能이 불완전할수록 그리고 市 場力의 分布가 불균등할수록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⁴⁰⁾. 經濟力集中이 문제시되는 큰 원 인이 分配・衡平・共同體意識 등 단순한 效率 性 이외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한 企業 集團은 일반 經濟主體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 의 經濟倫理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요구되 는 것이다.

⁴⁰⁾ 이 문제에 관한 제학설의 개관은 拙稿(1988) 참 조.

▷參考文獻◁

- 李奎億,「中小企業과 大企業의 産業組織的 關係」,『韓國開發研究』, 1986년 가을호.
- _____, 「市場機構의 論理와 倫理」, 『韓國 開發研究』, 1988년 가을호.
- _____, 「情報化와 產業組織」, 『韓國開發研 究』, 1989년 가을호.
- _____·尹暢晧,『產業組織論』,全訂版,法 文社,1988。
- -----・李成舜、『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韓國開發研究院、1985。
- _____·李在亨·金周勳,『市場과 市場構造』, 韓國開發研究院, 1984.
- 御園生 等,『日本の獨占禁止政策と産業組織』, 河出書房新社,東京,1989。
- 奥村 宏,『新・日本の六大企業集團』, ダイヤ モンド社, 東京, 1983.
- 日本公正取引委員會, 『獨占禁止政策30年史』, 1977.

- 濟學』, チイビーエス・ブリタニカ、東京, 1986.
- Galbraith, J. K., *The Anatomy of Power*, Hamish Hamilton, London, 1984.
- Jones, K., Law and Economy: The Legal Regulation of Corporate Capital,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 Leff, N. A., "Industrial Organiz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the Developing Country: The Economic Group,"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78.
- Leibenstein, H.,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8.
- Merhav, M., Technological Dependence, Monopoly and Growth, Pergamon, London, 1969.
- Russell, B., Power, Penguin, New York, 1938.

關稅率 調整의 經濟的 效果分析: 一般均衡的 接近

李 元 暎

本稿에서는 1989년 1월에 시행된 關稅率 調整이 產業別 生產,輸出入,物價指數, 框 儲 등에 미치는 영향을 韓國經濟의 多部門 一般均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關稅率의 調整은 대부분의 產業에서 輸入과 輸出을 동시에 增加시키나 輸入의 증대가 輸出의 증대보다 더 커서 國際收支는 악화된다. 또한 關稅率 調整은 名目國民總生產을 증대시키고 物價를 下落시킨다. 輸入의 증가율이 큰 產業으로는 의복, 혁제 품, 나무제품 產業을 들 수 있으며 輸出은 대부분의 產業에서 증가하나 특히 輸入된原資材를 많이 사용하는 비칠금속 1차제품, 혁제품, 석탄제품, 고무제품산업의 輸出增加率이 높다. 產業別 生產을 보면 혁제품, 비절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종이・지제품, 목제품 등 일부 輸入競爭產業에서는 生產이 減少되나 기타의 產業에서는 生產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輸出의 비중이 높은 產業에서 生產 및 雇傭의 증가율이 높다.

I. 序

經濟의 개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關稅率 또한 급속히 引下되고 있다. 특히 1988년에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關稅率 豫示制가 종료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稿의 草稿를 읽고 유익한 비평을 해준 本院의 左承喜, 李弘求 博士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작업을 담당한 安永奭 主任硏究員에게 감사한다. 됨에 따라 關稅率 및 稅率構造의 대폭적인 調整이 있었는바 이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심세율이 20%에서 15%로 낮추어졌으며 세목간의 세율의 차이가 감축되었다. 本稿의 목적은 이러한 關稅率 調整의 經濟的 效果를 밝혀내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關稅率 調整이 국내총생산, 고용, 물가등 巨視經濟變數 및 產業 各部門의 生產, 消費, 輸出入, 價格指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輸入이 급속하게 增大되고 있는 반면 輸出은 鈍化되어 國際收支가 현

저히 惡化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서 1989년 1월에 施行된 대폭적인 關稅引下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하반기이후의 貿易收支의 악화는 關稅引下뿐만이 아니라 輸入自由化, 원貨의 平價切上, 賃金上昇등 다른 제반 經濟變數에 의한 複合的인 結果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같은 換率, 賃金 등 다른 經濟變數의 效果를 제외한 關稅調整만의 效果를 알아보는 것이 향후의 關稅政策方向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關稅率 調整과 같은 貿易政策의 變化에 따른 經濟的 效果分析方法은 크게 분류하여 두가지가 있다. 먼저 事後的인 方法은 정책이시행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정책의효과를 관단하는 것이다. 이는 輸入自由化나關稅引下가 이루어진 산업의 輸出入動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변화의 효과만을 추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事前的인 方法은 輸出과 輸入에 대한 각각의 需要・供給函數를 추정한후 이에 근거하여 關稅調整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事後的인 방법과 事前的인 방법은 각각이 갖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本 研究의 목적인 1989년 1월에 시행된 關稅率 調整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事前的인 方法이 채택되었

다. 이는 정책시행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事後的인 방법에 의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關稅率의 전면적인 調整에 대한 효과분석을 事後的인 방법에 의해서 과악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特定 財貨만의 關稅率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關稅가 변경되지 않은 다른 재화의 輸出入推移의 同 財貨의 輸出入推移를 비교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면적인關稅率 調整의 경우에는 이같은 방법이 이용되기 어렵다. 더욱이 1989년중에는 關稅率 調整뿐만 아니라 換率・賃金 등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關稅率 調整의 효과를 事後的인 방법에 의해서 추출해 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의 關稅政策을 포함한 무역정 책의 효과분석은 대부분 事後的인 方法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대표적 연구는 金光錫 (1987), 產業研究院(1986), 金光錫(1988) 등을 들 수 있다". 金光錫(1987)에서는 1965~67년간과 1978~79년간에 수량규제로부터 輸入自由化된 個別品目의 실제수입을 추정하고 그런 품목의 輸入增加率을 전체 輸入增加率과 비교하였다. 產業研究院의 연구는 輸入自由化 조치 직후 6개월~1년기간 동안의수입을 과거의 추세와 비교하였다. 金光錫(1988)에서는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통합화한產業別 輸入自由化率 指標와 國內生產對比 輸入比率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本 研究에서 분석의 도구로 사용된 模型은 李元暎・張晚浚(1989) 및 李元暎(1989)과 동 일한 것이다. 따라서 模型의 構造方程式이나 理論的 背景 등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 기서는 模型의 개략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¹⁾ 그 외의 관세에 대한 연구로는 關稅制度와 관련하여 權寧東(1984), 高勇夫(1987), 關稅發展研究報告書(1986), 朴相泰(1988) 등이 있으며 關稅賦課에 따른 실효보호율과 관련하여 車輧權(1976), 金光錫・洪性德(198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연구는 그 주요목적이 關稅率 構造의 變化에 따른 經濟的 效果에 대한 정량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론적인 배경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關稅政策의 改編方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同 模型은 經濟를 31개 產業部門으로 분류 한 후 각각의 산업에는 세 종류의 다른 財貨, 즉 輸出財 그리고 輸入財, 國內財가 존재한다 고 가정한다. 이는 동일산업 내에서 輸出・輸 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감안하기 위 한 것으로 일명 「아밍톤」假定(Armington Assumption) 이라고도 한다. 同一產業이라는 의미는 輸出財와 國內財는 생산요소로 사용될 때, 輸入財와 國內財는 소비과정에서 높은 代 替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同 模型에 는 93개(31×3)의 財貨가 존재하는 셈이며 각 각의 재화에 대한 需要・供給函數가 부여되어 야 한다. 財貨의 需要供給函數의 결정에는 產 業間 關聯表(Input-Output Table), 計量經濟 的 推定 등이 이용되었다. 政策實驗은 외생변 수인 關稅率이 변화했을 때 이같은 一般均衡 模型의 내생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밝혀 내는 과정이다. 즉 產業別 輸出入, 生產, 價 格, 雇傭 등이 어떻게 변화하며 더 나아가서 이를 총괄한 總生產, 物價, 國際收支 등 巨視 經濟變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산출한 다.

關稅率 調整에 따라서 모형에서 구분하고 있는 31개 산업의 關稅率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밝혀내는 것이 첫단계 작업인데 이에 관한 논의는 第II章 및 第III章에 수록되었다. 第II章에서는 關稅率 調整의 구체적 내역을 소개하고 그 결과 31개 산업부문의 關稅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리하였다. 第III章에서는 第II章에서 산출된 產業別 關稅率이 그대로 정책실험에 사용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대책이 논의되었다. 즉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각종 關稅減免 및 輸出用 原資材에 대한關稅還給制度 때문에 法定關稅率에 비하여 매

우 낮은데 이를 政策實驗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第IV章에서는 政策實驗의 結果를 보고한다. 여기에는 關稅調整에 따라서 國民總 生產,物價,國際收支 등 巨視經濟變數에 미 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31개 산업 각각의 國內 生產,輸出入,雇傭,價格指數,美·日 등 주 요 교역상대국간의 交易構造 등이 포함되었 다. 第V章에서는 本稿의 結果를 要約하고 政 策的 示唆點을 논의한다.

II. 關稅率調整의 內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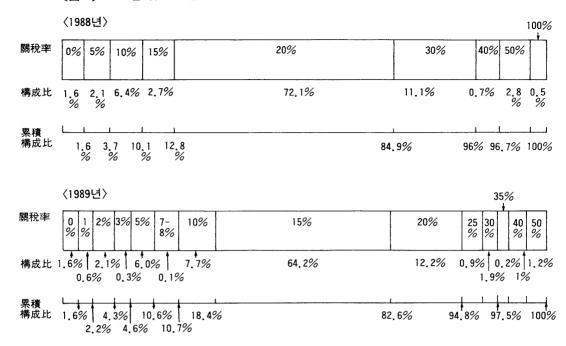
1. 概 要

1989년 1월부터 施行된 關稅率調整의 內譯은 아래와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中心稅率을 20%에서 15%로 引下하는 것이다. 여기서 中心稅率이란 國內產業保護, 海外資源確保 등과 같은 특별한 政策的考慮가 필요없는 品目에 부여되는 稅率水準이다. 1988년에 全體品目 중 72.1%에 대해서中心稅率 20%가 適用되었다. 이것이 1989년에는 전품목 중 64.2%에 대하여 中心稅率 15%가 적용되었다. 1988년과 1989년의 보다자세한 關稅率 分布는 「圖 1〕과 같다.

둘째, 組立加工型 輸出產業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되어 왔던 加工段階別 差等稅率制度 (Tariff Escalation System)는 1980년대 이후 加工段階에 無差別的인 均等稅率制度(Uniform Rate System)로 바뀌어져 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1989년 1월부터 시행되는 關稅率에도 이와 같은 방향이 유지되었다. 특히 消費

[圖 1] 1988년 및 1989년의 關稅率 分布度(HSK 10단위)



財에 대해 부과해 왔던 輸入規制目的의 높은 關稅率은 대폭 引下되었다. 原料 및 中間財・ 完製品 등 품목의 용도별로 본 關稅率 調整의 개요는 〈表 1〉과 같다.

2. 產業別 關稅率 調整의 內譯

模型을 이용하여 政策實驗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稅制改編 前과 後의 關稅率을 알아

야 한다. 다시 말하면 模型에서 구분된 31개產業部門에 대한 關稅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產業別 關稅率은 따로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HSK商品分類體系에 의해서 공시되는 品目別關稅率에 근거하여 해당산업의 關稅率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HSK商品分類와 IO產業分類를 連繫시켜야 한다. 즉 模型에서 구분한 각각의 產業에는 어떤 HSK商品分類들이 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IO分類와 HSK商品分類를 직접 대응시키는 連繫表는 아직까지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HSK 이전의商品分類인 CCCNK와 HSK간의 連繫表와 IO-CCCNK간의 連繫表를 이용하여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同一產業 내에 있는 수많은 商品

²⁾ I-O 7單位와 CCCNK 8單位間의 連繫表는 KDI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CCCNK 8單位와 HSK 10單位間의 連繫表는 韓國關稅研究所에서 1988년에 발간한 連繫表를 이용하였다. 이같이 두가지의 連繫表를 다시 연결하다 보니 분류상 불분명한 部門이 약간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HSK 10,272건 중 약 200건은 I-O產業分類上 어디에 속하는지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平均關稅率 계산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오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1〉 1988~89년간 用涂別 關稅調整의 內譯

(단위:%,件)

7	분	1988년	1989년	HSK 品目數	構成比
	非競爭原料	5	1~2	128	1, 2
原料	競爭原料	10	5	214	2.1
	소	계		342	3, 3
	中心稅率	20	15	6, 342	61.7
.l. PR n l	競爭力確立및 국산곤란품목	10~20	10	480	4.7
中間財完製品	1次加工品 (競爭力確立品目)	10~20	10 (5)	488	4.8
	奢侈性消費財	30~50	20	932	9.1
	소	계		8, 242	80.2
	國家慣例無稅品目	fm ₹₽ 100	0	161	1.6
例外	農産物	無稅~100	別途稅率	1,527	14.9
	소	계		1, 687	16.4
	총	계		10, 272*	100%

註:*보통 HSK 10單位가 10,205건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이러한 차이는 HSK 10單位 중 몇 單位까지를 하나 의 品目으로 보느냐 하는 품목수를 세는 방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資料:財務部,『1988년 關稅率改編白書』의 개편원칙에 HSK 구성전수 추가.

分類는 각각 다른 關稅率이 부여되고 있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關稅의 변화 이들로부터 產業全體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 의 關稅率이 算定되어야 한다. 本 政策實驗에 서 產業의 關稅率은 각각의 HSK商品分類에 해당하는 輸入實績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즉 輸入額이 큰 品目일수 록 그에 대한 關稅率이 해당산업의 平均關稅 率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역으로 輸入額이 작은 품목은 產業別 關稅率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산정한 產業別 關稅率은 〈表 2〉와 같다. 1988년과 1989년 사 이의 產業別 關稅率의 변화를 보면 中心稅率 을 20%에서 15%로 낮춘 效果가 全產業에서 율면에서는 産業間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引下率 및 상대적인 引下率은 비철금속 1차제품산업이 가장 크다. 반면에 引下率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產業은 石油製 品產業이다.

III. 法定關稅率斗 實績關稅率

앞에서 試算된 產業別 法定關稅率과 실제로 輸入에 적용되는 關稅率間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基本稅率에 품목별 輸入額을 곱한

〈表 2〉 1989년 1월부터 시행된 關稅調整의 內譯

(단위:%)

	產業分類	1988년關稅 (A)	1989년關稅 (B)	引下幅 (C=A-B)	引下率 (D=C/A)
1	농림수산업	10.0	5.2	4.8	48.0
2	광업	5.2	3.7	1.5	28.8
3	음식료•연초	14.4	8.8	5.6	38.9
4	섬유•직물	18.1	12.9	5.2	28.7
5	의복	20.8	15.3	5.5	26.4
6	혁제품	19.9	10.1	9.8	49.2
7	목제품	17.7	11.0	6.7	37.9
8	종이 • 지제품	9.5	5.9	3.6	37.9
9	인쇄•출판	5.2	3.7	1.5	28.9
10	화학제품	18.0	12.9	5.1	28.3
11	석유제품	6.2	5.6	0.6	9.6
12	석탄제품	8.3	4.4	3.9	47.0
13	고무제품	19.7	14.8	4.9	24.9
14	비금속광물제품	20.6	15.1	5.5	26.7
15	철 1차제품	13.1	7.8	5.3	40.5
16	비철금속 1차제품	18.2	8.6	9.6	52.7
17	금속제품	21.0	15.1	5.9	28.1
18	일반기계	18.3	13.8	4.5	24.6
19	전기기계	20.4	15.1	5.3	26.0
20	전자・통신기계	20.3	13.4	6.9	34.0
21	조선	19.6	14.0	5.6	28.6
22	수송기계	10.9	7.7	3.2	29.4
23	정밀기계	19.3	15.0	4.3	22.3
24	기타제조업	21.7	15.3	6.4	29.4
25	건축	na	na	na	na
26	전기・가스・수도	na	na	na	na
27	상업 • 음식 • 숙박	na	na	na	na
28	운수・보관・통신	na	na	na	na
29	금융•보험•부동산	na	na	na	na
30	정부기타서비스	2.0	1.5	0.5	25.0
31	기타	3.2	2.3	0.9	28.1
	平均稅率	15.2	10.2	5.0	32.9

금액의 총합은 실제로 걷히는 關稅收入보다는 크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에 基本稅率에 근거한 推定關稅收入額은 4조 5천 억원인데 반하여 實績關稅收入은 2조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實際 關稅徵收金額을 輸入金額으로 나눈 實績關稅率이 基本稅率을 輸入金額으로 가중평균한 法定關稅率보다 낮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輸出支援을 목적으로 輸出商品에 쓰인 輸

〈表 3〉 實績關稅率과 法定關稅率의 比較(1986)

(단위:億원,%)

		實績	關稅	法定平	均關稅	差	異
番號	產業	稅額1)	稅率	稅額 ²⁾	税 率	稅 額	税率
1	농림수산업	1,093	4.8	2,261	10.0	1,168	5.2
2	광업	1,780	3.8	2,390	5.1	609	1.3
3	음식료 • 연초	890	8.0	1,669	15.0	779	7.0
4	섬유 • 직물	1,108	13.4	1,950	23.6	842	10.2
5	의복	147	14.0	304	29.0	158	15.
6	혁제품	467	12.6	764	20.6	297	8.0
7	목제품	132	10.7	242	19.5	. 110	8.8
8	종이 • 지제품	335	6.5	562	10.9	228	4.
9	인쇄•출판	12	1.7	28	4.0	16	2.:
10	화학제품	4,033	11.4	6,933	19.5	2,900	8.3
11	석유제품	216	2.4	686	7.5	469	5.
12	석탄제품	21	5.5	38	9.8	17	4.:
13	고무제품	118	11.0	298	27.9	181	16.
14	비금속광물제품	453	14.0	788	24.3	334	10.:
15	철 1차제품	909	6.0	1796	11.8	887	15.8
16	비철금속 1차제품	637	7.4	1,653	19.1	1,016	11.
17	금속제품	418	9.1	1,044	22.7	627	13.0
18	일반기계	3032	8.3	6,987	19.0	3,955	10.
19	전기기계	1,134	9.4	2,965	24.5	1,831	15.
20	전자 • 통신기계	2,042	6.5	6,961	22.0	4,918	15.0
21	조선	60	1.5	621	15.4	561	13.9
22	수송기계	370	4.0	1,173	12.7	803	8.
23	정밀기계	750	8.8	1,868	21.9	1,118	13.
24	기타제조업	225	15.3	417	28.4	192	13.
25	건축	0	0.0	0	0.0	0	0.0
26	전기・가스・수도	0	0.0	0	0.0	0	0.0
27	상업·음식·숙박	0	0.0	0	0.0	0	0.0
28	운수 • 보관 • 통신	0	0.0	0	0.0	0	0.
29	금융•보험•부동산	0	0.0	0	0.0	0	0.0
30	정부 기타서비스	9	0.4	557	24.7	548	24.:
31	기타	8	0.1	209	3.6	202	3.
	全產業	20,399	6.7	45,166	14.8	24,767	8.

註:1) 稅額에 방위세 등의 輸入商品稅는 포함 안됨.

入原資材 및 部品에 대해서는 關稅를 還給해 關稅를 同 原資材를 이용하여 제품을 生產한 주고 있다. 輸出用原資材 수입시 부과되었던 후 그 제품을 輸出하게 되면 징수한 관세를

²⁾ 稅額의 계산은 1986년 輸入額에다 法定平均關稅率을 곱해서 계산함.

납세자에게 다시 還給하여 준다.

둘째, 각종의 經濟, 社會的 目的을 위하여 關稅가 滅稅되고 있다. 關稅減稅은 技術集約產業의 시설재 및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關稅 減稅 등과 같이 產業政策的인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기도 하며 政府輸入의 관용물품, 군수품, 종교용품 등과 같이 기타의 社會政策的目的을 위해서도 시행되다.

셋째, 關稅賦課時 基本稅率 대신에 임시적으로 다른 稅率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暫定稅率은 일시적으로 基本稅率을 적용할 수없는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는 稅率로서 物價安定, 輸入抑制, 原資材 確保 등 여러가지 정책적 필요시에 책정한다. 1989년 현재 총세목 2,718개 중 2.9%에 해당하는 품목이 暫定稅率을 적용받고 있다. 그 중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低率策定이다. 그 이외에도 讓許關稅, 彈力關稅, 割當關稅, 緊急關稅 등의제도를 통하여 基本稅率과는 다른 稅率이 부과된다. 각종 關稅減免 등의 實績은 〈表 4〉에 있는 바와 같다.

이같이 關稅制度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 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產業別 關稅率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된다. 이 상적으로는 關稅減免, 關稅還給 및 기타의 關稅制度를 모두 감안하여 產業別 關稅率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關稅減免이나 關稅還給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輸入된 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이느냐에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 감면의 내역은關稅徵收 결과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輸入 및 關稅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지 않은 1989년이나 1990년의 實績關稅率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本 硏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이 고려되었다. 첫째, 基本稅率을 기준으로 한 產業別 平均關稅率은 1989년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試算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實績關稅率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法定關稅率과 實績關稅率間의 비례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이로부터 實績關稅率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1987년에 i산업의 法定關稅率 및 實績關稅率을 a_i 와 b_i 라 하고 1989년 i산업의 法定關稅率을 c_i 라 하면 1989년 i산업의 實績

〈表 4〉 關稅減免 및 關稅還給 實績의 比較

(단위:百萬원)

	1985	1986	1987	1988	1989
關稅減免(A) 關稅還給(B)	264,121 1,135,662	306,562 1,169,483	339,491 1,704,339	361,854 1,863,756	304,217 1,549,352
計(C)	1,399,783	1,476,045	2,043,830	2,225,610	1,853,629
關稅徵收額(D)	1,950,264	2,349,097	2,696,463	2,573,262	2,513,396
A/D	13.5%	13.0%	12.6%	14.1%	12.1%
B/D	58.3%	49,8%	63.2%	72.4%	61.6%
C/D	71.8%	62.9%	75.8%	86.5%	73.8%
輸入額(百萬달러)	26,461	29,703	38,584	48,203	56,767

關稅率은 $(c_i imes b_i \div a_i)$ 로 시산된다. 이러한 과 \qquad 정이 갖는 문제점은 많다. 즉 基本稅率의 변 정을 거쳐서 개편전과 개편후의 實績關稅率 화율이 實績關稅率의 변화율과 같으라는 보장 을 계산한 결과는 〈表 5〉에 수록되었다.

물론 이같은 방법에 의한 實績關稅率의 추 년 1월에 調整된 세목이 모두 關稅減免이나

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產業에 있어서 1989

〈表 5〉 1988년 및 1989년의 推定實績關稅率

(단위:%)

產業分類	1988년實績關稅率	1989년實績關稅率	引下幅
 농림수산업	4.83	2.51	2.32
광업	3.90	2.78	1.21
음식료 • 연초	7.69	4.70	2.99
섬유•직물	10.27	7.32	5.94
의복	10.02	7.37	2.65
혁제품	12.18	6.18	6.00
목제품	9.67	6.01	3.66
종이 • 지제품	5.68	3.53	2.15
인쇄•출판	2.16	1.54	0.62
화학제품	10.49	7.52	2.97
석유제품	1.96	1.77	0.19
석탄제품	4.63	2.46	2.17
고무제품	7.75	5.83	1.92
비금속광물제품	11.85	8.69	3.16
철 1차제품	6.63	3.95	2.68
비철금속 1차제품	7.02	3.32	3.70
금속제품	8.40	6.04	1.36
일반기계	7.96	6.00	1.96
전기기계	7.79	5.77	2.02
전자•통신기계	5.96	3.94	2.02
조선	1.90	1.36	0.54
수송기계	3.44	2.43	1.03
정밀기계	7.77	6.04	1.73
기타제조업	11.06	7.80	3.26
건축	na	na	na
전기・가스・수도	na	na	na
상업 • 음식 • 숙박	na	na	na
운수・보관・통신	na	na	na
금융•보험•부동산	na	na	na
정부기타서비스	0.03	0.02	0.01
기타	0.12	0.08	0.04
平均稅率	6.2	4.2	2.0

註:實績關稅率은 1986년의 실적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1986년 對比 各年度의 法定關稅率 比率에 의해서 추정 한 것임.

還給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었다면 實績關稅 率의 引下率은 法定關稅率의 그것보다 클 것 이다. 반면에 1989년 1월에 稅率을 낮춘 항목 이 어차피 모두 關稅가 면제되어 輸入되고 있 는 품목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基本稅率 에는 변화가 있으나 關稅收入面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고 따라서 實績關稅率도 큰 변화가 없다.

두번째 방법은 法定關稅率을 그대로 사용하고 關稅還給을 模型의 構造方程式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즉 構造方程式 중 輸出供給函數는 輸入된 원자재의 價格을 변수로 갖는데, 원래 模型에서는 關稅賦課 이후의 價格이이용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關稅가 포함되지 않은 價格이 삽입되도록 構造方程式을고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갖는 장점은 關稅還給이 輸出入構造에 변화를 주는 效果를 模型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데 있다. 關稅還給이 감안된모형에서는 關稅의 引下는 國內需要나 生產의目的으로 輸入된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영향을 주나 輸出用 原資材의 輸入에는 별로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實績關稅率을사용하는 두번째 방법에서도 이와 같은 效果가 개괄적으로는 반영될 것이지만 同一產業내에서 國內財 및 輸出財의 生產에 차등적으로 가져오는 效果는 반영되지 못한다.

반면에 이같은 방법의 단점은 關稅還給 이외의 다른 滅免要因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關稅還給이 비록 關稅收入減少중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그 이외의 減免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는점이 간과된다.

각각의 方法이 갖는 長短點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方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方法을 함께 시행하였다.

方法 1: 法定關稅率만을 기준으로 하여 政 策實驗

方法 2: 추정된 實績關稅率을 기준으로 하 여 政策實驗

方法 3:法定關稅率을 기준으로 하되 模型 의 構造方程式에 關稅還給을 반영

方法 1은 關稅引下의 效果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效果의 상한한계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方法 2는 總量變數側面에서는 가장 현실성있는 效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方法 3은 총량변수의 예측능력에서는 方法 2보다는 열등하나 產業別로 가져오는 效果의 차별화는 方法 1이나 方法 2보다는 우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政策實驗 結果

1. 豫備的 論議

模型을 이용한 政策實驗은 改編前의 關稅率을 改編後의 關稅率로 바꿔놓았을 때 산업별생산, 수출입, 가격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찾는 과정이다. 方法 1에 의한 정책실험에서는 改編前의 關稅率 및 改編後의 關稅率을 〈表 2〉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方法 2에 의한 정책실험에서는 改編前後의 關稅率을 〈表 3〉에 근거한다. 方法 3에서의 關稅率 변화는

〈表 2〉에 근거하면서 모형의 구조방정식에서 수출재 생산에 투입되는 輸入財에는 關稅賦課 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政策實驗에서 기타의 外生變數는 政府支出, 輸出需要函數,輸入供給函數,換率,賃金 등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같은 假 定은 本 研究와 같이 關稅率調整의 效果만을 추출하기 위한 政策實驗에서는 필연적인 假定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政府支出은 關稅收 入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서는 내생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연하여 둔 다. 즉 構造方程式을 調整하면 關稅引下에 따 른 關稅收入의 減少를 계산하여 그만큼 정부 지출이 減少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均衡價格 및 生產量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 關稅收入의 증감에 따라 財政規模를 증각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기대 하기 어렵다. 부연하면 재정규모의 결정은 關 稅收入의 增減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이 다3)

2. 總量指標

方法 1,2,3에 의한 정책실험 결과를 〈表 6〉에 수록하였다. 즉 方法 1,2,3下에서 名目國內總生產,物價,雇傭,輸出,輸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참고자료로 원貨의 平價切上에 대한 政策實驗

結果를 수록하였다4)

政策實驗結果를 보면 어떤 方法下에서든지 1989년 1월 시행된 關稅率 調整은 名目國內總 生產 및 雇傭을 增大시키고 물가를 낮춘다. 關稅引下는 또한 輸出과 輸入을 增大시키나 輸出의 增大率보다도 輸入의 增大率이 더 커 서 國際收支는 악화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일치한다. 지금까 지 關稅率 調整에 따른 經濟的 效果에 대하 분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本 硏究의 結果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별로 없다. 다만 物價效果에 관해서만은 韓國銀行에서 投入算 出關聯表를 이용하여 그 크기를 추정한 바 있 다5). 그에 의하면 關稅引下는 물가를 0.54%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本 硏究의 결 과 중 實績關稅率을 사용한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하겠다.

方法 1,2,3간에 차이를 보면 輸出增大效果는 方法 1이 가장 크며 方法 2와 方法 3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輸入增大效果面에서 보면方法 1과 方法 3간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方法 2에 의한 效果는 현저하게 작다. 이같은 결과는 方法 3이 方法 1에 비하여 輸出에 대한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方法 2에서 輸入增大效果가 작은 이유는 產業支援을 위한 關稅減免이 이미 關稅率계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關稅를 調整하더라도 실질적인 輸入價格의 下落이 작기 때문이다.

名目國內總生產,物價,雇傭 등에 미치는 效果는 주로 輸出入의 변화로써 설명될 수 있다. 方法 2에서 物價에 대한 效果가 작은 것 은 輸入價格下落效果가 작기 때문이며 實質國 內總生產(名目國內總生產-物價)의 변화 또한

^{3) 1988}년에 關稅의 財政寄與率이 13.1%로 미국이 나 일본보다는 높은 편이나 재정운용상 關稅收入 의 減少는 다른 部門을 통하여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⁴⁾ 李元暎(1988)에 근거함.

^{5)「1988}년 關稅法 改正(案)」(『關稅』, 1988. 9, pp. 15~23)을 참조

〈表 6〉 關稅調整에 따른 總量指標의 變化

政策實驗의 基準	名目國內	物 價	雇 傭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總生產(%)	(%)	(%)	(億달러)	(億달러)	(億달러)
法定關稅率(方法 1) 實績關稅率(方法 2)	0.43	-0.96	0.45	10.5	21.3	-10.5
	0.26	-0.49	0.24	5.4	10.2	-4.8
法定關稅+關稅還給 (方法 3) 원貨의 1% 平價切上	-0.51	-0.45	0.17	5.6 -4.2	19.0	-13.4

마찬가지 이유로 가장 작다.

方法 2에 의한 關稅引下의 效果와 원貨의 1% 절상의 效果를 비교하면 國際收支 및 物價에서는 거의 유사한 效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의 경우 關稅率 調整이 0.75%(0.26+0.49)만큼 상승시키는 效果가 있는 반면에 원貨의 1% 절상은 0.06%(-0.51+0.45)만큼 下落시키는 效果가 있다.

다음에는 產業部門別 效果를 논의한다. 다만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方法 2, 즉 實績關稅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만을 보고하기로 하자. 이같이 한가지 경우만을보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경우이든지 產業間의 상대적인 效果의 크기 및 그 순위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貿易效果

關稅率 引下는 우선적으로 產業別 輸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효과를 〈表 7〉에 서 정리하였다. 同表에는 產業別 輸入物量, 輸入單價 및 輸入金額의 변화율이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產業別 關稅率 調整의 크기와 輸入需要函數의 價格彈性値가 함께 수록되었다. 다섯번째 행에 기록된 Î은 관세자체의 변화율이 아니라 (1+關稅)의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關稅率 調整이 수입가격에 주는 영향을 관세자체의 변화율보다도 輸入價에 關稅를 더한 價格의 변화율에 더욱더 의존하기때문이다.

政策實驗의 결과를 보면 關稅率調整은 수입 단가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輸入供給函數가 매우 탄력적인 데 기인한 것이다. 반면에 輸入物量은 상당한 영 향을 받는데 이는 關稅率 引下가 關稅賦課後 의 國內價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 이 輸入需要의 증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輸 入物量 변화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關稅引下의 폭과 輸入需要函數의 가격 탄성치이다 즉 輸入物量의 變化率은 \hat{T} 과 수 입수요의 가격탄성치를 곱한 값과 대체로 비 슷하다. 만약에 輸入供給函數가 완전 탄력적 이고 輸入需要函數를 이동시키는 다른 요인들 즉 國內財의 가격, 輸入財에 대한 중간수요, 총지출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두 값은 일치 할 것이나 模型에서는 수입공급함수가 매우

⁶⁾ 여기서의 論議는 關稅率 調整과 平價切上의 徵視 的 差異를 사상한 것임. 產業別로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節에서 하기로 한

〈表 7〉 關稅率 調整이 產業別 輸入에 미치는 效果

(단위:%)

產業分類		輸 入		Î *	輸入需要의
生 未 刀 規	物量	單價	金 額	1	價格彈性值
농림수산업	0.315	0.006	0.321	-2.212	0.123
광업	0.096	0.005	0.101	-1.084	0.024
음식료•연초	2.570	0.129	2.699	-2.777	0.980
섬유 • 직물	3.119	0.156	3.275	-2.675	1.131
의복	6.459	0.323	6.782	-2.409	3.836
혁제품	6.657	0.333	6.990	-5.347	1.504
목제품	5.655	0.283	5.948	-3.338	2.016
종이 • 지제품	1.498	0.075	1.573	-2.036	1.070
인쇄•출판	0.676	0.034	0.710	-0.610	2.388
화학제품	2.514	0.126	2.640	-2.691	1.508
석유제품	0.129	0.007	0.136	-0.186	0.861
석탄제품	1.757	0.088	1.845	-2.081	0.988
고무제품	3.452	0.173	3.625	-1.790	3.148
비금속광물제품	2.376	0.118	2.494	-2.828	0.906
철 1차제품	1.595	0.080	1.675	-2.517	0.826
비철금속 1차제품	1.354	0.068	1.422	-3.460	0.587
금속제품	3.024	0.151	3.175	-2.177	2.044
일반기계	1.212	0.061	1.273	-1.813	0.628
전기기계	1.802	0.090	1.892	-1.878	1.253
전자 • 통신기계	1.892	0.094	1.986	-1.912	1.218
조선	0.472	0.024	0.496	-0.533	1.388
수송기계	1.293	0.065	1.358	-0.976	2.062
정밀기계	1.402	0.071	1.473	-1.606	1.008
기타제조업	4.268	0.213	4.481	-2.938	1.782
건축	0.186	0.009	0.195	0.000	0.999
전기・가스・수도	-0.020	-0.001	-0.021	0.000	1.000
상업 • 음식 • 숙박	0.127	0.006	0.133	0.000	0.988
운수・보관・통신	0.068	0.003	0.071	0.000	0.942
금융•보험•부동산	0.121	0.006	0.127	0.000	0.992
정부기타서비스	0.013	0.001	0.014	-0.008	0.998
기타	-0.047	-0.002	-0.049	-0.033	0.863

^{*} Î은 (1+관세)의 變化率임.

假定되어 있을 뿐 아니라 輸入需要函數를 이 동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內生變數로서 변화하 고 있기 때문에 두 값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關稅調整에 따른 산업별 수입증대

탄력적이기는 하나 완전탄력적이 아닌 것으로 의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1차산업의 경우 輸 入需要의 가격탄성치가 낮기 때문에 關稅率 調整에 따라 輸入이 별로 증대되지 않는다. 서비스産業은 비교역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 에 그 交易量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關稅賦 課對象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產業에 서 關稅調整에 따른 수입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은 기대되었던 결과라고 하겠다. 關稅調整 에 따른 수입증대효과가 큰 부문은 製造業部 門이다. 제조업 중에서 수입의 증가율이 5% 를 상회하는 산업은 의복, 혁제품, 목제품이 그러나 輸出增加率의 產業別 차이는 輸入의

다. 혁제품의 경우에는 關稅引下의 폭이 크 고 의복, 목제품은 關稅引下의 폭과 輸入需要 의 가격탄성치가 동시에 크기 때문이다.

產業別 輸出의 변화를 〈表 8〉에서 보면 輸 出物量 및 金額은 모든 產業에서 增大된다.

〈表 8〉 關稅率 調整이 產業別 輸出에 미치는 效果

(단위:%)

多 类 Д 粨		輸 出		_ 中間需要	輸出供給의
產業分類	物量	單 價	金 額	比 重	價格彈性値
농림수산업	0.034	-0.010	0.024	0.701	0.254
광업	0.248	-0.071	0.177	0.962	3.433
음식료•연초	0.157	-0.045	0.112	0.290	1.195
섬유•직물	1.032	-0.295	0.737	0.750	3.389
의복	1.326	-0.379	0.947	0.092	6.498
혁제품	1.771	-0.506	1.265	0.640	8.149
목제품	0.643	-0.184	0.459	0.693	5.321
종이 • 지제품	0.860	-0.246	0.614	0.926	3.080
인쇄·출판	0.899	-0.257	0.642	0.747	5.766
화학제품	0.845	-0.241	0.603	0.804	1.936
석유제품	0.061	-0.017	0.043	0.938	0.132
석탄제품	1.417	-0.405	1.012	0.418	6.314
고무제품	1.443	-0.412	1.031	0.243	5.534
비금속광물제품	0.414	-0.118	0.296	0.863	1.944
철 1차제품	1.048	-0.299	0.749	0.896	2.316
비철금속 1차제품	1.730	-0.494	1.236	0.901	3.195
금속제품	1.057	-0.302	0.755	0.513	3.191
일반기계	0.864	-0.247	0.617	0.441	2.721
전기기계	0.915	-0.261	0.653	0.492	1.975
전자•통신기계	1.247	-0.356	0.891	0.371	3.069
조선	1.292	-0.369	0.923	0.158	7.220
수송기계	0.643	-0.184	0.459	0.321	1.926
정밀기계	1.088	-0.311	0.777	0.322	3.486
기타제조업	1.128	-0.322	0.805	0.170	3.586
건축	0.028	-0.008	0.020	0.805	0.248
전기・가스・수도	0.639	-0.183	0.457	0.113	3.404
상업•음식•숙박	0.018	-0.005	0.013	0.399	0.455
운수•보관•통신	0.071	-0.020	0.051	0.422	1.344
금융•보험•부동산	0.015	-0.004	0.011	0.528	0.622
정부 기타서비스	0.328	-0.094	0.234	0.184	4.699
기타	0.970	-0.277	0.693	0.948	-

경우에 비해서 매우 작다. 이는 關稅調整이 輸入價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 반하여 輸出에는 우회적인 영향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輸入되는 原資材價格의 下落을 가져와 輸

出供給函數가 이동하고 이에 따라 輸出增大가 이루어진다. 輸出增大의 크기는 우리나라 輸 出商品에 대한 세계수요의 價格彈性値와 輸入 供給函數의 價格彈性値에도 영향을 받는다.

〈表 9〉 關稅率調整의 產業別, 地域別 貿易收支效果

(단위:萬달러)

	T					I			· 禺 달러)
番號		美	國	日	本	其	他	Ē	-
宙弧	产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1	농림수산업	2	663	34	26	7	1,025	42	1,714
2	광업	0	53	14	8	5	1,007	19	1,068
3	음식료•연초	49	3,358	93	157	52	3,346	195	6,861
4	섬유 • 직물	513	195	440	2,317	3,075	3,691	4,029	6,203
5	의복	4,847	290	2,100	863	4,180	472	11,126	1,627
6	혁제품	1,025	1,094	93	2,204	400	2,633	1,517	5,929
7	목제품	68	333	66	139	81	1,217	213	1,690
8	종이・지제품	34	999	17	248	224	602	274	1,848
9	인쇄·출판	14	29	8	59	19	24	39	112
10	화학제품	479	4,907	434	9,177	1,373	7,346	2,288	2,1430
11	석유제품	7	58	37	38	12	187	56	282
12	석탄제품	7	32	20	82	39	53	68	165
13	고무제품	1,739	283	386	365	2,393	239	4,518	887
14	비금속광물제품	61	272	90	1,171	112	408	261	1,851
15	철1차제품	688	977	799	3,538	1,372	1,313	2,859	5,828
16	비철금속1차제품	64	359	103	764	293	1,690	461	2,812
17	금속제품	1,394	652	161	1,603	1,358	1,087	2,915	3,342
18	일반기계	351	1,704	54	5,810	320	3,169	725	10,682
19	전기기계	735	807	88	3,184	655	1,252	1,480	5,243
20	전자・통신기계	5,448	3,754	991	8,259	4,059	2,356	10,498	14,370
21	조선	384	29	32	128	3,135	299	3,553	456
22	수송기계	1,075	1,099	15	940	562	828	1,653	2,867
23	정밀기계	252	628	112	1,654	271	585	637	2,867
24	기타제조업	1,910	311	313	791	947	405	3,170	1,507
25	건축	0	0	0	0	0	0	2	2
26	전기・가스・수도	73	0	73	0	73	0	217	0
27	상업 • 음식 • 숙박	27	38	27	38	27	38	83	115
28	운수・보관・통신	139	56	139	56	139	56	418	167
29	금융•보험•부동산	2	16	2	16	2	16	3	50
30	정부 기타서비스	90	5	15	0	24	2	129	8
31	기타	41	-3	100	-6	146	-56	286	-66
	計	21,519	22,996	6,857	43,630	25,357	35,292	53,733	101,918
	國別 比重	40.0%	22.6%	12.8%	42.8%	47.2%	34.6%	100%	100%

輸出增加率의 크기가 큰 產業은 비철금속 1차 제품, 혁제품, 석탄제품, 고무제품 등인데 이들은 주로 輸入된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產業이다.

(表 9)에는 關稅率 調整에 따라서 미국, 일본 및 기타지역에 대한 產業別 輸出入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수록되었다. 輸出에 있어서 國別輸出의 증가액은 國別輸出總額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輸入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輸入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기타지역으로부터의 輸入은 적게 증가한다. 이는 기타지역으로부터의 輸入은 적게 증가한다. 이는 기타지역으로부터의 輸入이 광업, 석유제품 같이 輸入需要가價格에 비탄력적인 產業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生產效果

關稅率 調整에 따라 產業別 生產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表 10〉에서 보기로 하자. 同表에서 세번째 열에는 生產의 彈性値가 기록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혁제품의 경우에 關稅率 調整은 生產을 0.674% 減少시킨다고 해석된다. 두번째 열에서 나타나는 產業의 순서는 生產彈性値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즉 혁제품이 生產減少率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순위 1번이 부여된 반면 조선산업은 生產의 증가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가 부여되었다.

〈表 10〉에서 네번째 이후의 열은 產業別 特性을 나타내 주는 統計値들이다. 순서대로 總產出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1), 總需要중 輸入需要의 比重(2), 中間需要가 總需要에서 차지하는 比重(3), 中間投入物 중 輸入財

의 比重(4), 國內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 (5) 등이 수록되었다.

產業別 順位는 여러가지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은 總產出 중輸出이 차지하는 比重과 總需要 중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이라하겠다.

國內消費 중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은 產業에서 關稅引下는 輸入財의 價格을 낮추고이는 國內財를 輸入財로 대체하는 效果를 갖게 되어 生產이 減少한다. 다시 말하면 輸入代替產業인 혁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 등은 生產의 減少가 초래된다. 반면에 輸出의 比重이 큰 輸出產業에서 關稅引下는 生產에 투입되는 輸入財의 價格을 下落시키고 이는 다시生產費用의 下落을 가져오게 되어 生產이 증가된다. 의복, 조선과 같이 輸出의 比重이 높은 產業에서 生產增加效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같은 要因 때문이다.

產業의 특성에 따른 生產效果의 부호를 대체로 보면 關稅引下는 輸入競爭產業에는 陰의效果,輸出產業 및 非交易財產業에는 陽의效果를 가져온다. 生產이 촉진되는 效果는 輸出產業의 경우가 非交易財 產業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平價切上이 產業生產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平價切上의 경우에는 輸出產業 및 內需產業을 막론하고 交易財의 生產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와 같은 非交易財產業의 生產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대된다. 따라서 關稅引下는 輸出產業과 內需產業間에 차등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평가절상은 交易財產業과 非交易財產業間에 상이한 효과를 가져온다.

〈表 10〉 關稅率調整의 生產效果

(단위:%)

順位	產業	推定値	(1)	(2)	(3)	(4)	(5)
1	혁제품	-0.674	0.33	0.30	0.64	0.49	2.1
2	비철금속 1차제품	-0.500	0.11	0.41	0.90	0.53	1.0
3	화학제품	-0.440	0.12	0.26	0.80	0.32	2.0
4	종이 • 지제품	-0.181	0.07	0.18	0.93	0.24	1.3
5	목제품	-0.166	0.12	0.09	0.69	0.48	2.2
6	광업	0.010	0.03	0.77	0.96	0.02	0.1
7	비금속광물제품	0.039	0.10	0.10	0.86	0.15	1.0
8	상업 • 음식 • 숙박	0.050	0.15	0.03	0.40	0.06	1.0
9	석유제품	0.051	0.09	0.14	0.94	0.84	1.0
10	음식료 • 연초	0.058	0.04	0.06	0.29	0.11	1.0
11	금융•보험•부동산	0.059	0.01	0.01	0.53	0.06	1.0
12	건축	0.063	0.00	0.00	0.80	0.26	1.0
13	농림수산업	0.077	0.05	0.14	0.70	0.06	0.1
14	운수•보관•통신	0.080	0.28	0.10	0.42	0.27	1.0
15	철 1차제품	0.124	0.17	0.17	0.90	0.18	1.0
16	정부기타서비스	0.142	0.01	0.01	0.18	0.17	1.0
17	인쇄·출판	0.199	0.02	0.05	0.75	0.09	2.5
18	기타	0.231	0.05	0.14	0.95	0.03	1.0
19	전기기계	0.238	0.26	0.34	0.49	0.26	1.7
20	전기・가스・수도	0.274	0.01	0.00	0.11	0.06	1.0
21	수송기계	0.290	0.31	0.23	0.32	0.23	2.5
22	금속제품	0.307	0.43	0.19	0.51	0.22	2.5
23	정밀기계	0.345	0.38	0.63	0.32	0.34	1.7
24	일반기계	0.348	0.08	0.42	0.44	0.23	0.7
25	석탄제품	0.358	0.02	0.03	0.42	0.40	1.0
26	섬유・직물	0.609	0.27	0.13	0.75	0.20	1.3
27	전자 • 통신기계	0.652	0.57	0.48	0.37	0.44	2.0
28	기타제조업	0.729	0.63	0.15	0.17	0.14	2.0
29	고무제품	0.975	0.65	0.11	0.24	0.27	3.5
30	의복	0.983	0.67	0.05	0.09	0.17	4.0
31	조선	1.070	0.74	0.44	0.16	0.31	2.0

⁽¹⁾ 輸出比重=輸出÷總產出

⁽²⁾ 輸入比重=輸入÷總需要

⁽³⁾ 中間需要比重=中間需要÷總需要

⁽⁴⁾ 輸入財의 中間投入比重=輸入中間投入÷總中間投入

⁽⁵⁾ 國內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

5. 價格效果

關稅率 調整에 따른 產業別 價格의 변화율 은 〈表 11〉에 보고되었다. 輸入財의 價格은 關稅引下分만큼 下落하는데 이는 小國假定의 결과이다. 단 模型에서 輸入財의 供給曲線의 彈性値를 무한대로 주지 않고 20으로 주었기 때문에 輸入이 增大되는 產業에서는 國際價格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國內財의 生產에 투입되는 輸入中間財의 價格이 下落하기 때문에 국내재의 價格 또한 下落한

〈表 !!〉 關稅率調整에 따른 價格效果

(단위:%)

順位	產業	國內財	輸入財	價格指數
1	비철금속 1차제품	-1.275	-3.392	-2.145
2	화학제품	-0.998	-2.565	-1.408
3	혁제품	-0.953	-5.014	-2.168
4	전자・통신기계	-0.806	-1.818	-1.288
5	철 1차제품	-0.779	-2.437	-1.064
6	전기기계	-0.726	-1.788	-1.085
7	금속제품	-0.713	-2.026	-0.966
8	고무제품	-0.657	-1.617	-0.764
9	정밀기계	-0.652	-1.535	-1.205
10	기타제조업	-0.620	-2.725	-0.943
11	종이ㆍ지제품	-0.609	-1.961	-0.852
12	석탄제품	-0.575	-1.993	-0.615
13	의복	-0.540	-2.086	-0.618
14	조선	-0.489	-0.509	-0.498
15	섬유・직물	-0.466	-2.519	-0.741
16	일반기계	-0.453	-1.752	-1.005
17	수송기계	-0.448	-0.911	-0.553
18	인쇄 • 출판	-0.381	-0.576	-0.390
19	목제품	-0.357	-3.055	-0.613
20	비금속광물제품	-0.332	-2.710	-0.563
21	전기・가스・수도	-0.291	-0.001	-0.291
22	기타	-0.278	-0.035	-0.244
23	광업	-0.143	-1.079	-0.865
24	정부기타서비스	-0.134	-0.007	0.133
25	음식료 • 연초	-0.131	-2.648	-0.290
26	석유제품	-0.100	-0.179	-0.112
27	운수・보관・통신	-0.011	0.003	-0.010
28	금융•보험•부동산	0.067	0.006	0.066
29	상업 • 음식 • 숙박	0.077	0.006	0.075
30	건축	0.132	0.009	0.132
31	농림수산업	0.167	-2.196	-0.163

다. 輸入되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 속, 화학제품, 혁제품 등의 產業에서 價格下落이 크다. 반면에 서비스產業 農林水產業과 같이 輸入된 원자재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產業에서는 價格이 거의 下落하지 않거나 또는 약간의 상승을 보인다. 일부산업에서 價格이

다. 輸入되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 상승하는데 그 요인은 주로 關稅引下의 전반 속, 화학제품, 혁제품 등의 產業에서 價格下 적인 경기부양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雇傭效果

關稅引下는 產業別 生產에 영향을 주게 되

〈表 12〉 關稅率調整의 雇傭效果

(단위:%)

順位	產業	属傭彈性值	雇傭效果(名)	勞動比重
1	화학제품	-1.274	-2,879	0.35
2	비철금속 1차제품	-1.263	-328	0.40
3	혁제품	-1.108	-598	0.61
4	종이 • 지제품	-0.417	-280	0.43
5	목제품	-0.312	-225	0.53
6	광업	0.014	20	0.68
7	비금속광물제품	0.096	119	0.41
8	운수 • 보관 • 통신	0.185	1,133	0.43
9	정부기타서비스	0.190	3,779	0.75
10	금융•보험•부동산	0.190	869	0.31
11	상업 • 음식 • 숙박	0.208	5,632	0.24
12	음식료 • 연초	0.255	903	0.23
13	인쇄•출판	0.297	199	0.67
14	건축	0.443	195	0.14
15	철 1차제품	0.444	391	0.28
16	전기・가스・수도	0.481	3,871	0.57
17	농림수산업	0.541	18,028	0.14
18	전기기계	0.613	601	0.39
19	금속제품	0.624	786	0.49
20	정밀기계	0.673	276	0.51
21	일반기계	0.737	1,135	0.47
22	수송기계	0.794	659	0.37
23	석탄제품	0.848	153	0.42
24	석유제품	1.083	97	0.05
25	기타제조업	1.335	2,002	0.55
26	섬유 • 직물	1.357	6,797	0.45
27	전자 • 통신기계	1.439	3,122	0.45
28	고무제품	1.514	2,196	0.64
29	의복	1.614	4,503	0.61
30	조선	1.641	1427	0.65

註:기타산업은 勞動投入이 불분명하여 雇傭效果에서 제외시켰음.

며 이에 따라 產業別 雇傭에도 영향을 미친 다. 雇傭에 미치는 영향은 勞動市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임금이 勞動需要와 供給에 따라 신축적으로 調整되며 産業間의 勞動移動이 자유롭다면 關稅引下는 產業間의 雇傭構造에만 영향을 미칠 뿐 全體雇傭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名目賃金의 신축성이 적고 產業間의 勞動移動이 쉽게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關稅引下는 產業에 대한 수요구조를 바꾸게 되고 이는 雇傭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本 政策實驗에서는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1~2년간의 중기적인 效 果를 측정하려 하였기 때문에 勞動市場에 대 해서 후자의 가정을 택하였다. 즉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고 產業間 勞動移動이 가능치 않 은 경우의 效果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가 〈表 12〉에 나타나 있다.

同表의 셋째번 열에는 關稅引下에 따른 產業別 雇傭의 彈性値가 기록되어 있는데 화학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산업 등에서 雇傭減少가 크며 조선, 의복 등과 같은 輸出型產業에서는 雇傭增大效果가 크다.

V. 要約 및 結論

경제현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經濟變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제품에 대한 關稅引下는 석유제품의 輸入을 증가시켜 石油製品產業의 生產 및 雇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유제품을 원료로 쓰는 화학, 섬유 등 全產業에 그 파급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經濟政策樹立時에는 이에 따른

1차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범위하게 파급되는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효과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一般均衡模型은 生產,消費,輸出入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產業間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韓國經濟의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하여 1989년 1월에 시행된 關稅率 調整의 波及效果를 산출하였다. 이같은 政策實驗은 關稅率 調整을 담당한 政策立案者에게 關稅調整에 따른 정량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經濟理論만으로는 關稅引下가 輸入을 증대시킨다든지 하는 諸般經濟變數의 반응 방향은 알 수 있으나 그 반응의 크기를 알아내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本 硏究에서 시행된 政策實驗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平價切上과 비교했을 때 關稅引下가 經濟의 總量變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1월부터 시행된 關稅引下가 國際收支 및 物價에 미치는 영향은 원貨의 1% 平價切上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다. 1988년 기간중에만 달러에 대한 원貨의 환율이 14% 가량 절상된 사실을 고려하면 關稅率의 調整이 巨視經濟變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둘째, 關稅引下와 平價切上은 國際收支에 負의 效果를 미치고 물가를 하락시킨다는 측 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나 輸出 및 經濟 成長側面에서는 상반된 효과를 내포한다. 關 稅引下는 輸出과 輸入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확대균형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平價切上은 輸入을 증대시키고 輸出은 감소시키는 축소균 형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關稅還給 및 각종의關稅減免 때문에 法定關稅率의 인하에 따른효과는 반강된다. 즉關稅還給 및 關稅減免을 감안했을 때 1989년 1월 關稅調整에 따라서기본세율을 기준으로 한 각종 平均關稅率은15.2%에서 10.2%로 하락하였으나 實績關稅率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6.4%에서4.2%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輸出用 原資材에대해서 허용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를 고려하면 關稅引下에 따른 輸出增大效果는 반강된다. 輸出產業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輸入財의 가격은 關稅引下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에 輸出增大效果는 그 생산에 소요되는國內財의 價格引下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넷째, 產業別 輸入의 증가는 關稅引下의 폭 및 輸入需要函數의 가격탄성치에 크게 좌우된 다. 일반적으로 제조업부문에서 輸入의 증대 폭이 크고 그중에서도 의복, 혁제품, 목제품 산업에서 輸入의 증가율이 높다. 產業別 輸出 의 변화율은 輸入의 경우와는 달리 產業間의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輸入된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거나, 輸出供給 의 가격탄성치가 큰 產業에서 輸出이 많이 증 대된다.

다섯째, 產業別 生產 및 雇傭의 변화를 보면 혁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종이·지제품, 목제품 산업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產業에서 生產과 雇傭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產業은 대체로 輸入財와 국내소비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輸出의 비중이 낮은 산

업이다. 生產增加가 이루어지는 產業에서 중 가율의 크기는 輸入競爭產業, 非交易財產業 및 輸出產業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 硏究의 결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우선적으로 關稅率調整이 단기적인 景氣對應에 대한 수단보다는 장기적인 產業構造 調整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國際收支가 일시적으로 好轉 또는 惡化되었을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임기응변적으로 關稅率을 調整하는 것은 별로실효성 있는 정책이 못된다. 關稅率의 급격한변동은 오히려 안정된 生產活動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따름이다.

흔히 과도한 國際收支黑字 또는 赤字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關稅率 調整과 換率調整을 비교하는 논리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같은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平價切上에 비해서 關稅率 調整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實質關稅率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함에 따른 貿易收支增大效果는 本 硏究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작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貿易收支가악화되었다고 關稅率을 높이는 것 또한 현명한 政策代案이 아니라는 것이다.

政府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關稅率을 점 진적으로 낮추어 1993년에는 平均關稅를 선진 국 수준인 8%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 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關稅還給制度가 없 을 뿐 아니라 關稅減稅도 韓國과 같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실질적 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 라의 關稅率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關稅政策은 法定關稅率을 낮추고 稅目間의 차등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關稅減免 및 關稅還給制度를 개선하는 또다른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감면의 내역을 政府의 새로운 產業政策 방향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關稅還給制度는 점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關稅率이 낮아지게 되면 關稅還給에 의한 수 출촉진에서 얻는 得보다는 이에 따른 行政費 用, 資源分配의 歪曲에서 발생하는 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關稅制度 改編 의 長期發展方向은 本稿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後續研 究가 필요하다.

▷參考文獻◁

- 高勇夫,「우리나라 關稅率政策의 變遷에 관한 研究」,『貿易學會誌』,第12卷,1987.
- 權寧東,「產業支援을 위한 關稅減免制度의 改善方向」,『貿易學會誌』,第9卷,1984.2.
- 金光錫,『輸入自由化의 經濟的效果의 產業調整政策』,研究報告 88~07,韓國開發研究院,1988,12.
- 金光錫・洪性徳,『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研究報告 82~02, 韓國開 發研究院, 1982.
- 金秀勇,「關稅政策의 現況과 改編方向」,『關稅發展研究報告書』, 關稅發展審議委員會關稅制度研究分科委員會, 1986, 12.
- 朴相泰,「'89年 施行 關稅率構造 改編의 方向 과 內容」,『關稅』,第20卷 第231號,第21 卷 第232號,韓國關稅研究所,1988.12, 1989.1.
- 産業研究院,『輸入自由化의 效果分析』, 1986. 柳京得,「實效保護率 測定에 의한 關稅率調整 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誌』,第14卷, 1989. 2.
- 李元暎,「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平價切上의 產業部門別 效果分析」,『韓國開發研究』, 第11卷 第1號,韓國開發研究院,1989.5.
- 李元暎·張晚浚,『韓國經濟의 產業貿易模型』, 政策研究資料 89~02, 韓國開發研究院,

1989. 3.

- 李仲熙, 『現行 關稅率構造에 관한 分析』, 關稅研究所, 1987.3.
- 財務部 關稅局, 『1988년 關稅率改編白書』, 1989. 2.
- 車輧權,「우리나라의・關稅政策과 產業保護」, 『經營論集』, 第10卷 第1號, 서울大學校 ・經營研究所, 1976.
- 韓 國 關 稅 研 究 所,『CCCNK-HSK HSK -CCCNK 連繫表』(改定增補版),1988。
- 韓國關稅協會,『大韓民國關稅率表』,各年度, 韓國貿易協會,『品目別 輸出入要領』,1988~ 89.
- 韓國銀行, 『1986년 産業關聯表(延長表) I』, 1988. 12.
- ------, 『1986년 產業關聯表(延長表) II』, 1988. 12.
- ------, 『1985년 産業關聯表作成報告』, 1988.6.
- -----, 「1985년 產業關聯表(I)」, 1988.8.
- ————,「1985년 產業關聯表(II)」, 1988.8. ————,「1986년 國民計定(確定)」, 1987.12.
- Deardorff, Alan V. and Robert M. Stern, The Michigan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 Theory and Application, The

Kim, Kwang-suk, *The Nature of Trade Protection by Special Laws in Korea*, Discussion Paper No. 87~01, Seoul: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1987.

遠洋漁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

金 鍾 奭

우리나라의 水產政策과 遠洋漁業關聯 政府規制는 과거부터 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技術開發 및 費用節減 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體質强化를 위해서도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魚價安定政策은 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產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沿岸 魚資源의 고갈 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遠洋漁業 關聯政策과 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許可過程의 客觀化와 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義務許可制의도입과 이를 통한 沿近海漁業 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I. 序 論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1957년에 印度洋 試 驗操業에 성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60

筆者:本院 研究委員

* 筆者는 이 연구의 進行過程에서 많은 도움을 준 水產廳 漁業振興官室 여러분과 遠洋漁業協 년대에 수출증대를 위한 주요 戰略產業으로 중점지원을 받아 內需보다는 輸出為主의 產業으로 연평균 약 60%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70년대 후반에 주요 漁場 沿岸國들에 의한 200해리 經濟水域宣布와 油類波動, 公海操業規制 등 어로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단기적 생산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 적극적인 外交交涉에 의한 入漁權 獲得, 現地合作投資, 新漁場開發 등으로 꾸준히 성

장하여 1986년에는 92.9만톤의 어획고를 기록 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魚類消費는 약 300만톤으 로서 이 중 약 25%를 遠洋漁業이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國民1人當 魚類消費는 연간 약 70Kg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日本은 연간 1인당 약 99Kg의 魚類를 소비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도 所得의 增大에 따라 魚類消費 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까지는 國 內需要가 약 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業界에서 는 보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의 생산량은 資 源의 枯渴로 인하여 생산량 증가에 한계가 있 으며, 예상되는 수요의 증가에 대해 외국으로 부터 수입이나 원양생산의 증가로 대처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遠洋漁業은 점차 해외어장의 감소, 자원보호주의의 대두 등으 로 어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 내적으로도 장기적 원양생산 증가나 산업체질 의 강화를 위한 政策的 對應이 미약한 실정이 다. 또한 현행의 水產政策과 遠洋漁業關聯 政 府規制는 과거로부터 沿岸漁民 보호와 既存事 業者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 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장기 적 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들의 技術開發 및 革新意志를

약화시키고 사업자간의 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保護政策과 干涉主義的인 政府規制는 國內魚 價의 上昇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 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현행 遠洋漁業關聯 政 策과 政府規制의 問題點을 검토하고 遠洋漁業 의 장기적 발전과 경제자율화의 추세에 부응 하기 위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產業現況

1989년 9월 현재 754척의 遠洋漁船이 조업중에 있으며 전세계 25개의 어업기지에 진출하여 있다. 業種別 海域別 漁船現況은 〈表 1〉과 '같다'). 1988년도 生產量은 약 77만톤으로서, 명태, 오징어, 참치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表 2 참조).

遠洋漁業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附加價值 基準으로 GNP의 0.4%에 불과하나, 전체어업에서는 生產額 基準으로 약 30%를 점하고 있다. 1988년 현재 고용된 船員의數는 약 2만명 수준이다. 主要業種別 現況은다음과 같다.

1. 참치(Tuna)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효시가 참치漁業이다. 참치漁業은 참치基地, 참치獨航, 참치旋網으로 구분되는데 참치獨航과 旋網業이 生產量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會의 金應守 專務, 資洋社의 閔泳福 專務, 1990년 4월 10일에 本院에서 개최된 政策協議 會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草稿를 읽고 유익한 論評을 해 준 本院의 金周勳博士와 農村經濟研究院의 朴星快 博士, 資料의蒐集과 整理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金尙基 主任研究員과 朴燦冷 研究助員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¹⁾ 水產業法에 의한 許可의 種類는 漁法에 따라 10 개로 세분되어 있다. 第III章 참조.

〈表 1〉 業種別 海域別 遠洋漁船 現況

(1988년 現在)

業種		業種別 出漁隻數								合	基地	
	;	참 ㅊ	1	_1	트 웰	i.	호 7	빙어	상 어	기 타	計	基地數
海域	基地	獨航	旋網	基地	獨航	새우	流刺網	채낚기	流刺網			
太平洋	39	85	23	36	47	2	150	15	_	4	401	9
												(1)
大 西 洋	9	23		52	_	87	_	53	-	-	129	8
												(1)
印度洋	21	91	_	14	_	1		-	2	_	224	7
												(1)
合 計	69	199	23	102	47	90	150	68	2	4	754	25
				!								(3)

註:이 수치는 漁業許可基準임.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

〈表 2〉 主要 魚種別 生產實績(1988년도)

(단위: M/T)

명 태	오 징 어	참 치 류	기 타1)
299,565	197,207	161,407	116,061
(39%)	(25%)	(21%)	(15%)

註:1) 주로 상어, 꽁치, 새우.

資料:水產廳.

참치基地業은 해외에 기지를 둔 200~400톤 급 어선이 주종을 이루며 참치獨航業은 국내에 母港을 둔 300~500톤급의 중형어선이 주로 횟감으로 사용하는 고급참치를 생산하고 있다. 참치旋網業은 주로 1,000톤급의 대형어선으로서 남태평양을 어장으로 하고 있으며 참치기지업과 함께 통조림용 다랭이류 채취가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횟감용 고급참치는 거의 전량 日本 에 수출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 수요의 증가 로 인하여 國內搬入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水產廳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國內消費用 참치 獨航船을 증척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근 국내 참치 통조림의 國內供給도 급증하고 있다.

1970년대초 日本참치業界의 경영악화로 인해 對日本 참치輸出의 自律規制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輸出用 참치獨航船은 225척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表 3〉 年度別 生產實績

(단위: M/T)

	참치漁業	트 暑漁業	오징어漁業	其他漁業	計
1958	275				275
1963	2,558				2,558
1968	43,519	6,555	-	_	50,074
1973	105,723	254,913	-	-	360,636
1978	161,953	390,376	_	13,894	566,223
1980	125,440	327,190	4,687	892	458,209
1982	124,009	378,605	22,669	2,536	527,819
1984	80,628	526,512	48,926	2,186	658,252
1986	123,431	714,555	88,945	2,955	929,886
1987	146,274	585,868	149,163	1,355	882,660
1988	161,407	434,019	176,342	2,472	774,240

資料:水產廳.

〈表 4〉 遠洋漁業의 比重

(단위: 億원)

		1975	1980	1986
遠洋漁業	(A)	627	969	3,261
漁 業	(B)	1,870	5,141	13,824
農・林・漁業	(C)	25,038	55,247	106,485
全產業	(D)	91,374	332,507	754,217
國民總生產	(E)	100,646	366,723	838,330
A/B (%)		33.5	18.8	23.6
A/C (%)		2.5	1.8	3.1
A/D (%)		0.7	0.3	0.4
A/E (%)		0.6	0.3	0.4

註: 위의 수치는 附加價値의 經常價格基準. 資料: 農林水産部、『農林水産統計年報』、各年度、

〈表 5〉 참치漁業 現況(1988년말 현재)

(단위:M/T)

	基地	獨航	旋網	流刺網
면허척수	69	199	23	2
생 산 량	17,311	64,357	79,397	342

資料:水產廳.

2. 트롤(Trawl)

트롤業은 긴 자루형의 그물을 해저에 예인 하여 低棲類를 채취하는 어업형태로서 업종은 獨航트롤, 基地트롤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遠 洋生產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북태평양과 북해도 연안에서는 주로 명태가 생산되며, 大 西洋트롤어업은 西아프리카海域에서 주로 돔, 문어 등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다. 中南西 大 西洋에서는 트롤새우가 생산되고 있으나 새우 류의 국내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국내 연간 명태消費量 약 54만톤 중 97%를 북양명태어업이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美國으로부터의 共同事業(joint venture)과 어 획쿼터에 의해 생산되었으나 88년 이후 미국 해역의 쿼터가 종식되고 공동사업물량도 사실 상 90년부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美・蘇 經濟水域 사이에 위치 한 베링公海水域에의 추가진출을 추진하고 있

〈表 6〉 北洋명태의 比重

(단위: 千톤)

	'88 總生產(A)	遠洋漁業(B) ¹⁾	北洋漁業(C)	C/A(%)	C/B(%)
總計	3,569	1,138	610	17	54
명 태	537	524	524	97	100

註:1) 共同漁業事業物量 36만톤 포함.

資料:水產廳.

〈表 7〉 트롤漁業 現況(1988년말 현재)

(단위: M/T)

	美國水域	北海島	基地
免許隻數	36	11	102
生產量	246,329	58,014	126,855

資料:水產廳.

으나 沿岸國의 資源保護와 魚路規制로 인하여 어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蘇聯水域에로의 合作進出이나 入漁權 獲得이 북양트롤업의 漁 獲物確保에 關鍵이 되고 있다.

輸出用 북양명태는 주로 필렛(fillet), 수리 미(게맛살원료), 명란 등의 제품으로 가공되어 輸出되고 있다.

3. 오징어

오징어 遠洋漁業은 크게 남서대서양(포클랜 드연안) 및 뉴질랜드수역의 채낚기업과 북태 평양 공해에서의 유자망업으로 구분된다.

북태평양 유자망오징어는 주로 加工用의 대 형오징어로서 國內搬入에 제한이 없으나, 대 서양의 채낚기 오징어는 우리나라 연근해 오 징어와 유사어종으로서 沿近海 漁民의 保護를 위해 출어척수를 제한하고 있다. 북태평양 공해상의 流刺網操業은 美國 및 UN의 희귀자원보호를 내세운 操業規制로 현재 미국과 합의하여 160척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생산증가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서대서양의 채낚기業은 주어장이 포클랜드의 150마일 이내인 保存水域으로서 아르헨티나와 英國의 領土紛爭水域이며 특히 英國政府는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하여 공해상 操業과 保存水域 入漁許可를 연계시켜 公海操業의 규모와 操業時期를 규제하려 하고 있어 여기의 오징어 채낚기業은 영국정부와의 외교적교섭 및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민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國內오징어 消費는 최근 5년간 매년 연평균약 27.7%의 증가를 나타내어 1989년에 약 29 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약 5.5 만톤이 國內沿近海 生產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沿近海 오징어資源의 枯渴로 인하여 국내생산량의 지속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². 이에 따라 정부는 뉴질랜드와 남서대서양어장에 증척을 고려하고 있으나, 외국정부와의 교섭, 연근해어민의 반발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최근수년간 급등하고 있는 오징어國內價格은 需要

최근 오징어 어선의 톤당 오징어 어획량은 원양 어선은 6.7톤인데 반하여 연근해 어선은 0.77 톤에 불과하다고 한다.

〈表 8〉 오징어 遠洋漁業 現況(1988년말 현재) (단위:M/T)

	채낚기	유자망
—————————————————————————————————————	68	150
生產量	92,827	83,515

資料:水產廳.

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規制現況 및 問題點

1. 規制政策 자체의 問題點

우리나라 遠洋漁業에 대한 政府規制는 魚價 安定을 위한 成長抑制와 需給統制를 基調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沿岸漁民保護에 대한 고려와 海外漁場減縮으로 인한 불투명한 장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³⁾.

그러나 魚價의 安定이란 현실적으로 하락의 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제한적인 出漁許可 및 搬入制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魚價安定政策의 누적적 결과로서 國內魚價가 上昇하고, 특히 서민대중의 기호어종인 오징 어, 명태, 조기, 고등어, 가자미 등 소위 "大

〈表 9〉 沿近海 및 遠洋漁業 國內需給量(1988)

	沿近海(A)	遠洋(B)	B/A
명 태	13,348	299,565	22.4
오징어	49,525	178,307	3.6
가자미	15,999	7,589	0.47
참조기	18,703	_	_

資料: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水協統計月報』,各號.

(表 10) 魚種別 國內·國際 價格比較 (1988년간)

(단위:원/Kg)

(단위: M/T)

	國內價(A) ¹⁾	輸入價(B)2)	A/B
명 태	721	473	1.5
오징어³)	1,537	392	3.9
가자미	2,111	274	7.7
참조기	2,685	1,765	1.5

註:1) 國內價는 계통판매 단가임.

2) 輸入價는 수입금액을 수입물량으로 제한 것 임

換率은 월평균환율 적용.

3) 1989년 11월 현재 L사이즈 輸入價=\$960/ton、 국내가격은 1상자 15kg에 2만 5천원임.

資料: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水協統計月報』,各號, 韓國貿易協會,『貿易統計』,1988.

衆魚"의 價格이 國際價格보다 월등히 높은 상 태에 있다.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부담은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⁴⁾, 여기에 상응하는 沿岸漁 民의 所得增加는 沿岸水產資源의 枯渴로 인하여 실현되고 있지 못하여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민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高魚價政策은 魚外所得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沿岸漁業의 產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沿岸水資源의 枯渴을 촉진시키는 약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급의 만

³⁾ 현행 水産業法은 母法이 日帝時代 總督府의 漁 業令으로서 당시의 제한적인 規制慣行이 그대로 유지・계승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⁴⁾ 오징어의 경우 연간 약 4,000억원 정도를 國際 價格에 비해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第IV章 참조).

⁵⁾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第Ⅳ章 참조.

성적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의 漁業權을 가진 事業者들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分配의 歪曲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특정어종이나 해역에 대한 新規許可의 경우 기존의 사업자들로 부터의 抵抗與否가 허가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와 기존사업자간의 합의 아래 競爭制 限的 慣行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遠洋漁業 및 水產關聯政策을 담당하는 水產 廳은 과거로부터의 관행에 의하여 거의 모든 주요 魚種에 대하여 需要豫測을 해오고 있으며, 여기에 근거하여 어선의 증척이나 出漁許可를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획물에 대한 需要는 가격뿐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 가공기술의 개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결정의 속성상 소비대중보다는 生產者의 保護에 치중하게 되어 供給增加를 소극적으로 계획하게 되고, 따라서 魚價의 上昇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2. 許可制에 의한 事業規制

遠洋漁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水產業法 제 23조에 의해 漁船 또는 漁具마다 水產廳長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免許의 種類는 同法 施行令에 의해 漁法에 따라 10개로 구분되며, 조업구역, 최저톤수, 어획물, 양륙항 등이 지정되어 免許가 발급되고 있다. 免許가 漁法에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채취가능한 어종도 지정되어 있는 셈이다. 複合許可(兼業許可)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複數魚種의 採取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조업해역도 지정하여 면허하고 있으나, 이의

실질적 단속이 곤란하여 許可海域 밖에서의 操業도 빈발하고 있다.

遠洋漁業의 대부분이 他國의 沿岸海域에서 이루어지고 國家間 協約의 준수를 위해 출어에 대한 국가의 統制力維持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느 國家의 主權도미치지 않는 公海上의 操業에도 許可制度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經濟活動에 대한 政府의 規制는 市場의 自 律機能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공익에 위해 가 될 때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특 히, 免許制度를 통한 사업참여의 제한은 自由 競爭의 制限이므로, 經濟的 機會의 衡平을 해 치고 旣得權者의 權益이 사회적 기여 이상으 로 보호받게 되므로 消費者의 福祉와 經濟的 效率性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늘 수반하게 되 느 것이다. 따라서. 許可制에 의한 경쟁의 제 한은 그로 인한 經濟・社會的 惠澤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遠洋漁業에 대한 許可制度는 우선 許可의 배 경이 되는 供給量의 決定 자체가 소수 정책결 정권자의 수요예측에 의한 것이어서 市場需要 의 變化에 공급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즉, 政府가 정한 供給量에 의 해 消費의 상한량이 결정되며, 이 이상의 需 要增加는 오직 價格의 상승으로 억제되어 버 리는 것이다.

또한 許可가 海域, 魚種, 漁船을 지정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事業者가 능동적으로 經營合 理化를 꾀하여 사업의 效率性을 높이기가 때 우 곤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新規許可(증 척)가 특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 전략상 自發的 減隻은 매우 곤란하며, 이로 인해 進入障壁에 상용하는 退出障壁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사업자만의 사업참여라는 經濟效率性 확보의 기본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事業者들에 비해 더욱혁신적이고 능동적인 經營能力을 가진 잠재적사업자들의 競爭的 進入機會가 봉쇄되어 있기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은 競爭의 壓力을 받지 않고 非效率的이고 浪費的인 事業慣行을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遠洋漁業은 대부분의 경우 外國의 經濟水域이나 領海에서 조업하게 되므로 국가간의 협약이 존재할 경우 국가간의 협약을 준수하기위해 遠洋漁業에 대한 許可制는 어느 정도 그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도 特定國家와의 協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遠洋漁業에 대해 許可制度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연근해 어민에 대한 보호의 측면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魚價의 상승에 의한 沿岸漁民所得의 지속적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沿岸水產資源의 감소로 인하여高魚價政策에도 불구하고 所得增大는 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漁獲物의 國內搬入制限

이는 制限的 許可發給과 함께 국내 沿近海 漁業을 보호하기 위한 制度로서 주로 연안어 종과 중복되는 遠洋漁種에 가해지고 있다. 북양오징어와 같이 동해안 오징어와 어종과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남서대서양오징어는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數量에 制限이 가해지고 있다". 국내반입허가를 받지못한 원양어선들은 漁獲量을 의무적으로 輸出하도록 되어 있으나 國內魚價가 국제가격보다월등히 높아 사실상 輸出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漁獲物이 불법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반하여 遠洋명태와 참치에는 國內搬入制限이 없으며 명태國內消費의 대부분을 遠洋漁業이 담당하고 있다.

4. 漁船確保 및 中古船 導入規制

이는 國內造船工業育成을 위해 가해지고 있는 規制로서 외국으로부터의 中古船導入은 매우 제한적으로 許可를 해주고 있다. 특히, 漁船은 輸入多邊化 品目으로 지정되어 있어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 규제받고 있으며, 日本도 韓國漁業의 신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韓國에 수출할 수 있는 중고어선의 船齡을 12년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國內造船을 권장하고 있으며 計劃造船政策을 통하여 金融支援도 해주고 있다.

計劃造船事業에 소요되는 자금은 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염출되며 船價의 80%를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11%의 유리한 조건으로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支援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집중되고 事業者들의 사업성 판단이나 經營戰略과는 무관하게 집행되어 국내의 計劃造船量이漁船需要의 變化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⁶⁾ 여기서의 잠재적 사업자의 競爭的 進入이란 漁業外에서의 新規事業參與뿐 아니라, 他海域이나 수산업의 他業種에 중사하는 기존의 사업자에 의한 競爭的 進入을 포함하는 概念이다.

⁷⁾ 규제의 방식은 출어허가시에 漁獲物의 國內搬入이 가능한 어선과 輸出用 漁船으로 구분하여 許可條件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表 | 1 〉 遠洋漁業의 許可種類

연승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연승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트롤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포경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포경포를 사용하여 고래류를 포획하는 어업
선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유자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봉수망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채낚기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1본조 또는 채낚기로 채포하는 어업
통발어업	동력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
모선식어업	냉장·가공설비 기타 처리설비를 가진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채 포하는 어업

〈表 12〉 計劃造船 建造實績(1977~87)

(단위:億원)

	척 수	척 수 톤 수	事 業 費		
			計	融資金	自擔
計	797	91,683	2,444	1,614	830
近海漁船	742	69,387	1,576	1,115	461
遠洋漁船	55	22,296	868	499	369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연안 오징어의 生產을 확대하기 위해 연안 오징어 어업에 대해 計劃造船資金을 지원하였으나 연안 어획의 부진으로 融資金의 回收가 부진하였고이로 인한 延滯事態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징어 魚價의 上向調整과 償還期間延長, 融資金 체의 引下 등의 조치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計劃造船資金의 非效率的 支援과 外國中古船導入에 대한 規制로 인하여 우리나라 遠洋漁船의 平均船齡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1988년 현재 船齡 16년 이상이 290척으로 전체어선의 39.5%이며, 이 중 거의 폐선에 가까운 21년 이상의 老朽船도 148척으로 전체어선의 20%에 달하고 있다. 어선의 노후화는 船員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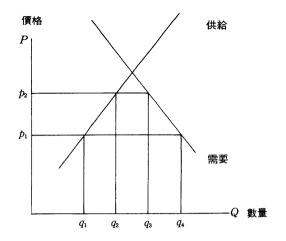
全의 문제뿐 아니라 잦은 고장과 作業能率의 저하로 인한 漁撈原價의 上昇을 초래하고 있 다.

또한 원양어획물의 국내반입을 위한 冷凍運搬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획물 운송의 약 80%를 外國(주로 일본과 그리스) 冷凍船이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外貨의 浪費와稅收缺損도 막대한 실정이다.

IV. 問題의 分析

本章에서는 전술한 각종 정부규제 중 出漁

「圖 」 資源枯渇의 促進



制限과 搬入制限을 통한 高魚價政策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分析하고자 한다.

1. 資源枯渇의 促進

國際價格보다 높은 國內魚價는 國內消費를 억제하여 일을 자원보호의 효과를 나타낼 것 같으나 國內消費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국내연 안어업이 장려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國內 生產은 增加하고 國內消費減少는 원양어획물의 국내반입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 현상은 漁獲物의 需要供給을 나타내는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圖 1]에서 魚價가 國際水準 (p_1) 이라면 國內消費는 q_4 이며 이 중 q_1 만이 국내연안생산으로 충당되고 그 나머지는 遠洋漁業 또는 輸入으로 충당될 것이다. 그러나 國際價格보다높은 國內價格 (p_2) 으로 인하여 國內消費는 q_3 로 억제될 것이나 국내연안생산은 q_2 로 오히

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國內魚價를 高價로 유지하는 정책은 오히려 연안자원의 채취를 촉진하게 되며, 이미 한계선상에 도달한 연안자원의 채취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高魚價政策에도 불구하고 연안어획물의 감소로 인하여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는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限界漁民의他業種으로의 轉換을 억제하여 產業構造 調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國民福祉의 減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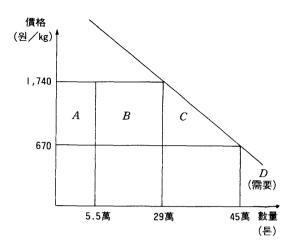
沿岸漁民保護를 위한 高魚價政策은 물론 소비자의 증가된 부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비자의 추가부담이 반드시 沿岸漁民의 所得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高魚價政策에 의한 所得의 移轉效果와 국민경제적 손실을 오징어의 경우를 例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1989년도 國內 오징어需要는 약 29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이 약 5.5만톤, 원양오징어가 약 23.5만톤 정도 반입되어 수요에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10월 현재 오징어의 上品(L사이즈)價格이 Kg당 1,740원에 형성되어 있다. 國際價格은 同種의 上品價格이 Kg당 670원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가격이 國際輸入價格의 약 2.6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로 인한소비자의 증가된 부담을 나타내 보면 [圖 2]와 같다.

[圖 2]에서 右下向曲線(D)은 오징어의 需要曲線을 나타낸다. 오징어가 생활필수품이 아니고, 밀접한 代替財가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需要는 매우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⁸).

⁸⁾ 오징어 流通關係者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단기적 가격변동에 대하여 오징어 需要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圖 2] 오징어 價格政策에 의한 國民福祉損失



그러나 여기서 가정하는 價格變化는 국내가 격이 國際價格化하는 큰 변화이므로(약 60%의 가격하락), 消費는 그에 상용하여 현재보다 약 50% 중가하여 약 45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⁹⁾. 이럴 경우 오징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인한 消費者의 福祉減少는 그림의 A,B,C부분의 合이된다. A와 B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및 오징어 유통사업자에게로 직접 이전되는 금액을 나타내며, C부분은 높은 오징어가격으로 인해 아예 오징어소비를 포기한 消費減少에 의한 消費者의 福祉減少를 나타낸다. 이 중 연안어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國內生產量에 의한 것이므로 A부분에 해당하며, B부분은 원양오징어의 國內搬入許可를 가진 기존의 원양

어업자 및 유통사업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연안어민의 보호를 위한 高價格政策의 최대의 受惠者는 沿岸漁民이 아니라 기존의 遠洋漁業 事業者와 流通關係者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消費者福祉의 減少와 國民經濟的 損失은 오징 어뿐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참치, 조기, 가자미, 명태 등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차이 가 존재하는 모든 魚種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V. 改善方案

1. 基本方向

沿岸漁業保護의 產業秩序維持의 명분으로

C부분은 순수한 國民經濟的 福祉喪失分으로 서 消費者의 效用減少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純損失이다. A.B.C를 각각 금액으로 환산하면 588억 5천만원. 2.514억 5천만원, 856억원으로서10) 消費者福 祉減少의 總額은 3.95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소비자 복지감소분에 해당 하는 金額이 生產 및 流通事業者들의 純利益 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高價 格政策에 의해 보호받는 생산자들의 漁撈原價 가 국제수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高價格 維持政策은 국제경쟁력이 없 는 비효율적 사업자를 보호하여 產業의 生產 性을 낮추고, 消費에서 뿐만 아니라 生產에 있어서도 資源의 浪費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⁹⁾ 또한 여기서는 오징어를 모두 L사이즈의 上品으로 가정하고 있다. 오징어가 종류, 크기별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品目別 消費量과 價格의 加重値를 계산하여야 정확할 것이나,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10) (1,740-670) ×5.5}만톤=588.5억 (1,740-670) × (29-5.5만톤) =2,514.5억 (1,740-670) × (45-29만톤) ×1/2=856억

遠洋漁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는 現行 政府規制와 政策을 개선하여야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漁場의 縮小와 漁撈與件의 惡化에 대비하여 遠洋漁業은 高收益의정예산업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한競爭과 機會均等이 보장되는 가운데 適者生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산업환경을 조성하여產業體質의 强化를 기해야할 것이다. 遠洋事業者와 潜在事業者의 創意力과 經營革新意志가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적인 政府規制와 政策을 완화하여, 사업자들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漁場과 漁法을 개발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야하며 政府意思決定의節次를투명화・객관화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機會의 均等을 보장하여야한다.

또한 國內魚價를 국제수준화하여 物價安定에 기여하고 漁獲物 消費를 확대하여 국민식생활의 개선과 식량자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魚價의 국제수준화는 불가피하게 초래될 水產物 輸入의 自由化에 대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遠洋漁業體質의 강화와 沿近海 零細漁民의 轉業對策과 漁業外 所得機會를 시급히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그간의 出漁許可는 수요 중가 예상분에 대한 供給增大方案으로서 발급되어 왔다. 그러나 수산물뿐만 아니라 어느상품이든지 市場需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고도의 情報와 技術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더욱어려운 일인 것이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시장수요 증가예상치에 대한 供給物量의결정은 어획량의 可變性으로 인하여 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政策慣行은 정부가 각 魚種別 需要와 生產의 미래변화를 사업자보다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 는 것으로서 이러한 慣行의 正當性이 의문시 된다고 할 수 있다.

恣意的으로 결정된 예상수요량에 대응한 불확실한 공급량의 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加工法의 개발이나 어획물용도의 변화에 대해事業者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각 魚種別로가격의 暴騰・暴落이 이어졌던 것은 이러한物量需給의 硬直的이고도 不確實한 결정방식이 중요한 要因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참여가 政府의 需要豫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떠맡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價格의 下落이나 需要의 減少에 대해 정부가 기존의 사업자를 불가피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약기되고 있다. 앞으로 經濟自律化 및 民主化의 趨勢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방식의 政府干與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2. 出漁許可制度의 改善

遠洋漁業은 많은 경우 國際協約의 구속을 받거나 외국의 領海에 入漁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협약의 준수를 위해 정부가 특정해역에의 出漁에 許可制度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許可慣行이 앞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안어민보다는 기존 원양사업자의 保護裝置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현재의 기존사업자

들의 價格競爭과 費用節減의 유인을 낮추어, 산업자체의 國際競爭力과 生動力을 낮추게 되 는 것이다. 이는 높은 國內魚價 수준에도 불 구하고 많은 수의 원양사업체들이 높은 수익 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데서도 살펴볼 수 있 다.

그간의 新規 增隻許可가 기존사업자간의 실적위주에 근거하여 배분되어 新規 또는 他業種事業者의 參與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新規許可發給時 기존의 事業者의 반발여부가 허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되는 것은 止揚되어야 한다. 즉, 許可制度가 특정집단에 대하여 편향되게 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機會均等의 原則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장효율적인 사업자만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經濟의 基本原則도 지켜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許可制度는 국가간의 協約 履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유지되어야 하나, 면허발급의 배경이 되는 需給量 豫測에 의한 物量調節方式은 止揚되어야 하며, 需給 의 調節은 각 사업자의 事業性 判斷에 의해 市場機能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종래의 需給物量決定에 의거한 중척 분의 事前告示方式의 허가관행을 폐지하고 공 익상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出漁許可를 의

둘째, 國家間 協約이나 國內魚價의 安定 등 을 위해 中・短期的으로 入漁權을 사업자간에 배분해야 할 경우 과거와 같이 기존 사업자의 과거실적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 관적인 기준을 통해 配分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는 入札競爭에 의한 出漁許可의 배 분이나, 일정액의 事業供託金을 政府에 납부 하면 出漁許可를 반드시 내어주되 이렇게 발 급된 出漁許可를 기업간에 轉賣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가반납시 供託金을 되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入札 또는 供託에 대한 資格制限은 客觀的인 最小限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는 어업권에 대한 高價의 프리미엄을 公益을 위해 흡수하 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렇게 조성된 資金은 水產業의 發展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11).

셋째, 公海上의 操業에 대한 出漁制限은 폐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제한은 오로지特定魚種의 高價格維持를 위한 國內搬入物量의 制限 때문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정당성이 희박하며, 앞으로 公海上 操業까지도 연안국가들이 규제하려는 추세에 대비해오히려 기득권의 확보차원에서도 公海上 操業은 申告制로 전환하여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12). 그러나, 短期的으로 해당 魚種價格의

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義務許可制方式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영해에 대한 入漁權은 각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획득하도록 하되, 供給過剩이나 國內魚價下落 등을 이유로 한 出漁制限은 배제하고 공익상의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出漁許可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節次의 客觀性과 透明性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¹¹⁾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後述하는 沿近海漁業의 構造調整을 위한 資金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이다.

¹²⁾ 오징어遠洋漁業의 경우 臺灣이 申告制로 전환하여 오징어過剩生產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申告制下에서는 제도의 취지상 과잉생산의 부담과 책임은 사업자 자신들에게 귀속되며, 進入과 退出이 용이한 수산업의 경우 過剩生產이 가져오는 公益上의 폐해도 분명하지 않다고 불 수 있다.

急落이 예상되는 경우 앞서 제시한 入札 또는 供託金方式에 의한 출어허가 배분이나, 搬入 量에 비례한 國內搬入負擔金의 부과를 限時的 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海域別, 魚種別로 세분화되어 있는 出漁許可條件을 단순화하여 業種을 단순화하고 複合許可(겸업허가)도 사업자의 經營合理 化와 費用節減의 측면에서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3. 漁船確保의 自由化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 중의 하나가 保有船舶의 老朽化이다. 이는 漁撈原價의 上昇을 초래하여 높은 國內魚價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양업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時限性을 지닌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制度上 遠洋漁船의 해외로부터의 輸入은 水產廳長의 수입필요성 및 실수요자 확인을 거쳐 商工部長官이 수입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商工部는 國內造船工業 保護를 위하여 輸入許可를 매우 제한적으로 내어주고 있다(表 13 참조). 그러나〈表 14〉에서 볼 수 있듯이 生產屯數基準으로 1988년의 경우內需用漁船의 生產은 10,529톤(總28隻)으로서 우리나라 1988년도 造船產業 總生產屯數 335만6,927톤의 0.3%에 불과하다. 즉, 國內造船產業이內需用漁船生產에 의존하는 比重은 매우 낮으며, 따라서漁船輸入을 제한함으로써國內造船工業에 미치는 育成效果는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漁船은 遠洋 漁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生產手段이며 효 율적인 新型漁船의 確保는 선원안전뿐 아니라 生產性과 國際競爭力 提高에 결정적 요건이 되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產業을 育成하기 위해 다른 産業의 發展에 장애를 초래할 경 우, 被保護產業의 育成效果의 國民經濟的 寄 與小 被規制產業의 生產性損失과 追加負擔急 능가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造船工業保護를 위한 漁船輸入의 制限은 오히 려 遠洋漁業의 發展에 결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나 國內造船工業의 漁船生產依存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이러한 輸入制限措置의 정당 성은 매우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제한적인 輸入慣行의 결과로서 中古漁 船의 輸入許可自體가 특혜화되어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國內造船工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漁船輸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자 자신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최적의 선복과 선박종류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中短期的으로는 國內漁船發注者에게 中古漁船輸入許可와國內新規漁船發注를 연계시켜 허가함으로써國內漁船發注物量을 늘리면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어선의 대체도 촉진시키는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漁船의 國內建造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計劃造船資金支援도 水產當局 의 일방적인 供給物量決定에 의해 정부가 증 척결정을 하여 지원하므로 產業全體的으로 볼 때 가장 유효하고 收益性이 높은 분야로 資金 配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다. 따 라서,政府計劃에 의한 計劃造船資金의 配分

〈表 13〉 中古船輸入許可 推移

	1987		19	988	1989		
	척	G/T	척	G/T	척	G/T	
貨物船			_	_	6	10,940	
漁船	14	11,172	12	12,792	4	5,518	
計	14	11,819	12	12,792	10	16,450	

資料:商工部.

〈表 |4> 造船工業 船別 生產量(1988)

	區分	・國內船		輸出船		合 計	
船種別		척	G/T	척	G/T	척	G/T
TANKER				21	2,108,000	21	2,108,000
PRODUCT CARRIER				17	502,500	17	502,500
CHEMICAL TANKER				3	40,500	3	40,500
BULK CARRIER		6	214,199	4	148,600	10	362,799
LPG 船				2	8,090	2	8,090
GENERAL CARGO CARRIER		6	11,750	2	5,100	8	16,850
REEFER				1	6,550	1	6,550
CONTAINER 船		4	82,150	2	36,999	6	119,149
自動車運搬船		4	108,000	2	69,447	6	177,447
漁船		28	10,529	4	1,054	32	11,583
特殊船・其他		4	1,859	1	1,600	5	3,459
RIG				2		2	_
合 計		52	428,487	61	2,928,440	113	3,356,927

資料:韓國造船工業協會.

收益性 判斷에 의해 資金支援을 받을 수 있도 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沿近海 漁業保護의 構造調整을 위한 基金造成

앞에서 제시한 대로 制度改善이 이루어진다

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면 장기적으로 원양생산량의 증가와 國內魚價 의 점진적 國際化가 예상된다. 이로 인한 沿 岸零細漁民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制度改善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沿近海 漁民은 1988년 현재 약 60만명으로 서 점차 감소추세이며(表 15 참조) 특히 자원 의 고갈로 인하여 高魚價政策을 통한 어민소 득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유지 불가능할 것이

〈表 15〉 漁家人口 減少趨勢

(단위: 千명,%)

構成比(B/A)		

註:總人口는 年央人口(7.1 基準), 漁家人口는 年 末基準 人口。

資料:農林水產部、『農林水產統計年報』,各年度。 經濟企劃院、『韓國統計月報』,各號。

다. 沿近海漁業의 경우도 所得의 長期的 增加는 다른 1次產業과 마찬가지로 生產物의 加工을 통한 附加價值의 增大,漁業外 所得機會의 創出, 1人當 漁業生產性의 向上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1人當 漁業生產性의 향상은특히 漁業人口의 減少와 漁撈機械化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작위적인 高魚價政策은 오히려 漁民의 轉業과 加工技術開發의 誘因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國民經濟的負擔이 됨은 물론 漁業生產性 向上과 漁家所得增加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漁業生產性 向上과 漁業外 所得機會의 創出을 위해서는 產業構造改善을 위한 지속적인 支援과 投資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의 構造調整을 위한 投資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이는 주로 政府財政支援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構造調整을 추진하기 위한 資金의 조성은 政府의 財政支援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水產業內部의 事業 剩餘를 再配分함으로써 構造調整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差異에서 발생하는 遠洋事業 및 魚類輸入에 있어서의 超過剩餘(소위 프리미엄)를 제도적으로 흡수하여 沿岸漁民의 轉業支援과 漁獲物의 加工技術開發 및 加工團地의 조성에 사용하여야할 것이다. 超過剩餘의 흡수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은 出漁許可의 배분방식이나 국내 搬入負擔金의 부과로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遠洋漁業協會에서 자발적 형식으로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는「沿近海 漁 民支援事業資金」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임 의적 형식의 관행이므로¹³⁾ 이를 개선하여, 遠 洋漁業界에 의한 沿近海 育成基金의 조성을 제도화하고 그 규모를 늘려야 하며, 產業構造 調整을 위한 長期計劃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基金을 집행・운용하여 실질적 구 조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5. 新漁場 開拓을 위한 支援

遠洋漁場의 감소와 국제적 漁撈制限의 추세속에서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新漁場의 개척이 필수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없을 것이다. 그러나 漁業의 특성상 新漁場開拓에는 많은 危險負擔이 존재하며, 따라서정부에 의한 制度的 誘因의 제공없이는 민간업계의 자발적 노력은 늘 산업발전을 위한 適正水準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遠洋漁業界의어장개척노력을 活性化하기 위해 試驗操業에

¹³⁾ 基金의 규모는 연간 약 10억원 수준이며 水產廳 長이 水產業協同組合과 협의하여 집행하고 있으 나, 그 규모가 작아 構造調整에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간의 支出은 주로 수산업관계 자의 慶吊事補助, 廳長 명의의 支援金 등의 용 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新漁場 開拓에 독자적으로 성공한 경우 일정기간 排他的 出漁權을 인정하는 등의 誘因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未知의 漁場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미어느 정도 漁場性이 알려져서 開發의 초기단계에 있는 어장에 早期 進出하는 방식이 더현실적이므로, 遠洋漁業協會와 海外駐在 水產關係公務員의 정보수집 및 支援機能을 강화하여 海外漁場情報蒐集을 활성화하고 民間業界의 漁場開拓에 따르는 危險負擔을 分散・吸收하여야 할 것이다.

VI. 要約 및 結語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60, 70년대에 政府의 지원에 힘입어 주요 輸出產業으로 고속성장하여, 한때 우리나라가 遠洋漁業의 세계적强國의 지위를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漁場의 축소와 輸出不振 및 漁撈條件의 악화로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미래를 반드시 樂觀的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遠洋漁業에 대한 산업환경의 악화는 어장의 축소와 같은 국제적인 趨勢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주요 競爭國인 日本이나 台灣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國內的인 產業與件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漁撈原價의 상승과그로 인한 國際競爭力의 喪失, 輸出不振, 收

益性減少의 문제는 과거부터 유지되어온 關聯政策 및 政府規制가 국제적 환경변화와 우리 경제의 質的・量的 變化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產業의 生產性 向上과 競爭力 提高는 산업을 구성하는 개별기업의 경영이 效率化되고 生產性이 향상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政府의 支援이나 保護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 닌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本稿는 우리나라 遠洋漁業의장기적 발전과 高收益의 精銳產業化를 위한사업여건의 개선, 즉 政府規制의 改善方案을제시하였다. 주요 改善方案으로서 출어허가과정의 客觀化와 透明性 확보를 위한 義務免許制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산업의 체질강화는비효율적 사업자의 退出과 효율적 사업자의進入 및 成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制度의 導入이 이런 방향으로의 改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出漁許可의 배분과정에서「經濟的 地代(economic rent)」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며 遠洋漁業의 발전과 沿近海漁業 構造調整基金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企業의 經營合理化와 費用節減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出漁許可의 조건 및 業種區分을 단순화하고, 어선확보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여야 하며, 新漁場의 지속적인 開發을 위한 각종 誘因施策을 도입할 것도 아울러 제안하였다.

▷參考文獻◁

김용해,「2천년을 향한 遠洋漁業의 展望 (I), (II)」, 『漁船』, 1986.6.

大宇經濟研究所,「遠洋漁業」,『大宇證券 調査 月報』,第28號,1988.5。

朴星快,「원양오징어 국내반입이 연근해어업 에 미치는 영향」, 農村經濟研究院, 1989. 產業銀行,「세계수산업의 동향과 우리나라 원 양어업의 당면과제」,『調査月報』, 205호,

商工部,『商工白書』, 1989.

1972, 12,

水產廳, 「참치횟감 공급확대계획(안)」,

1989.4.
, 「계획조선현황 및 문제점」, 1989.5.
, 「참치 독항어선 증척을 위한 실수
요자 선정기준」, 1989. 6.
, 「베링공해 확대진출검토」 , 1989.6.
, 「89/90 뉴지수역 오징어 채낚기 출
어방침」, 1989.11.
韓國水產會,『水產年鑑』,各年度。
韓國遠洋漁業協會,「當面主要懸案事項」,
1080 10

우리나라의 適正바스켓換率: 市場平均換率制度의 運用基準 摸索

嚴 峰 成

本稿는 원貨換率의 適正運用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Lipschitz(1980)의 방식을 따라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을 안정시킬 수 있는 適正通貨「바스켓」을 구성해 보았다. 80년대 중반 이후 이를 적용했을 경우 실제의 경우보다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이 훨씬 안정될 수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시점에서 구한 適正加重值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主要換率과 相對物價間의 關係變化에 따라 加重值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適正通貨「바스켓」과 그에 기초한「바스켓」換率은 우리의 經常收支나 生產性 變化推移와 함께 市場平均換率制度下에서 적절한 換率運用을 위한 中長期的 指標의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 머리말

70년대 전반「브레튼우드」體制가 붕괴되면 서 세계의 주요국 通貨가 自由變動하게 되자 開途國에 있어서도 換率制度가 중요한 政策課

筆者:本院 研究委員

* 草稿에 대해 여러가지 助言을 해준 本院의 左承 喜 博士와 朴元巖 博士께 감사드리며, 實證分析 作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준 本院 金融經濟室의 劉載均씨와 拙筆 原稿를 정확하게 정리해준 朴鉉 淑씨께 감사드린다. 題로 대두되었다. 범세계적으로 固定換率制度가 지속되었던「브레튼우드」체제하에서 대부분의 開途國은 특정한 基準通貨에 自國通貨의換率을 고정시키는 이른바 單一通貨「페그」制度를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換리스크 없이 對外去來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國際收支赤字가 큰 폭으로 누적되었을 경우에한해서 예외적으로 換率의 平價切下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70년대 전반 이후 주요 통화간 換率이 自由變動함에 따라 開途國의 경우 基準通貨에 대한 自國通貨의 換率을 아무리 고정시키더라도 제3국 통화에 대해선 自國通貨의 가

치가 變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自國經濟와는 무관하게 발생되는 主要通貨間 換率變動으로 인하여 開途國의 交易條件, 輸 出入, 物價 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 이다. 主要換率의 變動이 가져오는 이러한 교 란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開途國들은 單一通貨「페그」制度 대신에「바스켓페그」제도 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1980년 2월 複數通貨「바스켓페그」에 연동된 管理變動換率制度 를 채택하여 지난 2월말까지 10년간 운용했었다". 이 제도는 원貨價值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主要換率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나아가서 國際收支의 改善 등과 같은 經濟政策目標에 부합되게 원화환율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우리의 換率運用에 관해 國內外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미국 등 外國에서는 우리가 換率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비난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우리의 輸出景氣나 일본과 대만 등과 같은 主要交易國 또는 競爭國의 換率變動 추이에 따라 원貨換率이 적절히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다.

本稿는 이처럼 최근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通貨「바스켓」制度下에서의 適正通貨

「바스켓」의 구성문제를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 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本稿의 작성기간중에 우리의 換率制度가 市場平均換率制度로 개편 됨으로써 本研究의 時官性은 많이 저하되었다 고 하겠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複數通貨「바 스켓」制度下에서의 換率運用의 경험을 평가해 보고 通貨「바스켓」의 구성문제를 재조명해보 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市場平均換率制度 下에서도 적절한 外換市場介入을 통한 換率의 管理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즉, 短期 的 急變動을 완만히 하고 中長期的으로는 換 率이 經常收支,實質實效換率,生產性變化 등 을 감안한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適正通貨「바스켓」을 기 초로 구한「바스켓」換率은 主要換率이 급변동 하는 속에서 적절한 外換市場介入을 위한 參 考換率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第II章에서는 80년대 複數通貨「바스켓」制度下에서의 우리의 換率運用經驗을 평가해 본다. 第III章에선 適正通貨「바스켓」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第IV章에서는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適正「바스켓」換率을 實證分析한 결과를 설명한 다음 결론을 맺는다.

II. 80年代 換率運用의 評價

實質實效換率의 變動과 換率政策의 役割

범세계적 自由變動換率制度下에서 소규모

¹⁾ IMF의 換率制度分類에 의하면 우리의 複數通貨「바스켓」制度는 엄격한 의미에서「바스켓페그」제도가 아니라 管理變動換率制度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원貨換率이 단순히「바스켓페그」換率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通貨「바스켓」에 연동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實勢反映裝置를 통해서 당국에 의해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²⁾ 우리나라 貿易收支調整過程에 있어서 換率政策의 역할에 관한 分析은 嚴峰成(1987) 참조.

開途國의 換率政策은 일반적으로 實質實效換率(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이 균형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³⁾. 主要換率의 변동이 自國의 對外競爭力이나 國際收支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巨視經濟의 균형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資源配分側面에서도 換率의 왜곡으로 인한 교란요인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實質實效換率이란 우리의 主要交易國들과의 物價上昇率 差異를 감안한 實質換率을 加重平 均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REER_t = \prod_{j=1}^{N} \left(\frac{E_{jt}^h P_t^j}{P_t^h} / \frac{E_{jo}^h P_o^j}{P_o^h} \right)^{W_j} \cdots (1)$$

여기서 E_{jt}^n 는 t시점에서의 j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j통화 한 단위의 원貨價格), P_t^j 와 P_t^n 는 각각 t시점에서의 j國과 韓國의 物價, w_j 는 加重値, t=0는 基準時點을 지칭한다 5 .

만일 國家間에 購買力平價가 항상 성립되도록 換率이 즉각적으로 조정된다면 實質實效換率은 항상 균형수준에 유지될 것이며 별도의 換率政策이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선 換率이 購買力平價水準에서 왜곡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實質實效換率의 안정을 위한 換率政策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 한 것이다.

그러면 實質實效換率을 均衡水準에서 안정시키기 위해선 換率政策을 어떻게 운용해야하는가? 이를 위해서 먼저 實質實效換率의變動要因을 살펴본 다음 換率政策의 역할을 논의하기로 한다. 위의 식 (1)에서 정의된 實質實效換率(REER) 指數를 名目實效換率(EER)과 相對物價(RP)指數로써 표현하면

$$reer_t = eer_t + rp_t$$
, 이에 따라 $var(reer_t) = var(eer_t) + var(rp_t) + 2 cov(eer_t, rp_t) \cdots (2)$

여기서 $reer_t = ln(REER_t)$

$$eer_t = ln \; (EER_t) = \sum_{j=1}^{N} w_j \; ln \; (E_{jt}^h/E_{jo}^h)$$

 $rp_t = ln \; (RP_t) = \sum_{j=1}^{N} w_j \; ln \; (\frac{P_t^i/P_o^j}{P_t^h/P_o^h})$

즉, 實質實效換率의 변동은 名目實效換率의 변동, 相對物價의 변동, 그리고 名目換率과 相對物價의 상관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實質實效換率의 세가지 변동요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換率運用의 유형을다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첫째, 名目換率의 변동이 主要交易國과의 相對物價의 변동을 상쇄하도록 換率을 운용함으로써實質實效換率의 변동을 극소화시키는 경우이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엔 cov(eer, rp) = -[var(eer) + var(rp)]/2가 되게 함으로써 實質質效換率의 분산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완벽하게 換率을 운용하

³⁾ Black(1976), Branson and Katseli(1982), Lipschitz(1979, 1980) 등 참조.

⁴⁾ 實質實效換率을 항상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예기치 못했던 수확의 감소 등과 같은 일시적인 實物部 門의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 實質換率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란효과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다. Fischer(1977) 참조.

⁵⁾ 實質實效換率은 기준시점, 포함통화의 범위, 가 중치 등에 따라 계산결과가 약간 상이하게 될 수 도 있으나 그 變動趨勢는 대체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

⁶⁾ Lipschitz(1979) 참조.

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장 큰이유는 이를 위해 필요한 換率統計는 즉각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物價統計는 일반적으로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名目實效換率의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換率運用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바스켓페 그」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 전술한 바와 같이 相對物價差異를 감안하 는 데 수반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아예 名目實效換率의 변동만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實質實效換率은 최소한 相對物價의 분산만큼 변동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換率運用이 名目實效換率의 변동을 최소화시키지도 못하고 相對物價의 변동을 상쇄시키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var(reer)이 var(rp)보다 더욱 커지게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換率運用의 세가지 유형을 참고로 하여 아래에선 80년대 우리나라의 實際 換率運用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2. 兇貨換率運用의 評價

8) 구체적인 換率決定式은 아래와 같다.

70년대말까지「달러페그제도」를 운용해오던

우리나라는 1980년 2월 複數通貨「바스켓」제도를 채택하여 지난 2월말까지 10년간 운용했었다. 이에 의하면 원貨의 換率은 SDR「바스켓」과 우리의 主要交易國通貨로 구성된 독자「바스켓」등 2개의 通貨「바스켓」에 의해 계산된 實效換率의 加重平均值를 기초로 하여 결정되며, 여기에 主要交易國과의 物價上昇率差異나 여타 政策目標 등을 반영하는 이른바 實勢反映值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⁸⁾. 다시 말해서 원貨의 名目實效換率의 안정은 물

〈表 I〉 원貨의 實質實效換率 推移

 $(1985 \text{ III} \sim 86 \text{ II}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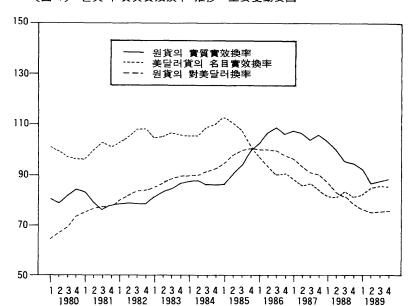
	對美달러換率1)	實質實效換率2)
1980 IV	651, 32	84. 25
1981 IV	690.10	78.09
1982 IV	744.69	78, 33
1983 IV	794.78	86.72
1984 IV	819.49	85.97
1985 IV	891.37	99.05
1986 IV	866, 53	105.91
1987 I	855.69	107.31
II	827.80	106.34
III	807.54	103, 57
IV	799. 24	105.80
1988 I	771.46	103. 26
II	735, 64	100.00
Ш	722.97	95.41
IV	695.79	94.63
1989 I	677, 46	92, 31
II	666.88	86.68
Ш	668.57	87.70
IV	672.91	88.49

註:1) 期中 平均值.

2) 우리나라의 6대 交易國(美國, 日本, 西獨, 英國, 캐나다, 프랑스)의 基準年度 交易加 重値 사용.

⁷⁾ 간단한 예를 들면 自國通貨를 「페그」시킬 通貨「바스켓」을 實質實效換率의 계산에 사용된「바스켓」의 구성대로 하고 實勢反映裝置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var(eer) = 0, cov(eer, rp) = 0이므로 var(reer) = var(rp)이다.

원貨의 對美달러換率= β ×(SDR바스켓)+ β ′×(독 자바스켓)+ α 여기서 β ′+ β =1, α 는 實勢反映裝置, SDR「바스 켓」은 미국, 서독,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通貨로서 구성된 複合通貨「바스켓」, 독자「바스켓」 은 우리의 主要交易國 通貨로써 구성되나 그 구체 적 내용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의해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은 각「바스켓」構成通



〔圖 1〕 원貨의 實質實效換率 推移:主要變動要因

론이고 實勢反映裝置를 통해서 實質實效換率 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換率運用의 일차적 목 표였다고 할 수 있다.

원貨의 實質實效換率推移를 보면 80년대 전반에는 대체로 보합 내지는 완만한 切下趨勢를 보이다가 달러가 약세로 반전되기 시작한 1985년부터 크게 切下되었음을 알 수 있다(表 1과 圖 1 참조). 특히 86년과 87년에는 우리의 經常收支黑字로 인하여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이 각각 3%와 9% 정도씩 切上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貨 자체가 큰 폭의 弱勢를 지속하고 우리의 物價도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實質實效換率은 대체로 보합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이후에는 한 해에 무려 16% 나 되는 대폭적인 換率切上과 함께 實質換率 도 급격히 切上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經常收支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던 1985년 3/4분기~86년 2/4분 기를 기준으로 할 때 원貨는 87년 1/4분기엔 7%정도 過小評價되기까지 했으나 그 이후 實 質切上이 지속됨으로써 88년 하반기 이후엔 오히려 過大評價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88 년 하반기 이후엔 美달러貨가 다시 强勢를 보 임으로써 원貨의 實質切上은 가속화되었다(圖 1 참조). 원貨의 이와 같은 實質切上은 높은 賃金上昇과 함께 우리의 對外競爭力을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최근 輸出增加率이 급격히 둔 화되고 貿易收支黑字幅이 대폭 축소되게 된 것이다.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의 分散을 앞의 式(2)를 이용하여 名目實效換率의 分散, 相對物價의 分散, 그리고 名目換率과 相對物價의 共分

貨의 對美달러換率 變動의 加重平均值에 實勢反映 値를 추가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美달러貨 이외의 여타 通貨에 대한 원貨換率은 國際金融市場에서 결정된 그 通貨의 對美달러換率과 원貨의 對美달 러換率의 裁定換率(cross rate)로서 결정된다.

〈表 2〉 원貨의 實質實效換率 變動의 要因別 分析

	交易加重值 ¹⁾	SDR 加重值 ²⁾
1974 I ~ 79 IV		
var (reer) (A)	0.003262	0.003523
var(eer) (B)	0.013134	0.008817
var (rp) (C)	0.02047	0.014681
cov(eer, rp)	-0.01517	-0.00999
1980 I ~ 89 I		
var (reer) (D)	0.024781	0.022677
var (eer) (E)	0.038783	0.0193979
var(rp) (F)	0.002867	0.001395
cov (eer, rp)	-0.00843	0.000951
D/A	7, 596873	6. 434844
E/B	2,95287	2, 197913
F/C	0.140059	0.095021

註:1) 우리나라의 6대 交易國(美國, 日本, 西獨, 英國, 캐나다, 프랑스)을 포함, 各期 기준 연도의 交易加重値를 사용하여 계산.

散 등 세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表 2〉와 같이 된다.「바스켓」제도 채택 전후의 경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分析期間을 1974년 1/4분기 ~79년 4/4분기와 1980년 1/4분기~89년 1/4 분기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各期 基準年度 의 數値를 중심으로 하여 분산을 구하였다⁹⁾. 實效換率은 70년대보다 오히려 더욱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變動要因別로 살펴보면 먼저 名目實效換率의 變動이 그 이전보다 약 2~3배 정도 커짐으로써 實質實效換率의 변동을 크게 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相對物價의 變動幅은 크게 작아졌는데 이는 80년대 우리의 物價安定努力과지속적인 市場開放 등으로 內外物價上昇率 차이가 많이 축소되고 國內物價 變動趨勢가 해외의 추세와 상당히 동질화되었기 때문이라고유추된다. 마지막으로 換率과 相對物價의 共分散은 그 절대값이 작아지거나 심지어 陽의부호로 바뀜으로써 實質實效換率의 변동을 증대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分析結果를 종합해 볼 때 80년대 들어 채택한 複數通貨「바스켓」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運用됨으로써 원貨의 名目實效換率의 안정이나 나아가서 實質實效換率의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소개한 換率運用의 세가지 유형 중에서 세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換率運用이 名目實效換率의 변동을 축소시키지도 못하고 內外物價變動을 상쇄시키지도 못함으로써 實質實效換率의 변동이 더욱 커진 것이다.

「바스켓페그」제도가 이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원貨換率이 歪曲되고 있는 것은 換率當局이 원貨換率의 決定過程에서 實勢反映裝置¹⁰⁾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따라 다음 章에서는 가능한 한 實勢反映裝置의 역할을 줄이면서도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適正「바스켓」의 구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美國, 日本, 西獨, 英國, 프랑스 등 5개국 通貨로써 구성된 SDR의 加重値를 사용하여 계산.

[〈]表 2〉를 보면 80년대에 와서 원貨의 實質

⁹⁾ 各期의 平均値를 중심으로 分散을 구하여도 결과 상 큰 차이는 없으나 實質實效換率을 均衡水準에 서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換率運用目標이 므로 基準年度의 數値를 중심으로 구한다. 한편 基準年度는 經常收支가 균형에 근접한 해로서 前 期의 경우엔 1977년, 후기는 1985년 3/4분기~86 년 2/4분기로 한다.

¹⁰⁾ 內外物價上昇率差異나 기타 政策目標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 장치이다. 註 8) 참조.

Ⅲ. 適正通貨「바스켓」의 理論

換率制度로서 「바스켓페그」제도를 채택한 경우에 있어서 通貨「바스켓」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즉, 「바스켓」에 포함되는 通貨의 범위, 포함된 通貨에 대한 加重値의 算定根據, 基準年度등에 관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加重値의 결정문제에 관해서는 Black(1976), Flanders and Helpman(1979), Branson and Katseli(1982) 등에 의해 交易比重, 交易財 需給의 價格彈力性 등을 근거로하여 여러가지 政策目標에 따른 상이한 加重值들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Lipschitz(1980), Lipschitz and Sundararajan(1982)는 이상과 같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特定政策目標에 부합되는 實質實效換率을 근거로 한 適正「바스켓」은 실제로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實質實效換率을 계산하여 적절한 換率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內外物價統計를 즉각적으로 입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일 物價統計를 換率資料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實質實效換率이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名目換率을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선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택했던 方式과 같이「바스켓」에 의해선 名目實效換率 만을 안정시키도록 하고 內外物價差異의 추세 를 독립된 實勢反映裝置를 통해서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따르면 內外物價差 異의 趨勢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實勢反映裝置가 內 外物價差異外의 다른 政策的 고려에 의해 운 용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Lipschitz(1980)가 제의한 대로 實勢反映裝置와 같은 추가적 고려없이 主要換率의 變動만을 고려하여「바스켓」을 구성하는 것이다. 단, 通貨「바스켓」의 加重値를 결정할때 과거의 換率과 物價의 變動推移는 물론 相關關係 등을 활용하여 實質實效換率의 安定등과 같은 政策目標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適正加重値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아래에선 이 두번째 방법에 따라 適正「바스 켓」을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¹²⁾. 式(1)의 實質 實效換率을 로그를 취하여 다시 정의하면 아 래와 같다.

$$reer_{t} = \sum_{j=1}^{N} w_{j} \left((e_{jt}^{h} + p_{t}^{j} - p_{t}^{h}) - (e_{jo}^{h} + p_{o}^{j} - p_{o}^{h}) \right)$$
$$= \sum_{j=1}^{N} w_{j} \left(e_{jt}^{h} + p_{t}^{j} - p_{t}^{h} \right) \qquad \dots (3)$$

¹¹⁾ 예를 들면「바스켓」에 포함시킬 通貨를 SDR 構成 5개국으로 하느냐, 主要交易國으로 하느냐, 아니면 競爭國까지 포함하느냐의 문제, 加重值를 交易比重이나 去來表示通貨比重, 아니면 다른 政策目標에 근거하느냐의 문제,基準年度를 貿易收支나 經常收支가 均衡에 근접한 시점이냐아니면 다른 기준에서 결정하느냐의 문제 등이다. 구체적 사항은 Williamson(1982) 참조.

¹²⁾ Edison and Vardal(1985)은 Lipschitz(1980)의 接近方法을 스칸디나비아諸國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金仁哲(1985)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本稿는 金仁哲(1985)의 후속연구라고 볼 수 있으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變動加重値의 시도 등 接近方法에 있어서나 分析의 結果에 있어서 相異하다.

여기서 w_j 는 j國의 交易加重値, e_{jt}^t 는 t時點 에서의 j國通貨 한 단위에 대한 원貨換率, p_t^j 은 각각 j國과 우리나라의 物價,t=0는 기준시점을 지칭한다. 換率(e)과 物價(p) 變 數는 기준시점의 수준을 1로 하여 지수화시키고 로그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e_{j0}^h+p_0^j-p_0^k=0$ 이 된다.

換率運用의 목표를 實質實效換率의 변동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¹³⁾ 실제 換率運用 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e_1^h = \sum_{i=1}^N \beta_i \ e_1^i, \quad \exists \ e_1^1 = 0 \cdots (4)$$

여기서 e_1^{r} 은 基準通貨인 美달러貨에 대한 원 貨換率, e_1^{r} 은 美달러貨에 대한 j國通貨의 換 率, β_{s} 는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의 변동을 최소 화시키기 위한 j國通貨의 適正加重値로서 $\Sigma\beta_{j}$ =1이며, 適正加重値 (β_{s}) 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var(reer_t)$$
 w. r. t. $\beta_j \cdots (5)$

式 (3)과 (4)를 (5)에 대입하여 β_j 에 대해

편미분하여 0으로 놓으면 아래와 같다.

$$0 = \sum (\beta_j - w_j) \ var(e_1^j) + \sum w_j \ cov(p^j - p^1),$$

$$e_1^j) + \sum cov(p^1 - p^h, e_1^j),^{(14)}$$

따라서

$$\beta_{j} = w_{j} - \frac{cov(p^{j} - p^{1}, e_{1}^{j})}{var(e_{1}^{j})} w_{j} - \frac{cov(p^{1} - p^{h}, e_{1}^{j})}{var(e_{1}^{j})} \dots (6)$$

式(6)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通貨「바스켓」내에서 i國通貨의 適正加重値 (β_i) 는 j國의 交易加重値 (w_i) 뿐만 아니라 j國 의 對美달러換率과 對美相對物價의 相關關係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즉, i國의 對美달러換率이 i國과 美國間의 購買力 平價를 보다 긴밀히 반영할수록 適正加重値는 交易加重値보다 더욱 작아지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相關關係가 희박할 것으로 믿어지는 맨 마지막 항목을 무시한다면, 극단적인 예로 서 i國과 美國間의 購買力平價가 완전히 성립 하는 경우엔 $\beta_i = 0$ 이 되 μ^{15} , 그 반대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엔 $\beta_i = w_i$ 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美國과 여타국들간에 완전 한 購買力平價가 성립되는 경우엔 適正「바스 켓」에서 美달러貨를 제외한 모든 通貨의 加重 値가 0이 되며, 美달러貨의 加重値가 1이 되 는 것이다. 이 경우엔 이른바 「달러페그」를 택하여도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은 항상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j國의 對美달러換 率과 對美相對物價의 相關關係가 1보다 작으 면서 陽의 關係를 보이는 경우에는 j國通貨의 適正加重値(β_i)는 交易加重値(w_i)보다 작으 며, 그 반대로 陰의 關係를 보이는 경우엔 前 者가 後者보다 오히려 크게 되는 것이다.

¹³⁾ Branson and Katseli(1982), Lipschitz and Sundararajan(1982)은 換率運用의 목표로서 貿易收支나 交易條件 등 여러가지 다른 政策目標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加重値만 약간 바뀔 뿐 實質實效換率이 중심적 역할을 함을 입증하였다.

¹⁴⁾ 먼저 式 (4)를 (3)에 대입하면, $e_{r}^{h} = e_{1t}^{h} - e_{1t}^{j}$ 라는 裁定關係를 이용하여 $reer_{t} = \Sigma(\beta_{j} - w_{j})$ $e_{1t}^{j} + \Sigma w_{j}$ $(p_{t}^{i} - p_{t}^{i}) + (p_{t}^{i} - p_{t}^{h})$ 가 된다.

¹⁵⁾ 式 (6)에서 둘째 항의 係數인 $cov(p^{j}-p^{i}, e^{i}_{i})/var(e^{i}_{i})$ 은 j國의 對美相對物價를 j國의 對美달러換率로 회귀분석할 때 얻어지는 係數로서 購買力平價가 완전히 성립하는 경우엔 1이 된다.

IV. 韓國의 適正바스烮換率 實證分析

이상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 貿易收支를 安定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適正通貨「바스 켓」과 이를 통한 適正「바스켓」換率을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交易加重値에 근거한 通貨「바 스켓」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 해서「바스켓」에 포함할 通貨로서는 美國, 日 本, 西獨, 캐나다, 英國, 프랑스 등 6大交易 國의 通貨로 한정하였다. 현재 複數通貨「바스 켓」제도하에서 원貨換率은 SDR「바스켓」과 獨自「바스켓」의 두가지 「바스켓」을 이용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本稿에선 이와 같은 二重構 造로 인해 분석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것 을 피하기 위해 2개의「바스켓」에 포함되는 6 大交易國의 通貨로써 하나의「바스켓」을 구성 하였다고 가정하기로 한다16, 그리고 通貨別 適正加重值를 계산함에 있어서 式(6)의 맨 마 지막 항목은 무시하기로 한다. 이는 우리의 對美相對物價와 여타국의 對美달러換率間에는 統計的 有意性이 있는 相關關係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1980년 1/4분기부터 85년 2/4분기까지

의 分期別 換率과 物價資料를 이용하여 式(6)에 의해 계산한 通貨別 適正加重値는 〈表 3〉과 같다. 그런데 1985년 가을 「플라자」合意이후 달러가 急落하는 등 主要換率이 크게 變動되었으므로 분석대상기간을 85년 3/4분기를 중심으로 둘로 나누어서 適正加重値를 다시구해보기도 하였다. 〈表 3〉의 결과를 볼 때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通貨別 適正加重値는 交易加重値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는 것인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主要通貨의 對美달러換率이 購買力平價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게 다르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80년대 전반에 있어서 캐나다의 경우 對美換率이 相對物價를 반영하는 정도가 0.6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라서 캐나다달러의 適正加重値는 交易加重値보다 훨씬 작은 0.018이 된다¹⁷⁾. 그 반면 西獨의 경우엔 美國과 購買力平價가 거의 성립되지 않으므로 適正加重値가 交易加重値와 거의 같은 0.05가 된 것이다.

둘째, 主要通貨와 美달러間 換率과 相對物價의 相關關係가 80년대를 통해서 크게 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適正加重値 또한 상당히 바뀌어 왔다는 점이다. 日本 엔貨의 경우 80년대 전반에는 陰의 相關關係를 보였으나「플라자」合意 이후 對美달러換率이 購買力平價를 상당폭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조정됨으로써 엔 貨의 適正加重値는 0.444에서 0.239로 낮아졌다. 한편 캐나다와 英國의 경우엔 80년대 전반의 陽의 相關關係가 후반에 와선 오히려 陰의 相關關係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상 설명한 分析結果를 종합해 볼 때 本稿에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通貨「바스켓」내에서의 適正加重値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특정한

¹⁷⁾ 캐나다달러의 加重値가 작아진 만큼 美달러의 加重値가 커지게 된다. 이는 캐나다와 美國問 購買力平價가 밀접하게 성립되므로 우리의 通貨「바스켓」에서 그만큼 캐나다달러의 加重値를 줄이고 美달러의 加重値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表 3〉 诵貨別 滴正加重值

	六日·m手/体	cov (p	$^{j}-p^{1}, e_{1}^{j})/var(e_{1}^{j})$		à)	
	交易加重値 (w _i) ¹⁾	1980. I ~ 89. III	1980, I ~85, II	1985. III ~89. III	1980. I ~ 89. III	1980. I ~ 85. II	1985. III ~ 89. III
日本	0.3582	0.3705	-0.2396	0.3319	0.2255	0.4441	0.2393
西 獨	0.0557	0.0939	0.0981	0.1943	0.0505	0.0502	0.0449
캐나다	0.0481	0.6217	0.7715	-0.0923	0.0182	0.0110	0.0526
英 國	0.0374	0.2839	0.2660	-0.2124	0.0268	0.0275	0.0454
프랑스	0.0253	0.3712	0.4317	0.0090	0.0159	0.0144	0.0251
美 國2)	0.4752				0.6631	0.4528	0.5927

註:1) 基準年度(1985, III~86, II)의 交易比重。

2) 基準通貨인 美달러貨의加重値는 다른 通貨의 加重値의 合을 1에서 뺀 값으로서 결정됨.

加重値를 오랜 기간 계속 적용한다면 상당한 歪曲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主要換率의 再調整이 이루 어짐으로써 交易相對國間 物價의 換率變動의 相關關係가 構造的 變化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아래에선「플라자」합의가 이루어진 1985년 3/4분기 이후 우리의 換率運用에 있어서 本稿의 方式에 따른 適正加重値를 적용하였다고 가정하고 그 結果를 소개한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換率과 物價間 相關關係의 構造的 變化가 換率運用에 미치는 效果를 살펴보기 위

해서 두가지의 實驗을 해보기로 한다.

첫째는 80년대 전반(1980. I~85. II)의 資料를 기초로 하여 구한 加重値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固定加重値($\bar{\beta}$)의 경우이다. 이 경우 80년대 중반 이후 換率과 物價間 相關關係의 變化가 加重値의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歪曲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는 每年 加重値를 수정해서 적용하는 경우이다. 즉, 1년마다 그 이전 5년간의 換率과 物價資料를 기초로 하여 구한 變動加重値($\tilde{\beta}$)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加重値를 자주 變更해야 하는

〈表 4〉 通貨別 適正加重値:固定加重値의 變動加重値

****		適正加重値(β _j)							
		固定加重値(月)1)	(万)"						
		1985. III ~ 89. III	1985, III~86, II	1986, III~87, II	1987. III ~88. II	1988. III ~89. II	1989. III ~		
日	本	0.4537	0.4537	0.2669	0.2597	0.2626	0.2546		
西	獨	0.0481	0.0481	0.0521	0.0549	0.0521	0.0499		
캐L	나다	0.0112	0.0112	0.0154	0.0149	0.0307	0.0548		
英	或	0.0272	0.0272	0.0243	0:0344	0.0495	0.0490		
<u> </u>	당스	0.0131	0.0131	0.0108	0.0230	0.0267	0.0255		
美	國3)	0.4468	0.4468	0.6306	0.6131	0.5783	0.5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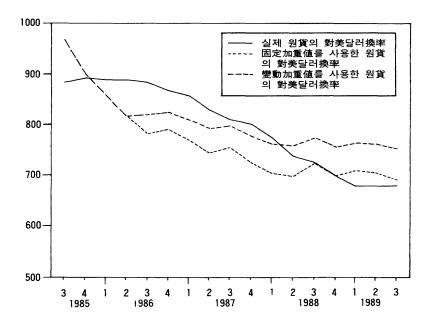
註:1) 1980.I~85.II의 換率 및 物價資料를 기초로 하여 구한 適正加重値.

2) 前 5年間 換率 및 物價資料를 기초로 하여 구한 適正加重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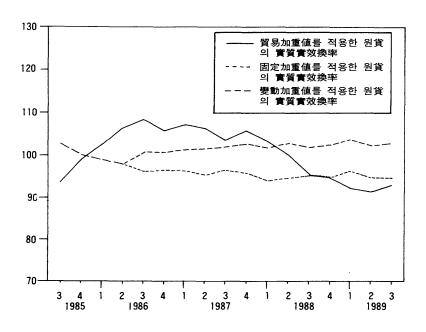
3) 基準通貨인 美달러貨의 適正加重値는 다른 通貨의 加重値의 숨을 1에서 뺀 값으로서 결정됨.

번거로움은 있으나 換率과 物價間 相關關係의 변화는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실험을 위해 필요한 通 貨別 適正加重値는 \langle 表 $4\rangle$ 와 같다. 예상했던 대로 變動加重値($\tilde{\beta}$)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폭의 變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圖 2] 適正通貨「바스켓」에 의한 원貨의 對美달러換率(適正바스켓換率)



[圖 3] 適正通貨「바스켓」에 의한 원貨의 實質實效換率



日本 엔貨의 加重値는 첫해의 0.454에서 다음 해에 0.267로 대폭 낮아져서 대체로 0.25~0.26의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美달러의 加重値는 첫해의 0.447에서 다음해에 0.631로 대폭 增加된 후 다시 0.566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適正加重値를 사용해서 구성한 適正通貨「바스켓」에 의한 원貨의 對美달러換 率(適正바스烮換率)과 實質實效換率은 [圖 2] 와 [圖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이를 통 해서 우리는 適正加重値를 사용한 경우 단순 한 貿易加重値를 사용한 경우보다 원貨의 實 質實效換率이 훨씬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험의 初期인 80년대 중반에 실 제보다 큰 폭의 원貨切上을 하고 그 이후엔 원貨換率을 소폭의 切上 내지는 안정되게 유 지함으로써 실제와 같은 80년대 중반의 대폭 적인 實質切下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變動加重值를 적용할 경우 固定加重值 의 경우보다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이 더욱 안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表 5〉를 보면 固定加重値의 경우 實質實效換 率의 分散이 실제치의 약 15%로 줄어든 반

면, 變動加重値의 경우엔 약 6%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變動加重値下에선 固定加重値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원貨가 더 弱勢를 보이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變動加重値의 경우 80년대 중반 달러弱勢時엔 달러貨에 높은加重値를 부여하고 그 이후 달러가 다시 强勢를 보임에 따라 달러貨의 加重値가 낮아지는 등에 의해 원貨의 實效換率이 보다 안정되도록 加重値가 변동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 맺음 말

換率變動은 國際收支, 인플레, 經濟成長 등 巨視經濟調整에 큰 영향을 미찰 뿐만 아니라 中長期的으로는 資源配分이나 產業構造調整에 도 '무시 못할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政府 當局이나 中央銀行이 外換市場의 介入을 통해 서 換率變動이 自國經濟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表 5〉 適正通貨「바스켓」에 의한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의 統計的 特性

(1985, III ~ 89, III)

	平均	기준치로부터의 絶對偏差平均	기준치로부터의 自乘偏差平均	分散	最大値	最小値
貿易加重値를 적용한 實質實效換率指數	100.51	5.33	34.45	34.18	108.56	91.29
適正通貨「바스켓」에 의한 實質實效換率			,			
固定加重値(REER $\overline{oldsymbol{eta}}$)	96.48	3.84	17.36	4.99	102.66	93.87
變動加重値(REER $ ilde{oldsymbol{eta}}$)	101.55	1.91	4.45	2.04	103.73	98.01

註:1) 1980.I~85.II의 換率 및 物價資料를 기초로 하여 구한 固定適正加重値(ē)를 이용하여 구성한「바스켓」의경우.

²) 前 5年 換率 및 物價資料를 기초로 하여 구한 變動邁正加重值 $(ilde{oldsymbol{eta}})$ 를 이용하여 구성한 「바스켓」의 경우

그런데 수시로 變化하는 經濟與件이나 政策 優先目標에 따라 그때그때 換率을 적절히 運 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자칫 잘못하면 換率歪曲이 지속됨으로써 國際收支 등 巨視經濟의 不均衡이나 나아가서 資源配分 의 歪曲을 초래하여 國民經濟에 심대한 損失 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 난 10년간 複數通貨「바스켓」制度를 運用해 왔 으나 主要換率의 變動이나 우리의 經常收支變 化 등 國內外經濟與件 변화에 따라 換率運用 이 만족스러울 만큼 적절히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1986년 이후 우리 의 經常收支가 黑字로 전환됨에 따라 88년의 경우 원貨가 한 해에 16%나 대폭적으로 切上 됨으로써 過大評價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 고 89년 이후 美달러貨가 다시 强勢를 보임에 도 불구하고 원貨換率은 오히려 소폭 切上이 지속되는 등 경직적으로 움직여 왔다.

本稿에선 먼저 원貨의 實質實效換率 變動을 분석하여 본 결과 80년대 원貨換率運用이 交易國과의 相對物價變動을 상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名目實效換率의 變動도 줄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시 말해서 80년 대초에 채택한 複數通貨「바스켓」制度가 실제로는 有名無實하게 運用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80년대 전반에는 원貨의 過大評價를 초래하였고 85년부터 87년까지는 過小評價, 88년 하반기 이후에는 원貨가 다시 過大評價되게끔 實質實效換率이 커다란 기복을 보여온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當局이 원貨換率 決定過程에서 實勢反映裝置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유추되었다.

이에 따라 本稿에선 원貨換率의 결정과정에

서 交易國과의 相對物價變動을 상쇄시키거나 여타 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되는 實勢反映裝置를 없애고서도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通貨「바스켓」을 再構成해 보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換率資料와 함께 國內外 物價資料가 필요한데 物價資料는 상당한 時差를 두고 入手可能하므로 단순히 實質實效換率의 공식대로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本稿에선 Lipschitz (1980)가 제의한 방식대로 主要換率과 相對物價의 과거자료에서 구한 이들간의 相關關係를 감안하여「바스켓」내에서의 主要通貨別 加重值를 구하였다.

그러한 方式에 의해 構成된 適正通貨「바스켓」을 80년대 중반 이후 적용했을 경우 실제의 경우보다 원貨의 實質實效換率이 훨씬 안정될 수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主要換率과 相對物價의 相關關係에 비추어 볼 때 特定時點에서 구한 適正加重値를固定的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變化하는 여건에 맞추어 修正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本稿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우리의 換率運用을 둘러싼 논란과 새로이 도입된 市場平均換率制度下에서의 換率運用에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동안우리의 換率運用에 관한 논란 속에서 마치「바스켓」制度 自體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큰 誤解라는 점이다. 실제로「바스켓」制度가 그 취지와 달리 운용되었기 때문에그 功過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本稿의분석결과에 의하면 보다 더 훌륭히 운용될 수있었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市場平均換率制度下에서의 換率管理와 관련되는

示唆點이다. 同 制度下에서 원貨換率은 하루에 上下 0.4%라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변동할 수 있지만 中長期的으로는 中央銀行의外換市場介入을 통해 換率이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8). 이러한 換率의 適正管

理를 위해서 本稿에서 구한 適正通貨「바스켓」에 기초하는 원貨의 바스켓換率은 우리의 經 常收支變動이나 生產性變化推移와 함께 중요 한 指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本稿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換率運 用經驗을 평가해보고 새로 도입된 市場平均換 率制度下에서 적절한 外換市場介入을 위한 하 나의 참고지표를 모색해 봤다는 데 의의가 있 다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적 절하고 합리적인 外換市場介入과 그러한 介入 이 가져오는 經濟的 波及效果, 특히 通貨金融 部門에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으면 한다.

▷參考文獻◁

- 金仁哲,『開途國 換率制度의 模型과 韓國의 換率運用方向』, 政策報告 85-04, 韓國開 發研究院, 1985, 8.
- 嚴峰成,「아시아新興工業國의 貿易收支調整과 換率政策의 效果分析(1974-85)」,『韓國開 發研究』, 第9卷 第14號, 1987 겨울,
- Black, S., Exchange Rate Policies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in a World of Floating Rates,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199,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Princeton University, December
 1976.
- Branson, W. and L. Katseli-Papaefstratiou, "Currency Baskets and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M. Gersovitz, et al.(eds.), *The Theory and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2.
- Edison, H. and E. Vardal, "Optimal Currency

- 'Basket in a World of Generalized Floating: An Application to the Nordic Countries", *International Finance Discussion Papers*, No.266,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ashington, D.C., September 1985.
- Fischer, S., "Stability and Exchange Rate Systems in a Monetarist Model of the Balance of Payments", R. Alib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Monetary Reform, New York, 1977.
- Flanders, M. J. and E. Helpman, "An Optimal Exchange Rate Peg in a World of Generalized Float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July 1979.
- Lipschitz, L., "Exchange Rate Policy for a Small Developing Country, and th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Standard", IMF Staff Papers, Vol. 26, September

¹⁸⁾ 이는 Williamson교수가 제의한 根本均衡換率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 FEER)을 중심으로 한 目標換率帶(target zone)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Williamson 교수의 目標換率帶 提議는 根本均衡換率의 개념이나 실제 계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은 널리 實用化되지 못하고 있다. Williamson(1983)참조.

1979.

- Lipschitz, L. and V. Sundararajan, "The Optimal Basket in a World of Generalized Floating", IMF, Staff Papers, Vol. 27, 1980.
- a World of Generalized Floating with Price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 Monetary System: Choices for the Future, New York, Praeger, 1982.
- Williamson, J.,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the Optimal Peg",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982.
- ————, The Exchange Rate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September 1983.

寡占産業에서의 進入制限價格

南 逸 聰

- 이 논문의 기본목표는 Bain 이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기존기업들에 의한 進入制限價格의 형성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가를 밝히고, 進入制限價格理論이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를 찾아보는 데 있다.
- 이 논문에서 밝혀질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既存企業이 각자의 利潤極大化를 추구하며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 때에도 既存企業과 潛在的 新規企業間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進入制限價格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러한 寡占企業들에 의한 進入制限價格形成은 암묵적 담합의 새로운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進入制限價格形成은 각종 會計資料가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 넷째, 既存企業의 數가 증가하여 產業이 完全競爭產業에 접근해 감에 따라 進入制限價格이 형성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I. 序

一般的으로 한 產業에서의 競爭은 顯在的 競爭(actual competition)과 潜在的 競爭 (potential competi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顯在的 競爭이란 이미 산업내에서 활동중 인 기업들간의 경쟁을 말하며 潜在的 競爭이

筆者:本院 研究委員

란 현재 산업내에 활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차 이 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企業이 있음으로써 야기되는 競爭을 뜻한다". 이미 產業內에서 활동중인 既存企業(incumbent)이 있으며 만약 新規進入의 抑制가 가능하고 이에 수반되는 費用이 進入抑制로부터 얻어질 未來期待利益의 增加分보다 작다면 進入抑制策을 쓸것이다. 따라서 新規進入의 가능성이 존재할때의 既存企業들(incumbents)의 행태는 일반적으로 新規進入의 가능성이 없을 때와 다를 것이며 新規進入의 가능성이 없을 때와 다를 것이며 新規進入의 가능성으로 인해 달라지는 既存企業들의 경쟁상태를 潜在的 競爭이라고한다. 潜在的 競爭에 관한 이론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既存企業들이 新

¹⁾ 이 論文은 著者의 Working Paper인 Entry Deterrence by Multiple Incumbents(1986)을 수 정한 것이다.

規企業의 進入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여기에서 新規進入의 抑制란 新 規進入의 可能性自體, 新規進入의 時點, 新規 進入의 規模 등 新規進入의 樣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潛在的 競爭에 관한 理論은 크게 두 갈래의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物理的 投 資에 의한 進入抑制理論으로 부를 수 있으며, 둘째는 情報의 不均衡을 이용한 進入抑制理論 으로 부를 수 있다. 前者는 Dixit(1979, 1980), Spence (1977, 1979), Eaton and Lipsev(1981) 등에 의해 개발되어 왔으며 既存企 業이 潜在的 新規企業(potential entrant)의 進入을 막기 위해 과도한 설비투자를 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라 할 수 있다²⁾. 既存企業 이 潛在的 新規企業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 해 더 큰 설비투자를 하는 이유는 潛在的 新 規企業이 진입할 경우 進入後의 均衡(postentry equilibrium)에서 新規企業의 利益을 작게 만들어 進入을 포기시키기 위함이다. 競 技理論(game theory) 面에서 볼 때 위의 理論 은 Selten의 部分競技完全的 Nash 均衡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均衡 概念(equilibrium concept)으로 사용하여 既 存企業(incumbent)의 Stackelberg 先發者로 서의 이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情報의 不均衡이 진입에 주는 영향을 분석 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掠奪的 競爭理論 (theory of predation)과 進入制限價格理論

(theory of limit pricing)이 있다. 掠奪的 競 爭이란 기존의 대기업이 신규로 진입한 기업 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행동도 불 사하여 新規進入企業의 利益을 저하시키는 행 위인데, 많은 사람들은 旣存의 大企業이 다른 潜在的 新規企業들이 추가로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초기에 진입한 企業들에 대 해 掠奪的 競爭을 한다고 믿어 왔다3). 이 掠 奪的 競爭理論은 유명한 Selten(1978)의 chain-store paradox에 의해 有限競技的 모델 (finite games)에서 情報가 충분한 경우 (complete information) 성립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으나 1982년 Kreps and Wilson (1982a)에 의해 既存 獨占企業이 潜在的 新 規企業들보다 우월한 情報를 가지고 있을 경 우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進入制限價格理論(theory of limit pricing) 은 旣存企業이 아직 진입하지 않은 潛在的 新 規企業의 進入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進 入前 價格을 인하한다는 理論이며 Bain (1949)이 제기한 이래 수십년간 논란의 대상 이 되어왔다. 上記한 Dixit, Spence 등의 物 理的 投資에 의한 進入抑制理論과 進入制限價 格理論의 중요한 차이는 전자의 경우 進入決 定前 既存企業의 행동이 進入後 競技(postentry game)를 변화시키는데 반하여 후자의 3 年 進入決定前 既存企業의 행동이 進入後競 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70년대초 Gaskins(1971) 등에 의해 나온 原始的 進入 制限價格理論은 潜在的 新規企業의 진입의 가 능성이 現在(進入決定前) 既存企業의 행동의 함수로서 주어진 상태에서 既存企業의 最適化 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既存企業이 進入制限價 格을 취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理論은 왜 潛

²⁾ Presscott and Visscher(1977) 등 Hotelling流의 모델을 다룬 이론들은 진입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나 製品差別化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製品差 別化論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례이다.

³⁾ McGee (1958) 참조.

在的 新規企業의 進入決定이 既存企業의 現在 價格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함으로 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Friedman(1971)은 이와 같은 原始的 進入 制限價格理論의 단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情 報의 充分性(complete information) 下에서는 進入制限價格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였 다. Friedman의 論理는 기본적으로 chainstore paradox에서의 Selten의 논리와 같으며 充分情報性 競技(game of complete information)에서 部分競技完全性 Nash 均衡(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균형개념 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즉, 既存企業의 현재 행동이 進入後競技(post-entry game) 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既存企業과 潜在的 新 規企業間에 情報의 不均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潜在的 新規企業의 進入後 未來利益은 既存企業의 現在價格과 무관하며 따라서 潛在 的 新規企業의 進入決定은 既存企業의 현재 價格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를 아는 既存企業 은 進入前利益을 極大化하는 價格을 취할 것 이다. 따라서 情報의 充分性下에서는 既存企 業은 절대로 進入制限價格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1982년 Milgrom and Roberts(1982)는 既

存獨占企業의 限界費用이 既存 獨占企業에는 완전히 알려져 있으나 潛在的 新規企業에게는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既存企業은 단 기이익을 극대화하는 獨占價格보다 낮은 進入 制限價格을 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4). Milgrom-Roberts의 결과는 다음의 간단한 예 로써 설명할 수 있다. 既存獨占企業의 限界費 用이 G과 G 중의 하나라고 하며 G<G라고 하자. 또 既存企業은 자신의 限界費用이 요인 지 요인지를 알고 있으나 潜在的 新規企業은 이에 대해 단지 확률분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潛在的 新規企業이 진입할 경우 그 進 入後 利益은 既存企業의 限界費用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潜在的 新規企業의 進入에 따른 純利益이 既存企業의 限界費用이 な일 때 正 (positive)이나 既存企業의 限界費用이 c₁일 때는 負(negative)라고 하자, 만일 情報가 충 분(complete)하여 潜在的 新規企業이 既存企 業의 限界費用을 안다면 그것이 요일 때는 진 입할 것이며 c₁일 때는 진입하지 않게 된다. 既存企業은 자신의 限界費用이 &일 경우 이 를 감추고 G으로 보이려는 誘因이 있으며, 자신의 限界費用이 G일 경우에 취할 價格을 모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반면 既存企業의 限界費用이 c_1 인 경우에는 자신의 限界費用이 C.임을 강조할 誘因이 있어 자신의 限界費用 이 c_2 일 때는 취하기 어려운 價格을 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既存企業의 이러한 信號行為 (signalling activities)의 결과 既存企業이 短 期獨占價格 미만의 進入制限價格을 채택할 경 우가 발생한다. Milgrom-Roberts의 理論이 既存의 進入制限價格理論과 구별되는 점은 價 格이 潛在的 新規企業의 진입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에 있다. Milgrom-Roberts의 理論

⁴⁾ 掠奪的 競爭에 관한 Kreps and Wilson(1982a), Milgrom and Roberts(1982b)의 결과나 進入制限價格에 관한 Milgrom and Roberts(1982a)의 결과는 게임이론의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게임理論이 不充分性 情報下의 게임 (games of incomplete information)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던 중 Harsanyi (1967~68)에 의해 시작하여 不充分性 情報下의 게임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인 결실을 거둠으로써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도구가 생기게 되었다.

에서 潛在的 新規企業의 진입결정이 價格의 함수인 이유는 價格이 潛在的 新規企業의 進 入後利益에 대한 情報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Milgrom-Roberts의 결과는 Bain 이후 30 여년을 끌어오던 문제에 결정적인 돌파구가되었으며 그후 여러 방면으로 확장 및 일반화되어 갔다. Matthews and Mirman(1983) 및 Saloner(1982)는 潜在的 新規企業이 既存企業의 행동을 직접 관측(observe)하지 못할경우를 고려하여 유일한 分離均衡(separating equilibrium)을 도출하였으며 Ramey(1985)는 潜在的 新規企業이 진입여부만을 결정하지않고 進入의 規模(size of entry)를 결정할 경우의 均衡을 고려하였다⁵⁾.

위의 理論은 모두 既存產業이 獨占일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그 적용범위가 국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潜在的競爭理論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多數의 既存企業이 존재하며 各企業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寡占產業에서 進入制限價格形成이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를 띨 것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寡占產業에서 進入制限價格이 발생하려면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自己利益만을 추구하며 非妥協的인(noncooperative) 既存企業들이 進入抑制라는 公共財(public good)를 공급하기 위하여 스스로 각자의 短期利益極大化를

지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旣存企 業들의 입장에서 자발적(voluntarily)으로 短 期利益을 희생하여 進入抑制라는 公共財를 공 급하는 것이 Nash均衡(Nash equilibrium)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進入抑制는 市場 價格의 情報傳達機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 다. 情報가 충분할 경우(under complete information) 既存獨占企業은 결코 進入制限 價格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Friedman의 결과 는 既存企業의 數가 多數인 경우에도 Selten 의 部分競技完全性(subgame perfection)의 論理에 따라 당연히 성립된다. 따라서 寡占產 業에서도 進入制限價格이 형성되려면 既存企 業들과 潜在的 新規企業 사이에 情報의 不均 衡이 존재하여야 하며 寡占企業들이 택한 價 格이 진입을 제한한다면 이는 그 價格이 潛在 的 新規企業의 進入後 利益에 영향을 미치는 母數(parameter)에 관한 情報를 전달하기 때 문이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寡占產業에서 進入制限價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潜在的 新規企業에 비해 우월한 情報를 共有한既存寡占企業들이 자발적으로 短期利益極大化에서 逸脫(deviate)하여 潜在的 新規企業으로하여금 進入後純利益이 負(negative)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情報를 전달하는 市場價格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自發的(voluntarily)이라는 말은 合誘因的(incentive-compatible)의 의미를 지닌다.

이 논문의 기본목표는 위에 설명한 既存寡 占企業들에 의한 자발적 단기이익희생을 통한 進入制限 價格의 형성이 均衡(equilibrium)에 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 Bain의 주장을 논 리적으로 입증함에 있다⁶. 이 논문의 또 하

⁵⁾ Matthews and Mirman(1983)의 결과는 均衡經路박(off the equilibrium path) 信號에 접한 信號受信者(signal receiver)의 事後的 確率分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흥미있다. 이는 信號(signal)에 外生的 確率因子(exogenous stochastic element)가 개입된 결과이다.

⁶⁾ 寡占產業에서의 進入制限의 可能性은 著者 (1986)와 Harrington(1987)에 의해 독립적으로

나의 목표는 既存企業의 숫자와 進入制限價格 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情報가 普遍的 常識(common knowledge)이 아닌 경우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 情報가 누설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이 논문의 주제에도 적용된다면 既存企業의 數가 커질수록 進入制限價格은 형성되기 어려워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과연 既存企業의 數가 늘어날 경우 進入制限價格의 형성가능성이줄어들 것인가를 고려하고자 하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既存企業의 숫자의 증가가 均衡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을 먼저 간략히 소개하자면 既存企業들이 Cournot式의 競爭을 할 경우 進入制限價格形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나 既存企業의 숫자가 무한으로 접근해감에 따라 進入制限價格 형성의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Milgrom and Roberts에 의해 獨占의 경우 증명되었던 Bain의 직관은 寡占產業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으나 產業의 형태가 完全競爭產業으로 접근함에 따라 성립하지 않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第 II章에는 n개의 既存寡占企業과 1개의 潜在 的 新規企業으로 이루어진 產業에 관한 모델이 설명되어 있으며 第III章에서는 第II章에 설명된 모델에 존재하는 均衡이 설명되어 있다. 第IV章에서는 既存企業數의 변화에 따른極限比較靜學(limit comparative static)이 설명되어 있으며 第V章은 結言과 政策的 討議로 구성되어 있다.

II. 모 델

이 章에서는 寡占產業에서의 進入制限價格 形成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설명하 고 이 논문에서 사용될 부호(notations)를 정

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既存企業들은 그들이 공유한 우월한 情報를 매체로 하여 자발적으로 短期 利益 極大化를 지양하고 進入制限을 달성하는 暗默的 談合(implicit collusion)을 이룰 수 있다. 이 암묵적 담합이 종래의 原始的 談合 과 다른 점은 各既存企業이 이 담합에서 이탈 할 誘因(incentive)이 없다는 것이다. 이 暗 默的 談合은 情報의 不均衡을 이용하며 그 형 태가 단순하다는 면에서 無限反復競技(supergame)에서 連鎖的 報復의 戰略(strategy of successive punishments)에 의존하는 Folktheorem 종류의 담합과 전혀 다르다. 한편 極限結果는 線型모델의 가정에 의존하기는 하 나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더 일반적인 모델에로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증명되었다. Harrington의 모델이 限界費用에 대한 情報의 不均衡을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저자의 모델에서는 需要에 대한 情報의 不均衡을 가정하고 있다. Harrington의 경우 潛在的 新規企業이 자신의 限界費用을 몰라야 하는 다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Harrington과 저자의는문의 또 다른 큰 차이는 既存企業의 數를 늘려 極限比較靜態學을 행하는 방법에 있다.

⁷⁾ 基本企業들의 競爭形態가 Cournot的이라는 것은 일견 큰 중요성을 띠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情報의 不均衡下에서는 매우 강력한 가정이다. 著者의 다른 論文 Limit Pricing by a Duopoly(1987)에서 저자는 既存企業들의 競爭形態가 情報傳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을 발견하였다.

하겠다. 하나의 同質商品을 생산하는 產業에 n개의 既存企業과 1개의 潜在的 新規企業이 있다고 하자. 既存企業은 $i \in I_n = \{1, \dots, n\}$ 으 로 지수화하여 부르고 潜在的 新規企業은 E로써 표시하자. 이 産業은 두 시점에 걸쳐 존 재하고 각 시점에서 市場需要는 동일하며 $b=f(Q, \theta)=\theta-bQ$ 의 逆需要函數에 의해주 어진다⁸⁾. 여기서 Q는 그 시점에 활동중인 全 企業에 의해 공급된 총생산량이며 θ는 이 線型需要函數의 절편이고 b는 그 기울기이 다. 모든 企業은 동일한 費用函數를 가지며 이 共通 費用函數는 cq, c>o, 이다. 市場需 要에 대해 既存企業들과 E 사이에는 다음의 情報不均衡(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 재한다. 各既存企業은 θ 와 b를 알고 있으나 E는 b를 알 뿐 θ 에 관해서는 θ 가 $\Theta = [\theta_L,$ $\theta_{\rm H}$]의 구간에서 연속인 확률밀도함수 $g(\theta)$ 에 의해 추출된다는 것밖에 모른다. $g(\theta)$ 의 累 積確率函數를 $G(\theta)$ 라 하고 $\theta_L > c$ 라고 가정 하자.

시점 1에서 n개의 既存企業들은 동시에 非

安協的으로 (noncooperatively) 1期 生產量을 결정하며 이에 따른 1期 市場價格이 결정된다. E는 第1期末 1期 市場價格을 觀測 (observe)한 뒤 進入與否를 결정한다". E가 進入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固定進入費用 K>0를 지불하며 그 즉시 θ 의 진짜 값을 알게된다". 第2期에는 E를 포함 (n+1)개의 企業이 生產量을 동시에 비타협적으로 결정한다. E가 進入하지 않으면 n개의 既存企業은 2기에 다시 한번 Cournot 競技를 진행한다. 各企業은 豫想現價利益(net expected present value of profits)을 극대화하며 할인율은 ρ \in (0, 1)이다. 마지막으로 위에 설명한 모든 것은 普遍的 常識(common knowledge)이다.

위에 설명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不充分情 報性競技(game of incomplete information) 로 모델화할 수 있다. 競技 시작 전에는 모든 企業이 θ 에 대해 $\Theta = [\theta_L, \theta_H]$ 상에 $g(\theta)$ 의 확률밀도함수에 따라 분포되었음을 알고 있으 나 자연(nature)이 Θ 중 한 숫자 θ를 뽑아서 既存企業들에게만 알려준다. 既存企業들은 자 연이 선택한 θ 를 관측한 후 1기에 동시에 非 妥協的으로 生產量을 결정한다. E는 1기말 1 기 市場價格을 관측한 후 θ 에 대한 확률분포 를 조정(update)한 뒤 進入與否를 결정한다. 2기에는 E의 進入與否에 따라 n 또는 (n+1)개의 企業이 Cournot競技를 1회 진행한 뒤 競技는 끝난다. 이 競技의 均衡概念(equilibrium concept) 로는 部分競技 完全的 Bayes Nash 均衡(subgame perfect Bayes Nash equilibrium)을 사용하겠다¹¹⁾. 그러나 이 競 技의 部分競技完全的 Bayes Nash均衡을 직 접 구하는 것은 약간 복잡하므로 이 競技의 各部分競技(subgame) 를 部分競技 Nash 均衡

⁸⁾ 이 產業이 두 시점에만 존재한다는 가정은 편의 상 취한 것이며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 產 業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모델에서 第2期의 競技(game)를 實際產業에서 2期 이후의 모든 部分競技를 綜合 한 部分競技均衡(subgame equilibrium)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⁹⁾ E가 한번만 進入決定을 할 기회가 있다는 가정 또한 별무리가 없다. E가 1期末에 進入을 보류 하고 추후에 進入決定을 내릴 기회가 또 주어진 다 할 때 모델內의 2期 競技가 이점을 다 고려 한 部分競技의 均衡(subgame equilibrium)이라 고 보면 된다.

¹⁰⁾ K는 회수불가능한 投資 및 進入後 市場調査에 드는 費用 등을 합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¹¹⁾ 이 均衡概念은 Kreps and Wilson(1982b)의 연 축균형(sequential equilibrium)과 비슷하다.

으로 대치한 縮小競技(truncated game)의 Bayes Nash 均衡을 구하겠다.

原競技(original game)의 部分競技 完全的 Baves Nash 均衡의 집합이 縮小競技의 Bayes Nash 均衡의 집합과 동일함은 原競技 에서 E의 진입결정 이후의 모든 競技가지 (game tree) 는 純部分競技(proper subgame) 임을 상기하면 자명하다12). 이 縮小競技는 原 競技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需要 狀態가 θ 일 때 n개의 企業이 Cournot競技를 1회 시행할 경우 유일한 Cournot-Nash 均衡量 이 존재하며 이 均衡에서 各企業이 $(\frac{(\theta-c)}{n+1)}b$ 를 생산하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이를 $\bar{x}_n(\theta)$ 로 표기하자. 즉 $\bar{x}_n(\theta) = \frac{(\theta - c)}{(n+1)b}$. 이 Cournot-Nash 均衡에서 市場價格 및 各企 業의 利潤을 각각 $\overline{p}_n(\theta)$ 와 $\overline{\pi}_n(\theta)$ 로 표기하 자. 즉 $\bar{p}_n(\theta) = \frac{(\theta-c)}{(n+1)}b + c$ 이고 $\bar{\pi}_n(\theta) =$ $\frac{(\theta-c)^2}{(n+1)^2b}$ 이다. 原競技에서 第2期에는 E가 진입하면 (n+1)개의 企業이 θ 를 아는 상태 에서 Cournot 競技를 진행하므로 2期에는 各 企業이 $\bar{x}_{n+1}(\theta) = \frac{(\theta-c)}{(n+2)b}$ 를 생산하여 \bar{x}_{n+1} $(\theta) = \frac{(\theta - c)^2}{(n+2)^2 b}$ 의 利益을 얻는 Cournot均衡 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部分競技完全性 의 原理(subgame perfection)에 의해 2기 部 分競技를 E의 進入與否에 따라 各部分競技利益(subgame payoff)인 $\overline{n}_n(\theta)$ 또는 $\overline{n}_{n+1}(\theta)$ 로 대치할 수 있다. 이 縮小競技에서 各既存企業은 θ 의 함수로써 1기 생산량만을 결정하면 되며 E는 1期 市場價格의 함수로 진입여부만을 결정하면 되는 까닭에 競技의 過去(history)를 고려해야 하는 原게임에 비해 단순한 戰略空間(strategy space)을 갖게 되는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原競技 대신縮小競技를 고려하겠다.

이 縮小競技(이후는 그냥 競技라 칭함)의 戰略空間(strategy space)과 利益(payoff)은 다음과 같다. 既存企業 i의 전략은 Θ 에서 R로 가는 「매핑」이며 $x_i(\theta)$ 로 표시하기로 한 다. E의 전략은 가능한 1기 市場價格의 집합 P에서 {進入, 不進入}으로 가는「매핑」이며 進入을 1, 不進入을 0으로 표기해 P에서 {0, 1}로 가는 함수 e(p)로 표시하기로 한다. 1 기에 형성될 수 있는 市場價格의 집합 P는 $[0, \theta_H]$ 의 폐구간으로 가정하자 $^{13)}$. n개의 旣 存 企業들의 戰略組合(strategy combination) $(x_i(\theta))_{i=1}^n = (x_1(\theta), x_2(\theta), \dots, x_n(\theta))$ 를 때에따 라 $x(\theta)$ 로 간단히 표시하겠다. 또한 모든 \hat{x} 業들의 어떤 戰略組合(strategy combination 또는 profile)이 均衡을 구성할 경우 별표를 붙여 $(x(\theta), e^*(p))$ 로 표기하기로 한다.

企業들이 $(x(\theta), e(p))$ 의 戰略組合을 채택할 경우 各企業의 豫想利益은 다음과 같다 14 .

類型 θ 인 既存企業 i (incumbent i of type θ) 의 利益은

$$(\theta - b \sum_{j=1}^{n} x_{j}(\theta) - c) x_{i}(\theta) + \rho \overline{\pi}_{n}(\theta) - L_{n}(\theta) Pr(e(p) = 1 | p = \theta - b \sum_{j=1}^{n} x_{j}(\theta),$$

$$e(p), \theta)$$

¹²⁾ E가 進入決定을 하는 순간까지의 경기에서는 일반적으로 情報集合(information set)이 唯一集合 (singleton)이 아니지만 E의 進入決定 이후의 경기에서는 θ 가 普遍的 常識(common knowledge)이므로 各情報集合이 唯一集合이다. 따라서 原競技가지(original game tree) 중 E의 進入決定은 純部分競技를 유도(induce)한다.

¹³⁾ p의 下限이 0임은 당연하다. p의 上限이 θ_H 라는 가정 또한 現모델에서는 당연한데 그 이유는 總 生產量이 0이고 需要狀態가 가장 높은 θ_H 일 경우 市場價格이 θ_H 이기 때문이다.

¹⁴⁾ 以下에서 類型 θ 인 既存企業 i란 產業의 需要狀態가 θ 인 경우의 既存企業 i를 뜻한다.

인데 이 식에서 $L_n(\theta) = \rho(\pi_n(\theta) - \pi_{n+1}(\theta))$ 는 E의 進入에 따른 類型 θ 인 各既存企業의 미래이익 감소분의 現價이다 15 .

기업들이 $(x(\theta), e(p))$ 의 戰略組合을 채택 하였을 경우 E의 豫想利益은 1期 市場價格 p, 이에 대응하는 E의 進入決定 e(p), 그리 고 b로부터 E가 얻어내는 θ 에 대한 情報의 성격에 달려 있다. 당초 E는 θ 에 대해 Θ = $[\theta_1, \theta_1]$ 인 폐구간에서 $g(\theta)$ 의 確率密度函數 에 의해 추출됨만을 알고 있으나, 既存企業 들의 1期 生產量이 θ 의 함수이고 또한 1期 牛產量과 함수관계에 있는 1期 市場價格을 관 측할 수 있으므로 1期末에 1期 市場價格 한로 부터 θ 에 대해 事前的 確率分布(prior distribution)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한 事後的 確率 分布(posterior distribution)를 얻어낼 수 있 다. 어떤 1期 市場價格 p가 관측되었을 때 이에 기준한 조건부 확률분포인 事後的 確率 分布를 $h(\theta \mid p)$ 라 하자. 그러면 E의 예상이 익은 e(p) = 0일 경우 0이고 e(p) = 1일 경우 는 $\int_{\Omega} (\rho \bar{\pi}_{n+1}(\theta) - K) h(\theta|p) d\theta$ 로 주어진다. 이 事後的 確率分布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競技의 均衡經路上에 있는(on the equilibrium path) 價格이 주어진 경우에는 Baves 法則을 따라야함이 당연하나 競技의

均衡經路밖에 있는(off the equilibrium path) 價格이 주어진 경우에는 定說이 없다. 일반적 으로 信號競技(signalling game)에 있어서 均 衡經路毕 信號(off the equilibrium path signal)에 따른 事後的 確率分布에 Baves 法則 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多數의 事後的 確 率分布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均衡이 존재하고 각 均衡을 誘導(induce)하는 事後的 確率分布의 妥當性(plausibility) 문제가 존재 한다. 다행히 이 논문의 모델에서는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均衡經路밖 信號에서 비 롯되는 문제가 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 유는 다음 章에서 밝혀질 바와 같이 모델에 존재하는 모든 Baves Nash均衡이 進入制限 價格의 형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極限結果(limit result) 또한 특정한 均衡經路 밖 事後的 確率分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Bayes Nash均衡 의 '精練(refinement)에 대한 논의를 극소화 하겠다16)

위에 설명한 競技의 Bayes Nash均衡은 (n+1)기업의 戰略組合 $(x^*(\theta), e^*(p))$ 와 θ 에 대한 事後的 確率分布 $h(\theta \mid p)$ 로 구성되며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mathrm{E_1})$ I_n 에 속한 각 i와 Θ 에 속한 각 θ 에 대해

$$x_{i}^{*}(\theta) \in \underset{x_{i}}{\operatorname{argmax}} (\theta - b \sum_{j \neq i} x_{j}^{*}(\theta) - x_{i}$$
 $-c) x_{i} + \rho \bar{\pi}_{n}(\theta) - L_{n}(\theta) \operatorname{Pr} \{e(p) = 1 | x_{i}, x_{-i}^{*}(\theta), e^{*}(p), \theta\},$

(E₂) P에 속한 각 p에 대해

$$e^{*}(p) = \underset{e \in \{0, 1\}}{\operatorname{argmax}} e \int_{\Theta} (\rho \bar{\pi}_{n+1}(\theta) - K) h(\theta|p) d\theta$$

¹⁵⁾ L'_n(θ)> 0이므로 θ가 증가할수록, 즉 市場需要 가 높을수록, 既存 企業의 進入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며 따라서 θ가 높을수록 各既存企業의 進 入制限 誘因도 커진다.

¹⁶⁾ 均衡經路밖 信號(off the equilibrium path signal)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信號受信者(signal receiver)가 情報處理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정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學說들을 통상적으로 refinement of Bayes Nash 均衡說이라한다.

$$(E_3) \Theta_p = \{\theta \in \Theta | f(\sum_{j=1}^n x_j^* (\theta), \theta) = p\} \pm \phi$$
일 경우,
$$\theta \in \Theta_p \circ \text{IP} \ h(\theta|p) = \frac{g(\theta)}{\int_{\Theta_p}^{g(\theta)} d\theta} \circ \text{I}$$
$$\theta \in \Theta_p \circ \text{IP} \ h(\theta|p) = 0 \circ \text{IP}.$$

(E₁)은 다른 기존기업들과 *E*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各既存企業의 전략이 最適이어야함을 말하며, (E₂)는 기존기업들의 전략과 *E*의 事後的 確率分布가 주어졌을 때 *E*의 進入 戰略이 최적이어야 함을 뜻한다. (E₃)는 均衡經路上에 있는 1 期 市場價格이 관측되었을때 *E*의 事後的 確率分布가 Bayes 法則을 따라야함을 뜻한다.

위의 세 조건들 외에 다음의 몇가지 가정을 추가하려 한다.

- . (A_1) $\int_{\Theta} (\rho \overline{\pi}_{n+1}(\theta) K) h(\theta|p) d\theta = 0$ 인 경 우 $e^*(p) = 0$ 이다.
 - (A_2) $\hat{ heta}\in(heta_L,\; heta_H)$ 인 어떤 $\hat{ heta}$ 에 대해 $ho\overline{\pi}_{n+1}(\hat{ heta})$ -K=0이다.
 - (A_3) $\int_{\Theta} (
 ho \overline{\pi}_{n+1} (\theta) K) g(\theta) d\theta \leq 0$ 이다.

(A_1)은 E가 어떤 1期 市場價格 p를 관측하고 $h(\theta \mid p)$ 의 事後的 確率密度函數를 형성해서 이에 의한 豫想進入利益이 0인 경우 진입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豫想進入利益이 0인 경우 E의 最適化 問題는 0, 1의 複數解를 갖는데 이 경우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자는 것이다. 이 가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均衡集合을 縮小시킴으로써 分析을 간단히 하는 데 있으며 이 論文의 結論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A_2)는 完全情報下에서 (under full information) θ , 과 θ , 사이에 위치한 어떤 $\hat{\theta}$ 에 대해 θ < $\hat{\theta}$ 이면 E의 進入利益이 强負 (strictly negative)이며 θ > $\hat{\theta}$ 이면 强正

(strictly positive)임을 뜻한다. 만일 (A₂)의가정이 깨진다면 E의 進入利益은 항상 强負이거나 항상 强正이므로 E는 1期 市場價格에무관하게 進入決定을 하게 되며 따라서 進入制限價格의 可能性은 존재하지 않는다. (A₂)는 이와 같은 뻔한 경우(trivial cases)를 배제하고자 채택되었다. (A₃)는 E가 사전적確率分布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진입하지 않을 것임을 뜻하며 分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채택되었다. 위의 가정(A₁)에 의해 均衡條件(E₂)는 다음의 (E'₂)으로 쓸 수 있다.

$$(E_2)'$$
 $e^*(p) = 1 \leftrightarrow \int_{\Theta} \rho \overline{\pi}_{n+1}(\theta) h(\theta|p) d\theta > K.$

즉 E는 豫想進入純利益이 0보다 크면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는다.

III. 均 衡(Equilibrium)

이 章에서 著者는 前章에 설명된 進入모델 (entry model)에 존재하는 均衡을 구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이 모델에는 많은 均衡點이 존재하여 各均衡點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균형을 구하는 작업은 이논문의 목표인 進入制限價格의 可能性 및 形態를 밝히는 데 적절한 정도에 그칠 것이며이 논문의 목적상 저자의 생각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부는 생략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다음의 성격을 갖는 均衡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①對稱的 均衡 (symmetric equilibria), 즉 各既存企業이 동

일한 戰略을 사용하는 均衡, ② 單調均衡 (monotonic equilibria), 즉 E의 進入戰略이 단조적이어서 어떤 價格 p_e 이하의 모든 價格에 대해서는 진입을 포기하며 p_e 보다 높은 모든 가격에 대해서는 진입하는 균형.

對稱的 均衡만을 고려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상 전혀 一般性의 犧牲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의 보충정리 1이 서술 하는 바와 같이 모든 非對稱的 均衡을 對稱的 均衡의 變形(perturbation)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單調均衡만을 고려하는 것은 결국 既存寡占企業들이 短期價格을 Cournot-Nash 價格 이상으로 인상하는 성격을 지닌 均衡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效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均衡에 대한 연구는 傳統的 意 味에서의 進入制限價格理論과 궤를 달리하는 면이 있으며 별도의 고려를 요하는 큰 硏究課 題이다. 다음의 補充定理 1은 만일 어떤 1期 價格函數 $b(\theta)$ 를 유도하는 對稱的 均衡이 존 재하지 않으면 $p(\theta)$ 의 1期價格函數를 유도하 는 非對稱的 均衡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보충정리 1은 對稱的 均衡만을 고 려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補充定理 1〉

 (x^*, e^*, h) 가 $p^*(\theta)$ 라는 1期價格函數를 유도하는 均衡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의 (\mathfrak{K}, h) 도 또한 均衡이다.

 I_n 에 속한 모든 i, Θ 에 속한 모든 θ , P에 속한 모든 p에 대해

$$\tilde{x}_i(\theta) = (1/n) \sum_{j=1}^n x_j^*(\theta), \ \tilde{e}(p) = e^*(p),$$
$$\tilde{h}(\theta|p) = h(\theta|p).$$

信號競技理論의 관례에 따라 이 논문에서도

均衡을 情報傳達機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하겠다.

定義: (x^*, e^*, h) 가 均衡이며 이 均衡에서 모든 θ 와 어떤 상수C>0에 대해 $p^*(\theta) = C$ 이 면 이 균형을 混和均衡(pooling equilibrium)이 라 한다.

定義: (x^*, e^*, h) 가 균형이며 $p^*(\theta)$ 가 1대 1 「매핑」이면 이 均衡을 分離均衡(separating equilibrium)이라 한다.

定義: (x^*, e^*, h) 가 균형이며 混和均衡도 아니고 分離均衡도 아니면 이 均衡을 部分混和均衡(partially pooling equilibrium)이라 한다.

混和均衡에서는 θ 의 값, 즉 需要의 狀態에 관계없이 동일한 市場價格이 형성되므로 E는 市場價格으로부터 아무런 새로운 情報를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混和均衡에서는 既存企業 들이 공유한 私有情報(private information) 는 완전히 감춰지게 되며 E는 사전적 확률분 포에만 의존하여 진입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 면, 分離均衡에서는 市場價格이 θ 의 1대 1함수이므로 E는 市場價格으로부터 θ 값을 완 벽하게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既存企業들 의 私有情報는 완전히 누설되게 된다. 部分混 和均衡은 混和均衡과 分離均衡의 중간적 성격 을 띤다고 볼 수 있는데, 이 均衡에서 市場價 格은 일반적으로 사전적 확률분포보다는 우수 하나 완벽하지는 못한 정보를 전달한다. 우선 均衡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정리한 뒤 均 衡을 찾아보기로 하자. (x^*, e^*, h) 가 $p^*(\theta)$ 의 市場價格函數를 유도하는 均衡이라고 하 자, 이 均衡에서 한 既存企業의 最適化 문제 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他既存企業들의 戰略이 $x_{-i}^*(\theta)$ 이고 E의 進入戰略이 p_e 라는 最高進入制限價格으로 주어질 때 유형 θ 인 既存企業 i는 다음의 두 最適化 問題를 푼다고 볼 수 있다.

$$(\mathbf{M}_1)$$
 $\max_{x_i} (\theta - b \sum_{i \neq i} x_j^* (\theta) - bx_i - c) x_i$

$$\begin{aligned} (\mathbf{M}_2) \quad & \max_{x_i} \left(\theta - b \sum_{j \neq i} x_j^* \left(\theta \right) - b x_i - c \right) \ x_i, \\ & \text{s.t.} \ \theta - b \sum_{i \neq i} x_j^* \left(\theta \right) - b x_i \leq p_e. \end{aligned}$$

 (M_1) 은 유형 θ 인 既存企業 i의 단순한 短 期利益極大化問題이며 (M_2) 는 類型 θ 인 既 存企業 i가 진입을 봉쇄하는 價格을 유도한다 는 제약조건하에서 短期利益을 極大化하는 문 제이다. (M₁)의 解와 (M₂)의 解가 일치할 경우, 즉 단순한 短期利益 極大化의 결과 進 入도 봉쇄할 경우, 類型 θ 인 既存企業 i의 최적생산량은 (M₁)과 (M₂)의 共通解가 될 것이다. (M_1) 과 (M_2) 의 解가 다른 경우에는 類型 θ 인 既存企業 i는 進入封鎖의 費用과 進入封鎖의 利益을 비교할 것이다. 이 경우 (M₁)의 極大化된 短期利潤이 (M₂)의 極大化 된 短期利潤보다 큰데 두 利潤의 차이가 바로 進入封鎖의 費用이 될 것이다. 이 두 利潤간 의 차이가 進入封鎖의 利益인 $L_n(\theta)$ 보다 크 면 유형 θ 인 既存企業 i는 (M_1) 의 解를 생산 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M₂)의 解를 생산할 것이다. (x^*, e^*, h) 가 均衡이라면 各 i에 대해 위의 最適化過程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균형을 구하는 前段階로 서 이러한 既存企業들의 最適化의 결과 均衡 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다음의 몇개의 보충정리로써 정리하자.

〈補充定理 2〉

 (x^*, e^*, h) 가 $p^*(\theta)$ 의 價格函數를 수반하는 均衡이라고 하자. 그러면 $e^*(p^*(\theta))=1$ 인

모든 θ 와 모든 i에 대해 (i) $x_i^*(\theta) = \bar{x}_n(\theta)$ 이 며 (ii) $p_e < \alpha(\theta) = \bar{p}_n(\theta) - \frac{(\theta - c)}{(n+1)(n+2)}$ $\{\rho(2n+3)\}$ 이다.

補充定理 2의 (i)은 뻔하다. 均衡에서 θ 。의 需要狀態인 產業에 E가 진입한다면 유형 θ 。 인 各既存企業은 短期利益을 極大化하는 (M₁)의 解를 생산해야 하며 따라서 1期에는 Cournot-Nash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충정리 2의 (ii) 또한 간단하다. 均衡에서 heta。의 需要狀態인 產業에 E가 진입한다면 보 충정리 (i)에 따라 各既存企業은 $\bar{x}_n(\theta_s)$ 를 생 산하며 따라서 1期 市場價格은 $\mathcal{D}_n(\theta_o)$ 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最高進入制限價格 ba가 $\mathfrak{D}_n(heta_o)$ 에 충분히 가깝다면 유형 $heta_o$ 인 한 旣 存企業이 生産量을 증가시켜 ル의 市場價格을 이룩하여 進入을 봉쇄하는 비용이 進入封鎖의 利益 $L_n(\theta)$ 보다 작을 것이며 따라서 $\bar{x}_n(\theta_0)$ 를 생산하지 않고 か의 市場價格을 유도하는 生產量을 생산할 것이다. 물론 (x^*, e^*, h) 가 均衡이므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最高進入制限價格 pe 가 $\mathcal{D}_n(\theta_o)$ 보다 충분히 작아야 하며 긴 계산 의 결과 보충정리 2의 $\alpha(\theta_{\rm o})$ 라는 값에 도달 할 수 있다. 만일 最高進入抑制價格 b_o가 α (θ_{\circ}) 보다 크다면 유형 θ_{\circ} 인 既存企業들은 均 衡에서 進入을 봉쇄해야만 한다.

〈補充定理 3〉

 (x^*, e^*, h) 가 對稱的 均衡이라고 하자. 그러면 $e^*(p^*(\theta))=0$ 인 모든 θ 에 대해 (i) \bar{p}_n (θ) $\leq p_e$ 이면 $p^*(\theta)=\bar{p}_n(\theta)$ 이고, 모든 i에 대해 $x_i^*(\theta)=\bar{x}_n(\theta)$ 이다. (ii) $\bar{p}_n(\theta) > p_e$ 이면 $p^*(\theta)=p_e$ 이면 모든 i에 대해

$$x_i^*(\theta) = \tilde{x_n}(\theta) + \frac{\bar{p}_n(\theta) - p_e}{nb}$$
이다.

補充定理 3은 E의 進入이 均衡에서 封鎖되는 산업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어떤 유형 θ_o 인 產業이 Cournot-Nash 價格이 p_e 이하여서 진입을 봉쇄한다면 既存 企業들은 Cournot-Nash 生產量을 생산하며 $p_n(\theta_o)$ 의 市場價格을 형성한다는 것이 補充定理 3의 (i)의 내용인데이는 他企業들의 生產量이 주어졌을 때에 한 既存 企業의 1期利益이 그 자신의 생산량의 함수로서 연속이고 强오목성이며 유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는 성격을 지닌 결과이다.

補充定理 3의 (ii) 는 最高進入制限價格 かか Cournot-Nash 價格 $p_n(\theta_o)$ 미만이며 既存企 業들이 진입을 봉쇄하는 경우 か의 市場價格 을 형성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既存企業들 의 입장에서 進入封鎖를 할 경우 가장 효율적 인 방법에 의해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또 한 위에 언급한 既存企業의 1期利益函數의 성 격의 결과이다. 均衡에서 $p_n(\theta_o) \langle p_e 0$ 경우 유형 θ 。의 產業에 進入이 봉쇄되기는 하나 各既存企業이 短期利益을 極大化하고 있기 때 문에 이는 既存企業들의 의도적인 進入制限行 爲의 결과가 아니다. 반면, $p_n(\theta_o) \rangle p_e = p^*$ (θ_{\circ}) 인 경우 유형 θ_{\circ} 인 各既存企業은 短期利 益을 極大化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進入制限 行爲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 한 旣 存企業의 입장에서 볼 때 進入制限의 費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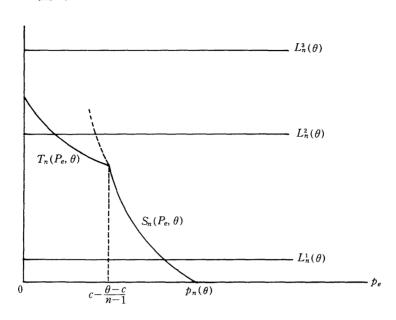
均衡에서 유형 heta。인 한 既存企業의 1期利 盆은 $(p_e-c)(ar{x}_n(heta_o)+rac{ar{p}_n\;(heta_o)-p_e}{nb})$ 이다.

이 때에 이 既存企業이 短期利益을 極大化 하려면 1期利益函數 $\{\theta_o-(n-1)\ b\ \bar{x}_n(\theta_o)+\frac{\bar{p}_n(\theta_o)-p_e}{nb}-bx_i-c\}x_i$ 를 극대화하는 x_i 를 생 산해야 하는데 이 x_i 의 값은 $p_e \ge c-\frac{\theta_o-c}{n-1}$ 인 경우 $(\bar{x}_n(\theta_o) + \frac{(n-1)}{2} \frac{(\bar{p}_n(\theta_o) - p_e)}{nb}$ 이며 $p_e \le c - \frac{\theta_o - c}{n-1}$ 인 경우 0이다. 물론 前者의 경우는 內部解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後者의 경우는 모서리解의 경우이다. 한 既存企業이 他既存企業들과 마찬가지로 $\bar{x}_n(\theta_o) + \frac{\bar{p}_n(\theta_o) - p_e}{nb}$ 를 생산하여 E의 진입을 봉쇄하지 않고 短期 利益을 極大化하여 위와 같이 생산을 할 경우이에 따른 短期利益의 增加를 $J_n(p_e,\theta_o)$ 로 표기하고, 이 $J_n(p_e,\theta_o)$ 가 內部解일 경우를 $S_n(p_e,\theta_o)$ 로 표기하며 모서리解일 경우 $T_n(p_e,\theta_o)$ 로 표기하자.

즉
$$p_e \ge c - \frac{\theta_o - c}{n - 1}$$
 일 경우
$$J_n(p_e, \theta_o) = S_n(p_e, \theta_o) = \frac{1}{b} \frac{(n + 1)}{4n^2} (\bar{p}_n + c) + \frac{\theta_o - c}{n - 1}$$
 일 경우
$$J_n(p_e, \theta_o) = T_n(p_e, \theta) = -(p_e - c) \{ \frac{\theta_o - c}{nb} + \frac{1}{nb} (c - p_e) \}$$
이다.

일반적으로 $J_n(p_e,\theta)$ 는 [圖 1]에 나타난 도형의 형태를 지닌다. [圖 1]에는 θ 가 주어졌을 때 p_e 의 함수로서 $J_n(p_e,\theta)$ 의 그라프가 그려져 있으며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세가지 경우에 따른 $L_n(\theta)$ 의 그라프가 표시되어 있다. [圖 1]에 있는 하나의 첨점을 갖는 곡선이 $J_n(p_e,\theta)$ 의 그라프인데 이는 $p_e=p_n(\theta)$ 일 때 0의 값을 가지며 p_e 가 $p_n(\theta)$ 보다 작아질수록 중가한다. 즉, 最高進入制限價格 p_e 가 Cournot-Nash가격보다 작을수록 進入制限의 비용이 높아진다. $J_n(p_e,\theta)$ 의 곡선은 $p_n(\theta)$ 에 서부터 $c-\frac{\theta-c}{n-1}$ 까지는 內部解의 결과인 $S_n(p_e,\theta)$ 이며 $c-\frac{\theta-c}{n-1}$ 이하에서는 모서리解의 결과인 $T_n(p_e,\theta)$ 이다. 圖에서 보는 바와 같





이 $T_n(p_e,\theta)$ 는 $S_n(p_e,\theta)$ 의 연장된 곡선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긴 계산을 하면 보일 수 있다. [圖 1]에서는 $c-\frac{\theta-c}{n-1} > 0$ 임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부등식은 큰 n에 대하여는 항상 성립할 것이다. 만일 $c-\frac{\theta-c}{n-1} < 0$ 이면 $J_n(p_e,\theta)$ 는 전구간에 걸쳐서 $S_n(p_e,\theta)$ 와 동일하게 되며 [圖 1]에서 첨점좌측의 T_n (p_e,θ)는 사라지게 된다. [圖 1]에 있는 3개의 $L_n(\theta)$ 는 가능한 세가지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L_n^1(\theta)$ 는 $L_n(\theta)$ 가 $S_n(p_e,\theta)$ 와 교차하는 경우이고, $L_n^2(\theta)$ 는 $L_n(\theta)$ 가 $T_n(p_e,\theta)$ 와 교차하는 경우이며 $L_n^3(\theta)$ 는 $L_n(\theta)$ 가 $J_n(p_e,\theta)$ 위에 위치해 $J_n(p_e,\theta)$ 와 교차점이 없는 경우이다.

만일 均衡에서 유형 θ 。인 既存企業들이 p_e $\langle p_n(\theta_\circ)$ 인 進入制限價格을 채택하였다면 J_n $(p_e, \theta_\circ) \langle L_n(\theta_\circ)$ 의 부등식이 성립해야 하는

데 이에 따라 유형 θ 。인 既存企業들이 취할 수 있는 進入制限價格 p_e 의 下限을 구할 수 있다. $L_n(\theta_o)$ 가 $L_n^1(\theta)$ 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 進入制限價格의 下限은 $S_n(p_e,\theta_o)=L_n(\theta_o)$ 의 解가 될 것이며, $L_n(\theta_o)$ 가 $L_n^2(\theta)$ 의 형태를 취할 경우 進入制限價格의 下限은 $T_n(p_e,\theta_o)=L_n(\theta_o)$ 의 解가 될 것이다. 물론 S_n 과 T_n 함수의 單調性으로 인해 위의 解는 항상 유일하게 된다.

 $L_n(\theta_\circ)$ 가 $L_n^3(\theta)$ 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L_n(\theta_\circ) = J_n(p_e,\ \theta_\circ)$ 의 등식에는 解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p_e = 0$ 이 유형 θ_\circ 인 既存企業들이 취할 수 있는 進入制限價格의 下限이 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_n(p_e,\, heta) = L_n(heta)$ 의 解를 $eta_1(heta)$ 라 하고 T_n $(p_e, heta) = L_n(heta)$ 의 解를 $eta_2(heta)$ 라 하며 均衡에서 유형 heta인 既存企業들이 채택할 수 있는 進入

制限價格의 下限을 $\beta(\theta)$ 라 하자. 그러면

- (i) $\beta_1(\theta) \ge c \frac{\theta c}{n 1}$ 일 때는 $\beta(\theta) = \beta_1(\theta)$
- (ii) $\beta_1(\theta) < c \frac{\theta c}{n 1}$ 이고 $\beta_2(\theta) > 0$ 일때는 $\beta(\theta) = \beta_2(\theta)$ 이며
- (iii) $\frac{\theta c}{nb} < L_n(\theta)$ 이면 $\beta(\theta) = 0$ 이다.

〈補充定理 4〉

 (x^*, e^*, h) 가 균형이라고 하자. 그러면 $p^*(\theta) = p_e \langle \bar{p}_n(\theta)$ 인 모든 θ 에 대해 $p_e \geq \beta(\theta)$ 이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 우선 分離均衡을 고려해 보자. 다음의 定理 1은 모델內에 分離均衡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다. 定理 1의 증명은 주로 한 既存企業의 1期利潤이 자신의 生產量의 連續函數이며 强오목성이라는 사실결과이다.

〈定理 1〉 分離均衡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 1의 의미는 두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같은 情報를 공유한 既存企業이 다수 있으며 各企業이 각자의 利益을 極大化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私有情報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정리 1은 進入制限價格形成의 가능성이 늘 존재함을 뜻한다. 그 이유는 물론 Cournot-Nash價格函數 $\rho_n(\theta)$ 가 1대 1이므로 만일 이것이 어떤 均衡에서의 均衡價格函數이면 그 均衡은 分離均衡이 되기 때문에 정리 1에 모순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均衡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寡占狀態의 企業들이 進入制限價格을 형성함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며 Bain의 직관을 일반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 1의 증명은 다소 따분하므로 이를 보는 대신 왜 無

進入制限價格狀態가 均衡이 안되는가를 살펴 보자.

無進入制限價格狀態, 즉 各既存企業이 え (θ) 를 생산하여 $\delta_n(\theta)$ 의 市場價格이 형성되 는 상태가 均衡이라면 E는 1期市場價格 p가 $\mathfrak{H}_{n}(\widehat{\theta})$ 보다 높은 경우 진입하고 $\mathfrak{h}(\widehat{\theta})$ 인 경 우 進入을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需要狀態가 Â이하인 産業에는 進入이 封鎖되고 Â보다 큰 產業에는 進入이 실현되며 最高進入制限價格 $b_{\mu} = \overline{b}_{n}(\hat{\theta})$ 이다. 이때 $\hat{\theta}$ 보다 약간 큰 θ 들에 대하여 p_{a} $\alpha(\theta)$ 이므로 補充定理 2-(ii)에 모 순된다. 즉 $\hat{\theta}$ 보다 약간 큰 θ 의 需要狀態에 產量을 증가시켜도 $\delta_n(\hat{\theta})$ 의 市場價格을 형성 해 進入을 봉쇄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1 期利益의 감소가 0에 가까운 반면, 進入封鎖 의 利益은 $L_n(\theta)$ 이므로 $\overline{x}_n(\theta)$ 를 생산하지 않 게 된다. 따라서 無進入制限價格狀態는 균형 이 될 수 없다.

정리 1에 의해 混和均衡과 部分的 混和均衡 만 고려하면 되는데 먼저 混和均衡을 고려하 자. 混和均衡의 존재여부는 n, θ_L , θ_H , $\hat{\theta}$, $g(\theta)$, $f(\theta,Q)$, c 등 모델의 諸母數의 값에 달려 있 는데 混和均衡이 존재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定理 2〉 $eta(heta_{
m H})$ 〈 $ar{p}_n(heta_{
m L})$ 이면 混和均衡이 존재한다.

정리 2는 $\beta(\theta)$ 가 單調增加函數라는 것을 보이면 증명할 수 있으며 $\beta(\theta)$ 가 單調增加函 數임은 계산을 하면 보일 수 있다. $\beta(\theta)$ 가 單調增加函數이므로 만일 유형 θ_H 인 既存企業 들이 $p_n(\theta_L)$ 이나 그 이하의 어떤 가격을 취해 進入封鎖를 하는 것이 合誘因的이면 여타 모 든 θ 에 대해서도 既存企業들이 그 가격을 취 해 進入封鎖를 하는 것이 合誘因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混和均衡이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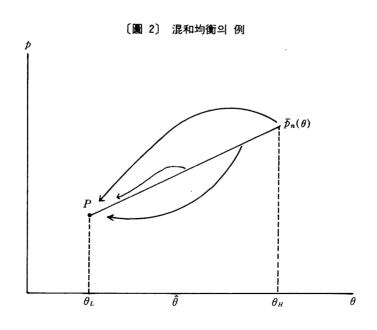
모든 $i=1, \cdots$, n와 모든 θ 에 대해 $(1) \ x_i^* \ (\theta) = \bar{x}_n(\theta) + \frac{\bar{p}_n(\theta) - p_e}{n\bar{b}}, \ p_e \in [\beta(\theta_H), \bar{p}_n(\theta_L)],$

- (2) $e^*(p) = 1 \leftrightarrow p > p_e$,
- (3) $p = p_e$ 이면 $h(\theta|p) = g(\theta)$, $\theta_L \le \theta \le \theta_H$

위의 混和均衡에서 既存企業들은 需要狀態에 관계없이 하나의 市場價格이 나타나는 生產量을 생산하고 있다. 이 市場價格은 最低需要狀態인 θ ,일 때의 Cournot-Nash價格 ρ , (θ_L) 이하의 어떤 價格인데 모든 θ 에 대해 ρ (θ) $\leq p_e$ 이므로 어떤 既存企業도 短期利益의 增加를 위해 生產量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E는 p_e 의 價格을 보았을 때 Bayes 法則에따라 사전적 확률분포와 동일한 사후적 確率分布를 갖게 되며 市場價格은 아무런 새로운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정 (A_3)

에 따라 進入을 포기하게 된다. [圖 2]에는 需要狀態에 관계없이 既存企業들이 最低需要 狀態의 Cournot-Nash 價格을 형성하는 混和 的 進入制限價格 均衡이 그려져 있다. [圖 2] 에서 직선은 θ 의 함수로서 Cournot-Nash價 格을 그린 것이며 굵은점 P는 이 均衡에서 형성되는 유일한 균형가격 $\mathcal{D}_n(\theta_{\mathbf{L}})$ 을 나타낸 것이다. E의 진입결정함수는 均衡價格 f_n (化) 이하의 價格에 대해서는 進入을 포기하 고 $D_m(\theta_L)$ 을 넘는 價格에 대해서는 진입하는 것인데 均衡에서는 $p_e = \bar{p}_n(\theta_t)$ 만이 형성되며 따라서 進入을 포기하게 된다. [圖 2]의 混和 均衡은 $\beta(\theta_{\rm H}) = \bar{p}_n(\theta_{\rm L})$ 인 경우 유일한 混和均 衡이 되나 $\beta(\theta_{\rm H})\langle \mathcal{P}_n(\theta_{\rm L})$ 인 경우에는 많은 混 和均衡 중의 하나이다. 즉 $\beta(\theta_{\rm H})\langle p_{\rm e}\langle \bar{p}_{\rm n}(\theta_{\rm L})$ 인 어떤 最高進入制限價格 p_e 로 대표되는 E의 進入戰略과 θ 에 관계없이 b_0 의 市場價格을 형성하는 既存企業들의 戰略組合은 混和均衡 을 구성하게 된다.

混和均衡의 존재여부는 $oldsymbol{eta}(oldsymbol{ heta_H}) oldsymbol{ar{ heta}_n}(oldsymbol{ heta_L})$ 의 부



등식이 성립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부등식 의 성립여부는 모델내의 여러 母數들의 값에 달려 있는데 큰 n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음 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既存企業들의 숫자가 충분히 크면 混和均衡은 존재하지 않 게 된다. 이에 따라 均衡의 존재문제가 제기 되는데 混和均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항상 部分的 混和均衡이 존재하므로 均衡의 存在에 는 문제가 없음을 보일 수 있다. 이 사실을 다음의 정리로써 요약하고 部分的 混和均衡을 검토해 보자.

〈定理 3〉 均衡은 항상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混和均衡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部分的 混和均衡이 존재함을 보이면 정리 3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混和均 衡이 존재하지 않으면 $\beta(\theta_{\rm H}) > \tilde{p}_n(\theta_{\rm L})$ 이다. 그러 면 두가지 可能性이 있는바 첫째는 $\hat{\theta} \hat{\kappa} \theta_{o} \hat{\kappa} \theta_{H}$ 인 어떤 $\theta_{\rm o}$ 에 대해 $\beta(\theta_{\rm o}) = \delta_n(\theta_{\rm L})$ 인 경우이 고, 둘째는 $\theta > \hat{\theta}$ 인 모든 θ 에 대해 $\beta(\theta) > \delta_n(\theta_1)$

인 경우이다. 첫번째의 경우 다음의 部分混和 均衡이 존재한다.

(1) 既存企業의 戰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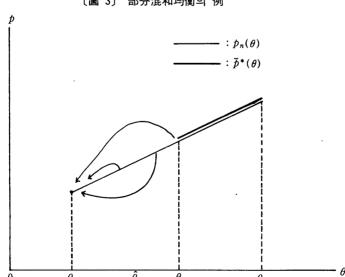
$$\theta \leq \theta_o$$
이면 $x_i^*(\theta) = \overline{x}_n(\theta) + \frac{1}{nb} (\overline{p}_n(\theta) - \overline{p}_n(\theta_L))$ 이고 $\theta > \theta_o$ 이면 $x_i^*(\theta) = \overline{x}_n(\theta)$.

- (2) E의 戰略: $p > p_n(\theta_L)$ 이면 진입하고 $p \le$ $f_n(\theta_1)$ 이면 진입하지 않음.
- (3) $h(\theta \mid b)$:

(i)
$$p = \bar{p}_n(\theta_L)$$
이면 $h(\theta|p) = \begin{cases} \frac{g(\theta)}{G(\theta_o) - G(\theta_L)}, & \theta_L \leq \theta \leq \theta_o, \\ 0, & \theta > \theta_o \end{cases}$

(ii)
$$p > \overline{p}_n(\theta_o)$$
이면
$$h(\theta|p) = \begin{cases} 1, & \theta = \overline{p}_n^{-1}(p) = (p-c) \\ & (n+1)+c, \\ 0, & \theta = \overline{p}_n^{-1}(p). \end{cases}$$

[圖 3]은 이 混和均衡을 묘사하고 있다. 이 均衡에서 需要狀態가 🕫 이하인 既存企業들은 $ar{p}_n(heta_L)$ 의 市場價格을 형성하며 需要狀態가 θ。보다 큰 既存企業들은 Cournot-Nash均衡



〔圖 3〕 部分混和均衡의 例

量을 생산하여 $\bar{p}_n(\theta)$ 의 Cournot-Nash 價格을 형성한다. E는 $\bar{p}_n(\theta_t)$ 의 市場價格이 형성될 경우 θ 가 $[\theta_t, \theta_o]$ 의 폐구구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나 그 이상의 情報는 얻지못한다. 따라서 위 (3)-(i)의 조건부확률분포를 가지고 進入決定을 하게 되며 그 결과進入을 포기하게 된다. $\bar{p}_n(\theta_o)$ 보다 큰 價格이 형성될 경우 E는 $p_{n}^{-1}(p)$ 인 수요상태가확률 1로 발생했음을 알며 이 경우 $\bar{p}_n^{-1}(p)$ 》 θ_o 》하이므로 진입할 것이다. 유형 $\theta \le \theta_o$ 인 既存企業들의 生產量이 최적인 이유는 이 θ 들에 대해 $\beta(\theta)$ $\le \bar{p}_n(\theta_t)$ 이기 때문이다.

유형 $\theta > \theta$ 。인 既存企業들은 각자 Cournot-Nash 均衡量을 생산하여 短期利益을 極大化 하며 進入을 허용하고 있다. 만일 類型 $\theta > \theta$ 。 인 한 既存企業이 생산량을 증가하여 $\mathfrak{o}_n(\theta_1)$ 의 進入制限價格을 형성하면 進入이 봉쇄될 것이나 이 경우 이 旣存企業의 1期 利益 減少 가 $L_n(\theta)$ 보다 크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는 모든 heta에 대해 lpha(heta) > eta(heta)임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θ 〉 θ 。인 경 우 既存企業들이 각자 Cournot-Nash 均衡量 을 생산하며 進入을 허용하는 것이 최적이며 이로써 위에 서술한 戰略組合 및 事後的 確率 分布는 均衡임이 확인되었다. 이 均衡에서 $\theta > \theta$ 。 인 需要狀態에서는 均衡價格이 分離的 (separating)이나, $\theta \le \theta$. 包 需要狀態에서는 均衡價格이 混和的(pooling)이므로 이 均衡은 部分的 混和均衡이다. 이 均衡에서 $\theta_{L} \leq \theta \leq \theta$ 。 인 모든 需要狀態 heta에서 進入制限價格이 형 성되며 따라서 進入制限價格이 발생할 確率은 $G(\theta_{\circ})$ 이다. 또한 이 均衡에서 進入이 일어 날 確率은 $1-G(\theta_o)$ 인데 이는 完全情報下에 서의 進入發生確率 $1-G(\hat{\boldsymbol{\theta}})$ 보다 작다. 따라

서 이 均衡에서는 進入制限價格의 결과 新規 進入의 確率이 낮아진다.

다음으로 $\theta
ightarrow \hat{\theta}$ 인 모든 θ 에 대해 $\beta(\theta)
ightarrow \hat{p}_n$ (θ_L)인 경우, 즉 $\beta(\hat{\theta})
ightarrow \hat{p}(\theta_L)$ 인 경우를 보자. $\beta(\hat{\theta})
ightarrow \hat{p}(\theta_L)$ 이므로 $\hat{\theta}$ 보다 근소하게 큰 어떤 θ' 에 대해 $\beta(\theta') = \hat{p}_n(\theta'')$ 인 $\theta_L \langle \theta'' \langle \hat{\theta} \rangle$ 구간에 위치한 θ'' 이 존재한다. 이러한 θ' 와 θ'' 을 이용하여 다음의 部分混和均衡이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

(1) 既存企業의 戰略:

$$heta < heta''$$
이면 $x_i^* (heta) = \overline{x}_n(heta)$, $heta'' \le heta \le heta'$ 이면 $x_i^* (heta) = \overline{x}_n(heta) + \frac{1}{nb}$ ($\overline{p}_n(heta) - \overline{p}_n(heta'')$),

 $\theta > \theta'$ 이면 $x_i^*(\theta) = \overline{x}_n(\th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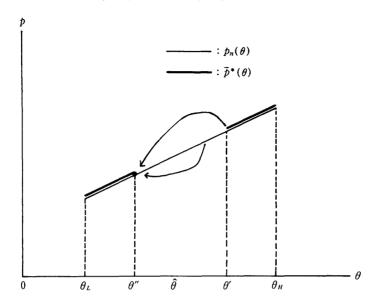
- (2) E의 戦略: p < p̄_n(θ")이면 진입하고 p≤
 p̄_n(θ")이면 진입포기
- (3) $h(\theta|p)$:
 - (i) $[\bar{p}_n(\theta_L), \bar{p}_n(\theta'')) U(\bar{p}_n(\theta'),$ $\bar{p}(\theta_H)]$ 에 속한 各 p에 대해 $h(\theta|p) = \begin{cases} 1, & \theta = \bar{p}_n^{-1}(p) \\ 0, & \theta \neq \bar{p}_n^{-1}(p) \end{cases}$

(ii)
$$p = \overline{p}_n(\theta'')$$

$$h(\theta|p) = \begin{cases} \frac{g(\theta)}{G(\theta') - G(\theta'')}, \\ \theta'' \le \theta \le \theta', \\ 0, \theta < \theta'' \text{ or } \exists \vdash \theta > \theta'. \end{cases}$$

[圖 4]는 위의 均衡을 설명하고 있다. 需要 狀態가 $\theta'' < \theta \le \theta'$ 인 모든 θ 에 대해 既存企業 들은 $\overline{p}_n(\theta'')$ 의 價格을 형성하는 生產量을 공 급하며 그밖의 需要狀態에서는 Cournot-Nash 生產量이 공급된다. 따라서 $\overline{p}_n(\theta'')$ 미만의 價 格 $\overline{p}_n(\theta)$, $\theta < \theta''$,이나 $\overline{p}_n(\theta')$ 보다 높은 價格 $\overline{p}_n(\theta)$, $\theta > \theta'$,을 보았을 때 E는 θ 를 완벽히 알 수 있으며 따라서 $\overline{p}_n(\theta'')$ 미만의 價格에 대해서는 進入을 포기하고 $\overline{p}_n(\theta'')$ 의 價格을

[圖 4] 部分混和均衡의 例



볼 경우 E는 $\left[\theta'',\;\theta''\right]$ 중의 한 需要狀態라 는 것만을 알게 되며 이 경우의 조건부 확률 은 위의 (3)-(ii)로써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 다. 이때 豫想進入純利益은 $\frac{1}{G(heta')-G(heta'')}$ $\int_{artheta''}^{oldsymbol{ heta'}} \left(
ho\overline{\pi}_{n+1}\left(heta
ight) - K
ight)g(heta)d heta$ 인데 어떠한 연속 확률밀도 $g(\theta)$ 가 주어지더라도 이 기대치를 負 로 만드는 θ' 과 이에 따른 θ'' . $\theta'' < \hat{\theta} < \theta'$ 을 찾 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θ' 과 θ'' 에 대하여 위의 기대치가 負이므로 $\overline{D}_n(\theta'')$ 의 價格이 형성 되었을 때 E는 進入을 포기하게 된다. 이 均 衡에서 各既存企業의 戰略이 최적임은 전에 다룬 다른 均衡에서의 경우와 비슷하게 증명 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均衡에 서 需要狀態가 $\theta'' \leq \theta \leq \theta'$ 인 既存企業들이 進 入制限價格을 채택하며, 進入의 확률은 1-G (θ') 으로서 完全情報下의 進入確率 $1-G(\hat{\theta})$ 보 다 작다.

위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混和均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部分混 和均衡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均衡은 항상 존재한다 둘째, 均衡에서 항상 進入制限價格이 형성되는 需要狀態가 있으며 따라서 寡占企業들이 非妥協的으로(noncooperatively) 각자의 利潤을 極大化하더라도 進入制限價格이 채택될 수 있다. 즉 Bain의 직관은 일반적으로 성립하며 Milgrom-Roberts의 결과는寡占產業으로 확장된다. 셋째, 進入制限은 既存企業들이 공유한 우월한 情報를 이용한 混和行為(pooling activity)의 결과이다. 이 결과가 Milgrom-Roberts의 결과와 다른 점은多數의 企業이 같은 情報를 알고 있으며 각기업이 비타협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성립된다는점에 있다.

IV. 極限均衡(Limit Equilibria)

이 章에서는 既存企業의 數와 進入制限價格

形成의 可能性과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문제는, 첫째 既存企業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進入制限價格의 형성이 어려워지는가, 그리고 둘째 既存企業의 數가 무한에 접근할 때, 즉 한 산업이 完全競爭狀態로 접근해감에 따라 進入制限價格形成의 可能性이 0으로 수렴하는 가에 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各 n에 대해 많은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수 n_1 과 n_2 를 놓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질문의 답은 이 논문 에서 가정하고 있는 線型모델에 관한한 확정 적인 답이 가능하다. 밑에서 밝혀질 바와 같 이 n이 무한에 접근함에 따라 均衡에서 進入 制限價格이 채택될 확률은 0으로 수렴하며 따 라서 한 產業이 完全競爭狀態로 접근해감에 따라 既存企業들이 공유한 私有情報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하고 進入制限價格은 자취를 감추 게 된다. 이 결과는 Bayes Nash 均衡의 特 定精練(refinement)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면 에서 매우 흥미롭다. 의미있는 分析을 위해서 는 完全情報下에서 진입여부를 구분하는 需要 狀態 θ 인 $\hat{\theta}$ 이 企業의 數에 관계없이 고정되 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의 가정을 하겠다. 進入費用 K는 n에 의존 하며 이에 따라 K_n 으로 표시하고 n이 증가함 에 따라 K_n 은 감소하여 $\rho \bar{\pi}_{n+1}(\theta) - K_n = 0$ 을 모든 n에 대해 성립시킨다.

〈定理 4〉 n이 무한에 접근함에 따라 既存企業들이 混和行爲를 할 수 있는 需要狀態는 $\{\hat{\theta}\}$ 에 수렴하고 各既存企業의 戰略은 확률 1로써 $\Sigma_n(\theta)$ 에 수렴한다.

정리 4의 증명은 복잡하나 그 요점은 간략

히 설명할 수 있다. 보충정리 4에 의해 유형 θ 인 既存企業들이 택할 수 있는 進入制限價格의 下限은 $\beta(\theta)$ 인데 이것이 線型모델에서는 $p_n(\theta)$ 가 c로 수렴하는 것보다 더 빠른 速度로 $\bar{p}_n(\theta)$ 로 수렴하게 된다. 즉, θ_i > θ_i 인어떤 두 θ_i , θ_i 를 취했을 때 n>N이면 β (θ_i)> $\bar{p}_n(\theta_i$)가 되는 N이 항상 존재하며 이에 따라 極限에서 θ > $\hat{\theta}$ 인 모든 θ 에 대해 β (θ)> $\bar{p}_n(\hat{\theta})$ 이 되며 θ < $\hat{\theta}$ 인 모든 θ 에 대해 β ($\hat{\theta}$)> $\bar{p}_n(\hat{\theta})$ 임을 보일 수 있다. 정리 4는 極限均衡에서 各既存企業은 $x_n(\theta)$ 를 생산하며 이에 따라 進入制限價格은 사라지게 되고 進入의 確率은 完全情報下에서의 進入의 확률 1- $G(\hat{\theta})$ 에 수렴한다.

V. 結 論

이 논문에서 著者는 企業들이 非妥協的으로 행동하며 各企業이 자신의 利潤만을 極大化할 때에도 既存企業들이 潜在的 新規企業에 비해우월한 情報를 가지고 있을 경우 進入制限價格을 채택할 수 있음을 확립하였다. 이 결과는 Bain이 제기한 이래 Milgrom and Roberts에 의하여 獨占產業에 한해 밝혀진 進入制限價格理論을 일반화시켰다는 것 이외에도 企業間의 合誘因的인 暗默的 談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있다. Folk-theorem流의 이론에서 合誘因的인 暗默的 談合을 위하여는 무한반복적 경기와 연쇄적인 보복전략이 필요한데 반해 이 論文의 結果는 단순한 경쟁상태하에서 企業들이 단순한 戰略을 사용합지라도 情報의 不均衡이

존재하는 한 合誘因的인 暗默的 談合이 가능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極限結果는 市場이 完全競爭市場에 접근함에 따라 既存企業들이 소유한 우월한 情報의 價値는 감소하여 결국 進入制限價格이 채택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完全競爭市場이 選好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厚生經 濟的인 측면에서 볼 때 위의 결과는 進入制限 價格의 採擇에 따른 단기적인 厚生의 增加와 이의 결과 進入이 봉쇄되는 데 따른 장기적인 厚生의 減少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 하며 장기적인 厚生의 減少가 단기적인 厚生 의 增加보다 현저히 클 경우 정책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需要에 대한 情報의 不均衡만을 고려하였지만 技術의 상 태, 國際市場의 상태 등에 대한 情報의 不均 衡이 존재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성립함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進入制限價格 의 可能性이 산업의 초기 성장기에 나타난다 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단기 간에 많은 새로운 產業이 등장하며 이 과정이 外國의 大企業 및 이들과 合作한 소수의 國內 寡占財閥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經濟에 있어서 이 논문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소수 선발대기업들에 의한 進入制限 價格의 채택이 進入障壁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厚生의 감소 이외에도 한국의

실정상 經濟力集中의 심화, 國內產業育成의 저해 및 이에 따르는 長期的 國際競爭力의 하 락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大企業들에 의한 情報의 不均衡을 이용한 非 物理的 進入抑制에 관한 實證的인 研究가 요 청되며 이에 따른 政策的 對應策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이 論文의 結果가 旣 存企業들의 Cournot的 競爭이라는 가정에 의 존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既存企業들이 Cournot的 競爭을 할 경우 市場價格은 n개의 企業의 生產量의 函數이기 때문에 情報傳達媒 體로서 조악한(coarse) 매체이기 때문이다. 潜在的 新規企業은 각 既存企業의 行動을 직 접 관측할 수 없으며 n개의 既存企業들의 行 動을 요약한 市場價格밖에 관측할 수 없기 때 문에 제한된 情報밖에는 얻을 수 없게 되며 이 결과 進入制限價格의 形成可能性이 높아지 게 되는 면이 있다. 저자의 다른 論文 Limit Pricing by a Duopoly (1987)에서 저자는 潜在 的 新規企業이 各既存企業의 行動을 직접 관 측할 수 있을 경우 進入制限價格形成의 可能 性이 의문시됨을 지적한 바 있다. 政策的 측 면에서 볼 때 이는 企業들의 회계자료공표가 潛在的 競爭의 促進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하며 會計資料 및 諸般企業活動狀況 의 公開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參考文獻〈

- Bain, J., "A Note on Pricing in Monopoly and Oligopol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39, 1949, pp.448~464.
- ————,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Banks, J. and J. Sobel, "Equilibrium Selection in Signalling Games,"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985.
- Benoit, J. P., "Financially Constrained Entry in a Game with Incomplete Inform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Winter 1984, pp.490~499.
- Bernheim, B., "Strategic Deference of Sequential Entry into an Industry,"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Spring 1984, pp. 1~11.
- Blume, L. E. and D. Easley, "On the Game Theoretic Foundations of Market Equilibrium with Asymmetric Information," Mimeo.
- Cho, L. and D. Kreps, "More Signalling Games and Stable Equilibria," Mimeo., Feb. 1985.
- Crawford, V. and J. Sobel, "Strategic Information Transmission," *Econometrica* 50, November 1982, pp.1431~1451.
- Dixit, A., "A Model of Duopoly Suggesting a Theory of Entry Barriers," *Bell Journal of Economics* 10, Spring 1972, pp.20~32.
- Eaton, C. and R. Lipsey, "Capital, Commitment, and Entry Equilibrium," *Bell Journal of Economics* 12, Autumn 1981, pp. 593~604.
- Engers, M. and M. Schwartz, "Signalling Equilibrium Based on Sensible Beliefs: Limit Pricing under Incomplete Informa-

- tion," Discussion Paper #84-4, Economic Policy Office, Antitrust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May 1984.
- Friedman, J., "On Entry Preventing Behavior," S. J. Brams, A. Schotter, and G. Schwodiauer (eds.), *Applied Game Theory*, Wurzburg and Vienna: Physica-Verlag, 1979, pp.236~253.
- Fudenberg, D. and J. Tirole, "Predation without Reputation," Working Paper #37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Economics, 1985.
- Gaskin, D., "Dynamic Limit Pricing: Optimal Pricing under Threat of Entry," *Journal of Economic Theory* 3, September 1971, pp.306~322.
- Gilbert, R. and X. Vives, "Entry Deterrence and the Free Rider Problem," *Review of Economic Studies* 53, 1986, pp.71~83.
- Harrington, J., "Noncooperative Behavior by a Cartel as an Entry-Deterring Signal,"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Autumn 1984, pp.426~433.
- Harsanyi, J., "Games with Incomplete Information Played by Bayesian Players," Parts I, II, and III, *Management Science* 14, 1967–68, pp.159~182, 320~324, and 486~502.
- Kamien, M. and N. Schwartz, "Limit Pricing and Uncertain Entry," *Econometrica* 39, May 1971, pp.441~454.
- Kolberg, E. and J. Mertens, "On the Strategic Stability of Equilibria," C.O.R.E. Working Paper #8248, November 1982.
- Kreps, D., "Signalling and Stable Equilibria," GSB Working Paper #758, Stanford University, July 1984.

- and R. Wilson, "Reputation and Imperfect In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27, 1982a, pp.253 ~279.
- "Sequential Equilibria," Econometrica 50, 1982b, pp.863~894.
- Matthews, S. and L. Mirman, "Equilibrium Limit Pricing: The Effect of Private Information and Stochastic Demand," *Econometrica* 51, July 1983, pp.981~996.
- McGee, J., "Predatory Price Cutting: The Standard Oil(N.J.) Cas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1, 1958, pp.137 ~ 169.
- Milgrom, P., "Good News and Bad News: Representation Theorems and Applications," *Bell Journal of Economics* 12, 1981.
- ———— and J. Roberts, "Limit Pricing and Entry Deterrence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An Equilibrium Analysis," *Econometrica* 50, 1982a.
- ————, "Predation, Reputation, and Entry Detterence,"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27, 1982b, pp.280~312.
- Product Quality," Research Paper #742, Stanfo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1984.
- Nam, I., "Limit Pricing by a Duopoly," Working Paper, April 1987.
- , "Entry Deterrence by Multiple Incumbents", Working Paper, December

- 1986.
- Prescott, E. C. and M. Visscher, "Sequential Location among Firms with Perfect Foresight," *Bell Journal of Economics* 8, 1977.
- Ramey, G., "Limit Pricing Equilibria," Mimeo., Stanford University, April 1985.
- Roberts, G., "A Signalling Model of Predatory Pricing," Research Paper #828, Stanfo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ugust 1985a.
- -----, "Battles for Market Share: Incomplete Information, Aggressive Strategic Pricing and Competitive Dynamics," Research Paper #827, Stanfo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eptember 1985b.
- Saloner, G., "Essays on Information Transmission under Uncertainty," Ph.D.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82.
- Salop, S., "Strategic Entry Deterr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69, May
 1979.
- Selten, R., "The Chain-Store Paradox,"

 Theory and Decision, Vol.9, 1978, pp.127

 ~159.
- ness Concept for Equilibrium Points in Extensive Games," *International Journal of Game Theory* 4, 1975.
- Spence, M., "Entry, Capacity, Investment and Oligopolistic Pricing," *Bell Journal of Economics* 8, Autumn 1977.

研究叢書案 內

□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의/ 122쪽 高級丰裝 3,0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18 切 判 250쪽 高級/ 美/5,600원 宋熙季 著

②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18 회 회 158쪽 高級主装 3,600원 文八龍 著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18 切 判 508쪽 金胤亨 著 高級洋裝 11,000号

③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18 切 의 250쪽 高級 丰装 5,600원 潘性紈 著

III PLANNING MODEL AND MACRUECONOMIC POLICY ISSUES

18 切 判/ 492쪽 高級手裝 11,000원 492목 金油数 編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18 切 产 146至 金光錫 著 高級 丰裝 3,000원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 18 切 封 342쪽 高級洋裝/7,600원 金油数 編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斗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約/ 318쪽 高級洋裝 7,0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18 切 组 532쪽 金善雄 編 高級 羊裝/11,600원

TRADE AND DEVELOPMENT 6 IN KOREA

洪元卓 18 切 利/ 254쪽 A.O. Krueger 高級丰芸 6,0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18 切 判/ 252쪽 張榮植 著 高級洋裝/5,600号

7 SOCIAL SECURITY IN KOREA

18 切 원 / 198쪽 훈城 후获 4,600원 朴宗淇

18 市場構造의 獨寡占規制

18 切 判/ 370쪽 李奎億 著 高級洋裝/8,000원

PUBLIC ENTERPRISE AND 8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 18 切 判/ 294쪽 L.P. Jones 著 高級丰芸/6,600원

19 賃金斗 勞使關係

18 切 到/ 244쪽 金秀坤 著 高級洋裝/5.600号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全光錫 玉兀砀 L.E. Westphal 共著 18 切 年 / 336쪽 高級建裝/7,6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18 切 判/ 214쪽 洪思媛 高級 羊装/4,600원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 18 切 約 / 236쪽 高級 #裝 /5,000원 洪元卓 著

21 EMPLOYMENT GROWTH IN KOREA

TRADE, DISTORTIONS AND

[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18 切 彩。 202쪽 金秀坤 著 高級洋袋 4,600원

18 切 虾/ 410쪽 洪元卓 著 高級洋裝/9,000원

22 成長斗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194쪽 高級洋裝/4,000号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18 切 判/ 306쪽 林浩奎 著 高級洋裝/7.000月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18 切 判/ 306쪽 林浩奎 著 高級洋裝/7.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18 切 判/ 204쪽 南相點 著 高級洋裝/4,600원 36 韓國工業化패턴과 ユ 要因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金光錫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共著 18 切 判/ 166쪽 高級洋裝/3.600号 37 保健醫療資源斗 診療生活圈

延河清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7.600원

COMMUNITY DEVELOPMENT 26 AND HUMAN REPRODUCTIVE BEHA VIOR

> 18 切 判/ 198쪽 洪思媛 著 高級洋裝/4.600引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N.F. McGinn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剌/ 250쪽 高級洋裝/5,600원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18 切 判/ 256쪽 高級洋裝/5,600원 田英鶴

28 繊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18 切 判/ 180쪽 高級洋裝/4,000원 金榮奉

MACROECONOMIC AND 40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 18 切 判/ 414쪽 朴宗淇 編 高級洋裝/9,000号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18 切 判/ 192쪽 高級洋裝/4,600원 南宗鉉 著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 18 切 判/ 384쪽 高級洋裝/8,600원 朴宗 津 編

30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18 切 判/ 470쪽 朱鶴中 高級洋裝/10,600원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18 切 判/ 268쪽 高級洋裝/6,000원 A. Keidel 著

③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원 宋丙洛 編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18 切 判/ 396쪽 潘性紈 共著 高級洋裝/9,000원 D.H. Perkins

③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朴宗淇 著

44 需給構造의 物價政策

18 切 判/ 288쪽 李 烍 著 高級洋裝/6,600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具本英 著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共著 L.P. Jones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号

34 成長斗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270쪽 高級洋裝/6,000원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淸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6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外 18 切 判/ 530等 E.S. 메이슨 外 高級洋裝/11,600원

- 图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 228等 高級洋養 5,000 원
- 49 韓國의 所得分配斗 決定要因(下)朱鶴中 著 18 切 判/ 432等 高級洋葵/9,600원
- 50 國民經濟斗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共著 18 切 判/ 428章 関載成 共著 高級洋装/9,600원
-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共著 18 切 判/ 402쪽 李軫周 共著 高級洋裝/9,000원
-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토 外 18 切 判/ 328쪽 金善雄 外 高級洋装/7,000원
- 53 韓國의 金融發展: 1945~80 D.C. 書 共著 18 切 別/ 334等 朴英哲 共著 高級洋裝/7,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恒求 共著 18 切 判/ 440等 朴世逸 - 高級洋装/10,0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 大変卿 大者 高級洋装/5,400원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의 金融政策 金重雄 ・ 角組誌 共著 18 切 判/ 354쪽 高級洋裝/8,000원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高級洋装/8,000원

53 地方財政調整制度 斗 財源配分 李啓植 著 18 切 判/ 280等 高級洋装/6,000원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61 韓國의 公企業管理政策

宋大熙 著 18 切 判/ 310쪽 高級洋裝/8,400원

● 韓國開發研究院 新刊案內 ●

產業技術開發支援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鄭俊石著

半洋裝 / 18切判 / 152面 / 定價 4,000원

國家報勳報償制度의 改編方案

閔 載 成 著 全 龍 百 著

半洋裝 / 18切判 / 180面 / 定價 4,800원

經濟規制의 競爭政策

李奎億編

半洋裝 / 18切判 / 346面 / 定價 7,600원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9)

沈 相 達 李 啓 植

半洋裝 / 18切判 / 240面 / 定價 5,400원

金融環境變化의 綜合金融會社의 位相

南相林外

半洋裝/ 18切判/ 184面/ 定價 4,000원

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産業調整

朴 埈 卿 著

半洋裝 / 18切判 / 222面 / 定價 5,600원

韓國의 公企業管理政策

宋大熙著

半洋裝 / 18切判 / 310面 / 定價 8,400원

KDI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研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本 研究院 情報資料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 靈 會 費: 70,000 원
- 加入方法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拂入하거나,
 - ↑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010983-31-0514919)에 拂入하면 됨.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130-012 **KDI**발간자료상담실(Tel. 960/3283, 960/4811 (交)305)

English Summary of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Vol. 12, No. 1	Spring 1990
Sources of Long-term Industrial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Korea, 1955-85	Kim Kwang-suk Hong Sung-duk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Lee Kyu-uck
Economic Impact of the Tariff Reform: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Lee Won-young
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Kim Jong-seok
Korea's Optimal Basket Exchange Rate: Thoughts on the Proper Operation of the Market Average Rate Regime	Oum Bong-sung
Limit Pricing by Noncooperative Oligopolists	Nam II-chong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as founded in 1971 to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on the Korean economy and related matters and to assist government policy making. The research results are published in books, monographs, working papers, seminar papers, etc., and in journals.

Since 1979 the Korea Development Review, one of two quarterly journals in Korean, publishes in a concise form the Institute's research results—mainly studies of policyrelated economic issues. Views expressed herein are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the Editorial Board or the Institute.

President: Koo Bon-ho

Vice President: Yeon Ha-cheong

Research Staff:

Choo Hak-chung Chung Chin-seung Kang Moon-soo Jwa Sung-hee Kim Jong-gie Kim Ji-hong Kim Kwan-young Kim Jong-seok Kwon Soon-won Kim Myong-sook Lee Kye-sik Lee Duk-hoon Lee Won-young Lee Kyu-uck Min Jae-sung Lee Young-ki Nam Sang-woo Nam Il-chong Park Eul-yong Oum Bong-sung Park Joon-kyung Park Woo-kyu Roh Kee-sung Park Won-am Shim Sang-dal Son Jae-voung Yeo Woon-bang Song Dae-hee Yoo Jung-ho Yoo Il-ho

Yoo Yoon-ha

Yoo Seong-min Young Soo-gil

(Family names are given first.)

EDITORIAL BOARD

Editor in Chief: Managing Editor: Yoo Jung-ho Jwa Sung-hee

Board of Editors:

Kwon Soon-won

Park Joon-kyung Shim Sang-dal

Song Dae-hee

Technical Editor:

Shin Dong-cho

Sources of Long-term Industrial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Korea, 1955-85

Kim Kwang-suk Professor, Kyung Hee Univ.

> Hong Sung-duk Assistant Fellow

Korean input-output tables for 1975 and 1985 are first deflated into 1975 constant domestic prices(hypothetical terms), and the constant price I-O data are used to decompose the sources of industrial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during the 1975-85 period. Using the same methodology, our results for the 1975-85 period are then linked to the results for the earlier period(1955-75) in order to analyze and evaluate the "demand-side" sources of industrialization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results from the decomposition of the whole economy indicate that over three decades(1955-85)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domestic demand expansion (DDE) to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has continuously declined while the contribution of export expansion(EE) has generally continued to rise. The contribution of import-substitution(IS) which had been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EE during 1955-63 declined substantially, remaining at an insignificantly low level during the period following 1963. Although it is well known that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in the 1970s emphasized import-substitution in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export-oriented growth pattern could be observed even for that period, except for a minor decline in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E.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substantially larger, backward-linkage effects of EE than that of IS.

The sources-of-growth decompositions for major branche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generally support the major conclusions derived from the decomposition for the whole economy. The IS contribution which had been significantly high in almost all manufacturing branches during the 1955-63 period declined to low levels in all but two branches, heavy industry and machinery, during the following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E showed a continuous rise in almost all manufacturing branches(except food processing).

Finally, the sources of growth for 1975-85 which were decomposed by detailed subbranches, are analyzed by correlating them with changes in relative prices and industrial protection rates by sub-branches for the same period. A major result is that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the EE contributions by sub-branch are not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nominal rates of protection and/or the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for the same sub-branches. It is also found tha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exists between IS contributions and nominal protection rates or effective protection rates. These

S	um	m	aı	ľ
_				•

unexpected results may be explained by the peculiar nature of the Korean system of industrial incentives for the past perio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Lee Kyu-uck

Senior Fellow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akes the form of one or a few firms controlling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conomic resources and means in a certain economic area. At the same time, to the extent that these firms are owned by a few individuals, resource allocation can be manipulated by them rather than by the impersonal market mechanism. This will impair allocative efficiency, run counter to a decentralized market system and hampe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Viewed fro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Western capitalism in general,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a paradox in that it is a product of the free market system itself. The economic principle of natural discrimination works so that a few big firms preempt scarce resources and market opportunities. Prominent historical examples include trusts in America, Konzern in Germany and Zaibatsu in Japa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the outcome as well as the antithesis of free competition. As long as judgment of the economic system at large depends upon the value systems of individuals, therefore, the issue of how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ill inevitably be tinged with ideology. We have witnessed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such as communism, fascism and revised capitalism, and the last one seems to be the only surviving alternativ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can be summarily represented by the "jaebol," namely, the conglomerate business group, the majority of whose member firms are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in their respective markets and are owned by particular individuals. The jaebol has many dimensions in its size, but to sketch its magnitude, the share of the jaebol in the manufacturing sector reached 37.3% in shipment and 17.6% in employment as of 1989.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be ascribed to a number of causes.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the market system is immature, entrepreneurship must fill the gap inherent in the market in addition to performing its customary managerial function. Entrepreneurship of this sort is a scarce resource and becomes even more valuable as the target rate of economic growth gets higher. Entrepreneurship can neither be readily obtained in the market nor exhausted despite repeated use. Because of these peculiarities, economic power is b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entrepreneurs and their business groups. It goes without saying, however, that the

issue of whether the full exercise of money-making entrepreneurship is compatible with social mores is a different matter entirely. The rapidity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n also be traced to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groups. The transplantation of advanced technology oriented toward mass production tends to saturate the small domestic market quite early and allows a firm to expand into new markets by making use of excess capacity and of monopoly profi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jaebol issue has become so acute in Korea lies in the nature of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economic development as its foremost national goal and, since then, has intervened profoundly in the private sector. Since most strategic industr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required a huge capacity in technology, capital and manpower, big firms were favored over smaller firms, and the benefits of industrial policy naturally accrued to large business group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occured along the way was, therefore, not necessarily a product of the market system. At the same time,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business groups has been left largely intact as they have customarily met capital requirements by means of debt.

The real advantage enjoyed by large business groups lies in synergy due to multiplant and multiproduct production. Even these effects, however, cannot always be considered socially optimal, as they offer disadvantages to other independent firms—for example, by foreclosing their markets. Moreover their fictitious or artificial advantages only aggravate the popular perception that most business groups have accumulated their wealth at the expense of the general public and under the behest of the government. Since Korea stands now at the threshold of establishing a full-fledged market economy along with political democracy, the phenomenon calle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must be correctly understood and the roles of business groups must be accordingly redefined. In doing so, we would do better to take a closer look at Japan which has experienced a demise of family-controlled Zaibatsu and a success with business groups(Kigyoshudan) whose ownership is dispersed among many firms and ultimately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Japanese case cannot be an ideal model, but at least it gives us a good point of departure in that the issue of ownership is at the heart of the matter.

In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public policy aimed at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e must harmonize efficiency and equity. Firm size in itself is not a problem, if it is dictated by efficiency considerations and if the firm behaves competitively in the market. As long as entrepreneurship is required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there is a discrepancy in entrepreneurial capacity among individuals, a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bound to take place to some degree. Hence, the most effective way of reducing the inefficiency of business groups may be to impose competitive pressure on their activities. Concurrently, unless the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business groups is scaled down, the seed of social discontent will still remain. Nevertheless, the dispersion of ownership requires a number of preconditions and, consequently, we must make consistent, long-term efforts on many fronts.

We can suggest a long list of policy measures specifically designed to control the con-

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atever the policy may be, however, its intended effects will not be fully realized unless business groups abide by the moral code expected of socially responsible entrepreneurs. This is especially true, since the root of the problem of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ies outside the issue of efficiency, in problems concerning distribution, equity, and social justice.

Economic Impact of the Tariff Reform: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Lee Won-yong

Fellow

A major change in tariff rates was made in January 1989 in Korea. The benchmark tariff rate, which applies to about two thirds of all commodity items, was lowered to 15 percent from 20 percent. In addition, the variation in tariff rates among different types of commodities was reduced.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tariff reform using a multisectoral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he Korean economy which was introduced by Lee and Chang(1988), and by Lee(1988).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find the changes in imports, exports, domestic production, consumption, prices, and employment in 31 different sectors of the economy induced by the reform in tariff rates.

The policy simulations are made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methods. First, tariff changes in industries are calculated strictly according to the change in legal tariff rates, which tend to over-estimate the size of the tariff reduction given the tariff-drawback system and tariff exemption applied to various import items. Second, tariff changes in industries are obtained by dividing the estimated tariff revenues of each industry by the estimated imports for that industry, which are often called actual tariff rates. According to the first method, the import-weighted average tariff rate is lowered from 15.2% to 10.2%, while the second method changes the average tariff rate from 6.2% to 4.2%. In the third method, the tariff-drawback system is internalized in the model.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s of the policy simulation according to all three methods, comparing them with one another. It is argued that the second method yields the most realistic estimate of the changes in macro-economic variables, while the third method is useful in delineating the differences in impact across industries.

The findings, according to the second method, show that the tariff reform induces more imports in most sectors. Garments, leather products, and wood products are those industries in which imports increase by more than 5 percent. On the other hand, imports in agricultural, mining and service sectors are least affected. Domestic production increases in all sectors except the following: leather products, non-metalic products,

chemicals, paper and paper products, and wood-product industries. The increase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is largest in export industries, followed by service industries.

An impact on macroeconomic variables is also simulated. The tariff reform increases nominal GNP by 0.26 percent, lowers the consumer price index by 0.49 percent, increases employment by 0.24 percent, and worsens the trade balance by 480 million US dollars, through a rise in exports of 540 million US dollars and a rise in imports of 1.02 billion US dollars.

Regulatory Reform Proposals for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Kim Jong-seok

Fellow

The basic purpose behind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is to limit growth of the industry.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industry are generally restrictive and interventionist. The policy is intended to maintain high domestic fish prices in order to protect the domestic coastal fishing industry. Some regulations have also been introduced to maintain "industrial order."

Each fishing vessel must obtain a government permit for operation. The permit specifies the kind of fish it can catch, the area of sea in which it can operate, and the port at which it can unload its catches. The number of permits government issues each year is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demand increase calculat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traditionally has been fairly conservative in its estimation, reflecting its concern for fish price stabilization, which actually implies a gradual increase of the prices.

There is also a restriction on importing vessels from abroad.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owever, this regulation has resulted in an unusually high average age of Korean fishing vessels, causing fishing costs to rise.

These regulations and the inflexible response of the regulators to changing circumstances have resulted in many problems: i) high domestic fish prices, which are, to some extent deliberately, inflated to three or four times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ices, resulting in huge consumer welfare losses; ii) over-exploitation of coastal fish resources; iii) provision of a hospitable environment for inefficient firms to survive, which is especially evident from the fact that, despite the high fish prices in Korea, most of the firms in the industry do not enjoy high profitability.

It also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actual beneficiaries of the high fish prices are the large operators, who are protected from competition and provide most of the fish for domestic consumption, rather than the low-income fishing households and small coastal operators whom the policy was originally designed to help.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regulatory reforms and policy changes which could promote competition and equity within the industry and allow firm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ductivity. Such changes can make the industry more efficient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Major proposals are, among others: minimization of bureaucratic discretion in issuing fishing permits and maintaining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es; reduction of the government permit specifications and simplification of the operational categories within the industry; and removal of the restrictions on importing foreign fishing vessels.

Korea's Optimal Basket Exchange Rate: Thoughts on the Proper Operation of the Market Average Rate Regime

Oum Bong-sung

Fellow

For the last several years, considerable criticism has been leveled against Korea's exchange rate management. While Korea was designated a currency manipulator by the U.S., domestically it is often complained that the won/dollar rate did not adequately reflect changes i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fluctuations in the exchange rates of major currencies. In view of this situation, Korea changed its exchange regime at the beginning of March this year from the dual currency basket system to a more flexible one, called a "market average rate regime". Under this new regime, the won rate is determined in the exchange market based upon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foreign exchange and is allowed to freely fluctuate each day within a +0.4% range.

This paper, first, seeks to evaluate Korea's exchange rate management under the dual basket regime of the 1980s, and then to construct an optimal currency basket for the won which could provide a proper indicator for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under the new market average rate regime.

The analysis of fluctuations in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of the won indicates that the won rates in the 1980s failed not only to offset changes in relative prices between home and trading partner countries, but also to properly respond to variations in major exchange rates as further evidenced by sizable fluctuations in the nominal effective rates of the won. In other words, the currency basket regime which was adopted in 1980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REER of the won has not been operated properly, mainly because authorities often resorted to policy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the won's rate.

In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an optimal currency basket for Korea is constructed,

designed to minimize the fluctuations in the REER of the won without including policy considerations as a factor. It is recognized, however, that both domestic and foreign price data are not available immediately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ER. For this problem, the approach suggested by Lipschitz (1980) is followed, in which optimal weights for currencies in the basket are determined based upon the past correlation between price and exchange rates.

When the optimal basket is applied to Korea since the mid-80s, it is found that the REER of the won could have been much more stable than it actually was. We also argue for the use of variable weights rather than fixed ones, which would be determined by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s and relative prices.

The optimal basket, and the optimal basket exchange rate based on that basket, could provide an important medium- or long-term reference for proper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under the market average rate regime, together with other factors, such as developments i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nd changes in productivity.

Limit Pricing by Noncooperative Oligopolists

Nam Il-chong

Fellow

A Milgrom-Roberts style signalling model of limit pricing is develop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and the scope of limit pricing in general, noncooperative oligopolies. The model contains multiple incumbent firms facing a potential entrant and assumes a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combents and the potential entrant about the market demand. There are two periods in the model. In period 1, n incumbent firms simultaneously and noncooperatively choose quantities. At the end of period 1, the potential entrant observes the market price and makes an entry decision. In period 2, depending on the entry decision of the entrant, n or (n+1) firms choose quantities again before the game terminates. Since the choice of incumbent firms in period 1 depends on their information about demand, the market price in period 1 conveys information about the market demand. Thus, there is a systematic link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profitability of entry.

Using Bayes-Nash equilibrium as the solution concept, we find that there exist some demand conditions under which incumbent firms will limit price. In symmetric equilibria, incumbent firms each produce an output that is greater than the Cournot output and induce a price that is below the Cournot price. In doing so, each incumbent firm refrains from maximizing short-run profit and supplies a public good that is entry deterrence. The reason that entry is deterred by such a reduced price is that it conveys information about the demand of the industry that is unfavorable to the entrant. This establishes

Summary

the possibility of limit pricing by noncooperative oligopolists in a setting that is fully rational, and also generalizes the result of Milgrom and Roberts to general oligopolies, confirming Bain's intuition. Limit pricing by incumbents explained above can be interpreted as a form of credible collusion in which each firm voluntarily deviates from myopic optimization in order to deter entry using their superior information. This type of implicit collusion differs from Folk-theorem type collusions in many ways and suggests that a collusion can be a credible one even in finite games as long as there is information asymmetry.

Another important result is that as the number of incumbent firms approaches infinity, or as the industry approaches a competitive one, the probability that limit pricing occurs converges to zero and the probability of entry converges to that under complete information. This limit result confirms the intuition that as the number of agents sharing the same private information increases, the value of the private information decreases, and the probability that the information gets revealed increases. This limit result also supports the conventional belief that there is no entry problem in a competitive market.

Considering the fact that limit pricing is generally believed to occur at an early stage of an industry and the fact that many industries in Korea are oligopolies in their infant stages, the theoretical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implicit collusion by incumbent firms aimed at deterring new entry using superior information. The long-term loss to the Korean economy from limit pricing can be very large if the industry in question is a part of the world market and the domestic potential entrant whose entry is deterred could have developed into a competitor in the world market. In this case, the long-term loss to the Korean economy should include the lost opportunity in the world market in addition to the domestic long-run welfare loss.

_____ Working Papers from KDI

8901	Yankee Bonds as a New Financing Source for Korea	Kang Man-soo
8902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an Option Pricing Model and the Composition of a Call Option Model	Keum Jeong-yeon
8903		Lee Won-young
8904	The Government's Role in Korean Economic Growth	Yoo Jung-ho
8905	The Exchange Rate and the Trade Balance: Insular Versus Open Economies	Ronald I. McKinnon
8906	Soci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 Consideration of the Equity Versus Efficiency Issue in Policymaking	Yeon Ha-cheong
8907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A Commentary	Basil J. Moore
8908	Exercise Price Bias Test and Firm Size Effect in the Black and Scholes Model	Keum Jeong-yeon
8909	Labor Market Developments of Korea in Macroeconomic Perspectives	Kim Choong-soo
8910	Korean Industrial Policies for Declining Industries	Kim Ji-hong
8911	Keynesian Economics: Past Confusions, Future Prospects	Axel Leijohnuvud
8912	The Effect of Monetary Regime Changes on Stability	Choi Buhm-soo
8913	Trade Policy Problem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ruguay Round	Young Soo-gil
8914	Korea's Exchange Rate Policy: Determinants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Park Won-am
8915	The Relevance of the Bank of Amsterdam Today: Its Implications for a New Monetary System	Jwa Sung-hee
8916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Policy Changes: A Comparative Study of Taiwan and Korea	Gustav Ranis
8917	The History, Institutional Framework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VERs in Korea	Bark Tae-ho
8918	The Proliferation of Free-Trade Areas: What it Means to Korea	Park Yung-chul & Yoo Jung-ho
8919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in the Twentieth Century	Charles P. Kindleberger

Working Papers from KDI

	Korea's Pension System and Major Policy Issues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Size	Min Jae-sung & Tchoe Byong-ho Jeffrey B. Nugent &
0921	Distribut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Mustapa K. Nabi
8922	Three Essays on Korean Privatization Policy	Song Dae-hee
8923	Controlling Stock Externalities	Ko Il-dong
8924	Rec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Industrial Structural Adjustment in Korea	Koo Bon-ho & Bark Tae-ho
	Debt Buybacks and Forgiveness in a Model with Voluntary Repudiation	Peter B. Kennen
	The Economic Theory of Bureaucracy Applied to Public Pricing and Supply of Congestible Public Goods	Roh Kee-sung & Gene E. Mumy
8927	International Investment During the Flexible Exchange Rate Period: Firm Behavior and Policy Choices in Korea	Jongmoo Jay Choi
8928	Macroeconomic Shocks and Exchange Rate Dynamics	Cheol S. Eun & Shim Sang-dal
8929	Major Trends Likely to Influence Future Social Development Patterns	Yeon Ha-cheong & Kim Kwan-young
8930	A Review of Current Social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	Kwon Soon-won
8931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ntegration and the Asset Pricing Mechanism	Cheol S. Eun
8932	Variations in the Size Distribution of Korean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Across Sectors and Over Time	Jeffrey B. Nugent
9001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Policy in Korea	Kim Jae-won
9002	A New Role of Fiscal Policy and Financing Social Development in Korea	Lee Kye-sik
9003	Changing Japanese Trade Patterns and the East Asian NICs	Park Yung-chul & Park Won-am
9004	New Challenges to the Korean Economy and Their International Implications	Young Soogil
9005	The Trilateral Trade Relation Among the Asian NIEs, the U.S., and Japan	Yoo Jung-ho